

과같은격언, 즉자유에대한원래의정의라할이금언을넘어서까지정의롭도록강요당해서는안된다: 〈타인의권리를해치지않는한에서너의권리를즐기라〉. 요컨대나의재산은내것일뿐아무에게도속하지않는다. 나로서는신학상의제 3의덕이개입하는것을원치않는다.

프랑스에서는누구나 5% 의저리低利公채 전환 conversion 을요구한다. 이는소유자들중일부의희생을요구하는것이다. 공적필요가있을경우사람들은그렇게할권리가있다. 그러나이경우정의는어디에있으며, 1815 년의현장이악속한 〈사전보상〉은어디에있는가? 사전보상은없을뿐더러아예불가능하기조차하다. 왜냐하면만일희생된소유에도보상금이주어진다면, 공채전환은아무런의미가없기때문이다.

오늘날국가는공채소유자에대하여, 에드워드 3 세에게포위된칼레 Calais 市市가그도시의명사들에대해취했던것과비슷한태도를취하고있다 (백년전쟁당시칼레시는영국군에의해포위되었다-옮긴이). 승리한영국은칼레시의유력인사들을넘겨받는조건으로주민들의목숨을살려주겠다고약속했고, 외스타슈 Eustache 를비롯한몇명이희생되었다. 이들로서는송고한일을한것이며, 우리의장관님들은공채소유자들에게이일화를들려주어야할것이다. 그러나시당국은이들을적군에게넘겨줄권리가있는가? 아니절대그렇지않다. 안전권은절대적인것이고조국은누구에게도희생을요구할수없다. 적의사정권안에서보초를서는병사도이원칙에서예외가되지않는다. 한시민이보초를서고있을때, 조국역시그와더불어위험에노출되는것이다. 오늘은이사람이, 내일은저사람이당번병이다. 위험과희생은모두에게닥치는것이며, 도주하는것은시역죄이다. 누구도위험에서빠져나올권리가없으며, 누구도희생양이될수없다. 〈한사람이백성을위하여죽는것은유익하다〉 라는가야바의금언 (「요한복음」 18 장 14 절-옮긴이) 은하층민과참주들에게서, 즉사회의양극단에서나온말이다.

영구채권 rente perpétuelle 은그본질상되사가가능하다고말한다. 이민법상의금언은, 국정에적용될경우, 노동과부의자연적평등으로돌아가기를원하는자들에게는바람직하다. 그러나소유자의관점에서볼때그리고공채전환론자들의입을빌려말하자면, 그것은지불불능자의언어이다. 국가는단순한차용자가아니라소유의보증인이며수호자이다. 국가는가능한최고의안전을제공함으로써, 가장견고하고아무도침해할수없는향유를보장한다. 어떻게국가가자신을신뢰하고있는채권자들의희생을강요하면서, 이들에게소유의보장과공공질서에대해말할수있다는말인가? 이러한경우에국가는빚을갚아야하는채무자가아니라, 말하자면주주들을궁지에몰아넣어서원래약속과는달리이들로부터금원래자본금에서나오는이자의 20,30, 40% 를손해보게만드는주식회사와같다.

이것이다가아니다. 국가란사회의약정에의해서공통의법률아래결합된시민들의총체이다. 이약정은모든이들이자신의재산을, 즉갑은밭을, 울은포도원을, 병은임차지를가질수있도록보장해주며, 이와마찬가지로부동산을사들일수도있었지만국가재정을원조하려고그돈으로채권을사들인공채소유자에게는금리

소유란무엇인가?

권리와통치의원리에대한연구 - 첫번째연구

피에르조제프프루동

1840 년

차례

서문	7
제 1 장이책에서사용하는방법, 혁명의이념	16
제 2 장자연권으로간주되는소유에대하여. 소유의동인動因으로서의선점과민법에대하여	35
제 1 절자연권으로서의소유에대하여	37
제 2 절소유의토대로서의선점에대하여	43
제 3 절소유의근거이자재가로서의민법에대하여	54
제 3 장소유권의동인으로서의노동에대하여	63
제 1 절토지는전유될수없다.	65
제 2 절보편적동되는소유를정당화하지않는다.	68
제 3 절시효취득은결코소유를낳을수없다.	69
제 4 절노동에대하여. 노동은그자체로는자연의사물들에대하여어떠한전유능력이가질수없다.	75
제 5 절노동은소유물의평등에귀착된다.	79
제 6 절사회에서모든임금은평등하다.	86
제 7 절능력의불평등은재산의평등의필요조건이다.	90
제 8 절정의의질서안에서는노동은소유를파괴한다.	102
제 4 장소유는불가능하다	106
첫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그것은무無에대해무엇인가를요구하기때문이다.	111
두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가용인되는곳에서생산은효용가치이상의비용이들기때문이다.	117
세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자본이일정한경우생산은소유가아니라노동에비례하기때문이다.	120
네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그것은살인행위이기때문이다.	122
다섯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사회는소유에의해자기자신을먹어치우기때문이다.	126

을더좋아하고, 오락을즐기고자할때도보물따먹기기동같은것은바라지않지않는가.

결국둘중의하나이다. 즉누진과세란고액납세자들의특권을보장해주고공고히해주는제도가거나아니면그자체일종의부당행위인것이다. 왜냐하면 93 년의헌법이선언한것처럼소유가자연권에속한다면, 이권리에의해나에게속한것은나의신체만큼이나신성한것이기때문이다. 그것은나의피요, 나의생명이고나자신이며, 그것을건드리는자는누구나나의노동자를찌르는셈이다. 내수입 10 만프랑은점원아가씨의일단 75 상팀과마찬가지로신성한것이며, 나의아파트도그녀의다락방도중요하기는마찬가지이다. 세금은개인의힘과신장과재능에비례해서할당되는것이아니다. 더구나재산에비례해서할당될수는없는것이다.

따라서국가가나에게서많이가져간다면, 국가는나에게더많이돌려주거나아니면더이상나에게권리의평등을운운하지말아야한다. 왜냐하면그렇지않다면사회는소유를지키기위해서만들어진것이아니라소유를조직적으로파괴하기위해서만들어진셈이기때문이다. 국가는누진과세정책에의해스스로도당의수령이된다. 정기적인약탈행위의모범을보이는것은바로국가이다. 따라서끔찍한강도들, 즉직업적시기심에서로잡힌국가가말살하겠다고공언하는바로그혐오스런도당의우두머리로서, 중죄재판소의피고인석에앉아야하는것은바로국가자신이다.

그러나우리가재판소나병사들을필요로하는것은바로이도당들을제압하기위해서이다. 정부는보험회사라기보다는(왜냐하면정부는보장을해주지는않는다), 차라리보복과응징을위한회사이다. 이회사가요구하는가입금, 즉세금은소유에비례해서, 달리말해서정부에게서금료를받는보복꾼과응징꾼들에게개개소유자가요구하는노고에비례해서할당된다.

여기서우리는절대적이고양도불가능한소유권으로부터아주멀리있다. 그리하여부자와빈자는서로간에불신과전쟁의상태에놓인다! 그러면그들은왜싸우는가? 소유때문에. 소유란필연적으로소유에대한전쟁을부르지않는가! 부자의자유와안전은빈자의자유와안전으로인해해를입지않는다. 오히려이들은서로를복돋우며서로를지탱한다. 이와는반대로부자의소유권은빈자의소유본능에맞서쉴틈없이보호되어야한다. 이얼마나모순인가!

영국에는구빈세가있다. 누군가나에게도이런종류의세금을내라고한다. 그러나내가진정한자연적이고소멸될수없는소유권과 1,000 만에달하는비참한자들을괴롭히는기근사이어떤관계가있는가? 종교는, 우리에게형제들을도우라고요구할때, 입법의원리를내세우는것이아니라자선이라는걸치레를내세운다. 기독교윤리가내게지운선행의무는, 어느누구를위해서하물며구빈시설을위해서내뜻과상관없이요구되는일종의정치적납세가되어서는안된다. 나는, 만약내마음에서우러난다면그리고이웃의고통을보고어떤동정심을느낀다면, 자선을행할것이다. 철학자들이즐거말하는이동정심이라는것을나는거의믿지않지만말이다. 요컨대나는사람들로부터강요당하는것을원치않는다. 어떤이도다음

1815 년의헌장에몇몇정치적권리들을행사하기위해서는재산과능력에서의 일정한조건이요구된다고규정되어있다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정치논객들은 누구나입법자의의도가특권을확립하려는것이아니라보장책을취하려는것이라는점을알고있다. 법이정한조건을충족시키기만하면, 시민은누구나유권자가될 수있고유권자는누구나피선거권자가될수있다. 일단획득한권리는만민에게평 등한것이다. 법은사람도투표권도차별하지않는다. 여기서내의도는이체계가최 선인가를검토하는것이아니다. 현장의정신에비추어볼때그리고모든사람이보 기에, 법앞에서의평등이란절대적인것이고자유와마찬가지로어떤거래의대상 도되지않는다는사실을지적하는것으로내게는충분하다.

안전권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사회는그구성원들에게어떤어중간한보호나 반쪽짜리방어를약속한것이아니다. 사회의구성원들이사회에대해책임지고 있듯이, 사회는사회구성원들에게대해온전히책임을진다. 내게별부담이안된다 면당신의보증을서겠다든지, 아니면내게위험이되지않는다면당신을보호해주 겠다는식으로사회가그구성원들에게말하지는않는다. 만만고초를무릅쓰고당 신을지킬것이고, 당신의목숨을구할것이며, 당신의복수를해주고나는죽을것이 라는식으로사회는말하는법이다. 국가는개개시민의이익을위해온힘을다한다. 국가와시민을서로잇는의무는절대적인것이다.

소유의경우는이와얼마나다르나! 소유는모두에게송배받으면서도아무에게 도인정받지못한다. 법률, 습속, 관습, 공적및사적의식등이모두가소유의죽음과 소유의파탄에공조하고있다.

군대를유지하고공사를집행하며공무원들을먹여살리는데에드는비용을마 려하기위해서정부는세금을거두어야한다. 모든사람이이러한지출에각자제몫 을부담한다면더바랄나위가없으리라. 그런데왜부자는가난한자보다더지불하 여야하는가? 그것은정당하다, 왜냐하면부자는더많이가졌기때문이라고사람 들은말한다. 분명히말하거니와이런식의정의로나로서는이해할수가없다.

우리는왜세금을내는가? 각인에게자유, 평등, 안전, 소유와같은자연권의행 사를보장해주기위해서, 국가의질서를유지하기위해서, 그리고유용하고쾌적인 공공시설물을설치하기위해서이다.

그런데부자들의생명과자유를지키는것은가난한자들의생명과자유를지키 는것보다비용이더많이드는가? 침략과기근과역병이판치는시기에, 국가의구 호를기다리지않고위험을피한대지주와온갖재앙들에무방비상태인초가집에남 아있는날뽕팔이농민중에서어느누가더걱정거리인가?

질서는수공업자나도제에의해서보다유복한부르주아에의해서더위협받는 가? 그런데경찰은돈많은유권자 20 만명보다일자리없는노동자수백명에더신 경을쓰지않는가.

고액금리생활자는국경일을, 청결한거리를, 멋진기념물을가난한자들보다 더많이즐기는가? 그런데부자는대중적인위락시설어떤곳보다자신의전원주택

다섯번째명제에대한보론	133
여섯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는압제의어머니이기 때문이다.	141
일곱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는자신이취득한것을 소비함으로써잃어버리고, 저축함으로써폐기해버리며, 자본화 함으로써생산에적대하기때문이다.	142
여덟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의축적력은무한대인 반면소유가작용을미치는수량은제한되어있기때문이다.	146
아홉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는소유에대해무기력 하기때문이다.	148
열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는평등을부정하기때문 이다.	151

제 5 장정의와불의의관념에대한심리학적설명, 그리고통치와권리의원 리에대한규정 153

제 1 부 154	
제 1 절인간과동물의도덕감각에관하여	154
제 2 절사회성의첫번째및두번째단계에대하여	158
제 3 절사회성의세번째단계에대하여	163

제 2 부 171	
제 1 절우리의오류의원인들에대하여: 소유의기원	171
제 2 절공유제와소유의특징들	176
제 3 절제 3 의사회형태의결정 — 결론	190

적앞에서우리의요구는끝이없다.

Adversus hostem oeterna auctoritas esto

「12 표법」

제 1 절자연권으로서의소유에대하여

인권선언은소유에대하여인간의자연적이고소멸될수없는권리라고말한다. 이들권리는 〈자유〉, 〈평등〉, 〈소유〉, 〈안전〉이라는네가지로축약된다. 93 년의입법자들은어떤방법에따라이렇게나누었는가? 그들은아무것도따르지 않았다. 그들은주권이나법률을논할때와마찬가지로일반적인견해에따라그리고자신들의의견을찾아원리를세웠을뿐이다. 그들은만사를손으로더듬으면서단숨에해치웠다.

만일우리가틀리에의견해를따른다면, 〈절대적권리는다음의세가지로, 즉 ‘안전’, ‘자유’, ‘소유’로환원된다〉. 이렇게이렌느 Rennes 의교수님은평등을제외시켰다. 어떤이유에서인가? 〈자유〉가평등을포함하기때문인가, 아니면〈소유〉가평등을용납하지않기때문인가? 『민법해설』 의저자는이점에대해침묵으로일관할뿐, 여기에토론해볼여지가있다는것조차염두에두지않는다.

그런데, 이세가지또는네가지의권리를서로비교해보면, 소유는다른권리들과전혀다르다는것을알수있다. 요컨대대다수시민들에게있어서소유란가능태로서만, 즉잠재되어있을뿐발휘되지는않는능력으로존재한다는점을, 소유를누리는자들에게있어서소유는자연권의이념과는결맞지않게도어떤거래와변용의대상이된다는점을, 현실적으로정부나법원이나법률은소유를전혀존중하지않는다는점을, 그리고마지막으로모든사람들은자발적이지만장일치로소유를모상으로간주한다는점을알수있다.

자유는침해될수없다. 나는자유를팔수도양도할수도없다. 자유의양도나자유정지를대상으로하는어떤계약이나계약조건도무효이다. 자유의땅에발을디딘노예는그즉시자유인이된다. 사회가치한을잡아서그에게서자유를빼앗을때, 이는사회의정당방위이다. 범죄에의해서사회적협약을깨트린자는누구나자신이사회의공적이라고선언한셈이다. 타인의자유를침해한사람은이들로하여금자기의자유를빼앗아가라고강요한셈이다. 자유는인간상태의첫번째조건이며, 자유를부정하는것은인간의자격을부정하는일이다. 그러고서도어찌인간임을증명할수있겠는가?

마찬가지로, 법앞에서의평등은어떠한제한도어떠한예외도갖지않는다. 프랑스인은누구나평등하게공직에진출할수있다. 바로이것이이러한평등이이루어진곳에서는많은경우에출신이나연륜이특혜의사유가되지않는이유이다. 가장가난한시민도가장고귀한자를법정에불러세울수있으며재판에이길수있다. 백만장자아합 Achab 이나봇 Naboth 의포도밭에성을세웠을때, 법정은경우에따라서엄청난비용이들더라도이성을파괴하도록명령할수있으며, 포도밭을원상태로돌려놓도록할수도있고, 나아가서침탈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법에따르면정당하게취득한모든소유는그값어치나소유자의수익여부와관계없이존중되어야하는것이다.

명-옮긴이)는 〈소유는권리, 즉법적능력이고점유는사실事實이다〉라고말한다. 주택임차인, 차지농, 주식보유자, 용익권자등은점유자인반면, 빌려주고사용을허락하는주인, 용익권자의사망에의해서만향유권을되찾는상속인은소유자이다. 굳이이런식의비유를이용한다면, 연인은점유자이고남편은소유자이다.

소유에대한이러한이중의정의 - 권한으로서의소유와점유로서의소유 - 는매우중요하다. 우리가이야기할바를이해하려면이를잘파악하고있어야만한다.

점유와소유의구별에서두종류의권리가나온다. 첫째, 〈물物안에서의권리(jus in re)〉이다. 이는내가획득한소유를그것이누구의손에있든관계없이요구할수있는권리이다. 이는내가소유자가될것을요구하는권리이다. 이를테면, 배우자들이서로의인신이대해가지는권리는물안에서의권리이며, 두약혼자의권리는아직물에대한권리에불과하다. 첫번째경우에는점유와소유가결합되어있으나, 두번째경우에는허유虛有만을포함한다. 노동자라는자격으로나는자연과근면이가져다준부에대한점유권을가진다. 그러나프롤레타리아로서의나는아무것도향유하고있지못하며, 따라서나는물체에대한권리를근거로물안에서의권리를요구하고있는것이다.

물안에서의권리와물에대한권리사이의이러한차이는, 아주방대한범위에걸쳐모든것을포괄하는중요한두사법적범주, 즉 〈점유권반환소송 possessorio〉과 〈소유권확인소송 pétitoire〉 사이의유명한구분의토대이다. 〈소유권확인소송〉은소유에관련된모든것에걸쳐이루어지는반면, 〈점유권반환소송〉은점유에관련된것이다. 소유에대한고발장을쓰으로써나는사회전체에대해소유권확인소송을제기하고있는것이다. 나는현재점유하고있지않은사람들도점유하고있는사람들과마찬가지자격으로소유자라는사실을증명할것이다. 그러나이로부터소유는모두에게분할되어야한다는결론을끌어내는것이아니라, 나는공공안전이라는이유에서소유는모두를위해폐지되어야한다고요구할것이다. 내가이소송에서진다면우리에게는, 즉여러분프롤레타리아모두와나에게는목을매다는일밖에남아있지않다. 우리는더이상국민들의정의에대해요구할것이없는것이다. 왜냐하면소송법제 26 조의힘찬문체가말하듯이, 〈소유권확인소송에서소송을취하당한청구인은더이상점유권반환소송을제기할수없도록〉되어있기때문이다. 이와는달리내가이소송에서이긴다면, 그때우리는소유가우리에게서앗아간재산에대한향유권을회복할목적으로점유권반환소송을다시시작해야만할것이다. 나는우리가이러한극단에까지이르기를원치않는다. 그러나소송법이 〈점유권반환소송과소유권확인소송은결코중첩될수없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이두소송은한꺼번에이루어질수없다.

소송의핵심에들어가기전에여기서선결적인몇가지견해들을소개하는것이유익하지않을까한다.

제 2 장 자연권으로 간주되는 소유에 대하여. 소유의 동인 動因으로서의 선점과 민법에 대하여

정의 定義들

로마법은 소유를 〈법의 이치가 허용하는 한에서 사물을 사용하고 남용하는 권리 (jus utendi et abutendi re sua, quatenus juris ratio patitur)〉라고 정의한다. 어떤 이는 여기서 〈남용하다 abuser〉라는 단어는 무절제하고 비도덕적인 남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의 절대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소유를 신성화하기 위해 꾸며낸 헛된 구별일 따름이다. 소유자는 자기의 과일을 밭에서 썩게 내버려둘 수 있고, 자기 밭에 소금을 뿌릴 수 있으며, 모래 위에서 소똥을 싸고, 포도밭을 황무지로 바꿀 수 있으며, 채소밭을 공원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모든 일은 남용인가, 아닌가? 소유의 영역에서는 사용과 남용이 어쩔 수 없이 뒤섞인다.

93 년 헌법의 모두 冒頭에 실린 인권 선언에 따르면, 소유란 〈자신의 부, 자신의 소득, 자신의 노동과 근면의 결실을 마음대로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폴레옹 법전 제 544 조에 따르면, 소유란 〈법률과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사물을 가장 절대적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두 정의는 로마법의 정의에 귀착된다. 말하자면 소유자에게 사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모든 정의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폴레옹 법전에 명시된 제한 규정 즉 〈법률과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이라는 구절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소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소유자의 권한이 다른 소유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요컨대 그것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소유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즉 (1) 무조건적 소유, 사물에 대한 지배자나 영주의 권리 따위, 흔히 말하는 〈허유 (虛有, nue-propriété)〉와 (2) 〈점유 possession〉이다. 뒤랑통 (A. Duranton, 1782~1866, 프랑스 법학자, 『프랑스 법강의』를 썼다-옮긴이)에 의하면 〈점유는 사실적 상황이지 법적 상황이다〉. 툴리에 (C. Toullier, 1752~1835, 프랑스 법학자, 『민법론』으로 유

끝으로, 마지막장에서 우리는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 인간 본성의 근저에까지 뚫고 들어감으로써 〈정의〉의 원리와 형식 그리고 특성을 밝혀낼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유기적 법칙을 명확히 설명할 것이며, 소유의 기원, 소유가 확립된 이유와 오래 지속된 이유,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소유권이 소멸될 이유를 밝힐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마침내 소유란 독질과 같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종주권, 조건 의 불평등, 소유라는 세 가지 편견은 사실은 하나일 뿐이며 서로 대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모순의 원리에 따라 이 사실로부터 별 어려움 없이 통치와 권리의 토대를 추론할 것이다. 우리의 연구는 여기서 멈출 것이며, 나머지는 새로운 저작의 몫으로 넘길 것이다.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이 주제의 중요성은 모든 이의 시선을 끈다. 엔느캥 (Hennequin, 1780~1840, 프랑스의 변호사, 정치인, 『입법 및 판례 논고』를 썼다-웁긴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유는 시민 사회를 창출하고 보존하는 원리이다. …소유는, 새롭다고 뽐내는 그 어떤 설명들도 즉각적으로 해명되기 힘든 근본적인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도덕성은, 따라서 인간 제도의 모든 권위는, 만일 소유를 원인이나 결과라는 측면에서 고찰할 때 소유가 사회 질서의 원인이거나 아니면 결과인 가라는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문필가든 정치인이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말은 희망과 신념을 가진 모든 인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대의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누구도 소유의 옹호자들이 던진 도전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아무도 싸움을 벌일 단호한 용기를 품지 못했다. 거만한 법률학의 거짓 지식과 소유가 빚어낸 부정적 경제학의 엉터리 경구가 가장 고결한 지성까지도 혼란에 빠트리곤 있다. 〈평등은 환상이다!〉라는 말이 인민의 자유와 이익의 가장 유력한 벗들 사이에 합의된 일종의 군호(軍號)인 것이다. 이토록 가장 거짓된 이론들과 가장 황당한 유추들이, 다른 점에서는 탁월했을지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중적 편견에 굴복한 정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평등은 날마다 전진한다 (fit oequalitas). 자유의 병사들이여, 승리의 전야에 우리의 깃발을 버릴 것인가?

평등의 옹호자로서 나는 증오도 분노도 없이 철학자에게 어울리는 독립심과 자유인으로서의 평상심과 단호함을 지니고 말할 것이다. 이 장엄한 투쟁에서 나의 몸을 비취주는 빛을 내가 모든 이의 마음 속에 비출 수 있기를, 그리고 나의 성공적인 논증에 의해서 설령 평등이 칼로써 승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펜으로써 승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를!

서문¹

브장송 Besançon 아카데미의 회원 여러분께

파리, 1840 년 6 월 30 일

여러분,
쉬아르 Suard 부인이 창설한 3 개년 연구 지원금과 관련된 회합에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희망을 표명했습니다.

〈본 아카데미는 그 수혜자에게 자신이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여러 연구들에 대한 간결하고 명료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여러분, 나는 이제 이 의무를 다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청원할 때, 나는 〈가장 수가 많고 가장 가난한 계급의 물질적·도덕적 및 지적 조건을 개선할〉 수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나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생각이 자격 신청 요건으로서 아주 엉뚱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 기꺼이 베풀어 준 남다른 배려에 의해서 여러분은 이 엄중한 약속을 하나의 깰 수 없는 신성한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후로 나는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분들을 상대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학식에 대한 나의 존중, 여러분의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 여러분의 영예에 대한 나의 열의는 실로 무한한 것입니다.

우선, 온갖의 견과 체계들로 다져진 상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 및 사회에 대한 연구에 과학적 습성과 엄밀한 방법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기에, 나는 한 해를 문헌학과 문법학에 바쳤습니다. 언어학, 즉 말의 박물학은 모든 과학들 중에서도 나의 기질적 특성에 가장 알맞은 것이었으며,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교 문법학의 가장 흥미로운 문제들 중 하나에 대해 그 당시 내가 작성한 논문²은 놀라운 성과물을 거두지는 못했을지라도 나의 연구의 건실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¹ 다음에게 재한 편지는 이 연구 논문 초판의 서문역할을 한다.

² P.-J. Proudhon, 『문법적 범주들에 대한 연구』, 고고 문헌학 아카데미에서 호평을 얻은 글, 1839 년 5 월 4 일, 미간행.

그후에는형이상학과도덕론이나의유일한관심사였습니다. 이학문들은여전히그대상과경계가제대로규정되어있지는않지만그래도자연과학들과마찬가지로논증과확실성을받아들일여지가있다는것을알게된나의경험은이미나의노고를보상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여러분, 내가따르는모든스승들중에서내가가장큰빚을진이는바로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협조, 여러분의계획, 여러분의지침은나의내밀한소원이거나나의가장소중한희망과합치하였으며끊임없이나를계도해주고내게길을여주었습니다. 소유에관한이연구는바로여러분의사유에서나온것입니다.

1838년에브장송아카데미는다음과같은문제를제시했습니다. <자살의수가줄곧늘어나는것은어떤원인으로돌려야하며, 이정신적감염의효과를막을적절한수단은무엇인가?>

이것은, 덜막연한말로표현하자면, 사회악의원인은무엇이며그해결책은무엇인가를묻는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위원회가응모자들이자살의직접적이고개별적인원인들뿐만아니라그원인들하나하나를방지할수단도빠짐없이열거했다고공표했을때, 여러분스스로가원인과해결책을인정했습니다. 그러나다소재치있게열거된것중어느하나도악의제일원인에대해서든그치유책에대해서든어떤적극적인교훈을끌어낼만한것은없었습니다.

1839년에, 학문적으로표현될때에는늘신랄하고다채로운여러분의계획안이한층더정교해졌습니다. 1838년의공쿠르는사회적질병의원인들로서, 아니좀더정확히말하자면사회적질병의증후군으로서종교적및도덕적원칙의망각, 부에대한야욕, 향락에대한탐닉, 정치적선동들을지적했습니다. 이모든요소들을여러분은다음과같은하나의명제로묶었습니다. 「위생, 도덕, 가족적·사회적관계와관련된일요배의효용에대하여.」

여러분, 당신들은그리스도교의언어로사회의참된체계가무엇인가를묻고있습니다. 한응모자³는일요휴식제도는조건들의평등을토대로하는정치제도와필연적으로결부되어있다는것, 이제도는평등없이변칙이요불가능이라는것, 평등만이고대로부터내려온이신비한일곱째날의휴식을다시찾아올수있다는것을감히주장하고또는증했습니다. 이주장은여러분의동의를얻지못했습니다. 그이유는여러분이응모자가지적한관련성을부정하지는않으면서도조건들의평등이라는원리는그자체로입증되어있지않기때문에, 저자의생각은가정의영역을벗어나지않는다고정당하게판단한데있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평등이라는기본적인원리를다음과같은용어로공쿠르에내걸었습니다. 「자녀들간의평등한재산분할에대해법률이지금까지프랑스에서초래한, 또앞으로프랑스에서낳을경제적·도덕적결과들」

무게도함축도없는상투적문구에구애되지않는다면, 내가보기에여러분의문제를이해하는방식은다음과같은것입니다.

적평등을누리기를원한다면소유를폐지하시오, 그리하지않을것이면왜불평하는가?

소유는정당한가?

모든사람이아무주저없이답할것이다. 그렇다, 소유는정당하다고. 내가여기서모든사람이라고말하는것은문제를완전히이해하고아니오라고답한사람이여태껏한사람도없었기때문이다. 물론근거있는답변이쉬운것은아니었다. 시간이지나야만그리고경험이쌓여야만해결책을얻을수있었다. 오늘날에는이러한해결책이주어져있으며, 그것을이해하는일은우리의몫이다. 나는그해결책을입증하려는것이다.

우리가논증을진행하는방식은다음과같다.

I. 우리는누구와도논쟁하지않고누구도반박하지않으며어떤것에도이의를달지않는다. 우리는소유를옹호하는모든추론을근거가있는것으로받아들이며, 단지소유의원리를탐구하고그원리가소유에의해충실하게표현되어있는가를입증하는것으로만족할것이다. 사실소유란정당성여부에의해서만변론될수있는것이기때문에, 정의의관념 - 아니면적어도정의에대한의향 - 이반드시소유에대한모든논증의한가운데에자리잡고있어야한다. 그리고다른한편으로소유란물질적으로감지되는사물들을대상으로한것이므로, 정의는저절로, 달리말하자면은연중에객체화되어서대수학공식의형태로나타나야만한다. 이러한검토방식에의해서우리는소유를옹호하기위해여태껏동원된모든추론방식은〈그것이무엇이든간에〉항상그리고필연적으로소유의평등에, 즉소유의부정에이르게된다는깨달음에즉시이르게된다.

이책의첫부분은두장章으로이루어져있다. 하나는점유占有, 즉우리의권리의토대에관한것이고, 다른하나소유와사회적불평등의원인으로간주되는노동과재능에관한것이다.

이두장의결론은한편으로점유권은소유를〈금지한다〉는것이고, 다른한편으로노동권은소유를〈파괴한다〉는것이다.

II. 따라서소유란필연적으로평등이라는정언명제아래서우리의머릿속에구상되는것이기때문에, 우리는이러한논리의필연성에도불구하고왜평등이존재하지않으면안되는가를물어야만한다. 이새로운연구역시두개의장으로이루어진다. 첫번째장에서우리는소유라는사실을그자체로고려하면서, 이사실의현실성과가능성여부를탐지해볼것이다 (왜냐하면소유라는것은상반되는두가지사회주의적형태, 즉평등과불평등이모두가능하다는모순을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면우리는기묘하게도소유란마치우연한사건처럼나타나는것이어서수학적건지에서볼때제도나원리로불가능하다는사실을발견할것이다. 따라서학교에서사용되는공리 - 즉 〈현실태에서가능태로의추론은유효하다 (ab actu ad posse valet consecutio)〉라는명제 - 는소유에관한한허구임이드러난다.

³ P.-J. Proudhon, 『일요배의효용에대하여』, Besançon, 1839: 제 2 판, Paris, 1841.

를알필요가있다. 그런데정의란특히통치에서, 사람들의지위에서그리고사물의 소유에서구체적인모습을드러내는것이므로, 우리는모든사람들의합의와인간 정신의진보를판단기준으로삼아다음과같은점을밝혀야한다. 우선어떤조건아 래통치가, 시민들의지위가, 사물의소유가정당한가. 다음에는, 위의조건을만 족시키지못하는사항들을배제하고나면한꺼번에드러날것, 즉정당한통치, 정당 한시민의조건, 사물의정당한소유란무엇인가를. 그리고마지막으로, 정의란무 엇인가를.

인간의인간에대한권위란정당한가?

모든사람은답한다, 아니라고. 인간이지닌권위는법의권위일따름이며, 법 은정의와진실의표현이어야한다. 통치행위에서중요한것은개인의의지가아니 다. 통치란한편으로옳은것과정당한것을발견해서법을만드는일이며, 다른한편 으로는법의집행을감독하는일이다. 나는여기서우리의입헌정부형태가이조건 을만족시키는지아니지를따져보려는것이아니다. 예컨대장관들의의지가법의 선언및해석과관련이있는지를, 우리의원님들이수적우위보다이성의힘에의해 서토론에서이기고자하는지를따져보려는것이아니다. 훌륭한통치에대해서내 건관념이내가정의한바와같다면나는그것으로족하다. 이러한생각은옳다. 그러 나동양사람들이보기에자신들의군주들의전제주의만큼정당한것이없었다는사 실을, 고대인들은심지어철학자들까지도노예제를정당하다고여겼다는사실을, 중세에귀족, 수도원장및주교들은노예를갖는것을정당하다고생각했다는사실 을, 루이 14 세는 <짐이곧국가다> 라고말하면서자신이옳다고생각했다는사실 을, 나폴레옹은자신의뜻을거역하는자를국사범으로취급했다는사실을우리는 잘알고있다. 정의의관념이군주나통치문제에적용될경우, 항상오늘날의관념과 같았던것은아니었다. 정의의관념은줄기차게발전하고점점더정교해지면서마 침내지금의상태에이르렀다. 그러면정의의관념은이제막바지단계에이르렀는 가? 나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거기에도달하기위해넘어야할최후의장애물 은우리가여태고이간직해온소유권이라는제도에서유래하는것이다. 따라서통 치의개혁을완수하고혁명을이룩하기위해서우리가공격해야하는것은바로이제 도이다.

정치적, 시민적불평등은정당한가?

어떤이는그렇다고, 어떤이는아니라고대답한다. 그렇다고답하는이들에게 나는다음과같은사실을환기시킬것이다. 즉인민이출생과신분의모든특권을폐 지했을때당신네들이그것을좋은일로여긴것은아마도당신네들이그로인해이득 을얻었기때문이라는사실을말이다. 그러면이들은왜서열과인종의특권과더불 어부의특권도폐기되는것을원하지않았는가? 이들은말하기를, 정치적불평등 이란소유에서연원하는것인데소유제도없는어떤사회도존속할수없기때문이라 는것이다. 따라서우리가막거론한문제는결국소유의문제로환원된다. 한편, 아니라고답한이들에게나는다음과같은물음을던지는것으로그칠것이다. 정치

만일법률이한아버지의자식들모두에게공동상속권을줄수있다면, 그의손자 와증손자들모두에게도평등하게상속권을줄수있지않겠는가?

만일법률이가족의경우에차남들의권리를인정하지않는다면, 상속권 에의해종족, 부족또는국민의경우에는그것을인정할수는없는가?

상속권에의해서평등이사촌이나형제들사이에서와마찬가지로시민들사이 에서도유지될수는없는가? 한마디로말하자면, 상속의원리가곧평등의원리로 될수있을까?

이모든논점들은일반적인표현으로요약하자면다음과같습니다. 즉상속의원 리는무엇인가? 불평등의토대는무엇인가? 소유란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내가여러분에게제출하는연구의목적이바로이것입니다. 만일 내가여러분이생각하는취지를제대로포착했다면, 만일내가명백함에도불구하고앞에서설명한여러이유들에의해오랫동안무시되어온진실을밝혀낸다면, 만 일내가확실한탐구방법에의해서조건들의평등이라는학설을확립한다면, 만일 내가민법의원리, 정의의본질및사회의형태를확정한다면, 만일내가소유를영원 히부정한다면, 여러분, 이모든영역에는바로여러분의몫이며여러분의도움과고취 덕분입니다.

이작업의취지는철학의문제들에체계적인방법을적용하고자하는것이며, 그 밖의모든의도는모두나와는무관한것이며심지어유해하기조차합니다.

나는법률학에대해이렇다할신뢰를두지않고말했습니다. 나는그렇게할권리 가있습니다. 그러나만일내가이른바이과학적학문이라는것과그것을언마하는 사람들을구별하지않는다면, 나는정당하지않을것입니다. 우리법학자들은힘들 고엄격한연구에몰을바치고있으며지식과능변에의해서동료시민들로부터여러 모로존경을받을만합니다. 이들은다만한가지비난, 즉자의적인법률들을지나치 게존중한다는비난만을감당하면될뿐입니다.

나는경제학자들에게가차없는비난을가했습니다. 나는솔직히말해대체로이 들을좋아하지않습니다. 그들이쓴글귀의도도함과공허함, 그들의무례한교만과 그들의형언하기힘든오류들이나를격분시켰습니다. 그들을인정하고또용인해 주는자가있다면그들의글을읽어보아야만합니다.

나는가르치려드는그리스도교교회또한신랄하게비난했습니다. 나로서는그 령게해야만했습니다. 왜교회는자기가알지도못하는것에대해심판을내렸을까 요? 이비난은내가 입증하는사실들에서나오는것입니다. 교회는교리와도덕에 서잘못을저질렀습니다. 물리학과수학의논증이이것을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것은나의잘못일수있습니다. 그러나그것이진실이라는점은확실히기독교 세계에불행한일입니다. 여러분, 종교를부흥시키기위해서는교회를비난해야 만합니다.

여러분, 아마도여러분은내가방법과논증에마음을쏟은나머지형식과문체를 너무소홀히했다고유감으로여길것입니다. 나도더잘해보려고했지만허사였습니다. 내가보기에 19 세기는생성생성의시대여서, 여기에서는새로운원리들이

고안되기는하나쓰인것중그어느것도오래가지않습니다. 이것이, 내가생각하기에, 오늘날프랑스가이렇게도많은재주꾼들을거느리고있으면서도단한명의위대한저술가도손꼽을수없는이유입니다. 오늘날과같은사회에서문학적인영예를추구한다는것은내게는시대착오로여겨집니다. 여신이탄생하려는때에늙은무녀를내세운들무슨소용이있습니까? 종막에다가선비극의가련한배우들이여, 우리가할수있는최선은그저파국을앞당기는일입니다. 우리들중에서가장값진자는이역할을가장잘해내는자입니다. 하지만! 하는이슬픈성공을더이상바라지않습니다.

여러분, 어찌내가고백을하지않겠습니까? 나는현존하는모든것을중요하고그것을파괴할계획을품고있으면서도여러분의찬동을갈구하고여러분에게장학생자격을요청했습니다. 나는냉정하고정제된철학정신으로이연구과정을마칠것입니다. 압박의감정이나를화나게한것이상으로진리의통찰이나를냉정하게했습니다. 그리고내가이연구에서거두고자하는가장값진결실은악과그근원에대한명쾌한인식 - 이것은열정이나홍분보다더욱힘이있습니다 - 이가져다주는이평정심을독자들에게불어넣는것입니다. 인간의특권과권위에대한나의중오는끝이없었습니다. 아마도나는이따금나의분노속에인간과사물을뒤섞는잘못을저질렀겠지요. 지금으로서는그저경멸하거나불평할따름입니다. 중오하기를그만두기위해서나로서는깨닫는것으로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천명하는일을사명이자기개로삼는여러분, 인민을훈육하고그들에게무엇을원하고무엇을두려워할지를알려주는것은여러분의몫입니다. 아직도무엇이자신들에게옳은일인지를잘판단하지못하는인민은귀에술깃한소리를듣기만하면전혀어긋나는생각에도당장박수갈채를보냅니다. 그것이그들에게는가능성의한계이자사고의법칙인것입니다. 그들은일찍이물리학자와마술사를구별하지못했던것과마찬가지로학자와궤변가를구별하지못합니다. <어떤소문도정말진짜처럼여겨서아무이야기나쉽게믿고, 받아들이고, 굶어모으지요. 신기한휘파람소리나방울소리를들으면, 사람들은파리떼가양푼소리를듣고모이듯모여듭니다.>⁴

여러분, 내가평등을희망하듯여러분도평등을희망하시기를! 우리조국의영원한행복을위해서평등의전도사이자선구자가되시기를! 내가여러분의마지막연구비수혜자이기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내가품을수있는모든소망중에서여러분에게가장값지고내게가장영예로운것입니다.

심심한경의와두터운감사의마음으로.

귀아카데미연구비수혜자

피에르조제프프루동

인권선언의이모범적인조항은 1814 년과 1830 년의헌장들에서도재확인되었는데, 몇가지유형의시민적불평등을, 달리말해서법앞에서의불평등을전제하고있다. 공직은그것이가져다주는평판과보수에의해서만그값이매겨진다는점에서서열의불평등이며, 재산의평등을바라다면공직은보상이아니라무가되어야한다는점에서부의불평등이며, 법은 <재능과덕성> 을말하면서도정작그것이무엇인지를규정하지는않았다는점에서배려의불평등이다. 제정기에덕성과재능이란황제에대한충성과군사적용맹이외에아무것도아니었다. 이는나폴레옹이신흥귀족을만들어옛귀족과결합시켰을때명백해졌다. 오늘날 200 프랑의세금을내는이는덕성이있는자이며, 재능이있는자는점잖은소매치기이다. 이것은이제평범한진실이되었다.

마침내인민은소유권을신성한것으로만들었다. ...신이며, 용소하소서. 저들은자신이하하는일을모르나이다. 보라, 지난 50 년동안인민은이가련한어리석음의대가를치르고있다. 그런데, 인민이, 그들의목소리는신의목소리이며그들의의식은오류를모른다던바로그인민이어찌하여잘못생각했는가? 어떻게자유와평등을찾으면서도저들은특권과예속에다시빠졌는가? 늘그렇듯이옛제도를흉내냈기때문이란가.

예전에, 귀족과성직자는자발적부조나무상증여의형태로민국의재정에기여했다. 이들의재산은설령채무변제를위해서라도차압할수없었다. 반면에평민은타이유 taille 세稅와부역에짓눌렸으며, 때로는국왕의세리들에게때로는영주와교회세리들에게끝없이시달렸다. 가장열악한이들은물건처럼침급되었으며유언을남길수도상속인이될수도없었다. 이들은종물취득법에의해노역과산출이주인에게귀속되는동물과다를바가없었다. 인민은 <소유자> 의조건이모두에게갈기를, 누구나 <자신의재산율, 자신의수입율, 자기노동과근면의결실을자유롭게향유하고처분할수있기> 를원했다. 인민이소유를발명하지는않았다. 그러나그소유가귀족이나성직자에게주어진것과같은자격으로자신들에게주어지지않았기때문에인민은이권리의균등을법제화했다. 가혹한소유형태들, 부역, 상속불능, 지배권, 공직에서의배제따위는사라졌으며향유의형태가변경되었다. 그러나근본은변하지않고남았다. 권리의할당에서진보가있었으나, 혁명은없었던것이다. 1789 년의운동과 1830 년의운동이차례로공인한, 현대사회의세가지근본원리가있다. 그것은 (1) <인간의지의중주권>, 바꿔말하자면 <전제주의>, (2) <부와서열의불평등>, (3) <소유권> 이다. 이것은정의, 즉주권자들과귀족과소유자들의수호천사라고항상모든사람들이말하는바의정의, 사회전체의일반적, 시원적, 정언적법칙으로서의정의를훨씬넘어서는것이다.

<전제주의>, <시민적불평등>, <소유> 따위의개념들이정의라는시원적관념에부합되는것인지아닌지를, 즉그개념들이비록사례와장소와인간관계에따라다양하게표출되기는하지만, 정의의관념에서나오는필연적산물인지아니면차라리여러사물들이뒤섞이고관념들이하릴없이결합된데서생긴사생아인지

⁴ Charron, 『지혜에대하여』, 제 18 장.

동안인민은무수한법을생산했다(물론어느경우에나그대표자들을통해서). 이러한흥취는끝날줄을모른다.

그런데주권의정의는법의정의자체에서나온다. 말하자면법이란〈주권자의 의지의표현〉이다. 따라서군주정아래서법은국왕의의지의표현이며, 공화국에 서법은인민의의지의표현이다. 의지의수효만이다를뿐, 두체제는완전히같은것이다. 어느쪽이나마찬가지의오류를범하고있다. 즉법은사실의표현이어야만하는데도의지의표현으로남아있는것이다. 하지만인민은훌륭한인도자들을따랐다. 인민은제네바의시민을선지자로모셨고『사회계약론』을경전으로삼은것이다.

새로운입법자들의수사학하나하나에는어김없이선입관과편견이드러난다. 인민은수많은배제와특권때문에고통받아왔다. 따라서그대표자들은인민을위해다음과같은선언을했다.〈모든인간은날때부터그리고법앞에서평등하다.〉실로애매하고허풍섞인선언이다.〈인간은날때부터평등하다.〉이말은인간은누구나신장과미모와재능과성품이같다는의미인가? 아니다. 따라서여기서말하고자한것은정치적·시민적평등이다. 따라서〈모든인간은법앞에서평등하다〉고말하는것으로충분했다.

그러면법앞에서의평등이란무엇인가? 1790 년헌법도, 1793 년헌법도, 국왕이하사한헌장(Charte, 1814 년의헌장을말한다-옴긴이)도, 의회가동의한헌장(1830 년의헌장을말한다-옴긴이)도그것을정의할줄을몰랐다. 어느것이나재산과서열의불평등을가정하고있으며권리의평등이란그림자도찾아볼수없다. 이점에대해우리는우리의모든헌법이인민의의지의충실한표현이었다고말할수있다. 다음에서그증거를보여주겠다.

일찍이인민은행정이나군대의관직에서배제되어있었다. 그런데사람들은인권선언에다음과같이자못장엄한조항을끼워넣고는경탄할만한일을했다고믿었다.〈모든시민은평등하게공직에등용될수있다. 자유로운인민은자신들이선출되는데있어서미덕과재능외에다른특권적배려를인정하지않는다.〉

확실하사람들은이멋진일에찬사를보냈음에틀림이없다. 그러나사람들은어리석은짓에찬사를보낸셈이라. 뭐야! 입법자이자개혁자인주권자인민은공직에서보수만을, 잘라말하자면금전적행운만을보지않는가! 그리고인민이시민의공직담임권에대해입법화한것은그공직을이윤의원천으로보았기때문이야인가! 거기서언을것이없었다면이러한규정이왜필요했겠는가? 사람들은천문학자나지리학자가아니면비행사가될수없다고규정하지는않으며, 병어리가비극이나오페라에출연하는것을막지는않는다. 이점에서인민은여전히왕들의본을따르고있다. 국왕들과마찬가지로인민은잇속이있는자리를자기친지나아첨꾼에게주려한다. 그런데이익을챙기는자는인민이아니고바로인민의위임자, 대표자들이다(여기서왕들과인민사이의유사점은절정에달한다). 그래서위임자들은양순해빠진자신의주권자의의지를거스르지않으려고조심한것이다.

이편지를전달받은지두달후, 아카데미는 8 월 24 일에심의회를열고그수혜자에게다음과같이회답했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한회원이쉬아르연구비수혜자가지난 6 월에『소유란무엇인가?』라는제목으로출판하여본아카데미에헌정한소책자에대해아카데미의주의를촉구하고있다. 동회원은아카데미가이출판물에포함된반사회적교설들에대한책임을정의와귀감과스스로의권위를걸고공식적으로부인하지않으면안된다는의견이다. 그리하여그는다음과같이요구한다.

1. 아카데미는쉬아르연구비수혜자의저서를, 아카데미의승인없이출판한점과또회원각자의원칙들에정반대되는견해를아카데미의견해인양돌린점들을어서아주공식적으로부인하고비난한다.

2. 수혜자에대해, 만인이책의제 2 판이출판될경우거기에서헌사를삭제할것을엄중히요구한다.

3. 아카데미의이판단은간행물에기록되어야한다.

이 3 개조항은표결에불여채택되었다.

이렇게단호한부인이란형태를부여함으로써더욱단단해졌다고그당사자들이생각한이가소로판결이나온후에, 나는독자에게우리동포들의지성을우리아카데미회원들의지성으로충정하지않도록촉구하기만하면되었다.

사회과학이나정치학에서의나의후원자들이나의〈소책자〉에대해파문을선포하고있을때, 프랑수-콩테에살지도않고나와는일면식도없으며내가경제학자들에게가한너무도격한비난에의해개인적으로공격받았다고여길지도모를어느한사람, 인민의모든통을감지하고인민의사랑을받으며, 권력에아첨하지도권력을평화하지도않고그저권력을계도하기에힘쓰면서그권력으로부터영예를부여받은박식하고겸손한한저술가, 아카데미회원이자경제학교수이고소유의옹호자인블랑키 Blanqui 씨가동료들이나장관앞에서나를변호해주었으며, 늘무지한만큼늘은먼사법의횡포로부터나를구해주었다.

나는내가두번째연구를출판했을때블랑키씨가영광스럽게도내게쓴편지를독자도기쁘게읽을것으로생각했다. 그것은받는이를들뜨게하는동시에쓴이를영예롭게하는편지였다.

귀하

소유에대한당신의두번째연구를기꺼이내게보내주신데진정으로감사드립니다. 나는그것을첫번째연구를접하고당연히느꼈던것과마찬가지로흥미진진하게읽었습니다. 나는이처럼중요한저작에일종의선전책자와같은모양새를주는투박한형식을당신이어느정도바로잡은것을기쁘게생각합니다. 왜냐하면당신에대해반신반의한나로서는당신의의도에대해안심하는데는당신의재능외에달리아무것도필요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 사람이자기나라에불을붙이는데는참다운지식을그리많이소모할필요가없는모양입니다.〈소유란도독질이다!〉

이거친명제는, 만일당신이그단독한술직성을계속고집했다면, 부대속에든것을 겉상표만가지고논판단하지않는진지한정신의소유자들에게마저혐오감을불러 일으킬성질의것이었습니다. 그러나당신이그형식을다소완화했다고하더라도 당신은당신학설의기본에는변함없이충실하겠지요. 그리고영광스럽게도나를 이위험한예언에적잖이참여시켜주셨지만, 나는당신의재능에대해서는물론경의를표하면서그밖의모든점에서나를끌어들이는그러한연대를수락할수없습니다.

나는다만한가지점에서당신과의견을같이합니다. 그것은이세상에서모든종류의소유가너무도자주남용되고있다는점입니다. 그러나나는이남용에서폐지를결론짓지는않습니다. 그렇게한다는것은모든질병을단숨에없애는죽음과너무나흡사한것입니다. 나는더앞으로나아갈것입니다. 물론나도모든남용중에서 소유권의남용이야말로가장가중스러운것이라고당신에게고백할것입니다. 그러나소유를침해한다거나더군다나파괴하지않고도이질병에대한치유책이여전히있습니다. 만일현행법률들이소유권의행사를제대로규제하고있지못하다면, 우리는그법률들을개정할수있습니다. 우리의민법은꾸란이아닙니다. 우리는거리낌없이민법에대해이의를제기해왔지않습니까. 그러므로소유권의행사를규제하는법률들을개정하면됩니다. 그러나배척하는데는신중합시다. 당연한말이지만, 완벽하게순결한손을가진정직한인간이란있을수없으니말입니다. 사람들이자신이그렇다는것을알지도원하지도않으며눈치채지도못하면서도독이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당신은현사회가우리조상으로부터내려온온갖종류의미덕과악행을그구조안에지니고있다고인정하지않습니까? 당신이보기에, 소유가다시고쳐만들수있고또굳이말하자면형이상학이라는압연기에넣어서평준화시킬수있을만큼단순하고추상적인것입니까? 당신은이두개의멋지고도역설적인즉흥저술에서단지순박하고고집불통의몽상가일수없을만큼뛰어난실제적인사항들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선동조의거친말들을가지고장난을친다고보기에경제용어와학술용어를너무나잘구사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당신은『소유란무엇인가?』에서 80 년전에루소가 〈달랑베르에게보내는서한〉에서 보여준바와같이정신과학문을울창한시적표현으로드러낸것이라고나는믿습니다. 아무튼이것이나의견해입니다.

이것이내가당신의책에대해보고한날, 아카데미에서말한내용입니다. 나는사람들이그책을법적으로기소하려한다는것을알고있었습니다. 당신은내가어떤요행으로다행히그것을막을수있었는지알수없을것입니다.⁵ 만일검사가즉지

⁵ 법무장관비비앵 Vivien 씨는『소유에관한연구』에대한기소를명하기전에블랑키씨의의견을얻고자했다. 이미검사국의격노를산이저작을법무장관이그냥넘어간것은이존경할만하아카데미회원의진술덕이었다. 비비앵씨가책이처음출판된이후내가도움과보호를받은유일한권력자였던것은아니다. 그러나이러한관용은정계에서는아주드문일이니만큼사람들은그것에정중하고한없이감사하는것이다. 나로서는어떤단체들의비검과위선이단지그단체들을지배하는사람들의정신에서유래하는것과마찬가지로나쁜제도는나쁜행정관을만들기마련이라고늘생각해왔다. 예컨대, 아카데

에서단지어떤확장이나수정만이이루어졌다면, 이것은〈진보〉일따름이다. 말하자면, 프톨레마이오스의천동설이진보였다면, 코페르니쿠스의지동설은혁명을이룩했다. 마찬가지로, 1789 년에는투쟁과진보가있었으나어떠한혁명도없었다. 당시도입된개혁들을살펴보면이를잘알수있다.

그토록오랫동안군주의이기심에희생당했던인민은이제자신만이주권자라고선언함으로써영원히군주로부터해방될것이라고믿었다. 그러나왕정이란무엇이었나? 한사람이주권자이다. 민주정이란무엇인가? 인민, 달리말하자면국민다수가주권자이다. 그러나늘인간의주권이법의주권을대신했으며, 의지의주권이이성의주권을대신했다. 말하자면열정이권리를대신했다는것이다. 의심할나위없이만일한국민이군주국가에서민주국가로넘어간다면, 그것은하나의진보이다. 왜냐하면주권자의수를늘림으로써이성의의지를대체할더많은기회를갖게되기때문이다. 그러나아무튼원리는예나지금이나동일하다는점에서통치에서는어떠한혁명도찾아볼수없다. 그런데오늘날우리는가장완벽한민주주의에서도사람들이자유롭지못할수있다는증거를가지고있다.⁴

이것이다가아니다. 군주로서의인민은스스로는주권을행사할수없다. 그는주권을권력의수임자들에게위임할수밖에없다. 인민의총애를얻어내고자하는이들이조심스럽게열심히되풀이해서말하는바가바로이것이다. 이권력의수임자들이다섯이든열이든백이든천이든그수효나칭호가무슨의미가있는가? 그것은변함없이인간의통치이자자의지와자의의지배인것이다. 이른바혁명이라는것이과연무엇을혁명했는지나는묻지않을수없다.

더구나우리는이주권이처음에는국민공회 Convention 에의해, 다음에는총재정부 Directoire 에의해어떻게행사되었으며, 나중에는통령 Consul 에의해어떻게침탈되었는지를알고있다. 황제, 인민의경탄과흠모를한몸에받던이전능자는결코인민에의지하려하지않았다. 그는마치인민의주권을우롱하려는의도라도있는듯이감히인민에게선거를, 달리말해서인민의양도를, 이양도할수없는주권의포기를요구했으며, 결국그것을얻어냈다.

그러면주권이란무엇인가? 말하자면그것은〈법을만드는힘〉⁵이다. 그러나이는사실또다른부조리이며전제주의의유물이다. 인민은국왕들이자신들의칙령을〈집의뜻이이러하므로〉라는식의문구로합리화하는것을보아왔다. 인민은이제자기차례가온듯법을만드는즐거움을만끽하고자했다. 지난 50 여년

⁴ 토크빌 Tocqueville 의『미국의민주주의』와미셸슈발리에 Michel Chevalier 의『북아메리카에대한단상』을보라. 플루타르카가쓴『페리클레스의생애』에따르면, 아테네에서어엿한사람들은자신이참주정을바라는것처럼보이지나않을까두려워한나머지, 학문에몰두하는일로도피처를삼지않을수없었다고한다.

⁵ 툴리에 Toullier 에의하면, 〈주권이란인간의전능성全能性이다〉. 이것은유물론적정의의定義이다. 만일주권이그무엇이라면, 그것은〈힘〉이나〈능력〉이아니라〈권리〉이다. 그러면인간의전능성이란무엇인가?

마침내한권의책이출판되었으며모든것은다음과같은두명제로요약되었다.
 〈제 3 신분은무엇인가? 아무것도아니다. 그들은무엇이되려하는가? 모든것이
 다.〉 어떤이는논평하는형태를빌어다음과같이덧붙였다. 〈국왕은무엇인가?
 인민의수임자이다.〉

이는마치돌연한계시와도같았다. 거대한장막이찢겨져나가고두터운가리개
 가눈에서떨어져나갔다. 인민은추론하기시작했다.

만일왕이우리들의수임자라면, 그는보고를해야한다.

만일그가보고를해야한다면, 그는통제를받아야한다.

만일그가통제를받는다면, 그는책임을져야한다.

만일그가책임을져야한다면, 그는처벌을받을수있다.

만일그가처벌을받을수있다면, 그의공과에따라서이루어져야한다.

시이에스 (Emmanuel Joseph Sieyès, 1748~1836, 『제 3 신분이란무
 엇인가』 (1789) 라는소책자를썼다-옮긴이) 의소책자가출판된지 5 년뒤에제 3
 신분은모든것이되었으며, 국왕, 귀족, 성직자는더이상존재하지않았다. 1793
 년에인민은주권자의불가침성이라는헌법상의허구에만족하지않고루이 16 세
 를단두대로보냈다. 1830 년에인민은샤를 10 세를세르부르 Cherbourg 로몰
 아냈다. 이두경우에인민은범죄행위를판별하는데는잘못을저질렀을지도모르
 나, - 이는사실상의오류이리라 - 인민을움직이게한논리는법적으로비난의여지
 가없는것이였다. 주권자를징벌함으로써인민은, 나중에 7 월왕정의정부가스
 트라스부르 Strasbourg 사건때루이보나파르트 Louis Bonaparte 에대해취
 하지않음으로써모진비난을사게될바로그일을해낸것이다. 요컨대인민은죄값
 을치려야할진짜장본인을공격한것이다. 이것이야말로공통법 droit commun
 의적용이며, 형법제도에서의정의의엄숙한적용인것이다.³

89 년의운동을낳은정신은모순으로가득찬정신이였다. 그것은, 옛것을대체
 한새로운질서가그자체로는체계적이고계획적인어떤것도가지고있지않다는점
 을, 이질서는분노와증오에서탄생한것으로서관찰과연구에근거한과학의효과
 를발휘할수없다는점을, 한마디로말해서그근본토대가자연과사회의법칙에대
 한심오한인식에서나온것이아니라는점을보여주기에충분하다. 따라서우리는
 사람들이맞서싸웠던바로그원리들과퇴치하고자했던모든편견의영향력을공화
 국이만든이른바새로운제도들속에서다시찾아볼수있는것이다. 사람들은즉흥
 적인기분에서영광스런프랑스혁명에대해, 1789 년의쟁쟁에대해, 제도의변화
 가가져온위대한개혁들에대해말을늘어놓는다. 거짓말! 거짓말!

물리적, 지적, 사회적사실에대한우리의관념이우리가행한여러시도의결과
 로완전히달라졌을때, 우리는이정신운동을〈혁명〉이라부른다. 우리의관념속

³ 행정부의수반이책임을진다면, 대의원들도역시책임을져야만한다. 이러한발상이아무에게
 도떠오르지않았다니놀라운일이다. 이는흥미로운논문의주제가될것이다. 그러나나는누구에게도
 이는문을제출하지않을것이다. 인민은여전히웬만한논리학자뺨치는터라내가이들에게결론을도출
 할자료제공할필요조차없으니말이다.

적사건의사형집행인이뒤쫓아와서나를앞질러당신의책을공격하고당신의신상
 을괴롭혔다면, 그것은나에게얼마나큰영겁의고통이었겠습니까? 솔직히말하
 건대나는정말끔찍스러운이틀밤을보냈습니다. 그리고나는당신의책이하나의
 학술논문일뿐어떤선동조의선언문도아니라는것을납득시키고나서야비로소세
 속적인완락을저지할수있었습니다. 당신의문제는너무도송고해서우리의사회
 질서에대한중요문제를거리에서돌을던지면서는논하는무분별한자들에게는전
 혀설모가없습니다. 그러나조심하십시오. 그들이갑자기당신도모르는사이에이
 막강한병기창에들어와자료를뒤져내거나당신의힘찬형이상학을손에넣은어떤
 거리의계변가가그것을굶주린청중앞에서마구잡이로해설하지않는지말입니다.
 그것은결론적으로표절행위일것입니다.

당신이지적한바와같은소유권의남용에대해서는나도당신만큼심정의동요
 를느낍니다. 그러나나는질서에대해, 경찰관에게나모나족을줄진부하고성가신
 질서가아닌간사회의장엄하고송고한질서에대해주깊은애착을지니고있
 기때문에, 어떤남용들을공경하는데때로는망설이곤합니다. 나는한손으로뒤흔
 들어놓아야만했던것을다른한손으로다시일으켜세우고자했습니다. 노목의가
 지를자들에열매를맺을봉오리를다치지않도록조심해야만합니다! 당신은이
 것을어느누구보다도잘알고있습니다. 당신은신중하고교육받은사람이며사려
 깊은정신의소유자입니다. 당신은당신의의도에대해의혹을품을자들을안심시
 키려고우리시대의광신자들에게대해주강한어조로말했습니다. 그러나결국당
 신은소유의폐지 (!) 로결론지었습니다. 당신은인간의지성을움직이게하는가장
 역동적인지렛대를파괴하고자하며, 가부장적온정을가장달콤한환각이라고공
 격하고, 단한마디로자본의형성을저지합니다. 그러면우리는이제화강암위에기
 초를세우는것이아니라모래위에집을짓게됩니다. 내가인정할수없는점이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나는당신의책을, 멋진구절들로가득차고영감과지식으로빛
 나는당신의책을비판했던것입니다!

영광스럽게도당신이내게공적으로사적으로전해준연구논문은나빠진내건
 강을회복해당신과함께한장한장씩연구할수있기를원합니다. 나의유력한소견
 을당신에게전할수있으리라고나는믿습니다. 우선은당신이내게보내준호의에
 찬말씀에대해당신에게감사를표하는것으로그칩니다. 우리는둘다진지하다는
 미덕을갖추고있습니다. 그러나내게는신중이라는미덕이더필요합니다. 당신은
 노동계급이얼마나뿌리깊은공궁에처해있는지알고있습니다. 나는얼마나많은
 격조높은심장들이남루한옷속에서고동치고있는지를압니다. 그리고나는저렇
 게도이른아침부터일어나서일하고세금을내고우리나라의힘을키우는저수많은
 충직한사람들에게누를길없는우애의공감을느낍니다. 그들을현혹시키려하는
 자도있으나, 나는그들에게봉사하고그들을게도하고자애쓸것입니다. 당신은그

미들은그안에서빛을발하는덕망가와재사들에도불구하고왜일반적으로지적탐과어리석음과비
 열한음모의온상인가? 이문제는아마도아카데미가한번쯤거론해볼가치가있을것이다. 응모자들이
 있을것이다.

들에게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 다. 당신은 두 개의 멋진 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것보다 훨씬 절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은 두 번째 것보다 훨씬 절제된 것으로만 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평정과 불편 부당을 그 첫 번째 사명으로서와 과학의 반열에 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 내 작품은 가장 높은 평가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파리, 1841 년 5 월 1 일

블랑키

물론, 이 품위와 호소력을 지닌 서한에 대해서 나로서는 몇 가지 유보하고 싶은 점이 있다. 그러나 나는 고백하건 대적 대자의 수를 불필요하게 늘리기 보다는 서한의 말미에 담겨 언뜻 같은 것을 실현하고자 애썼다. 나는 많은 논쟁으로 이제 지치고 피로하다. 언쟁에 소비되는 지성은 전쟁에 쓰이는 지성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지성의 낭비이다. 블랑키씨는 소유권에 많은 남용이, 그것도 가증스러운 남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로서는 이러한 남용의 총체를 〈소유〉라고 부른다. 우리 두 사람에게 소유란 그 모서리들을 다듬어야 할 다면체이며, 그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블랑키씨는 그 형태가 여전히 다각형 일 것 (입증할 수는 없으나 수학적으로 허용되는 가정) 으로 주장하는 반면, 나로서는 그 형태가 원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성실한 사람들 이라면 누구나 서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상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소유의 폐지에 대해 응당 주저하리라고 나는 인정한다. 실제로는 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정치적 신념들을 능히 집약하고 있으며 또 널리 수용되고 있는 원리를 뒤집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항할 수 있는 원리를 세우고 그 원리에 의거한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새로운 체제가 그에 앞선 체제를 확립시켜 주었던 모든 도덕적, 정치적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내가 이미 입증해 온 것들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리라.

소유 또는 모든 소유의 남용을 제외 한 기존 제도들이 자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 자체가 평등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평등의 체제를 찾는 것, 즉 개인적 자유, 권력의 분할, 공적 관료 조직, 배심원, 행정·사법 제도, 교육, 결혼, 가족, 상속에서의 균등과 통일성, 직계 및 방계의 상속, 판매 및 교환의 권리, 유언권 그리고 심지어 장자 長子의 권리 등의 체제, 소유권보다 더 잘 자본의 형성을 보장하고 만인의 열의를 유지하는 체제, 즉 플라톤과 피타고라스에서부터 바비프, 생시몽 및 푸리에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결사의 이론들을 더욱 높은 관점에서 설명하고 보충하는 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도기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당장 적용될 수 있는 체제.

정의는 주인에게만 존재했었다.² 이제부터 정의는 하인들을 위해서도 존재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새로운 종교가 모든 결실을 거두어들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공공의 풍속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고, 압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뿌린 씨앗〉은 우상 숭배자들의 가슴 속에 떨어져서 거의 시적인 신화와 수많은 화근을 낳았을 뿐이다. 사람들은 〈신의 말씀〉이 가져다 준 도덕률과 통치 원리의 실질적인 결과에 관심을 두기는 커녕, 〈신의 말씀〉의 출생, 신분, 위격 位格 그리고 행적 따위에 대한 사변에 몰두했다. 사람들은 그 가 남긴 잡언을 꼬치꼬치 따지고 들었으며, 풀 수 없는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경전들에 대한 기상천외한 논쟁으로부터 〈신학〉이 탄생했는데, 이는 차라리 〈절대적 불합리의 학문〉이라 할 만 한 것이었다.

〈기독교적〉 진리는 사도의 시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주석을 달고 상징으로 장식한 〈복음서〉는 이 교도의 우화로 가득 차고 글자 그대로 모순의 징표가 되었다. 오늘날 까지도 〈무오류의 교회〉의 지배가 오랜 무지몽매만을 보여주었듯이 말이다. 〈지옥의 문〉은 항상 우세할 수만은 없으며, 〈신의 말씀〉은 재림할 것이고, 마침내 인간은 진리와 정의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들 말한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리스와 로마식의 기독교는 종언을 고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과학의 빛 앞에서 몽상적인 견해는 사라질 것이다.

사도들의 후예가 타파하고자 했던 괴물들은 한 때는 겁을 집어먹는 듯했으나 사제와 신학자들의 어리석은 광신덕에 그리고 때로는 계획적인 공모덕에 조금씩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프랑스에서 코뮌들이 해방되어 가는 역사는 국왕, 귀족, 성직자의 공모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에게서 정의와 자유가 줄기차게 확립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서기 1789 년에 프랑스 국민은 신분으로 쪼개지고 헐벗고 고통받으면서, 절대왕정, 영주와 고등법원의 압제 및 성직자의 불관용이라는 삼중의 그물 밑에서 분투했다. 왕의 권리, 사제의 권리, 귀족의 권리와 그리고 평민의 권리가 있었으며, 출생의 특권, 지방의 특권, 코뮌의 특권, 길드의 특권 그리고 직종의 특권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저에는 폭력과 부도덕과 곤경이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개혁을 말했다. 그러나 겉으로 개혁을 가장 크게 외치던 이들은 단지 이익을 얻으려는 사에서 그것을 추구했으며, 개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할 인민은 한마디 말도 못한 차별로 기대를 걸지 않았다. 오랫동안 이 가련한 인민들은 더러는 의심에서 더러는 불신에서 더러는 절망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머뭇거렸다. 복종하는 오랜 관습이, 중세에 그토록 자부심에 넘쳤던 이 노쇠한 코뮌들에게서 용기를 앗아간 것이리라.

² 종교, 법률, 결혼은 자유인들의 특권이었으며, 애초에는 귀족들만의 특권이였다. 명문 씨족의 신들 Dii majorum gentium 이나 만민법 jus gentium, 즉 가문 또는 귀족들의 법이 바로 그것이다. 노예와 평민은 가문을 형성하지 못했다. 그들의 자식들은 동물의 새끼처럼 취급되었다. 그들은 〈짐승〉으로 태어나서 〈짐승〉으로 살아야만 했다.

현자들은 제국의 멸망을 내다보았으나 치유책을 알지 못했다. 사실 그들인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이노쇠한 사회를 구하려면 공적인 존중과 숭배의 대상들을 모두 바꾸고 1,000 년 이상 이어져 온 정의에 의해 축성된 권리들을 모두 폐기해야 만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로마는 정치와 신들에 의해 정복을 완수했다. 예배나 공공정신을 개혁하려는 어떤 시도도 어리석은 짓이고 신성모독 일 것이다. 자신이 정복한 민족들에 대한 로마는 그들을 쇠사슬로 묶어 놓으면서도 생명을 살려 주었다. 노예는 로마의 부의 가장 비옥한 원천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민족들을 해방시킨다면, 이는 로마의 권리를 부정하는 일이자 로마의 재정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결국 향연에 빠지고 세상의 전리품으로 배를 채운 로마는 승리 와 지배로 유명해졌다. 로마의 사치와 방탕은 정복의 대가였으며 로마는 물려 줄 수도 그만 둘 수도 없었다.> 이렇게 로마는 사실들과 권리들을 자신의 편에 두었다. 로마의 권리 주장들은 모든 인습들에 의해 그리고 만민법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종교에서의 우상 숭배, 국가 내의 노예제, 사생활에서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제도의 토대를 이루었다. 그 제도를 건드리는 것은 사회의 근저를 흔드는 일이었으며, 오늘날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혁명의 심연을 여는 일이었다. 아무도 그러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피와 사치 속에 죽어 갔다.

돌연히 한 사람이나 타나서 자신을 <신의 말씀>이라 칭했다.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가 그에게 말씀을 심어 주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회는 때가 다 했다는 것을, 세상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사제들은 독사이고 변호사는 무식쟁이이며 철학자는 위선자요 거짓말쟁이라고, 주인과 노예는 평등하다고, 고리대나 그와 유사한 모든 것은 도둑질이라고, 마음이 가난한자와 순박한자는 안식의 쉼터에 거할 것이나 돈 많은자와 쾌락을 일삼는 자는 불에 타 죽으리라고 알리고 다녔다. 그리고 그는 더 놀라운 말들을 덧붙였다.

이 사람, 곧 <신의 말씀>을 사제들과 율법의 집행자들이 공공의적으로 몰아잡아 들였다. 이들은 인민이 그의 죽음을 요구하도록 비밀리에 공모했다. 그러나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절정이라 할 이 법률적 살인 행위도 <신의 말씀>이 뿌린 사상을 막지 못했다. 그의 뒤를 이어 사도들이 방방곡곡으로 퍼졌으며 이른바 <복음>을 전파하고 수백만의 전도사를 길러냈다. 이들은 자신의 과업을 완수한 다음 로마식의 정의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 이 불굴의 포교, 학살자들과 순교자들 사이의 전쟁은 거의 300 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마침내 세상은 개종했다. 우상은 파괴되고, 노예는 해방되었으며, 절제된 풍속이 방탕을 대신하고, 부에 대한 경멸은 어떤 경우 적빈赤貧에까지 이르렀다. 사회는 자신의 원리를 부정함으로써, 종교를 전복함으로써, 가장 신성한 권리들을 침해함으로써 구제된 것이다. 이 혁명에서 정의의 관념은 지금까지 누구도 꿈꿔 보지 못한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영역으로 들어섰다.

이와 같은 방대한 과업은 몽테스키외와 같은 사람 20 명 정도의 노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물론 단 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다 해내도록 맡길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작업을 시작할 수는 있다. 그가 밝아나갈 길은 목표를 발견하고 결과를 확보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제 1 장이책에서사용하는방법, 혁명 의이념

만일내가 〈노예제란무엇인가?〉라는물음에답해야만한다면, 그래서내가 한마디로 〈그것은살인이다〉라고답한다면, 나의생각은당장에이해될것이다. 인간에게서사상, 의지그리고인성을빼앗을수있는권력은곧생사여탈의권력이며, 한인간을노예로만드는것은그를살해하는것과다름없다는사실을보여주기 위해서굳이굳말이필요없을것이다. 그런데나는왜 〈소유란무엇인가?〉라는또 하나의질문에대해 〈그것은도둑질이다〉라고마찬가지로답할때마다, 내답변이잘전달되지못했다는노파심에서달려야하는것일까? 두번째명제는사실상첫 번째명제가모양을바꾼것에불과한데도말이다.

나는우리의정부와제도들의원리그자체, 즉소유의문제를논하려고한다. 이것은나의권리이다. 나의연구에서도출되는결론이틀릴수도있다. 이것도나의권리이다. 이책의끝에가서도달한사유를나는책의첫머리에놓고자한다. 이역시나의권리이다.

어떤저자는소유란점유占有에서나오며, 법률로재가된민법상의권리라고 가르친다. 또어떤저자는소유란노동에그원천을두는자연권이라고주장한다. 그리고이학설들은서로이율배반적임에도불구하고격려받고갈채를받는다. 나는노동도점유도법률도소유를창출할수없다는것을, 그리고소유란원인없는결과라고주장한다. 내가비난받아마땅한가?

얼마나많은불만의목소리가터져나오는가!

〈소유, 그것은도둑질이다!〉 93 년 (프랑스대혁명의공포정치시기를뜻한다-웁긴이) 의구호일세! 혁명의나팔일세!...

독자여, 안심하시라. 나는결코불화의주모자도아니며폭동의선동꾼도아니다. 나는며칠앞질러역사를내다볼뿐이다. 나는우리가헛되이감추고자애쓰는진실을드러낼뿐이다. 나는미래의우리정체政體에머리말을쓸뿐이다. 당신에게신성모독으로보이는이정의定義〈소유, 그것은도둑질이다〉는만일우리의고정관념이그것을이해할수있도록허용하기만한다면, 번개를막는피뢰침이될것이다. 그러나얼마나많은이해관계와편견이그것을가로막고있는가! ...아아, 슬프도다! 철학은사건들의흐름을바꾸지못할것이며, 운명은예언과는무관하게실행될것이다. 그렇다해도정의가실현되고우리의교육이완성되어야하지않겠는가?

한원리에서출발해서, 끝없는개연론蓋然論에서벗어났을것이며, 논쟁은막을내렸을것이아니겠는가.

정의란무엇인가? 신학자들은모든정의는신에게서나온다고답한다. 이런식의답은진실이지만아무것도가르쳐주지않는다.

철학자들은아마도좀더잘알고있을것이다. 정의와불의에대해서그토록많은논의했으니말이다! 불행하게도, 검토해보면그들의학식은정말아무것도아니라는것을알수있다. 그들은태양을향해오오 (!) 하며빌고있는야만인들과비슷하다. 오오 (!) 는찬미, 사랑, 열정의부르짖음이다. 그러나태양이무엇인가를알고자하는사람이라면오오 (!) 라는감탄사에서어떤빛을얻을수있겠는가. 정의의문제에관해서우리의철학자들이처한상태가바로이것이다. 그들은말한다. 〈정의는천상의빛이요, 세상의모든인간을비추는빛이요, 우리천성의가장아름다운특전이요, 우리를집승과구별시켜주고신에다가가게하는것이다.〉 내가묻건대, 이경건한추도는무엇에귀착하는가? 야만인들의기도소리오오 (!) 에.

정의에대해인간의지혜가가르쳐온가장합당한말은다음과같은유명한경구속에담겨있다. 〈남이네게해주길원하는것을남에게행하라. 남이네게하기를원치않는것을남에게행하지말라.〉 그러나실천도덕의이러한규칙은과학에는아무런의미가없다. 남이나에게해줄것또는하지않을것을내가선택할권리가있는가? 나의권리는나의의무와동등하다고말한들, 이러한권리가무엇인가를동시에설명하지않는다면아무런의미가없는것이다.

더정확하고더실증적인그무엇에도달하도록노력해보자.

정의는사회를바로잡는중심별자리요, 정치세계가움직이는축이며, 모든거래의규칙이자원리이다. 〈권리〉의이름을빌리지○넣고인간들사이에는아무것도이루어질수없으며, 정의에호소하지않고아무것도이루어질수없다. 정의는법의산물이다. 이와는반대로법이란이해관계를가운데두고사람들이만날수있는각각의상황마다〈정당함〉을선언하고적용하는일에불과하다. 따라서정당함이나권리에대한우리의관념이바로서지못하고불완전하거나심지어거짓일경우, 우리의모든입법조항들은그릇될것이며제도들은타락하고정치는길을잃을것이라는사실, 즉무질서와사회악이도래할것이라는사실은명백하다.

우리의오성에서의, 그리고그필연적결과로서우리의행위에서의정의의왜곡이라는이가정은, 만약정의의개념과그적용에대한사람들의견해가고정불변이아니고시대가변함에따라바뀌는것이라면, 달리말해서우리의관념들이진보한다면, 이미증명이끝난사실일것이다. 아주현란한증거들을통해서역사가우리에게입증해주는것이바로이것이다.

1,800 년전에세계는황제의통치아래서노예제와미신과탐욕속에소진되어가고있었다. 사람들은마치오랜항연에취한것처럼망연자실한채권리와의무의개념조차잊어버렸다. 전쟁과방탕에의해그들은차례로죽어갔으며, 고리대와기계(즉노예) 의노동은그들에게서생계수단을앗아갔다. 이만연한퇴폐속에서가공할야만상태가다시나타나서문둥병이번지듯폐허가된지방들로번져나갔다.

에서이악의필연성에대한증거를보게될것이다. 인간은고통받고있으며늘고통받을것이다. 인간의병은물려받은것이며타고난것이다. 진통제나완화제를써보라. 치유책이없을것이다.)

이러한언사는신학자만의전유물이아니다. 우리는유물론철학자들, 이무한한완결성의신봉자들에게서도유사한말을찾아볼수있다. 데스튀트트라스티(Destutt de Tracy, 1754~1836, 철학자, 『정치경제학논고』를남겼다. 옮긴이)는빈곤, 질병, 전쟁따위는우리의사회상태의피할수없는조건이자거역할수없는필요악이라고단호하게말한다. 요컨대, 〈악의필연성〉이라말하든〈원죄〉라말하든그것은근본적으로같은철학인것이다.

〈최초의인간은죄를범했다.〉만일성서주석자들이말을충실하게해석했다면, 다음과같이말했을것이다. 〈인간은처음에는죄를범한다〉, 즉인간은잘못생각할수있다고. 왜냐하면〈죄를짓다 pécher〉, 〈오류를범하다 faillir〉, 〈잘못생각하다 se tromper〉 따위는모두같은말인것이다.

〈아담의죄는인간에게세습되었다. 그죄란우선무지였다.〉사실무지란개인에게나인류에게나내재적인것이다. 그러나다덕과정치까지포함하는많은문제들에있어서이러한인류의무지는치유되었다. 누가우리에게그무지는끝나지않을것이라고말하는가? 인간은진리를향해줄곧진보했으며빛은어둠을줄기차게물리쳤다. 따라서우리의악은치유불가능한것이결코아니다. 그런데신학자들의설명은미흡한정도를넘어서우스꽝스럽기조차하다. 왜냐하면그것은결국〈인간은잘못생각하기때문에잘못생각한다〉라고설명해야하는데말이다. 그러므로인간이자신이알아야할모든것을알게되면, 이제인간은잘못생각하지않으면서고통받지도않을것이라고믿을만한이유가있다.

만약우리가인간의심장에새겨져있다는이법칙에대해박사님들의견해를묻는다면, 우리는곧다음과같은사실을깨달을수있다. 죽이들은그법칙이무엇인지조차모르면서서로논쟁을벌였다는것, 가장중요한문제들에대해서는머릿수만큼이나의견이각양각색이었다는것, 최선의통치형태, 권위의원리, 법의성격등에대해서는어느두사람도의견을같이하지않았다는것, 모두가자신의개인적감각 - 각자는자신의개인감각을옳은이성인양간주한다 - 이가리키는것에몸을맡긴채밀도꼭도없는바다의풍랑에떠밀리고있다는것따위를말이다. 그리하여서로어긋나는이뒤죽박죽의견해들을보고우리는말할것이다. 〈우리연구의목적은법칙, 즉사회원리를규정하는것이다. 그런데정치인들, 즉사회과학자들은서로견해가일치하지않는다. 따라서오류는바로이들에게있다. 그러나모든오류가현실을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 이들이스스로도모르는사이에가져다놓은진리가발견되는곳은바로이들의책속에서이다.〉

그런데법학자와정치논객들은무엇에대해서로이야기하는가? 〈정의〉, 〈형평〉, 〈자유〉, 〈자연법〉, 〈민법〉 등등에대해서. 그러면정의란무엇인가? 그원리와성격과형식은어떠한가? 이문제에대해서우리의박사님들은아무런답변도내놓지못하고있음을들림없다. 만일그렇지않다면, 이들의학문은명료

〈소유, 그것은도둑질이다!...〉이얼마나인간사유가본말전도된것인가! 〈소유자〉와〈도둑〉은그것이지칭하는존재들이서로적대적인한늘모순되는표현이었다. 모든어법들이이모순관계를축성했다. 당신은어떤권위를믿고이보편적합의를공격하고세상사람들의말을부인하는가? 여러족속들과여러시대의이성을부인하다니당신은도대체누구인가?

독자여, 내보잘것없는개성이당신에게무에그리중요한가? 당신처럼나도이성이사실과증거에만몸을굽히는시대에살고있다. 나의이름은당신과마찬가지로〈진리의탐구자〉¹이다. 나의사명은〈증오도두려움도없이말하라. 네가아는것을말하라〉는율법의말씀에기록된대로이다. 우리인류의과업은과학의신전을짓는것이며, 이과학은인간과자연을포괄한다. 그런데진리는모두에게, 오늘은뉴턴 Newton 과파스칼 Pascal 에게, 내일은골짜기의목동과작업장의장인에게드러날것이다. 각자는건물에자기몫의돌을쌓을것이며일이끝나면사라질것이다. 영원성이우리들의앞에있고또우리의뒤를따른다. 이두무한사이에서, 지금시대가알고자하는인간의위치란무엇인가?

그러므로독자여, 나의직함과나의성격을개의치말고나의추론에만몰두하라. 내가보편적오류를시정하려는것은보편적동의에따라서이다. 내가사람들의의견에맞서는것은사람들을신뢰하기때문이다. 용기를가지고나를따라오라. 그리고당신의의지가솔직하고당신의의식이자유롭다면, 당신의영혼이두명제를종합해서제 3 의명제를끼집어낼줄안다면, 나의사상은틀림없이당신의사상이될것이다. 당신에게나의마지막결론을먼저내놓으면서이책을시작하는것은당신에게고백하기를원했기때문이지당신에게대항하고자함이아니었다. 왜냐하면당신이내책을읽는다면, 당신은틀림없이동의하지않을수없으리라고확신하기때문이다. 내가당신에게말하고자하는바는아주단순하고아주명백하기때문에당신은왜진작그것을몰랐을까하고놀랄것이며, 〈나는그것을생각조차해보지못했다〉라고중얼거릴것이다. 다른사람들이라면당신에게자연의비밀을캐내고송고한신탁을전하는천재의광경을보여줄것이다. 그러나당신은여기서〈정의〉와〈권리〉에대한일련의실험들만을발견할것이고, 당신이지니고있는양식의저울추와자대를검증하게될것이다. 실험은당신눈앞에서펼쳐질것이고, 그결과를평가하는것은바로당신자신이다.

게다가, 나는어떤체계 système 도세우지않는다. 나는특권의종언, 노예제의폐지, 권리의평등그리고법의지배를요구한다. 정의正義, 오로지정의, 이는문의요체는바로이것이다. 세계를규율하는노고일랑남들에게맡긴다.

나는언젠가〈왜사회에그토록고통과빈곤이만연해있는가?〉하고자문한적이있다. 인간은영원히불행한존재인가? 나는개혁을부르짖는자들의만병통치식설명에만족하지않는다. 만연된공궁에대해서혹자는권력의비굴함과무능을, 혹자는음모론자들과폭동을, 또다른혹자는일반적인무지와부패를고발한다. 연

¹ 그리스어로 Sheptikos, 즉진리의탐구를직업으로삼는철학자를말한다.

단과지면에서의이러한끝없는공방에지친나머지, 나는스스로문제를파헤쳐보길원했다. 나는학문의대가들을참조했으며, 철학, 법학, 정치경제학, 역사에관한백여권에달하는책들을독파했다. 이많은독서가불필요한시대에살았더라면얼마나좋았을까! 학설들을비교하면서, 반대의견에답변하면서, 논증들을끊임없이등식화하고환원하면서, 수많은삼단논법을가장치밀한논리의그물로거르면서, 나는정확한정보를얻기위해최선을다했다. 이험난한노정에서나는여러가지흥미있는사실들을수집했는데, 틈이날때마다그것을친구들이나공중公衆과나눌것이다. 그러나먼저말해줄것이다. 요컨대우리는결코 〈정의, 형평, 자유〉라는통속적이고도신성한단어들의뜻을이해하지못했다는것을, 이들각각에대한우리의관념은아주모호했다는것을, 그리고이러한무지가마침내우리를감아먹는빈곤과인류를괴롭히는온갖재앙의유일한근원이었다는것을나는우선확실히깨닫게되었다.

이묘한결론에나의영혼은전율했다. 나는나의이성을의심했다. 나는스스로되물곤했다. 눈이본적도귀가들어본적도지력이 꿰뚫어본적도없는것을네가발견했다니! 가련한이여, 너의병든두뇌에서나온환영幻影을과학의명정성으로착각하고전율하다니! 위대한철학자들이말한것처럼, 실천도덕률에관한한보편적오류란있을수없다는것을너는모르는가?

따라서나는내판단을검증해보기로마음먹었다. 내가이새로운작업에스스로던져본질문은다음과같은것들이다. 인류가그토록오랫동안그리고그토록널리잘못생각하는것은가능한일인가? 인류는왜그리고어떻게잘못생각하게되었는가? 인류의오류가보편적인것이라면어떻게치유할수있는가?

이러한문제들 - 내관찰의확실성여부는이들문제의해결에달려있다 - 은나의분석에그리오랫동안버티지못했다. 인식의대상일반과마찬가지로도덕에서도우리에게가장심각한오류는과학의도그마라는점을, 심지어정의 justice 의문제에서도오류를범한다는것은인간을숭고하게만드는특전이라는점을, 그리고내게돌아올철학적공로란아주사소한것이라는점을나는이글의제 5 장에서보여줄것이다. 사물을명명하는일은별것이야 아니다. 중요한일은그사물들이나타나기전에깨닫는것이다. 끝물에이른한사상, 즉누구나깨닫고있으며설령내가오늘공표하지않으면내일다른누군가가선언할그러한사상을표방함으로써, 나는정식定式을먼저내놓은것에불과하다. 떠오르는해를처음본이에게모든찬사를바칠것인가?

그렇다. 조건의평등은권리의평등과같다고, 〈소유〉와 〈도둑질〉은동의어라고, 재능과봉사의우월성이라는구실아래연은, 아니차라리빠앗은사회적탁월성이란불의이며강탈행위라고누구나믿고있으며즐거말하고있다. 내가말하건대, 이러한진실은모든이의마음속에서새겨져있다. 내가할일이라곤그들로하여금그것을깨닫게하는것이다.

본론으로돌아가기전에내가따라갈방도에대해한마디할필요가있다. 파스칼이기하학의문제를다룰때그해결방법역시스스로고안했듯이, 철학의문제를푸

마치원인, 실체, 시간, 공간따위의범주적관념들이우리의오성에서그러한것처럼말이다. 마치태양이물리학의모든추론에앞서서감각작용에의해우리에게그존재가입증되듯이, 신은우리정신의모든추론에앞서서식에의해우리에게입증된다. 관찰과경험에의해우리는현상들이나법칙들을발견하게되는것이며내밀한감각만이우리에게존재들을드러내주는것이다. 인간은신이있다는것을믿는다. 그런데인간은신의존재를믿음으로써무엇을믿는것인가? 달리말하자면신이란무엇인가?

이신성 divinité 이라는개념, 시원적이고보편적이며우리인간에게고유한이개념이무엇인지를인간의이성은아직규정짓지못하고있다. 자연과인과성에대한이해에서우리가한걸음씩나아갈때마다신의관념은확대되고고양된다. 과학이발전할수록신은커지는듯하다. 신인동형론과우상숭배는유아기정신의필연적결과이자어린이와시인들의신학이었다. 만일그것들을행동의준칙으로삼지만않았다면그리고의견의자유를존중할줄알았다면, 이는순진무구한오류에그쳤을것이다. 그러나인간은자신의모습대로신을만들고는자기것인양차지하려했다. 위대한존재를망가트린것에그치지않고, 인간은그것을자신의세습재산인양, 자신의부인양, 자신의물건인양취급했다. 이렇게괴물같은모습으로그러진신은어디에서나인간과국가의소유물이되었다. 종교에의한심성의타락의기원, 그리고신앙에서나오는증오와신성전쟁神聖戰爭들의원인이바로이것이였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신앙을각자에게말기에는법을배웠으며, 심성의규범을신앙의바깥에서찾고있다. 신의본질과속성, 신학의교설, 영혼의운명따위에대해판단을내리는데있어서, 현명하게도우리는우리가거부해야할것과믿어야할것을과학이우리에게가르쳐주기를기다리고있다. 신, 영혼, 종교, 우리의지칠줄모르는성찰과가장불길한방향의변함없는대상들, 늘해결책을못찾는치명적인문제들, 이모든것에대하여우리는여전히잘못생각할수있다. 그러나우리의오류는적어도중대한결과를초래하지는않는다. 신앙의자유가보장되고영적인것과세속적인것사이의분리가이루어짐으로써, 종교적관념들이사회의진전에미치는영향력은아주소극적인것이되었으며어떠한법이나정치적, 시민적제도도종교에의존하고있지않다. 종교적의무의망각은부패의만연을가져올수있다. 그러나그것이곧만연된부패의필연적인원인은아니며거기에서파생되는부수적인현상일뿐이다. 특히여기서우리의관심사에관한한이러한관찰은결정적이다. 인간들사이의조건의불평등, 빈곤, 만연된참상, 정부의공경따위를더이상종교의 탓으로돌릴수없다. 더높이그리고더멀리나가서원인을찾아야한다.

그러면인간에게종교적감성보다더오래되고더심원한것은무엇인가?

인간자신, 즉영원한대립관계속에서서로맞서는의지와양심, 자유의지와법 이있다. 인간은자기자신과전쟁중이다. 그이유는무엇인가?

신학자들은말한다. 〈태초에인간은죄를범했다. 우리인간은아주오래된배반의죄를지었다. 이죄때문에인간은신의은총을잃었으며오류와무지가늘그를따라다녔다. 옛글들을읽어보라. 당신은어디서나, 여러민족들의끝없는비참속

의탐구에잘못이있다면, 우리가선을원하면서도악을행할것은자명하다. 그탐구가단미흡할뿐이라면, 일정기간동안은우리사회의진보를가로막지않을지도모른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우리를잘못된길로접어들게할것이며, 마침내우리는재앙의심연에빠지게될것이다.

가장숭고한인식이우리에게요청되는것은바로이때이다 (그리고자랑스럽게말하건대, 이러한인식은늘어김없이나타났다). 그러나낡은편견들과새로운관념들사이의뜨거운투쟁이시작되는것도바로이때이다. 격변과고뇌의나날들! 같은신념들과같은제도들을가지고온세상이행복했던시절을사람들은기억한다. 어찌이신념들을비난하고어찌이제도들을거부할수있었겠는가? 사람들은이복에겨운시기가사회에잠재되어있는악의원리를발전시키는데이바지했다는사실을인정하고싶어하지않는다. 사람들은인간과신들을비난하고지상의강자들과자연의힘탄으로돌린다. 악의원인을자신의이성과자신의마음속에서찾는것이 아니라자신의주인을, 경쟁상대를, 이웃을그리고심지어자기자신을공격한다. 그리고국가들은서로싸우고서로열뿔고서로를말살하려한다. 전면적인인구감소에의해서평형이회복되고병사들의시체더미위에서평화가다시도래할때까지말이다. 이토록, 조상의관습을건드린다거나창시자들에게서하사받아서백년동안고스란히지켜온법률들을바꾼다는것은인류에게는아주불경스러운일이였다.

오랜과거에서나오지않은것치고칭찬할만한것이없다 (Nihil motum ex antiquo probabile est): 모든새로운것을의심하라고티투스리비우스 (Titus Livius, 고대로마의역사가-옮긴이) 는썼다. 물론바꿀필요가없는것이인간에게는더좋은지도모른다. 그러나무엇을위해서인가! 설령인간이날때부터무지하고, 아주조금씩교화되기마련이라할지라도, 그것때문에인간은빛을거부하고이성을저버리며운명에서신의몸을내맡겨야만하는가? 흠없는건강이병에서의회복보다더 낫다. 그러나그것이병자가치료받기를거부할이유가되는가? 개혁! 개혁! 아주오랜옛날에세례자요한과예수는외쳤다. 개혁! 개혁! 50 년전에우리의사제들은외쳤다. 그리고우리도오랫동안외칠것이다. 개혁! 개혁!

우리시대의고통을목격하면서나는자문했다. 즉사회의기초를이루는여러원리들중에그사회가깨닫지못하고사회의무지로인해더욱더럽혀지고온갖악의근원이되어버린한가지원리가있다. 이원리는세상에서가장오래된것이다. 왜냐하면가장현대적인원리들은앗아가고가장오래된원리들은존중하는것이혁명들의본질이며, 우리를괴롭히는악은어떤혁명들보다시간적으로앞서있기때문이다. 우리의무지탐에자라난이원리는존중과회귀의대상이된듯하다. 만일그렇지않았다면, 이원리가어찌사람들에게해를끼치고어찌영향력을발휘할수있었겠는가.

그러면이원리, 그목적에서는옳으나우리의이해방식에따르면거짓인원리, 인류만큼이나오래된원리는무엇인가? 그것은종교일까?

인간은누구나신을믿는다. 이도그마는인간의의식과동시에이성에각인되어있다. 인류에게신이란시원적인사실이자근본적인관념이며필연적인원리이다.

는데도방법이필요하다. 철학이다루는문제들이그결과면에서어찌기하학의문제보다덜중요하겠는가! 따라서이문제들을해결하려면어찌더깊이있고엄밀한분석이요청되지않겠는가?

현대의심리학자들이말하는것처럼, 정신에받아들여진일체의인식은바로이정신의어떤일반법칙들에의해규정된다는것, 달리말하자면우리의오성悟性안에이미존재하며그형식조건을이루는어떤유형들에맞추어형성된다는것은이제 의심할나위가없는사실이다. 따라서심리학자들은정신이어떤생득적 <관념들> 을가지고있지는않지만적어도생득적 <형태들> 을가지고있다고말하는것이다. 따라서, 일체의현상은 <시간> 과 <공간> 속에서우리에게인식되기마련이다. 우리로하여금그결과를낳은어떤 <원인> 을상정하게끔하는모든사물, 즉존재하는모든것은 <실체 substance> , <양식> , <수량> , <관계> 따위의관념을내포하고있는법이다. 달리말하자면, 우리는이성의일반원칙들 - 일반원칙들을넘어서면무의세계가있을뿐이다 - 중어느하나와관련을맺지않는어떠한생각도품을수없다.

심리학자들에따르면, 우리의모든판단과관념은불가피하게이기본유형들로회귀되기마련이며, 우리의감각은이들유형을드러내주기만할뿐이다. 이러한오성의공리들은학교에서는 <범주들> 이라고가르친다. 이들범주가정신속에본원적으로존재한다는것은오늘날입증되고있다. 남은일은그것들에체계를부여하고그것들의수를헤아리는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범주를 10 개로, 칸트는 15 개로구분했다. 쿠쟁 (V. Cousin, 1792~1867, 프랑스의철학자, 『철학강의』 를남겼다-옮긴이) 씨는범주를세개로, 두개로그리고마침내는한개로축소시켰는데, 이교수님의논박할여지없는영예는범주들에대한참된이론을발견하지는못했을지라도적어도이문제 - 모든형이상학의가장중요하고아마도유일한문제 - 의중요성을누구보다도잘이해했다는점일것이다.

고백컨대, 나는우리오성의 <관념들> 뿐만아니라심지어 <형태들> 이나 <법칙들> 의생득성이라는것을믿지않는다. 그리고나는레이드 (T. Reid, 1710~1796, 스코틀랜드의철학자, 『공동감각에따른인간오성론』 의저자-옮긴이) 나칸트의형이상학은아리스토텔레스의형이상학보다진실에서훨씬더멀다고생각한다. 그러나여기서이성에대한비판론 - 이는오랜작업을요하는일이며일반인은거의관심없는문제이다 - 을개진하는것은나의의도가아니므로, 나는우리의가장일반적이고가장긴요한관념들, 즉시간, 공간, 실체, 원인따위가정신속에본원적으로존재하는것이거나적어도정신의구성에서직접유래하는것이라는가정을받아들일것이다.

그러나이에못지않게참된, 그런데도철학자들이너무도연구를등한시해온나의심리학적사실은제 2 의천성으로서의습관이새로운범주적형태들을오성에각인시킬힘을지니고있다는점이다. 이형태들은우리의눈을사로잡는외양에근거한것인만큼대개의경우개관적현실과는거리가먼것이나우리의판단작용에미치는영향력에있어서는앞에서열거한일차적범주들만큼이나결정적인역할을한

다. 따라서우리는한꺼번에, 즉우리의성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법칙에의거하는동시에, 사물에대한불완전한관찰에서비롯하는대개는오류투성이인부수적규칙들에의거해서추론하게된다. 이것이야말로거짓된편견의가장비옥한원천이며, 대개는수많은오류들에따라다니는불가항력적인원인이다. 이러한편견에서생긴강박관념이우리를아주무겁게짓누르기때문에, 우리는때때로우리의이성과정신이배척하고우리의양심이거부하는어떤원리와싸우고있을때에도우리도모르게그원리를옹호하고, 그원리에따라추론하고, 심지어그원리를공방하면서사실은그에복종하고있는것이다. 우리의정신은말하자면어떤테두리에갇힌채그저자신의위를맴돌뿐이다. 새로운관찰에의해우리가새로운관념을얻고, 우리의상상력에붙어다니는환상에서우리를벗어나게해주는어떤외부의원리를우리가발견할때까지말이다.

오늘날우리는자기장磁氣場의법칙 - 그원원은아직밝혀지지않았지만 - 이라는것을알고있다. 요컨대외부의간섭을받지않을경우두물체는 〈중력〉이라고불리는어떤가속화된추동력에의해서로결합하는경향이있다. 버팀목이없는물체들을땅에떨어지게하고, 그것들에무게를주고, 우리자신을우리가살고있는땅에붙들어매주는것이바로중력의작용이다. 고대인들이극지極地の존재를믿지않았던유일한이유는바로이러한원리에대한무지였다. 〈어찌하여그대들은보지못하는가.〉 락탄티우스(Lactantius, 260~325, 그리스의철학자-유크인)의뒤를이어성아우구스티누스는말했다. 〈만약우리발밑에서사람들이있다면, 그들은하늘로곤두박질치지않겠는가?〉 자신의눈에보이는대로지구가평면이라고믿은이히포 Hippo 의주교는만약여러장소에서천정점과천저점을직선으로잇는다면이선들은서로평행이될것이며위에서아래로향하는모든운동들은바로이직선들의방향이될것이라고생각했다. 따라서아우구스티누스는별들이하늘의천장에회전하는햇불처럼매달려있으며만일그냥내버려둔다면불의비가오듯땅에떨어질것이고, 땅은세계의아랫부분을이루는거대한탁자와같다는식으로당연히결론지었다. 만일누군가가땅은무엇으로지탱되고있느냐고묻는다면, 그는자신을답을모르지만신에게불가능이란없지않느냐고답했을것이다. 공간과운동에관한성아우구스티누스의관념은바로이런식이었다. 그관념은피상적인관찰에서나온어떤편견에의해주어진것이며, 그에게는판단의일반적이고정언적인규칙이된것이다. 물체가낙하하는원인에대해서말하자면그의정신은텅빈공간이나다름없었다. 그는물체는떨어지기때문에떨어진다고대답하는것외에달리할말이없었다.

우리의경우, 낙하의관념은더복잡하다. 낙하가내포하는, 공간과운동이라는일반관념들에, 원인이라는상위관념에속하는, 중심을향하는인력引力또는방향이라는관념이더해진단다. 그러나물리학이이점에관한우리의판단을완전히정정했다고할지라도, 우리는성아우구스티누스의편견을여전히일상에서간직하고있다. 예컨대우리가한물체가떨어졌다고말할때, 우리는중력의효과가나타났다고단순하고일반적으로이해하는것이아니라, 그운동이땅을향하여그리고

〈위에서아래로〉 이루어졌다고특수하고개별적으로이해하는것이다. 우리의이성은계몽되었으나여전히상상력에의해농락당하고있으며, 우리의언어는언제까지나고정불가능해보인다. 〈하늘에서내려오다〉 는 〈하늘로올라가다〉 만크이나옴은표현이아니다. 그러나이러한표현은인간언어를사용하는한줄곧남을것이다.

〈위에서아래로〉, 〈하늘에서내려오다〉, 〈구름에서떨어지다〉 따위와같이말하는이모든방식이위험한것은아니다. 왜냐하면우리는일상생활에서그것을고칠줄을알기때문이다. 그러나그것이과학의진보를얼마나늦추었는지를잠시라도생각해보자. 물체가낙하하는진짜원인을아는것이아니공간의일반적방향에대한관념이적확한가하는것은사실상통계학, 기체학, 유체역학도는탄도학에있어서는별로중요하지않을지모르나, 세계의체계, 조수의원인, 지구의형태와천체에서의위치따위를설명하는데에는전혀그렇지않다. 이러한문제들을설명하려면, 가상의테두리에서벗어나야만한다. 아주오랜옛날부터숨쉴줄은기술자, 탁월한건축사, 능란한포병이있었다. 그들이지구의모양새나중력에대해서잘못된생각을가지고있다고해서그들의기예의발전이저해되는것은아니었다. 그러나조만간지표면에세운수직선들의평행상태라는가정으로는설명할수없는현상들이나타났다. 그리고그무렵에, 수백년동안일상생활에서통용되어온편견들과, 눈에보이는증거들에어긋나는새로운견해들사이에서투쟁이시작되었다.

이렇게한편으로는, 아주그릇된판단일지라도그것이고립된사실들에기초한것이든단지의외양에기초한것이든항상일정한현실성 réalités 을내포하고있다. 물론이현실성이라는다소넓은영역은상당수의추론을허용해주고, 이현실성들을넘어설경우우리는부조리에빠지고말겠지만말이다. 예컨대성아우구스티누스의관념들속에는옳은점이있다. 물체는땅으로떨어진다거나, 물체의낙하는일직선이라거나, 태양이나지구가움직이고있다거나, 하늘이나땅이돈다는따위가바로그것이다. 이일반적사실들은변함없는진실이며과학은여기에덧붙일것이없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 모든것을설명해야할필요성은우리로서여금더욱더포괄적인원리를찾아나서게한다. 따라서처음에는지구가평평하다는견해가, 다음에는지구가세상의중심이라는학설이잇따라폐기되어야만했다.

우리가이제물리적자연에서도덕세계로넘어가면, 여기에서도우리는마찬가지로겉모습의기만및자발성과습관의영향력에종속되어있다. 그러나우리인식체계의이두번째부분을특정짓는것은한편으로는우리의견해에서나오는선과악의문제이고, 다른한편으로는우리를괴롭히고질식시키는편견들을고집하는완고함이다.

중력의원인이나지구의형태에대해우리가어떤학설을믿든, 지구물리학은그로인해별로손상을받지않는다. 우리의사회경제는그로인해이익도손해도보지않는다. 그러나도덕적자연의법칙들이관철되는것은우리들안에서그리고우리들에의해서이다. 그러므로이들법칙은우리의사려깊은참여없이, 다시말하자면우리가그것들을이해하지않고서는실행될수없다. 따라서도덕률에관한우리

쪽모두에게평등한소유권을주지않는가? 이점에대해최초의선점자의권리를다시들고나오지않는한, 나는사람들이어떤확고한근거로도이를반박하지못하리라라고단언한다.

그러나어떤이는이렇게말한다: 당신이원하는바를우리가인정하더라도소유지의더나은분할에는이르지못할것이다. 토지들은그가치가끝없이증대하지는않는다. 따라서두번또는세번경작한후에도토지는곧비옥도의최대치에도달한다. 농업기술에의해개량되는것은과학의진보와지식의확산에의한것이농부의기술에의한것이아니다. 따라서일하는자몇명이소유자다중多衆에게보태졌다는사실이소유자체를부정하는논거가될수는없다.

우리의노력이수백만무산자대중가운데서그저단지노동자들수백만을해방시킴으로써토지의특전과산업의독점을확대하는데이름뿐이라면, 이는사실상이논의에서아주빈약한수확을얻는것이리라. 그러나그것은또한우리의생각을잘못이해하는것이며지성과논리의박약을보여주는것이다.

만약사물에가치를덧붙인노동자가그사물의소유에대한권리를얻는다면, 그가치를보전하는자도마찬가지의권리를얻는다. 왜냐하면보전한다는것은끊임없이덧붙이는것이며지속적으로창출하는것이기때문이다. 경작한다는것은무엇인가? 그것은땅에매년그가치를부여하는일이다. 그것은창출행위를해마다되풀이함으로써토지의가치가감소하거나상실되는것을막는일이다. 따라서소유를합리적이고정당하다고인정하고소작을공정하고올바른것으로인정함으로써내가말하고자하는바는경작하는자는개간하는자나개량하는자와마찬가지자격으로소유권을획득하며, 소작농이지대를낼때마다그는자신의손에맡겨진땅에대해지대료에비례하는만큼의소유권을얻는다는사실이다. 이점을인정하지않을것인가. 그러면당신은독단과전횡에빠지는것이며카스트의특전을인정하고노예제를용인하는것이다.

노동하는자는누구나소유자가된다. 이사실은현재의정치경제학과법학의원리들안에서부정될수없다. 그리고내가소유자라고말할때, 우리위선적인경제학자님들처럼봉급, 임금, 급료등의소유자들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내가말하는것은자신이창출하는가치의소유자들이다. 그가치를자신이창출했음에도불구하고주인만이그혜택을독차지하고있지만말이다.

이모든것이임금및생산물분배의이론과관련되어있고또이문제는아직껏명확히밝혀져있지않으므로, 내가이점을특히강조하도록허락해주기바란다. 이점을논의하는것은무익한일이아니다. 많은사람들이노동자들에게생산물과그이익에참여하도록허용하는것에대해말하고있다. 그러나이들이노동자들을위해요구하는참여는순전한자선이다. 이들은, 그참여가노동에내재한자연적이고필연적인권리이며가장저급한작업에이르기까지생산자로서의자질과분리될수없는것이라는사실을결코입증하지않았으며의심조차해보지않았다.

이제나의명제는다음과같은것이다: 〈일하는자는심지어자신의임금을받은후에도, 자신이생산한사물에대한자연적인소유권을가진다.〉

를보장해준다. 국가는정당한보상금없이한에이커의발도, 한모통이의포도원도요구할수없으며, 하물며지대를내리게할권한도없다. 어떻게국가가공채이자를인하할권리를갖겠는가? 이권리가정당성을얻으려면공채소유자가자신의자산을다른어딘가에마찬가지로유리하게투자할수있어야만한다. 그러나공채소유자가국가로부터벗어날수없는이상, 그리고공채이율인하의원인즉더값싸게차용할수있는능력이국가에있는이상, 어떻게공채소유자가원하는유리한투자처를발견할수있겠는가? 이것이소유의원리에기반을둔정부가공채소유자의동의없이공채를되살수없어야하는이유이다. 공화국에대부해준기금은다른유형의재산들이존중되는한에는누구도손덜수없는재산이다. 강제적으로되사기를하는것은공채소유자에게는사회적협약을파기하는일이며, 이들을법의테두리바깥에두는일이다.

공채이자율인하에대한모든논쟁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질의 | 100 프랑정도의공채증서를가진 4 만 5,000 의가정을빈곤에빠트리는일은정당한가?

답변 | 700~800 만의납세자들에게, 이들이 3 프랑만내면되는데, 5 프랑을내게하는일은정당한가?

우선, 이런식의답변이질의에대한웁은답이되지않는다는것은명백하다. 그러나그저점이더잘드러나게하기위해서답변을다음과같이바꾸자. 100 명의머리를적에게내줌으로써 10 만명을구할수있는데도, 이들 10 만명모두의목숨을위험에노출시키는것이정당한가? 독자여, 여러분이판단하시라.

이모든것을현상유지를원하는자들은완벽하게이해하고있다. 그럼에도조만간공채이자율의인하가단행될것이다. 그러면소유권은침해당하는것이다. 왜냐하면달리해볼방도가없기때문이며, 권리로간주되면서도사실상권리가아닌소유권은법적으로소멸될것이기때문이며, 현실의불가피성, 양심의규범, 물리적·수학적필연성등이결국은우리사법부의이러한환상을깨부술것이기때문이다.

요약해보자. 자유란, 마치삼투불가능성이물체의속성이듯이, 인간의속성이라는점에서절대적권리이며, 존재의필수조건이다. 평등이란평등없는사회가있을수없다는점에서절대적권리이다. 안전이란, 모든인간에게자신의자유와생명타인의그것만큼귀중하다는점에서절대적권리이다. 이세가지는, 사회에서각구성원은그가준것만큼받는다 - 즉자유에는자유로, 평등에는평등으로, 안전에는안전으로, 육체에는육체로, 영혼에는영혼으로 - 는점에서말하자면더보탬수도더빨수도없는절대적인것이다.

그러나소유란, 그어원학적추론이나법리상의정의에따르자면, 사회의외부에있는권리이다. 왜냐하면만일개개인의재산이사회적인것이라면조건은분명히모두에게평등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소유란인간이사회적재산을절대적인방식으로처분할수있는권리이다〉라고말하는것은모순이다. 소유를위해서는그렇지않다. 따라서소유가 〈자연적〉 권리라고할지라도, 이자연권은 〈사회적인〉 것이아니라 〈반사회적인〉 것이다. 소유와사회는불가항력적으로

서로를 거부한다. 두 소유자를 서로 결합시키는 것은 자석을 같은 극끼리 맞붙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 사회가 사라져야 하거나 아니면 사회가 소유를 말살해야 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소유가 자연적이고, 절대적이며, 소멸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면, 왜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도 소유의 기원에 대해 그토록 관심을 가졌는가? 소유를 특정짓는 특성들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점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자연권의 기원이라니! 도대체 누가 자유권, 안전권 및 평등권의 기원을 탐구했겠는가? 그 권리들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처럼 태어나고, 살고, 죽는다. 그러나 소유란 정말로 이와는 다른 것이다. 마치 주체가 없어도 기능은 존재하듯이, 법률에 의해서 소유는 소유자 없이도 존재하는 것이다. 소유는 아직 잉태되지 않은 인간에게도 이미 세상을 뜬 80 대의 사람에게도 존재한다. 그러나 영원성 및 무한성과 연결된 듯 보이는 이 놀라운 특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유가 어디서 유래하는지를 알 수 없다. 박사님들은 서로 어긋나는 말만을 우겨대고 있다. 이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한 가지 점은 소유권의 확실성은 그 기원의 진실성 여부에 도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치는 그들 모두가 비뚤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왜 이들은 기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 그 권리를 인정했는가?

어떤 이들은 소유권의 정당성 문제에 조금이라도 의의를 제기할 꺼려하며, 터무니없고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소유권의 역사를 돌이켜 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소유란 이미 하나의 사실이며, 항상 그러했으며 또 앞으로도 줄곧 그러하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현학자 프루동(J.-B.-V. Proudhon, 1758~1838, 저자 프루동의 사촌형으로 디종 대학 법학교수-윙긴이) 이 자신의 『용의권 논고』에서 소유의 기원이라는 문제를 현학적인 무용지물인 양 취급하면서 논의를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만일 내가 나의 동료 시민들이 충분한 소유를 누리는 것을 보았다면, 나 역시 평화에 대한 애착심에 고무되어 이러한 바람에 기꺼이 동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 절대 아니다. ... 나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소유권이 가진 정당성의 토대는 두 가지, 즉 〈선점(先占, occupation)〉과 〈노동〉으로 귀결된다. 나는 이 두 가지에 대해 차례로 그 모든 측면을 아주 자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논거를 내세우든 시간, 나는 그것으로부터, 소유가 정당하고 가능하려면 평등을 필요 조건으로 가져야만 한다는 논박할 수 없는 증거를 끌어낼 것이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한기시키고자 한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다. 즉 생산물의 소유는 설사 그것이 허용된 경우라도 결코 생산수단의 소유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의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무기를 지닌 병사, 말겨진 재료를 지닌 석공, 하천을 차지한 어부, 들판과 삼림을 차지한 사냥꾼, 토지를 지닌 농민들, 이들은 모두 마찬가지로이다. 이들은 말하자면 자신이 산출한 생산물의 소유자들일 뿐이며 누구도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아닌 것이다. 생산물에 대한 소유는 배타적이다. 요컨대 물물 안에서 권리 jus in re 이다. 반면에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는 공통적이다. 즉 물물에 대한 권리 jus ad rem 이다.

제 5 절 노동은 소유물의 평등에 귀착된다.

그러나 노동이 질료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해 준다고 동의하자. 그러면 왜 이 원리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가? 왜 이 법률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한정되고 다수의 노동자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가? 모든 동물은 옛날에 햇볕으로 데워진 대지로부터 마치 버섯처럼 생겨났다 고 주장한 철학자에게는 군가가 왜 대지가 같은 질료를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낳지 않는가를 물었다. 그는, 대지가 늙었고 산출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옛날에 그토록 다산多産이었던 노동이 이렇게 불모로 되었는가? 왜 소작농은, 예전에는 소유자가 노동에 의해 획득하던 그 토지를 이제는 자신의 노동으로 얻지 못하는가?

그것은 토지가 이미 전유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이는 답이 될 수 없다. 어떤 땅을 헥타르당 50 부아소(boisseau, 1 부아소는 약 13 리터-윙긴이)로 소작을 준다고 치자. 소작농의 재능과 노동은 이 생산물의 가치를 두 배로 만든다. 초과분은 소작농이 창출한 것이다. 지주가 여간 해선 보기도 문자 제력을 발휘해서, 소작료를 올려 생산물을 독차지하려는데까지 나아가지 않고 경작자에게 그 노동의 결실을 향유하게 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그것으로써 정의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소작농은 땅을 개량함으로써 소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으며, 따라서 일정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땅의 값어치가 원래 10 만 프랑이었는데 소작농의 노동에 의해 15 만 프랑의 값어치를 얻었다면, 이 잉여 가치의 생산자인 소작농은 이 땅의 3 분의 1 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이다. 콩트 씨도 이 논리를 거역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를 더 비옥하게 만든 사람들은 땅을 새로 넓힌 사람들보다 자신의 동료들에게 덜 공헌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 왜 이 규칙이 땅을 처음 간척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땅을 개량한 사람에게에는 적용되지 않는가? 전자의 노동에 의해 토지가 1 의 가치가 나간다면, 후자의 노동에 의해 토지는 2 의 가치가 된다. 양쪽 모두 평등한 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왜냐

을 자기 것으로 한다는 점에나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생산물의 소유가 원료의 소유를 가져온다는 점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부가 같은 해안에서 자기 동료들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줄 안다고 해서, 그의 수완을 이유로, 자기가 고기잡이하는 해역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겠는가? 사냥꾼의 수완을 한 지역의 사냥감에 대한 소유권 자격으로 간주할 수 있겠는가? 유사성은 완벽하다. 근면한 농사꾼은 풍부하고 질 좋은 수확으로 자신의 근면을 보상받는다. 만약 그가 땅을 개량했을 경우, 그는 점유자로서의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나 결코, 어떤 경우에도, 그는 경작자로서의 자신의 남다른 수완을 마치 자신이 경작하는 땅의 소유권에 대한 자격인양 제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점유를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노동을 그만두자마자 소유자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소유를 구성하는 것은, 법률에 따르면,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아주 오래 전부터의 점유, 즉 시효 취득이다. 노동은 선점이 표현되는 물질적 행위이지만 그에 드러나는 표지일 따름이다. 따라서 농사짓는 이가 노동과 생산을 그만둔 후에도 소유자로 계속 남는다면, 처음에는 허용되고 다음에는 관용된 그의 점유가 마침내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된다면, 그것은 바로 민법의 유리한 해석과 선점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진실이므로, 이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는 매매 계약도, 토지나 가옥의 임대차도, 지대의 설정도 있을 수 없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되는가? 그 생산물에 의해서이다. 만약 어떤 토지가 1,000 프랑의 수확을 올린다면, 이 땅의 값어치는 5% 를 기준으로 할 때 2 만 프랑으로, 4% 를 기준으로 할 때 2 만 5,000 프랑으로 산정된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앞으로 20 년 또는 25 년이 지나면 토지가 가격이 모두 구매자에게 상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부동산의 가격이 완전히 구매자에게 상환된다면, 무슨 이유로 구매자가 계속 소유자로 남아 있는 것인가? 이는 선점권이 있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다면 일체의 매각은 환매還買 행위가 될 것이다.

노동에 의한 점유라고 하는 이론은 따라서 법전과 모순된다. 그리고 이 이론의 주장자들이 이것을 토대로 법률들을 설명하고자 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과 모순된다.

〈만약 사람들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토지를, 심지어 늪지와 같은 유해한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었다면, 그들은 바로 그 일에 의해서 완벽한 소유권을 창출한 것이다.〉

마치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려는 듯이 표현을 부풀리고 모호한 말을 늘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완벽한 소유권을 창출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당신은 그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생산능력을 창출했다고 말하려는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그것을 지탱해주는 질료 *matière* 라고 하는 조건이 없이는 창출될 수 없다. 땅이라는 실체는 언제나 같은 것이다. 변하는 것은 그 품질과 형태뿐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질료를 제외한 모든 것을 창출했다. 따라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은 이 질료를 점유하고 사용할 분이며 항구적인 노동의 조건 아래서 일정 기간 동안만 자신이 생산한 사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제 2 절 소유의 토대로서의 선점에 대하여

나폴레옹 법전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가 참사회가 소집한 회합들에서 소유의 기원과 원리에 대한 어떤 논쟁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소유 및 종물從物 취득권에 관한 제 2 편, 제 2 권의 모든 조항들은 아무런 토의도 수정도 없이 통과되었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률고문관들을 그로록 힘들게 했던 보나파르트가 소유에 대해서는 덧붙일 말이 없었다. 그러나 놀랄 일은 아니다. 일찍이 이 세상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가장 제멋대로였던 그 사람의 눈에는, 권위에 대한 복종이 가장 신성한 의무이듯이 소유는 제일의 권리여야만 했다.

〈선점〉의 권리, 즉 〈최초점유자〉의 권리는 사물에 대한 현실적, 물리적, 효과적인 점유에서 나오는 권리이다. 내가 어떤 땅을 선점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것에 반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나는 그 땅의 소유자로 간주된다. 원래 이러한 권리는 상호적일 경우에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법학자들도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키케로 Cicero 는 땅을 거대한 극장에 비유하고 있다. 〈극장이 공공의 재산인 것처럼 실은 각자가 차지한 자리가 마땅히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Quemadmodum theatrum cum commune sit, recte tamen dici potest ejus esse eum locum quem quisque occuparit)〉. 이 구절은 고대가 소유의 기원에 대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철학적인 사유의 전부이다. 키케로의 말을 들어보자. 극장은 모두에게 공유된 것이다. 각자가 거기에서 선점한 자리는 〈자기의 것〉이라고 말해진다. 즉 명백히 그 자리는 〈형령된〉 자리가 아니라 〈점유된〉 자리이다. 이러한 비유는 소유를 무효화하며 더 나아가서 평등을 함축한다. 나는 극장에서 아래층 입석에 한 자리, 위층 좌석에 한 자리, 천장층에 한 자리를 모두 차지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것은 게리온 (Geryon,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으로 헤라클레스에 의해 죽임을 당함- 옮김) 처럼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 없는 한불 가능하다. 키케로에 따르면, 누구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상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무엇이든 각자에게 속한 것이 그의 것 (suum quidque cujusque sit)〉이라는 그의 유명한 금언, 그러나 지금까지 아주 이상하게 적용되곤 했던 바로 그 금언의 참된 해석이다. 각자에게 속한 것은 각자가 점유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가?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소비에 필요한 것만큼이다. 땅과 극장에 대한 키케로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입증한다. 이에 따르면 누구나 마음대로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으며 그것을 좋게 고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결코 그와 타인을 갈라놓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키케로의 교의는 평등권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선점한다는 것은 용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그 용납이 상호적이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이라면 점유란 평등해지기 때문이다.

그로티우스(H. Grotius, 1583~1645, 네덜란드의역사가, 법학자-유킨이)는 역사에서 설명을 찾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적이라고 말하는 권리의 기원을 자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은 어떤 추론 방법인가? 그것은 곧 고대인들의 방식이다. 요컨대 사실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그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선례들이 정당하다는 식이다. 그러나 살펴보자.

〈태초에는 모든 것이 공유였으며, 나뉘어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모두의 재산이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로티우스는 어떻게 해서 이 원시 공동체가 결국은 야망과 탐욕으로 끝났는가를, 그리고 왜 황금시대가 철의 시대에 자리를 내주었는지를 등등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는 우선 전쟁과 정복에, 다음에는 조약과 계약 등에 그 기원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조약과 계약들이, 최초의 공동체의 의사에 따라서, 즉 첫 인간들이 동의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배 규칙과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정의의 형태에 따라서, 부를 평등하게 나누었는가? 만일 그렇다면 기원의 문제는 왜 이후에 평등이 소멸되었는가 하는 문제로 표현된다. 아니면 이 조약과 계약들이 무력에 의해 약자들에게 강제된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이는 무효이다. 후대 사람들의 암묵적인 동의는 결코 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우리는 항구적인 불공평과 사기의 상태에 살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조건의 평등이 처음에는 자연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자연 밖의 상태로 되었는지를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일탈이 왜 일어났는가? 동물의 본능은 종種の 차이만큼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의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평등을 가정하는 것은 현재의 불평등이란 사회의 자연 상태에 가해진 외부의 침해라는 사실(소유의 옹호자에게는 납득될 수 없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만일 신이 최초의 인간들을 평등한 조건들 안에 놓았다면, 그것은 신이 이들에게 준 하나의 지침, 즉 인간들이 다른 차원에서 실현하길 신이 바라는 모델이라는 것이다. 마치 신이 인간의 영혼에 불어 넣어 준 종교적 감성을 인간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계발하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다. 인간은 항구적이고 변함 없는 한 가지 본성만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본능에 의해 그 본성을 따르고, 반성에 의해 그것에서 멀어지며, 이성에 의해 다시 그리로 돌아온다. 우리가 지금 귀로에서 있지 않다고 감히 말할 자가 누구인가? 그로티우스는 인간이 평등에서 나왔다고 말한다. 나는 인간이 평등 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인간은 어떻게 평등에서 나왔는가? 인간은 어떻게 다시 평등으로 돌아갈 것인가? 나중에 살펴볼 것이다.

레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주프루아 Jouffroy 씨의 번역본, 제 4 권, 363 쪽).

〈소유권은 결코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획득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품성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다. 법률학자들은 양식을 가진 인간이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소유의 기원을 설명했다. 토지는 자비로운 하늘이 인간들에게 생활에 쓰도록 준 공동 재산이다. 그러나 이 재산 및 거기서

소유자의 부당 취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콩트씨는 매각할 때의 토지의 가치를 낮추는 척했다.

〈이러한 부당 취득의 규모를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부당 취득이란 것은 선점된 토지가 먹여 살리는 사람의 수와 이들에게 제공되는 생계 수단들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예컨대, 오늘날 1,000 프랑의 값어치를 지닌 토지면 적지 부당 취득될 때에 5 상팀에 불과했다면 실질적으로는 5 상팀만큼만 횡령당한 셈이다. 4 제곱킬로미터의 땅 한 조각은 야만인 한 명을 겨우 먹여 살리기에 도비좁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은 오늘날 1,000 명에게 생계 수단을 확보해 주고 있다. 1000 분의 999 가점유자의 정당한 소유이고, 1000 분의 1 만큼의 가치만 이 부당 취득된 것이다.〉

한 농부가, 자신의 밭 300 프랑을 확인하는 채무 증서를 찢어버렸다고 신부 앞에서 참회했다. 고해 신부는 말했다: 300 프랑을 갚아야만 하오.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나는 종이값으로 2 리아드 liard 를 갚겠소.

그렇다. 콩트씨의 추론은 바로 이 농부의 솔직함과 흡사하다. 땅은 단지 총액으로서의 값어치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미래를 향한 잠재적 값어치를 갖는다. 그리고 그 값어치는 그 땅을 사용하고 값지게 만드는 우리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 한 어음, 약속 어음, 연금 증서를 찢어버려라. 그러면 종이값으로는 당신은 거의 잃은 것이 없다. 그러나 당신은 이 종이와 더불어 당신의 자격을 파괴하고, 자격을 잃음으로써 당신의 재산을 파괴한 것이 된다. 토지를 파기하라, 아니 당신의 경우에 매한가지로 말하자면, 토지를 매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한해, 두해 또는 여러해의 수확을 양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 당신의 자손의 자손들이 거둘 수 있을 모든 생산물을 잃어버리는 셈이 된다.

소유의 사도이자 노동의 찬미자인 콩트씨가 정부 측의 토지 양도를 가정할 때, 우리는 그가 어떤 동기도 의도 없이 그러한 가정을 내세우고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로서는 이러한 가정이 필요했다. 그는 선점의 이론을 배척했기 때문에, 게다가 노동은 선점에 대한 사전 허가 없이 권리를 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를 정부의 권위에 결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유가 인민주권의 원리를, 아니 달리 말하자면 보편적 동의의 원리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미 이전 견해에 대해 논의했듯이 말이다.

소유가 노동의 딸이라고 말하고 나서 뒤이어 노동에 그 실행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은, 내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일종의 약속을 빚는 일이다. 온갖 모순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일정한 넓이의 토지는 한 사람이 하루에 소비할 만큼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점유자가 자신의 노동에 의해 이틀분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한다면, 그는 토지의 가치를 두 배로 만든 것이다. 이 새로운 가치는 그의 작품이며 그의 창조물이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의 소유이다.〉

나는, 점유자가 두 배의 수확으로 자신의 노동과 고된 면을 보상받는다는 것을, 그러나 토지에 대한 어떤 권리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일한 자가 노동의 결실

중주권의주장, 공납, 왕의권한, 부역, 인신과금전의징발, 상품의조달따위가생기고급기야는납세거부, 봉기, 전쟁, 인구감소가나타났다는사실을환기하는것으로답을대신할것이다.

〈이땅의한가운데에개인적소유로전환되지않은아주넓은토지가존재한다. 대부분삼림인이토지는국민대중에계속하며, 여기서수입을얻는정부는그수입을모두의익에맞게사용하고또사용해야만한다.〉

〈사용해야만한다〉는말은제대로된표현이다. 허언虛言을피할수있으니말이다.

〈토지가매각되어야한다.〉

왜매각되어야하는가? 누가그것을팔권리를가졌는가? 설령국민이그소유자라고하더라도, 오늘의세대가내일의세대의몫을앗아갈수있는가? 인민은용익권자의자격으로점유하며, 정부는지배하고, 감독하고, 보호하고, 분배의정의를시행한다. 따라서국민이토지를양도한다면, 이는단지그사용만을양도한것이다. 국민은그어떤것이라도팔거나양도할권리가없다. 소유자의자격을갖고있지않는데, 어떻게국민이소유를변형시킬수있다는말인가?

〈한사업가가그땅의일부를, 예컨대거대한늪지를사려고한다. 이경우부당취득 usurpation 이란있을수없다. 왜냐하면공중은자기정부의손에의해서그정확한값을돌려받고있기때문이며, 매각후에도매각전과마찬가지로부자이기때문이다.〉

이는우롱조의말이다. 뭐라고! 씹씹이가헤프고경솔하고서툰기 짝이없는한 장관이, 내가이의를제기할수도없는가운데 (국가의피보호자인나는국무회의에서발언권도심의권도없다), 국가의재산을 〈팔기〉 때문에, 이매각이건전하고합법적이라고! 인민의후견자들은인민의자산을탕진하고인민은호소할데도없다니! 당신은, 내가정부의손에의해서내몫의판매대금을받았다고말한다. 그러나우선나는팔기를원하지않았으며, 팔기를원했을때는팔수없었으며또그럴권리도없었다. 그리고다음으로나는이러한매각행위가내게어떤이득이되는지도알지못했다. 나의후견자들은군인에게군복을입히고, 낡은성벽을수리하고, 자랑이나하듯비싸고보잘것없는기념물들을세웠다. 다음에그들은불꽃놀이로벌이고보물따내기기동을세웠다. 내가잃은것에비하면이것은무엇인가?

사들인자는경계말뚝을박고, 울타리를치고, 소리친다: 이것은내것이다. 각자에게자기몫을, 각자가자기몫을. 이리하여, 이제소유자나그친구가아니라면누구도발을들여놓을권리가없는땅덩어리, 소유자나그종북들을제외하고는누구에게도이득이되지않는땅덩어리가생긴다. 이러한매각행위가되풀이된다면, 인민은더이상설자리도, 누울자리도, 수확을거둘자리도찾지못할것이다. 인민은소유자의대문앞에서, 달리말해자신이물려받은유산이었던이소유의벼랑에서굶어죽을것이다. 그리고소유자는인민이죽는것을눈앞에보면서말할것이다: 이리하여게으름뱅이와겁쟁이들이죽었다!

나오는생산물을나누는일은인간들이할몫이다. 누구나‘다른이들을해치지않으면서’그중‘일부’를차지할수있도록필요한힘과지성을하느로부터부여받았다.〉

〈고대의도덕론자들은, 토지가선점되어다른이의소유가되기이전에그토지의산물들에대해인간이가지는공통의권리를극장에서권리에적절히비교했다. 누구나극장에들어서면서비어있는자리를차지할수있으며, 상연시간내내그자리를지킬수있는권리가있다. 아무도이미자리를자은관객들을내쫓을권리는없는것이다. 토지는전능하신하느님께서인류전체의노동과안락을위해한없는배려와선의로하사하신거대한극장과도같은것이다. 누구나, 다른이들에게해를끼치지않는한, 관객으로거기에자리잡을권리가있으며배우로서역할을맡을권리가있다.〉

레이드의학설의결론은다음과같다.

1. 각자가차지한부분이타인에게손해가되지않기위해서는, 그부분이, 나누어가져야할재산의총량을공동분배자들의수로나누는몫과같아야한다.

2. 자리의수는항상관객의수와같아야만한다. 어느한관객도두자리를차지할수없으며, 한배우가여러가지배역을맡아서도안된다.

3. 관객이들어오고나감에따라자리의수는모두에게같은비율로줄어들거나늘어난다. 왜냐하면 〈소유권이란결코자생적인것이아니라획득된것〉이기때문이라고레이드는설명한다. 따라서절대적인것은없다. 따라서소유권의구성요소를이루는취득행위는우연적인사실일뿐이며, 우연적인취득행위자체는그것이지니지도않은불변성을소유의권리에전이해주지못한다. 에든버러 Edinbourg 의교수님께서아래와같이덧붙일때, 아마도그가이해한바가바로이사실일것이다.

〈생존의권리는생존의수단을확보할권리를포함한다. 말하자면죄없는자의생명이존중되어야한다는정의의준칙은그에게서생명을보존할수단을빼앗지말아야한다는준칙을포함한다. 이두가지는마찬가지로신성한것이다. ...타인의노동을방해하는행위는그에게쇠사슬을채우거나그를감옥에가두는것과같은성격의부당행위를저지르는짓이다. 결과는같은종류이며같은분노를유발시킬것이다.〉

이리하여이스코틀랜드학파의시조는재능과근로의불평등을전혀고려하지않은채, 노동수단의평등을선험적으로상정하며, 나아가 〈잘하는자는잘대접받으리라〉라는늘상같은금언에따라개인의복리에대한배려를노동자각자에게내맡겨버린다.

철학자레이드에게결여된것은원리에대한이해가아니라그결과를따르는용기이다. 만일생존권이평등하다면, 노동권도평등하며마찬가지로선점권도평등하다. 만일소유를구실로해서섬의주민들이, 그섬에정박하려는가련한난민들을갈고리로쫓아버린다면그것은범죄행위가아닌가? 이러한야만행위는생각만해도몸서리가쳐진다. 소유자들은자기섬에터잡은로빈슨크루소처럼, 문명의파고에휩쓸려와서소유의바위에매달리려는프롤레타리아들을창과총으로몰아내고

있다. 〈내게일거리를주소, 나를내쫓지마주소, 얼마든지당신이주는봉급대로일을하리다〉라고프롤레타리아는절망적으로소유자에게외친다. 〈네수고는이제필요없어〉라고소유자는창끝과총신을내보이면서답한다. 〈그러면집세라도깎아주소. 먹고살려면수입이있어야합니다. 일거리가없는데어떻게당신에게집세를내겠소?〉라고하소연한다. 그러면 〈그건내알바아니야〉라는답이따른다. 이렇게이가련한프롤레타리아는격랑에휩쓸려버리거나행여소유의나라에들어서려하면소유자들이그를향해방아쇠를당긴다.

우리는지금까지유심론자의말을들었다. 이제유물론자의말을, 그리고다음에절충론자의말을들어보자. 이렇게철학계를일주하고나서우리는법학쪽으로넘어갈것이다.

데스튀트드트라시에따르면소유는천성에서나오는필연이다. 이러한필연에서나오는곤란한결과들을부정한다는것은어리석은일이리라. 그러나이결과들은일종의불가피한악이기는하지만원리자체를무효화하지는않는다. 따라서소유에서파생하는폐해들때문에소유자체를거역하는것은삶을불평하는것만큼이나슬기롭지못한일이다. 왜냐하면삶을부정하는데서오는가장확실한결과는곧죽음이기때문이다. 이거칠고냉혹한철학은적어도하나의솔직하고엄정한논리를약속한다. 이약속이채워질것인지살펴보자.

〈우리는소유의조건에대해아주진지하게따져보았다. ...마치이세상에서무엇이소유이며무엇이소유가아닌지를판정하는일이우리에게달린듯이말이다. ... 어떤철학자들과입법자들의말을들어보면, 사람들이마치주어진어떤순간에자발적으로그리고아무런동기도없이‘너의것’, ‘나의것’이라고말할생각이든것처럼보인다. 그러나‘너의것’, ‘나의것’은결코발명된것이아니다.〉

철학자여, 당신은너무나도현실론자이다. 〈너의것〉, 〈나의것〉이라는말은내가〈너의〉철학, 〈나의〉평등이라고말할때처럼반드시주체의확인을나타내는것은아니다. 〈너의〉철학이라는표현은철학하는너라는뜻이며, 〈나의〉평등이라는표현은평등을공언하는나라는뜻이다. 그러나〈너의것〉, 〈나의것〉이라는표현은대개의경우관계를지칭한다. 〈너의〉나라, 〈너의〉교구, 〈너의〉재단사, 〈너의〉우유배달인, 〈나의〉호텔방, 〈나의〉극장좌석, 〈나의〉동료, 국민방위군안에서의〈나의〉대대등등이다. 첫번째의미에서우리는〈나의〉노동, 〈나의〉재능을, 그리고때로는〈나의〉미덕을말할수있지만결코〈나의〉위대함, 〈나의〉위엄이라고말할수없다. 두번째의미에서만우리는〈나의〉발, 〈나의〉집, 〈나의〉포도밭, 〈나의〉자본금이라고말할수있다. 마지막행점원이〈나의〉금고라고말하는것처럼말이다. 한마디로말해서〈너의것〉과〈나의것〉은개인적인, 그러나평등한권리의표식이고표현이다. 우리의외부에있는사물들에적용될때, 이표현들은소유가아니라점유, 기능, 용익用益등을나타낸다.

신앙은일반적인가상假想이상의어떤것을증명한다고신학자들이주장하듯이말이다. 그러나우리는속지않는다. 모든사람의의견이라는것은어떤사실에대한인식, 어떤법률에대한막연한감정을입증하는데는소용이될수있으나, 사실그자체나법률그자체에대해서는우리에게아무것도가르쳐주지못한다. 인류의동의라는것은자연의지침일뿐, 키케로가말하듯이자연의법칙은아닌것이다. 진리는가상假想의밑에숨어있다. 신앙은그것을믿을수있을뿐이며, 오직성찰만이그것을인식할수있다. 물리현상이나천재의창작물들에관련된모든것에서인간정신의진보란바로이와같은것이다. 우리의의식과우리의행위가어찌이와다르겠는가?

제 4 절노동에대하여. 노동은그자체로는자연의사물들에대하여어떠한전유능력이가질수없다.

우리는정치경제학과법학자체의금언들에의해서, 달리말하자면소유가한층그럴싸하게반대의근거로내세울수있는모든논거들로써아래의사실들을논증할것이다.

1. 노동은그자체로는자연물들에대하여어떠한전유능력이갖지못한다.
2. 그러나노동의이러한능력을인정해줌으로써사람들은노동의유형, 생산물의회소성, 생산능력의불균등여부에관계없이소유의평등으로인도된다.
3. 정의의질서안에서는노동은소유를〈파괴한다〉.

우리에게반박하는이들을분떠서그리고우리의통행로에가시나덤불을남기지않기위해서, 가능한한가장높은차원에서문제를제기하기로하자.

샤를콩트씨는『소유론』에서〈국민 nation 으로서의프랑스는자신의고유한영토를가진다〉라고말한다.

프랑스는단한명의사람과마찬가지로자신이경작하는땅을점유하나, 그땅의소유자는아니다. 이는개인들사이에서그러한것처럼국민들사이에서도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은용익권자요, 노동하는자이므로이들에게땅에대한지배권을부여하는것은언어도단이다. 사용할권리라든가남용할권리가개인에게속하지않은것처럼국민에게도속하지않는다. 그리하여언젠가땅을남용하는일을막기위한전쟁이, 곧성전聖戰이되는날이올것이다.

이리하여, 소유가어떻게형성되는가를규명하려고국민이소유자라는가정에서출발한콩트씨는이른바〈부당전제不當前提〉의궤변에빠지고만다. 이순간부터그의모든논거는붕괴된다.

만일어떤독자가땅에대한국민의소유권에이의를제기하는것은지나친억측이라고생각한다면, 나는국민적소유라는이허구의권리로부터시대를막론하고

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다 (Bene sperandum de hominibus, ac propterea non putandum eos hoc esse animo ut, rei caducae causa, hominem alterum velint in perpetuo peccato versari, quod evitari soepe non poterit sine tali derelictione).》오, 하느님! 내가 바로 그자이다. 설령 100 만명의 소유자들이 심판대에서 타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이 세상의 부가운데 내게서 빼앗아 간 몫에 대해 그들의 양심을 고발한다. 그로티우스는 이유력한 사유事由에 다른 하나를 덧붙인다. 그것은 소송을 걸어서 국민들의 평화를 교란시키고 내전의 불을 지피는 것보다는 논란이 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보상을 해주기만 한다면, 나는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부자들의 휴식과 안전과 위기가 무산자인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공공질서〉를 소유자의 안전과 마찬가지로 별로 개의치 않는다. 나는 노동하면서 살고자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싸우면서 죽을 것이다.

그 이론이 아무리 섬세하다 할지라도, 시효취득은 소유와 모순된다. 아니 차라리 시효취득과 소유는 하나의 원리에서 나온 두 가지 형태, 그러나 서로 상대방을 정하는 두 가지 형태이다. 이 두 가지를 화해시켰다고 자부한 것은 고대와 현대 법률학의 가장 큰 오류 중 하나이다. 사실 우리가 소유에서 각자에게 토지의 몫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소망만을 보고, 허유 (虛有, nue-propiété) 와 점유의 구별에서 부재자나 고아를 빗자기의 권리도 알지도 못하지도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안식처만을 본다면, 시효취득이라는 것에서는 부당한 요구나 침해를 물리치거나 점유자의 주에 의해 초래된 부를 끝내는 수단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류의 정의의 이 다양한 형태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본능을 구출하려 나선 이성적 자발적 노력을 인정한다. 우리는 모든 권리에 대한 이러한 유보 보장치 속에서 평등의 감정과 평등화를 향한 부단한 추세를 본다. 그리고 깊이 성찰하고 그 진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학설에 대한 확증을 얻을 수 있다. 조건 의 평등과 보편적 협동이 더 빨리 실현되지 않은 것은 입법자들의 기지와 재판관들의 거짓 지식이 일정 기간 동안 인민의 양식 良識을 가로막는 방해물 구실을 했고, 한 줄기 진리의 빛이 원시 사회들을 비추었는데도 족장들의 최초의 사색이 무지몽매만을 낳았기 때문이다.

최초의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최초의 욕구의 표현이었던 법률과 국가 조직의 희미한 윤곽이 마련된 후에, 법률가들의 사명은 입법에서 잘못 된 것을 고치고, 결함이 있는 것을 보충하며, 모순되어 보이는 것을 최선의 규정의 해일치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은 법률의 자구적 의미에 매달리고 주석자나 고전 주해자들의 판에 박은 역할에만 만족하였다. 그들은 틀림없이 허약하고 허구에 가까운 이성에서 나온 영감을 영원 불변의 진리인 양 받아들였다. 여론에 질질 끌려 다니고 경전의 숭배에 현혹된 나머지,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것 (quod ab omnibus, quod ubique, quod semper) 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 진리라는 원리를 항상 들고 나온다. 마치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자생적으로 나타난

우리저자님 (드트라시-웁킨이) 의 이론 전체가 이 가련한 애매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설령 내가 그것을 아주 명료한 텍스트로 입증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계약이라는 것이 있기 이전에 사람들은, 홉스 Hobbes 가 말하는 것처럼, ‘전쟁’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립’ 상태에 있었다. 이상 상태에서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정당한 것, 부당한 것이 없었다. 한 사람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아무 상관 없었다. 모두가 저마다 욕구만큼의 권리를, 그리고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없이 욕구를 충족시킬 의무를 느낀다.〉

이 체계를 받아들여야. 그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튼 데스튀트 드트라시의 의도는 평등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가정에 따르면 인간은 고립 상태에 있는 한 서로에게 아무것도 빚지고 있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욕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충족시킬 권리를, 그 결과 자신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자연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론은 개인들 사이에서의 부의 가장 커다란 불평등이다. 따라서 조건의 불평등은 여기서 고립과 야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이는 말하자면 정확히 루소 Rousseau 의 체계와 정반대인 것이다. 계속해보자.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계약이 맺어질 때 여야 비로소 이 권리들과 의무에 계약이 가해지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에만 정의와 부정의가, 즉 그때까지는 필연적으로 평등했던 갑의 권리와 을의 권리 사이의 균형이 탄생하는 것이다.〉

〈권리는 평등했었다〉라고 그는 말하는가. 이 말은 사실 누구나 타인의 욕구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가 있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달리 말하자면 누구나 평등하게 서로를 해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그리고 간계와 무력이 외에는 다른 권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사람들은 전쟁과 약탈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강탈과 횡령에 의해서 서로를 해친다. 그런데 사람들이 〈암묵적인 또는 명시적인 계약들〉을 맺기 시작하고 일종의 균형을 수립했던 것은 바로 무력과 간계를 사용하는 이 평등한 권리를, 즉 서로를 해칠 수 있는 이 평등한 권리 - 이야말로 부의 불평등과 약의 유일한 원천이다 - 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이 계약들과 이 균형은 모두에게 행복의 평등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모순의 법칙에 따르면, 고립이 불평등을 낳는다면, 사회는 필연적 결과로 평등을 낳을 것이다. 사회에서의 균형이란 강자와 약자의 평준화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서로 평등하지 않은 한, 이들은 서로에게 이방인이고 어떠한 결합도 이루지 못한 채적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의 불평등이 필요악이라면, 이는 고립 상태에서 그러하다. 왜냐하면 사회와 불평등은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사회를 만들게 되어 있다면, 인간은 평등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준엄한 결론은 결코 물리칠 수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어쩌서 균형이 확립된 이후에도 줄곧 불평등이 증대되는가? 정의의 지배라는 것이 어쩌서 늘 고립의 지배에 불과한가? 데스튀트 드트라시는 이에 대해 뭐라고 답하는가?

〈‘욕구’와 ‘수단’, ‘권리’와 ‘의무’, 이 모든 것은 의지력에서 유래한다. 인간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욕구와 수단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고 ‘점유하는 것’이다. 그것들 모두가 그토록 다양한 소유물이다. 가장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이들 자체가 우리에게 속하는 사물들인 것이다.〉

일반화해서 표현된 말이라고 치더라도 이는 아주 부끄럽고 애매한 주장이다. **propriété** 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는다. ① 그것은 사물을 사물답게 하는 어떤 성질, 그 사물만의 고유하고 다른 것과 구별되는 어떤 특성을 가리킨다. 삼각형의 속성들 **propriétés**, 수의 속성들, 자석의 속성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② 그것은 지력이 있고 자유로운 존재가 어떤 사물에 대해 행사하는 지배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법학자들이 사용하는 용례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철은 자석의 **propriété**(속성) 을 갖고 있다〉라는 구절에서 쓰이는 **propriété** 라는 단어는 〈나는 자석에 대한 **propriété**(소유) 를 갖고 있다〉라는 구절에서 쓰이는 **propriété** 라는 단어와 동일한 관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불쌍한 나에게, 너는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유 **propriété** 를 〈가지고 있다〉라거나, 너를 억누르는 고통이나 네가 노천에서 잠을 잘 권한역시 소유물 **propriétés** 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며 물인정 한 정도가 아니라 우롱에 가까울 것이다.

〈소유의 관념은 인격의 관념에만 기반을 둔 것이다. 소유의 관념이 탄생하자마자,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인격이라는 관념의 전체성 안에서 자라난다. 한 개인이 자신의 ‘자아 moi’를, 즉 자신의 인신 및 향유하고 고뇌하고 활동할 자신의 능력을 깨닫자마자, 그는 필연적으로 ‘자아’야말로 그가 움직이는 신체들 즉 기관, 힘, 기능 따위의 배타적인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인위적인 소유, 협약에 따른 소유가 존재하므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소유도 존재해야 할 것이다. 인위 속에는, 자연 속에 그 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의 선의와 추론은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인간은 **propriété** 를 가진다. 즉 이용어의 첫 번째 의미에서 인간은 속성을 가진다. 인간은 그것에 대한 **propriété** 를 가진다. 즉 이용어의 두 번째 의미에서 인간은 지배력을 가진다. 따라서 인간은 소유자 **propriétaire** 라고 하는 속성 **propriété** 을 소유 **propriété** 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위 있는 데스튀트드트라시만을 염두에 둔다면, 내가 여기서 어찌 이와 같은 엉터리 말에 낚을 불하겠는가! 그러나 사회 및 언어의 기원에 관한 이러한 유치한 혼동은, 최초의 관념들 및 최초의 언어들과 더불어 형이상학과 변증법이 탄생했을 때, 누구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이었다. 인간이 〈나의 것〉이라고 부른 모든 것은 그의 정신 속에서 그의 인신과 동일시되었다.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부로, 자기 자신의 일부분으로, 자기 육체의 한 조각으로, 자기 영혼의 한 기능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사물을 점유한다는 것은 육체와 정신의 재능에 대한 소유와 동일시되었고, 바로 이것인 비유에도 대를 두고 소유권이, 즉 데스튀트

그러나 모든 소유가 다 필연적으로 시효취득으로부터, 달리 말해서 라틴인들이 말하는 〈유스카피온 **usucapion**〉, 즉 지속적인 점유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나는 우선 다음과 같이 묻는다. 어떻게 점유가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소유로 될 수 있는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점유를 지속하라. 몇 해든 몇 세기든 쌓아가라. 그러나 당신은 결코 시간 지속에 의해서 소유권을 소유자로 변형시킬 수는 없다. 시간 지속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창출하지도, 바꾸지도, 변형시키지도 못한다. 오랫동안 자기 권리를 누려 온 선의의 점유자는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에게 모든 것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민법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법은 이미 준수되고 있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며, 이런 식으로 적용된 시효취득은 단순히 20 년, 30 년, 또는 100 년 전에 시작도니 점유가 선점자에게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가 점유자를 소유자로 바꾼다고 법률이 선언한다면, 이는 권리가 그것을 낳은 원인이 없이 창출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법률은 아무런 동기도 없이 주체의 자격을 바꾸고, 논쟁점이 아닌 문제에 대해 규정을 내리고, 자신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공공 질서와 시민의 안전은 점유물의 보장만을 요구할 뿐이다. 그런데 법률은 왜 소유권을 창출했는가? 시효취득이란 미래에 대한 보험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법률은 왜 시효취득을 특권의 원리로 만들었는가?

이렇게 하여, 시효취득의 기원은 소유 자체의 기원과 동일하다. 그리고 소유가 평등의 공식적인 조건 아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었듯이, 시효취득 역시 이 귀중한 평등을 보존해야 할 필요가 취한 수많은 형식들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결코 헛된 유추이거나 맹목적으로 취한 결론이 아니다. 그 증거는 모든 법전에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정의와 보존의 본능에 의해서 시효취득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의도가 점유자의 이익을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통상이나 전쟁에 의해서 또는 포로 신세라서 가족이나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어떤 점유 행위도 행사할 수 없게 된 부재不在 시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 시효취득이 법률에도 도입된 바로 그 시기에 사람들은 소유가의 향만으로 (**undo animo**) 보존된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만일 시효취득이 의향만으로도 보존되고 소유자의 행위에 의해서만 상실되는 것이라면, 시효취득의 유용성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법률은, 의향만으로도 무엇인가 보존하고 있는 소유자가 자신이 시효취득을 적용하도록 허용한 것을 포기할 의사를 가졌다고 추정하는 것인가? 얼마의 시간적 경과가 이러한 약속을 허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떤 권리로 법률은 소유자의 재산을 박탈함으로써 그의 부재를 벌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우리는 조금 전에 시효취득과 소유는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들은 서로 상대방을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난점을느낀 그로티우스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여기에 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인용해볼 가치가 있다. 〈하찮은 일로 점유자의 죄를 영구화하려는, 전혀 그리스도교인답지 않은 영혼을 지닌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이는 점유자

나는앞에서토지의전유專有는불법이며, 그렇지않다고가정하면그결과는단하나즉소유의평등이될것이라고논증했다. 그러고나서나는보편적동의가소유를지지하는어떤것도입증하지못하며, 설사무엇인가입증한다면그것은마찬가지로소유의평등이리라는것을보여주었다. 이제나에게는만일시효취득이인정될수있다면그것은역시소유의평등을전제로한다는사실을논증하는일이남아있다.

이러한논증은길지도어렵지도않다. 시효취득을받아들이는동기를상상해보는것만으로충분하다.

뒤노드 (Dunod, 1678~1752, 프랑스의법률가, 역사가. 『시효론』을썼다-옮긴이) 는말한다. <시효취득은, 자신의뜻에반하여또는자신도모르는사이에부를빼앗기거나다른사람에게손해를끼치면서부를모으는일을금지하고자하는자연의형평성에어긋나는것처럼보일수있다. 그러나만약시효취득이없다면선의의재산취득자가오랫동안점유한다음에도그것을빼앗기는일이자주일어날것이다. 또정당한소유자로부터무엇이든취득한자나또는합법적인방법으로채무에서해방된자도자신의자격을잃고다시재산을빼앗기거나종속될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일정한기간을정해서, 그기간이지난후에는점유자들을불안하게한다거나아주오랫동안방기해온권리등등을다시찾는일은공공의이익을위해허용하지않게된것이다. 이리하여, 민법은그것이시효취득을규정하는방식에따라서자연권을완성하고만민법을보충할따름이다. 시효취득이란개개인의권리에반드시우선하는공공의이익에도대를둔것이므로 (bono publico usucapio introducta est), 법률이요구하는조건들을갖추고있는한호의적으로취급되어야만한다.>

톨리에『민법론 Droit civil』에서다음과같이말한다. <소유의문제를너무오랫동안불확실한상태로방치해둔다면가정의평화와상거래의안전을해칠것이기때문에, 법률은일정한기간을설정하고, 그것이지나면소유권회복의청구를받아들이기를거부하고점유를소유에합치시킴으로써점유의오랜특전을유지하게해주었다.>

카시오도루스 (F. M. A. Cassiodorus, 480~575, 로마말기의작가. 법률학자-옮긴이) 는이렇게말했다. <소유란궤변의폭풍우와탐욕의분화구의한가운데에확고하게남아있는유일한항구이다 (Hic unus inter humanas procillas portus, quem si homines fervida voluntate praeterierint; in undosis semper jurgils errabunt)> .

이렇게, 이저자들에게따르면시효취득은공공질서의한수단이고, 어떤경우에는원초적인취득방법의회복이며, 달리해결방안이없는분규들을종결해야할필요성에서그존재근거를찾을수있는, 민법상의허구이다. 왜냐하면그로티우스가말한것처럼, 시간은그자체로는아무런유효한효과도갖지못하기때문이다. 민사는시간안에서이루어지나, 어떤것도시간에의해서이루어지지않는다. 시효취득, 즉시간의경과에의해무엇인가취득할권리란, 따라서관례적으로수용되는법률의허구이다.

드트라시가그토록우아하게말한 <기예技藝에의한자연의모방> 이자리잡게된것이다.

그러나이섬세한공론가가어째서인간은자기재능의소유자조차도아니라는사실을깨닫지못했는가? 인간은힘과덕성과능력을가지고있다. 이힘과덕성과능력은인간이살고개달고사랑하도록자연이부여해준것이다. 인간은이것들에대한절대적인지배권을갖고있지않으며단지용익권자用益權者에불과하다. 그리고인간은이용익권을자연의규칙에순종하면서만행사할수있다. 만일인간이자신의재능의소유자라면, 굶주림과추위에서달리지않을것이다. 인간은원없이먹고, 불길속을걸어다닐것이며, 산을들어올리고, 1 분안에수백리를갈것이며, 치료받지않아도의지의힘만으로낫고, 불사의존재가될것이다. 만일인간이나는무엇인가알고싶다고말한다면그는알게될것이고, 사랑하고있다고말하면사랑을누릴것이다. 뭐라고! 인간은결코자기자신의주인이아닐진대, 하물며자기소유도아닌것들의주인이되고자하다니! 인간은자연의산물들을이용할수있다. 그는그것들을이용해야만살아갈수있으니말이다. 그러나인간은그것들에대한소유자로서의특권은가질수없다. 소유자라는칭호는단지비유에의해서그에게불여진것일뿐이니말이다.

요약해보자. 한편에는자연과기예에서나오는외적인 <재산들> 이, 다른한편에는인간의 <힘> 과 <재능들> 이있다. 그런데데스튀트드트라시는이두가지모두를 <소유물> 이라고부르면서하나의공통된표현으로뭉뚱그린다. 그가소유권을마치불변의법칙인양확립하고자하는것은바로이러한모호함을이용해서이다. 그러나모든소유물들가운데에는기억, 상상력, 힘, 아름다움등과같이 <생동적인> 것이있는반면, 발, 물, 숲등과같이 <획득적인> 것이있다. 자연상태나고립상태에서는가장수완이좋고가장힘이센사람들, 즉생득적소유의측면에서가장우월한이들이획득적인소유물을배타적으로취득할수있는기회를가장많이갖게마련이다. 그런데인간이균형과정의를발명하고암묵적이든공식적이든여러계약을맺는것은바로이러한침탈행위와그로부터연유하는전쟁을미연에막기위해서이다. 이는말하자면생득적소유물들의불평등을가능한범위에서획득적소유물들의평등으로치유하는일이다. 분배가평등하지않는한, 공동분배자들은서로적으로남으며, 계약은다시시작될것이다. 이렇게, 한편에는고립과불평등과적대감과전쟁의악탈과학살이, 다른한편에는사회와평등과우애와평화와사랑이있다. 어느한편을선택하자.

『정치경제의철학』 의저자인조제프뒤탕 (J. Dutens, 1765~1848, 중농주의경제학의옹호자-옮긴이) 씨는물리학자요기술자이자기하학자이자만, 법학자로서는이류급이고, 철학자로서는삼류급인물이다. 자신의책속에서그는소유를옹호하기위해서총대를매고나서야한다고믿었다. 그는형이상학은데스튀트드트라시에게서빌려온듯하다. 그는스가나렐 (Sganarelle, 몰리에르의희극에나오는작중인물-옮긴이) 을연상시키는어조로, 다음과같이소유를정의하는것

으로 시작한다. 〈소유란 어떤 물건이 고유하게 어떤 사람에게 속하는 권리이다.〉 이는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소유란 소유의 권리라는 뜻이다.

의지, 자유, 이성 따위에 대해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그리고 〈자연의 빛물 질적인〉 소유물과 〈자연의 물질적인〉 소유물을 구별하고 (이 구별은 데스튀트드트라시의 생득적 소유물과 획득적 소유물의 구분을 연상시킨다) 나서, 조제프 뒤탕씨는 다음 두 가지의 일반 명제로 결론을 맺는다. ① 소유는 인간 모두에게 있어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② 소유물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자연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이 두 명제는 다음과 같은 더 단순한 명제로 바뀐다. 즉 모든 인간은 불평등한 소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그는 시스몽디 (Sismondi, 1773~1842, 스위스의 경제학자, 『정치경제학 연구』를 썼다-옮긴이) 씨가 토지의 소유는 법이나 협약 외에는 결코 다른 근거를 갖지 않는다고 썼다고 비난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소유에 대한 인간의 존중심에 대해 언급하면서, 〈양식을 지닌 인민은 사회와 소유자들 사이에 체결된 ‘원초적 계약’의 성격을 알고 있다〉 고 말한다.

그는 소유를 점유와, 공동체를 평등과, 정의로운 것을 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가능한 것과 혼동한다. 그는 어떤 때는 이 다른 관념들을 서로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어떤 때는 그것들을 구별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그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를 논박하는 것이 몇 백 배 더 쉬울 정도이다. 처음에는 『정치경제의 철학』이라는 그 책의 제목에 끌렸지만, 나는 저자의 모호한 장광 설 속에서 아주 진부한 관념만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것이 내가 이 책에 대해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는 이유이다.

쿠쟁씨는 자신의 『도덕 철학』 (15 쪽) 에서 우리에게 모든 도덕, 법률, 권리는 〈자유를 기위해서는 자유를 계념이라〉 는 계명 속에 주어져 있다고 가르친다. 브라보! 선생, 나도 될 수 만 있다면 자유를 고 싶 나 이다. 그는 계속한다.

〈우리의 원리는 참되고 선하며 사회적이다. 거기에서 모든 결론을 끌어내는 일을 망설이지 말자.〉

〈① 만일 인성이 신성한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전반적인 성품에서, 특히 인간의 내적 행위에서, 인간의 감정과 사고와 의지적 결단에서 그러하다. 여기에서 철학, 종교, 예술, 산업, 상업에 대한 존중이 그리고 자유의 모든 산물들에 대한 존중이 나온다. 나는 단순히 관용이 아니라 존중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권리를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철학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바이다.

〈② 나의 자유는 신성한 것으로서 외적인 행위를 위해서는 육체라 불리는 도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육체는 신성함을 지니며 그 자체 신성 불가침한 것이다. 여기서 개인적 자유의 원리가 나온다.〉

〈③ 나의 자유는 외적인 행위를 위해서는 어떤 무대나 어떤 재료가, 달리 말하자면 어떤 재산이나 어떤 사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물 또는 재산은 마땅히 나의 인성처럼 불가침한 것이다. 예컨대, 나의 자유의 외적인 발현을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도구가 되어 버린 어떤 물건을 내가 획득해서, 이 물건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

관한〉 것이고, 〈공적이며〉, 〈이의제기〉도 〈중단〉도 없었다는 것이 사실 일지라도, 그 점유가 〈정당한 자격〉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왜냐 하면 점유가 내세우는 유일한 자격인 선점과 노동은 피고인 소유자에게와 마찬가지로 원고인 무산자에게도 증거 능력을 갖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로 이 점유는 법률상의 오류에도 대를 두고 있으며 또 법률상의 오류는 시효 취득을 방해하기 때문에, 〈선의의 bonne foi〉를 상실한다 [파울루스 (Paulus, 로마의 법학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에 참여-옮긴이) 의 의견에 따르면, 법적 용익권에 관한 한, 법률상의 오류는 결코 소유자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Nunquam in usucapionibus juris error possessori prodest)]. 이 경우 법률상의 오류는 보유자가 용익권자의 자격으로 점유할 뿐인데도 소유자의 자격으로 점유하거나, 그 누구도 양도하거나 매각할 권리가 없는 물건을 보유자가 구입할 경우에 성립한다.

시효 취득이 소유를 옹호하기 위해 원용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 (가장 정교한 법리학에서 끌어낸 이유) 는 부동산의 점유권이 인류의 가장 처참했던 시기에도 결코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보편적 권리의 일부를 이룬다는 사실, 그리고 무산자로서는 그들이 전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향상이 권리의 일부를 행사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증여하고, 교환하고, 빌려주고, 임대하고, 매각하고, 변형하거나 파손할 보편적 권리를 지닌 이는 비록 그가 모든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빌려준다는 단 한 가지 행위만으로도 이 권리 전체를 보유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재산의 평등〉, 〈권리의 평등〉, 〈자유〉, 〈의지〉, 법인격 등은 한 가지 동일한 사물, 즉 〈보존과 발전의 권리〉의 여러 가지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이는 곧 생존권인 것이며, 이 삶의 권리에 맞서서 시효 취득은 당사자가 죽은 이후에만 개시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효 취득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말하자면, 소유권 일반은 10 년, 20 년, 100 년, 1000 년, 10 만년에 걸친 점유로도 취득될 수 없으며, 소유권을 이해하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 권리는 결코 시효 취득에 의해 취득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법률의 원리나 이성의 격률이라 아니라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사실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점유는 다른 사람의 점유에 맞서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자기 자신에 맞서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듯이, 이성 은 항상 스스로를 정정하고 고칠 능력이 있으며 과거의 잘못이 미래까지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성 은 영원하고 항상 동일하다. 그러나 무지한 이성의 소산인 소유 제도 는 더 잘 계명된 이성 에 의해 폐기될 수 있으며, 따라서 소유는 시효 취득에 의해서 확립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아주 확실하고 또 진실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의 문제에 관한 법 해석의 오류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금언은 바로 이러한 토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시효 취득에 대해서 이 이상 더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방법에 충실하지 못한 셈이며 독자는 나의 협잡꾼 기질과 거짓말을 비난할 권리가 있을 것이다.

지지않은진리전체에어긋나는시효취득, 현상유지철학의개요화모든세계의보수론자들이상정한것이바로이것이다.

개신교가세상에나타났을때, 폭력과방탕과이기심을옹호하기위해서효취득이존재했다. 갈릴레이, 데카르트, 파스칼과그사도들이철학과과학들을혁신했을때, 아리스토텔레스의철학을옹호하기위해서효취득이존재했다. 89년(1789년)의프랑스대혁명-옴킨이) 우리의조상들이자유와평등을요구했을때, 압제와특권을옹호하기위해서효취득이존재했다. <소유자는항상존재해왔고또항상존재할것이다.> 사회적불평등을편드는박사님들은궁지에빠진이기심의최후의발현인이심원한격언에의탁해서반대파들의공세를막을수있을것으로생각하며, 관념들도재산처럼시효취득을가진다고믿어의심치않는다.

오늘날우리는과학의진보에의해게도되고, 과학의가장빛나는성공에이끌려우리자신의견해를돌아켜본다. 우리는, 수많은실험을거치면서가장심원한분석의도움을받지않아지금까지알려지지않은새로운원리와법칙들을찾아내는자연의관찰자들을열정과갈채로맞이한다. 우리는우리보다유능한이들이아주옛날에살았다는이유로, 그리고그들이같은현상을알아차리지도같은유추를이해하지도못했다는구실로, 어떤사실이나관념을거부하는일이없도록스스로조심한다. 그런데정치와철학에서는왜마찬가지의조심성을보여주지않는가? 모든것이다말해졌다고, 즉지성과도덕의사안에서는모든것이다밝혀졌다고확언하려는이우스꽝스러운집착은어디에서나오는가? <태양아래새로운것은없다>라는잠언은왜형이상학의연구에만적용되는가?

우리는여전히관찰과체계적인방법을통해서철학을하는것이아니라상상력을가지고철학을하고있다고인정하지않을수없다. 추론과사실대신어디에서나공상과자의를심판자로삼았기때문에, 오늘날까지도사기꾼과철학자를, 현자와협잡꾼을구별할수없는것이다. 솔로몬에서피타고라스에이르기까지사회적법칙이나심리적법칙을파악하는대상상력이너무나많이동원되었다. 온갖체계가다제시되었다. 이점에서보면 <모든것이다말해졌다>라는말이가능할지도모른다. 그러나 <모든것이아직도밝혀지지않고있다>라는말역시진실이다. 정치(여기서철학의한분야인정치에대해서만예를들어보자)의경우, 사람들은누구나자신의열정과이해관계에따라관여하며정신은의지가요구하는대로따른다. 아무런과학도없으며, 아무런확실성의단초도없다. 이리하여전면적인무지는전면적인압제를낳는다. 그리고사상의자유가현장에명기되어있지만, 사상의예종이 <다수자의우월성>이라는이름아래현장에의해선포된다.

법전이말하는민사상의시효취득에만한정하기위하여, 나는소유자들이내세우는이비공소권非公訴權의사유에대한논의는건드리지않을것이다. 이는너무나도지루하고허식적인일이다. 시효취득에의해소멸될수없는권리가있다는것은누구나알고있다. 그리고시간의경과에의해취득할수있는사물들에관한한시효취득은그중하나만이라도빠질경우시효취득자체가무효화되는일정한조건들을요구한다는사실을모르는사람은없다. 예컨대, 소유자의점유가 <민사에

으므로나의것이라고말한다고하자. 그때부터나는그물건을정당하게점유하게된다. 따라서점유의정당성은두가지조건에의존한다. 첫째, 나는자유롭다는조건에서만점유한다. 행동의자유를아아가면, 당신은내게서노동의원리를파괴하는것이다. 따라서노동에의해서만나는재산이나사물을나의것으로가질수있다. 내가그것을점유하는것은내가그것을나의일부로만들어서이다. 따라서행위의자유가소유권의원천이된다. 그러나이것만으로는점유를정당화하기에충분하지않다. 모든인간은자유롭고누구나노동에의해재산을자기것으로가질수있다. 이것은인간은누구나소유에대한권리를갖는다는것을의미하는가? 전혀그렇지않다. 정당하게점유하기위해서는자유로운존재로서노동하고생산할수있는것만으로는불충분하고, 재산을남보다먼저차지하는것이필요하다. 요컨대, 노동과생산이소유권의원리라면, 가장먼저선점한다는사실이그필수불가결한조건인것이다.>

<④ 나는정당하게점유한다. 따라서나는나의재산을내뜻대로사용할권리가있다. 따라서나는그재산을양도하거나변형시킬권리가있다. 왜냐하면자유행위가일단나의양도행위를허용한이상, 나의양도행위는내가살아있을때나마찬가지로내가죽은뒤에도신성한것으로남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쿠쟁씨에따르면, 소유자가되기위해서는선점이나노동에의해서점유를해야한다는것이다. 나는여기에이러한행위가적시에이어져야만한다고덧붙이고싶다. 이유는명확하다. 만일제일먼저온자가모든것을다선점한다면, 제일나중에온자는무엇을차지하겠는가? 외적행위를위한수단을가지고있다고할지라도그자료들을얻지못한다면, 그러한자유들은어떻게될것인가? 서로가서로를집어삼킬수밖에없지않겠는가? 이는참으로끔찍스러운극한상황이다. 위대한천재성은작은것들을무시하기때문에, 이신중한철학자께서도도무지예견하지못한결론이바로이러한것이다.

쿠쟁씨가선점과노동이각각소유권을창출할수있는능력이있다는점을부정하고는소유권을그두가지가마치혼인관계처럼결합한데서나오는것으로간주한다는사실을또한지적해두자. 쿠쟁씨에게자주나타나는, 그러나그누구보다도쿠쟁씨가조심해야만하는절충주의적곡예술가운데하나가바로여기에서발견된다. 사고의혼동과견해의변덕을넘어서진실을발견할수있게해주는유일한수단인분석, 비교, 소거消去, 환원등의방법을취하는대신, 그는모든체계들을하나로뭉뚱그린다음에이것은옳고저것은그르다는식으로선언을한다. 그리고그는 <자, 진리가바로이것이다>라고말한다.

그러나내가이미밝혔듯이, 나는여기서논박을하려는것이아니다. 이와는반대로나는, 소유를옹호하기위해고안해낸모든가설들속에서소유에역행하는평등의원리를찾아낼것이다. 앞에서말한것처럼, 나의모든논증은다음의한가지로귀결할것이다. 즉모든추론의근저에는이불가피한대전제, 즉평등이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소유의원리가경제학, 법학, 통치론등을그모든요소에서훼손

시키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점을 언젠가 내가 보여주길 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만약 인간의 자유가 신성한 것이라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자격으로 신성하다는 점, 인간의 자유가 외적인 행위를 위해서 즉 생활을 위해서 소유를 필요로 한다면, 이러한 물질의 전유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라는 점, 만일 내가 이러한 전유의 권리에서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나 역시 타인의 전유권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결론적으로 설혹 무한의 영역에서는 자유의 전유하는 힘이 그 자체 외에는 한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유한의 영역에서는 바로 이 힘이 자유들의 수효와 그것들이 차지하는 공간과의 수학적 관계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점 등은 쿠쟁씨의 견해에 따른다면 진실이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만일 한 사람의 자유가, 그와 동시대인인 어떤 다른 사람의 자유가 자신과 같은 몫의 재료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한 자유는 더욱 미래의 어떤이의 자유로부터도 이러한 능력을 앗아갈 수 없는 일이나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개체는 사라져도 보편은 존속하며, 영원한 전체의 법칙은 그 현상적인 일부분의 변동에 좌우되지 않으니 말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부여받은 한 사람이 태어날 때 마다 다른 사람들은 (상호의 무에 의해서) 서로 조밀하게 군집해야 하고, 만일 그 신참자가 결국 상속인이 된다면 그의 상속권이란 (전임자와 자기 자신의) 누적된 권리가 아니라 선택의 권리일 뿐이라고 결론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쿠쟁씨의 설명을 그 문체까지 흉내 내며 따라왔는데, 사실 나는 이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렇게 단순한 것들을 말하기 위해 그렇게 도거창한 용어들과 그렇게 도요란한 구절들이 필요할 말인가? 인간은 살기 위해 노동한다. 따라서 인간은 생산의 도구와 재료들을 필요로 한다. 이 생산의 필요에서 인간의 권리가 나온다. 즉 권리는 인간이 그와 유사한 협정을 맺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보장받는 것이다. 10 만명 가량의 사람들이 프랑스라는 커다란, 그러나 주민이 모자라는 지역에 자리잡는다. 이때 토지 자본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권리는 10 만분의 1 에 해당한다. 점유자의 수가 늘면 그에 반비례해서 각자의 몫은 줄어든다. 따라서 주민의 수가 3,400 만에 달한다면, 각자의 권리는 3,400 만분의 1 이 될 것이다. 자, 이제 경찰, 정부, 노동, 교환, 상속 따위를 배열하자. 그러면 노동수단은 늘 평등할 것이고, 각자는 자유로울 것이며, 사회는 완벽해질 것이다.

소유의 옹호자들 중에서 쿠쟁씨는 가장 멀리 나아갔다. 경제학자들에 맞서서 그는 선점 이전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만 노동이 소유권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고법학자들에 맞서서 그는 민법은 자연법을 규정하고 적용할 수는 있으나 자연법을 창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유권은 소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입증된다. 이점에 있어서 민법은 단지 선언적인 가치를 지닐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는 사실의 정당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답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일일 뿐이다. 무릇 권리란 스스로 정당화되거나 아니면 그에 앞선 어떤 권리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소유도 이러한 양자택일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쟁씨는 소유의 토대를 그 가진

문장의 구성을 보면 그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을 듯하다. 따라서 우리는 저자가 말하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유권은 원천적으로 의지의 발현에서 나오는 것이고, 땅의 비유동성으로 인해 소유권이 토지에 적용되었으며, 그리고 나서 보편적 동의에 의해서 이러한 적용이 재가 되었다고.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그들 상호간의 동의에 의해서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계약은 설령 그로티우스, 몽테스키외, 루소 등에 의해서 해설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전 인류의 날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거기엔 명기된 규약은 모두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인간은 이제 자유와 마찬가지로 노동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의 수단을 버리는 일이고 자연권에 관해 양보하고 인간의 품성을 박탈하는 일이니 말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 동의가 암묵적인 것이든 공식적인 것이든 존재했기를 바란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포기가 상호적이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사람들은 그대가 노동한 것을 얻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전유의 필수 조건인 평등에 다시 붙착하게 된다. 요컨대 사람들은 보편적 동의 즉 평등에 의해서 소유권을 정당화한 후에, 소유권에 의해서 조건들의 불평등을 정당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순환 논법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리라. 사실 상 사회 계약을 맺을 때 소유가 평등을 조건으로 한다면, 이 평등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때 계약은 파기되고 모든 소유는 강탈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모든 사람의 동의라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 3 절 시효 취득은 결코 소유를 낳을 수 없다.

소유권은 지상에 존재하는 악의 시초이며 인류가 탄생 이후 질질 끌고 다니는 범죄와 비참이라는 이 긴 쇠사슬의 첫 고리이다.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거짓말은 정신에 던져진 불길한 주술이며, 진리를 향한 인간의 진보를 저해하고 오류의 송배를 조장하기 위해 양심에 불어넣은 죽음의 말이다.

법전은 시효 취득을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획득되고 또 면제되는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를 관념 및 신념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시효 취득〉이라는 말을 그 대상이 무엇이건 낡은 미신들에 결부된 부단한 편애 - 어느 시대에나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고 현자를 순교자로 만드는데 격렬하고 피를 부르는 대립을 낳는 바로 그 편애 - 를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세상에 나타나자마자 온갖 낡은 편견들이 공모한 듯 한 기성의 견들의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지 않은 원리, 발견, 고결한 사상은 하나도 없다. 이성에서 어긋나는 시효 취득, 사실에서 어긋나는 시효 취득, 지금까지 밝혀

샤를콩트씨의추론은자신의논지와도어긋나는것이다. 그는말한다. <우리의생명을보존하기위해필요한사물들중에는무진장존재하며고갈되지않는것들이있다. 다른것들은소량만존재하며일정수의사람들의필요만을충족시킬뿐이다. 전자는‘공동의것’후자는‘개인의것’이라불린다.>

이것은결코정확한추론이아니다. 물, 공기, 빛은 <무진장> 이기때문이니라 <필수불가결> 하기때문에 <공동의> 사물인것이며, 그렇기때문에자연은이것들을거의무한정으로창조해서온갖횡령으로부터지켜냈던것이다. 마찬가지로토지는우리생명의보존에필수불가결한사물이며, 따라서공동의사물이고, 따라서전유될수없는것이다. 토지는다른요소들보다훨씬그양이적으므로, 토지의이용은특정인의이익을위해서가아니라모두의이익과안전을위해서규제되어야한다. 달리말하자면, 권리의평등은욕구의평등에의해정당성을가진다. 그런데만약사물이유한하다면, 권리의평등은점유의평등에의해실현될수밖에없다. 콩트씨의논지의근저에있는것은바로농지법류의사고방식이다. 이소유권의문제를어떤측면에서고찰하든깊이파고들기만하면공평등에이르게된다. 나는전유될수있는사물과전유될수없는사물사이의구별에대해서더이상재론하지않겠다. 이문제에대해서경제학자들과법률학자들은서로누가더명청한가를겨루고있다. 민법전은소유에대한정의를내린후, 전유가능한사물들과그렇지않은사물들에대해서는침묵을지키고있으며, <상거래의대상이되는> 물건들에대해말할때에도어떤규정이나정의를부여하지않는다. 그러나밝힌것이전혀없지는않다. 다음과같은변변찮은격률이었다. 왕은모든권리와관계하며, 개개인은특수한일과관계한다. 모든권능은왕에게속하고소유권은개인들에게속한다. 왕은모든지배권을가지며개개인들은소유권을가진다 (Ad reges potestas omnium pertinet, ad singulos proprietates. Omnia rex imperio possidet, singula domino). 개인적소유와대립하는사회적종주권! 이것은평등의예언, 공화제의신탁神託을말하고있는것은아닐까? 사례는아주많이나타났다. 옛날에교회의재산, 왕의영지, 귀족의봉토는양도불가능했으며시효취득에의해소멸되지않았다. 제헌의회 Constituante 가이특권을제거해버릴것이아니라시민모두에게확대했다면, 제헌의회가자유와마찬가지로노동권도결코상실할수없는것이라고선언했다면, 바로그때부터혁명은성취되었을것이고우리는그것을마무리만하면되었을것이다.

제 2 절보편적동의를소유를정당화하지않는다.

앞에서인용한세문의장에는저자가소유권을땅의비유동성에서찾고있는지아니면모든사람이이전유에동의했다는사실에서찾고있는지가명확하지않다.

성의 <신성함> 이라고부른것속에서아니면의지가사물을자신의일부로만드는행위속에서찾으려했던것이다. <일단인간의손에닿으면, 사물들은자신을변화시키고인격화시키는어떤특성을인간에게서받아들인다> 고쿠쟁씨의제자들중하나가말했다. 나로서는이같은마술을조금도믿지않으며, 인간의의지보다덜신성한그어떤것도알지못한다고박혀두는바이다. 그러나이론은비록심리학으로서나법학으로서나아주빈약한것이지만, 법의권위나노동만을토대로한이론들보다는훨씬철학적이고훨씬심오한어떤성격을띠고있다. 지금까지우리는우리가논하고있는이론이무엇에귀착되는지를, 즉어떻게평등 - 그이론이자신의온갖용어들을통하여표현한바가바로이것이다 - 에귀착하는지를살펴보았다.

그러나아마도철학은사물을너무높은데서바라보기때문에그만큼이나현실적이지못한듯하다. 사변의높은정점에서면인간들은너무나왜소해보여서형이상학자로서는인간들사이의차이점을식별하지못하는모양이다. 그리고조건의평등은송고한일반론의관점에서는참된금언들중하나이지만, 사회생활및거래의일상사에서그것을엄밀하게적용한다는것은우스꽝스럽고심지어위험한일일것이다. 물론사물을극단으로몰고가거나지나치게규정짓지말라고우리에게충고하는도덕군자나법률학자들의현명한절제력은본받을만하다. 그들이말한것처럼, 어떤논리랄지라도거기에서치명적인결론들을깎아내어그논리를완전히뒤집어엎는일이전혀불가능하지는않을터이니말이다. 민법상의모든정의는위험하다. 왜냐하면그것이파기될수없다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기때문이다 (Omnis definitio in jure civili periculosa est: parum est enim ut non subverti possit). 조건의평등. 소유자의귀에는끔찍스러운도그마요, 죽어가는가난한이의침상에서는위안을주는진실이요, 해부학자의메스아래서는소름끼치는현실인이조건의평등은정치적, 시민적, 산업적질서안에서는단지사람을우롱하는불가능성이자근사한미끼요악마의거짓말에불과하다.

독자들의의표를찌르는것이결코나의방침이아니다. 말과행동을둘러대는이들을나는주검만큼이나혐오한다. 이글의첫장에서부터나는나의사상과나의바람이무엇과관련된것인지를누구나알수있도록하기위해서아주간결하고단호하게적어나갔다. 이보다더진솔하고더대담하게쓰기는어려우리라고사람들은인정해줄것이다. 따라서철학자들의경탄할절제력과도덕학및정치학박사님들이그토록권장하는중용이라는것이, 사실원리없는과학의부끄러운특성이자변명의낙인에불과할날도멀지않다고확언한다고해서도가 지나치고는생각하지않는다. 기하학에서와마찬가지로법률과도덕에서도공리公理는절대적이고, 정의定議는확실한것이며, 가장극단적인결론도그것이엄밀하게연역된것이기만하면법칙이된다. 이얼마나가없는교만인가! 우리는우리의천성에대해아무것도알지못하고, 우리의천성을모순된사변들로가득채우며, 순진한무지속에서감히 다음과같이외친다. <진리는의심안에있다. 최선의정의는아무것도정의하지않는것이다.> 법학의이유감천만한불확실성이법학의대상자체에서오는것인지아니면우리의편견에서오는것인지를, 그리고사회적사실들을설명하기위해서는

마치코페르니쿠스가프톨레마이오스의체계를뒤집었듯이우리의가설을바꾸는 것으로충분한지아닌지를우리는언젠가알게될것이다.

그러나만약내가지금당장이법학자체가소유의영역을정당화하기위해서 끊임없이평등을논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면, 사람들은무엇이라고말할것인가? 사람들은이에대해무엇이라고답할것인가?

제 3 절소유의근거이자재가로서의민법에대하여

포티에 (R. Pothier, 1699~1772, 프랑스의법학자, 『점유권과소유권에 대하여』를썼다-옮긴이) 는소유권이왕권과마찬가지로신의권리에서나온것으로 믿는듯하다. 그는소유권의기원을신에게까지소급한다. <제우스로거슬러올라가서 (Ab Jove principium)> 라는식이다. 그는우선다음과같이말한다.

<신은우주및우주안의만물에대한최고의지배권을가진다 (Domini est terra et plenitudo ejus, orbis terrarum et universi qui habitant in eo). 신이땅과땅에서사는온갖피조물들을창조한것은인간을위해서이며, 신은자신에종속하는지배권을인간에게주셨다. ‘주의손으로만드신것을다스리게하시고, 만물을그발아래두셨으니’라고다윗은말한다. 신은자신이만든최초의우리조상들에게다음과같은말씀을은총으로남기셨다. ‘생육하고번성하며땅에충만하라.’>

이거창한서설을들다보면, 인류는하나의거대한가족과도같고형제다운결합 안에서살며존경할만한아버지의보호아래있다고누구인들믿지않겠는가? 그러나신이여! 형제들은서로싸우지않는가! 아비들은자식을저버리지않는가! 자식들은탕아가아닌가!

<신은인간에게땅을하사하셨다> -그런데어찌해서나는아무것도얻지못했는가? <신은자연을내발아래두셨다> -그런데나는내머리를돌장소도없구나! <번성하라> 고, 신은그의통역자포티에의입을빌어우리에게말씀하신다. 아! 현명한포티에여, 그일은말처럼그렇게쉬운일이다. 그러나포티에여, 새에게둥지를지을이끼를주어야할것아닌가.

<인류가번성함에따라인간들은땅과그땅에서사는많은것들을서로나누었다. 각자에게돌아온몫은이때부터배타적으로각자에게속하게되었다. 이것이소유권의기원이다.>

점유권이라고말하는것이낯지않은가. 사람들은공동체안에서살았다 (그공동체가적극적인것이든소극적인것이든그것은중요치않다). 그때는사적점유조차없었으므로, 소유란결코있을수없었다. 인구의증대는생필품을불리기위해서노동을점차로강화했으며, 사람들은노동하는자가자기노동의산물의유일한소

것은허용된다. 이러한모든금지는토지에대해서뿐만이아니라물과공기따위에도해당하는온갖종류의신성시된금기들이다. 프롤레타리아인우리모두는소유로부터파문당한다. 땅과물, 공기와불로부터우리들은유배되었도다 (Terra, et aqua, et acre, et igne interdicti sumus).

여러요소들 가운데가장견고한것을자기의것으로하기위해서는다른세가지들자기의것으로해야만했다. 그러기에프랑스의법과로마의법은지표의소유는지상과지하의소유를포함한다 (Cujus est solum, ejus est usque ad coelum) 라고명기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만일물과공기와불의사용에대한소유권을배제한다면, 땅의사용도마찬가지여야할것이다. 이러한논리적연결을샤를콩트씨는『소유론 Traité de la propriété』(제 5 장) 에서이미예견한듯이보인다.

<인간은몇분만이라도대기를빠앗기면살수없을것이고, 공기를조금만없애도심한고통을느낄것이다. 식량의일부또는전부를빠앗기면그다지즉각적이지는않지만결과와는마찬가지일것이다. 어떤기후조건아래에서는몇몇오가지만은신처를빠앗겨도마찬가지일것이다. 자기몸을보존하기위해서인간은항상온갖종류의사물들을자기몫으로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러한사물들이같은비율로존재하지는않는다. 어떤것들은, 가령별빛, 대기, 바닷물과같이엄청난분량으로존재하는것들은사람들이그중감을전혀의식하지못한다. 누구나타인의향유를해치거나조금이라도해를끼치지않는다면, 요구하는대로필요한만큼자기것으로할수있다. 이러한유형에속하는사물들은말하자면인류의공동재산이다. 이점에서각자에게요구되는유일한의무는타인의향유를조금도방해하지않는다는것이다.>

샤를콩트씨가열거한목록을완성해보자. 큰길을거닐고, 들판에땀머추어서고, 동굴로몸을피하고, 불을지피고, 야생잡풀을모으고, 목초를따고, 구운휴안에서목초를끓이는일이금지된다면, 인간은살수없을것이다. 이렇게토지는물과공기와빛과함께타인의향유를해치지않는한누구나자유롭게사용해야하는첫번째필수품이다. 그런데토지는왜횡령되었는가? 콩트씨의대답은기묘하다. 세는토지가 <옮겨다닐수있는> 것이아니기때문이라고주장한데비해서, 콩트씨는토지가 <무진장> 이아니기때문이라고확언한다. 콩트씨에따르면, 토지는유한하다. 그러므로토지는전유될수밖에없다. 그는아마도정반대로말해야만했을것이다. 즉, 그러므로토지는전유되어서는안된다고말이다. 사람들이상당한분량의공기나빛을자기의것으로한다고해도항상충분히남아있기때문에누구에게도손해를끼치지않는다. 그러나땅의경우문제는다르다. 원하는사람이나능력이있는사람은누구나태양광선, 스치는산들바람, 바다의파도를차지할수있다. 나는그것을허용하며그의못된의도가있더라도용서한다. 그러나살아있는인간이땅에대한점유권을소유권으로바꾸려한다면, 나는그에게전쟁을선포하고끝까지싸울것이다.

의에서나온것인지더이상알지못할정도이다. 내가묻건대, 도대체무엇이토지의비유동성을전유권리와관련시켰는가? 토지와같이 〈제한적이고〉 〈옮겨다닐수없는〉 사물이물이나빛보다는더쉽게횡령의손길에노출된다는사실을나는잘알고있다. 공기보다는땅에대해서소유권을행사하기가더쉬운것이다. 그러나문제는더쉬우냐더어려우냐가아닌데, 세는가능성을권리로간주하고있는것이다. 사람들은왜땅이바다나공기보다더많이전유되었는가를묻지않는다. 사람들이알고싶어하는것은어떤권리에의해서인간이 〈스스로창조하지도않고자연이무상으로준〉 이부를자기의것으로하였는가하는점이다.

따라서세는자신이제기한문제에대해전혀답을주지못한다. 설령그가문제를해결했다고한들, 설령그가우리에게준설명이니리가궁색하기는하지만그럭저럭만족스럽다고한들, 누가이땅 - 인간이전혀만들지않은이재산 - 에대해서사용료를거둘권리가있는가라는문제가남는다. 토지의차지료는누구에게돌아가야하는가? 물론토지를만든이에게다. 토지는누가만들었는가? 신이다. 그러면소유자여, 뒤로물러서라.

그러나토지를만든이는그것을팔지않고그냥주었으며어떤이의승낙도받지않았다. 어떻게조물주의모든자식들가운데누구는장자로누구는서자로취급당할수있겠는가? 원래는할당된물이공평했는데, 어떻게나중에조건이불평등해졌는가? 세는공기와물도 〈옮겨다닐수있는〉 성질의것이아니었다면마찬가지로횡령되었을것이라고추정하고있다. 말이난김에이러한추정은단순한가설이상의것이여하나의현실이라는점을지적해두자. 공기나물은자주횡령당했다. 물론가능할때마다가아니라허용될때마다그렇기는했지만말이다.

희망봉을돌아인도로가는길을발견한포르투갈인들은그들만이항로의소유권을가진다고주장했다. 이권리에이의의를제기한네덜란드인들이이에대해자문을구하자그로티우스는바다는전유될수없다는것을증명하기위해특별히 『해양의자유에대하여 De Mari libero』 를썼던것이다.

수렵및어로권은언제나영주나소유자들에게만주어졌다. 오늘날정부나시시장국은허가료와임대료를무는사람은누구에게나수렵권과어로권을허용하고있다. 수렵과어로를규제하는것은더할나위없이좋은일이다. 그러나경매로그것을나누는것은공기나물에대한독점권을설립하는일이다.

여권이란무엇인가? 여행자의인격을모두에게소개하는것이며여행자와여행자의소지품에대한안전을보장하는것이다. 가장좋은물품이라도변질시키고자혈안이된세리稅吏들은여권을밀정행위와징세의수단으로삼았다. 이것은여행하거나돌아다닐권리를파는일이아닌가?

소유자의허가없이그토지에있는샘에서물을끓이는일은금지되어있다. 왜냐하면종물취득권에의해샘물은그것에서축하는점유가없는한그땅의소유자에게속하기때문이다. 또세금을내지않고소유자의집에서하루를머무는것도, 소유자의동의를얻지않고정원이나뜰, 과수원을쳐다보는것도, 주인의뜻을어기고뜰과올타리안을거니는것도금지되어있다. 그런데누구나자기집에들어박혀있는

유자라는것에합의했다 (이합의가공식적인것이냐암묵적인것이냐는중요하지않다). 이것은사람들이앞으로는노동하지않고는살수없다는바로그사실에대해순전히선언적인합의를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평등한생필품을얻기위해서는노동의평등을제공해야만하고, 노동이평등하기위해서는평등한노동수단을제공해야한다는것이필연적이었다. 노동하지않고힘이나책략으로타인의생필품을침탈한자는누구든평등을파괴한자이며스스로를법위에그리고바깥에둔자였다. 더많은활동을한다는구실로생산수단을독점한자는누구나마찬가지로평등을파괴한자였다. 이렇게평등이란권리의표현이었으므로, 평등을침해한자는누구나 〈정의를어긴〉 자였다.

이리하여, 노동과더불어사적점유 즉 〈물物안에서의권리〉 가탄생했다. 그러나어떤물안에서인가? 그것은명백히땅안에서가아니라생산물안에서였다. 옛날에아랍인이늘이해했던방식그리고카이사르 Caesar 나타키투스 (Tacitus, 로마의역사가, 『게르마니아』 를남겼다-옮긴이) 가남긴문헌에따르면일찍이게르만족이이해했던방식이바로그것이다. 시스몽디씨는말한다. 〈기근가축에대한기근이의소유권을인정하고있던아랍인은하물며밭에씨를뿌린자와수확물을놓고다투지않았다. 오히려그들은왜평등한다른인간이마찬가지로씨를뿌릴권리를갖지못하는지를이해할수없었다. 이른바선점자의권리에서나오는불평등은어떠한정의의원리에도입각해있지않다고그들은보았다. 그런데땅이일정수의주민들사이에완전히분할되면, 이주민들만이나머지국민들에게서독점권을갖게된다. 아랍인들은이러한독점에결코순응하려하지않았다. ...〉

도처에서사람들은땅을분할했다. 물론나는그결과노동하는자들사이에더욱강고한조직이생겼으며, 확고하고지속적인이분배수단이더많은편익을제공한다는점을인정한다. 그러나이러한분할이어떻게누구나양도불가의점유권을가진어떤사물에대한이전가능한소유권을각자에게보장해줄수있을것인가? 법률적용어로표현하자면, 점유자에게서소유자로의이러한변용은법률적으로불가능하다. 그것은점유권반환소송과소유권확인소송이초심재판의심급審級에서겹쳐지는것을의미하며, 나아가서땅을함께나누고있는공동분할자들사이의아마도상호적일양도행위가자연권에기반을둔동의라는것을의미한다. 확신하건대, 처음으로법률을만든자들도한최초의농민들은지금의법학자들만큼학식을갖추지못했던모양이다. 그들은사적점유권을절대적소유권으로변형시키는데서오는결과들을전혀예상하지못했다. 그들이조금이라도학식이있었다면, 이처럼큰실수를저지르지는않았을것이다. 그러나나중에 〈물안에서의권리〉 와 〈물에대한권리〉 사이의차이를준별해낼이들이왜이차이점을소유권의원리 자체에는적용하지않았는가?

여기서법학자들에게그들자신의금언을환기시켜보자.

소유권에기원이있다면, 그것은단한가지일뿐이다. 소유권은오직하나의원인으로부터만생겨날수있다 (Dominium non potest nisi ex una causa contingere). 나는여러가지자격으로점유할수있다. 그러나나는단한가지자격

으로만소유자가될수있다. 그것이여러원인들에의해우리에게주어질수있다고 해도바로그여러가지원인들때문에그것이우리의것이될수는없다 (Non, ut ex pluribus causis idem nobis debere potest, ita ex pluribus causis idem potest nostrum esse). 여기에내가개간했고, 경작하고있으며, 그위에집을 지은, 나와나의가족과가족을먹여살리는땅이있다고하자. 나는이땅을 ① 최초의선점자의자격으로, ② 노동하는자의자격으로, ③ 나에게그땅을할당해준사회계약의덕으로점유할수있다. 그러나이자격요건들중어느것도나에게소유권을주지는않는다. 만일내가중요한것은선점권이라고우긴다면, 내쪽이당신보다 먼저선점했다고사회는응수할것이다. 만일중요한것은내가노동했다는사실이라고우긴다면, 그것은단지당신이점유한다는바로그조건에서일뿐이라고사회는응수할것이다. 만일내가중요한것은계약이라고우긴다면, 그계약은엄밀히말하자면용의권자로서의자격을확립해주었을뿐이라고사회는응수할것이다. 그럼에도소유자들이내세우는것은단지이러한자격들일뿐이다. 그들은결코다른 자격들을찾아내지못했다. 물론어떤권리든그발생적기원은그권리를누리는인간안에있다 (포티에가우리에게가르쳐준바가바로이것이다). 그러나태어나서 죽어가는인간안에, 그림자같이스쳐지나가는이대지의자식들안에는, 외부의사물들에관한한소유의권리가아니라점유의자격만이존재할뿐이다. 그렇다면그 발생적기원이존재하지않는곳에서어떻게사회가자기자신에맞서는권리를용납할수있었는가? 어떻게사회는점유를부여하면서소유의양도에도동의하였는가? 어떻게법률은이러한권리의남용을재가하였는가?

독일인안킬론 (F. Ancillon, 1767~1837, 저술가, 정치철학자-윙킨이) 은 이에대해다음과같이답한다.

〈몇몇철학자들은다음과같이주장한다. 즉인간이자연의대상, 이를테면밭, 나무따위에자신의힘을쏟음으로써그가얻게되는권리는그대상자체에대해서가 아니라그가거기에가져다준변화및그가거기에부여한형태에대해서일뿐이라는 것이다. 공연한구별이다! 만일형태가대상으로부터분리될수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인정할것이다. 그러나이는거의언제나불가능하므로, 인간의힘을가시적인세계의여러부분에적용하는것은소유권의첫번째기초이며재산의최초의기원이다.〉

공연한구실이다! 만일형태가대상에서분리될수없고소유가점유에서분리될수없다면, 점유는분할되어야한다. 즉소유의조건들을부과할권리는어떤경우에나사회가쥐고있는것이다. 차지한영지가 1 만프랑의총수입을내고이영지가분할될수없다고가정하자 (이는정말이상한경우일것이다). 그리고나서경제적인 계산에따라각가정의연평균소비가 3,000 프랑이라고가정하자. 그러면이영지의점유자는가족의부양에필요한 3,000 프랑과운영비일체를제외하고도 1 만프랑에맞먹는보상을사회에지불하고서그것을이용해야만훌륭한가장으로서처신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보수는지대가아니라차라리배상금이라할만하다.

그러면, 아래와같은법규를제정한이정의正義란과연무엇인가?

달리장애요인이없는한태양아래모든이들에게각자의몫이돌아간다는사실을사람들은인정한다. 각자는자기의산양을울타리에맺수있고, 암소를풀밭에끌고갈수있으며, 땅의한모퉁이에씨를뿌릴수있고, 화덕에서빵을구울수있다.

천만에, 누구나그렇게할수있는것은아니다. 나는도처에서 〈노동과근면에 영광있으라! 각자의능력에따라각자의몫을, 각자의성취에따라각자의능력을〉이라는외침을듣는다. 그런데나는인류의대부분이다시무일푼이되는것을본다. 마치어떤이들의노동이다른이들의노동위에우박처럼내리퍼붓듯이말이다.

〈문제는해결되었다〉 고엔느캥씨는외친다. 〈노동의딸인소유는법률의후견아래에서만현재와미래를향유한다. 소유의기원은자연권에서나오며그권한은민법에서나온다. 실정법들은 〈노동〉 과 〈보호〉 라는두가지이념의결합에서부터유래한다.〉

아! 〈문제가해결되었다니! 소유가노동의딸이라니!〉 그러면종물취득권, 상속권, 증여권따위는단순한선점에의해서소유자가될권리가아니라면도대체무엇이란말인가? 성년成年, 친권, 후견, 금치산등에대한당신네의법률은이미노동하는자가선점권, 즉소유를취득하거나상실하게될여러조건들이아니면무엇이란말인가?

여기서법전에대한세세한논의에빠져들수는없으므로나는소유를옹호하는가장통상적인편견세가지를검토하는것으로만족하려한다. ① 〈전유 appropriation〉, 즉점유에의한소유의형성, ② 〈사람들의동의〉, ③ 〈시효취득〉. 그리고나서나는노동이일하는자개개인의조건에대해서뿐만아니라소유자체에대해서미치는영향에대해살펴볼것이다.

제 1 절토지는전유될수없다.

〈경작지는인간이창조한것이아니라자연이인간에게무상으로준것이므로천부적인부의하나로간주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이부는공기나물처럼 옮겨다니는것이아니고발처럼 고정되고제한된공간이기때문에, 그리고어떤이들이다른모든이들을배제하고이부를자기것으로할수있었으며다른이들이이러한전유행위에동의했기때문에, 하늘이준무상의재산이었던토지는사회적인부가되었고, 따라서그것을이용하려면대가를지불해야만한다〉 (세 H. Say, 『정치경제학』).

경제학자들은법률과철학에관한한최악의부류에속하는권위자들이라고말한다면잘못일까? 자연의재산들, 즉신이창조한부가어떻게사유재산이될수있는가? 이문제를명확하게제기하는바로이학파의비조이다. 그리고그는여기에아주모호한답을주고있으며, 사람들은그것이저자의무지에서나온것인지악

논법의 72 가지형식을고안해낸사람보다천배나더미묘하고정교한변증술의온갖책략을다동원한다. 자기권리를정당화하려는소유자들이하는짓이바로이런식이다. 그는처음에는답변을거부하고항의하고도전한다. 다음으로그는논쟁을피할수없으면변으로무장하고, 무시무시한포병대를주위에배치하고, 포화를터트리면서선점, 점유, 시효취득, 계약, 오랜관례, 보편적동의따위를차례로그리고동시에내세운다. 여기서지게되면소유자는상처입은멧돼지처럼방향을바꾸고격렬하게부르짖는다. 나는선점이상의것을했다. 나는노동했고, 생산했고, 개량하고변형시켰으며, 〈창조했다〉. 이집, 이밭, 이나무는모두내손으로만든것이다. 가시덤불을포도밭으로, 잡목을무화과숲으로바꾼것은바로나다. 기근의땅에서오늘날수확을거두는것은바로나다. 나는나의땅방울로이땅을기름지게했으며, 나에게서일당을받지못했으면굶어죽었을이들에게대가를지불했다. 누구도나만큼노동과비용을들이지않았으니누구도나와나누어가질수없다.

그대는노동을했다. 소유자여! 그런데그대는원초적선점에대해무엇이라고말했는가? 뭐라고! 그대는그대의권리에대해확신이없었는가, 아니면사람들속이고정의를우롱하길원했는가? 어서그대의변론수단을내놓아라. 판결은항소가허용되지않으며변상을해야하는문제라는것을그대는알지않는가.

그대는노동을했다! 그러나그대가어쩔수없이노동을하는것과그대가공유물을차지하는것사이에서무슨관련이있다는말인가? 땅에대한권리는공기나빛에대한권리와마찬가지로시효취득에의해소멸될수없다는것을그대는모르는가?

그대는노동을했다! 그러면그대는한번도다른이들에게노동을시킨적이없는가? 그런데그대가이들을위해노동하지않으면서도얻어낼수있었던것을이들은어찌해서그대를위해서노동하면서도얻어야한다는말인가?

그대는노동을했다! 아주이른때부터, 그러나그대가한일을보자. 우리는수를세고, 무게를달고, 분량을헤아릴것이다. 이는벨사살 (Balthazar, 구약「다니엘서」 5 장에나오는바빌론의마지막왕자-웁긴이) 에대한심판이리라. 왜냐하면내가이저울, 이수준기水準器, 이жат대에의해맹세코판단하건대, 만일그대가어떤방식으로든타인의노동을자기것으로삼았다면그대는마지막카르테롱 (quarteron, 4 분의 1 파운드-웁긴이) 까지도반환해야할것이기때문이다.

물론, 선점의원리는포기된지오래이다. 이제더이상 〈땅은맨먼저차지한사람의것이다〉 라고말하지않는다. 소유권은처음의참호속으로기어들어가서자신의오랜금언을저버린다. 정의는부끄러움을무릅쓰고자신의격언을번복하고, 자신의눈가렸던뎡개를불러진뺨위로고통스럽게끌어내린다. 그런데사회철학의이러한진보가이루어진것은단지어제의일이다. 거짓말을몰리치는데 50 세기라니! 이탄식의나날동안얼마나많은강탈이정당화되고얼마나많은침략이영예를얻었으며얼마나많은정복이축성되었는가! 얼마나많은방심한이들이재산을빼앗겼고얼마나많은가난한이들이쫓겨났으며얼마나많은굶주린이들이부로부터배제되었는가! 얼마나많은반목과전쟁! 국민들사이의방화와살육! 마침내, 시간이흐르고이성이계도된덕분에이제토지는결코경쟁의전리품이될수없으며,

〈노동에의해사물은형태를바꾸는것이며, 따라서형태와질료는대상이파괴되지않는한분리될수없는것이라는점을고려하여, 사회가상속권을포기하든지 아니면노동하는자가자신의노동의결실을포기해야만한다.〉

〈다른모든경우에는, 질료의소유가종물취득從物取得의규정에의해서그질료에부가된것들의소유를수반하지만 (손실에대한배상을공제하고), 이때에원래의물에대한소유를수반하는것은종물에대한소유라는점을고려하여, 노동에의한전유권은개개인에맞서서는결코허용되지않을것이다. 그것은사회에맞서서만허용될것이다.〉

법률학자들이소유에대해서추론하는방식은늘이런식이다. 법률은인간들사이의권리를, 각인에대한각인의권리와모두에대한각인의권리를확고히하기위해제정된다. 요컨대, 비례식이항이내개미만일때도성립한다는듯이, 법률학자들은마지막항을고려로넣지않는다. 인간이인간에대립하는한, 소유는소유에대해균형추가되고이두힘은서로평형을이룬다. 인간이고립되자마자, 법률학은오류에빠지고, 테미스 (Themis, 법의여신-웁긴이) 는저울판을놓쳐버렸다.

렌의교수님, 현명하신톨리에의말을들어보자.

〈선점에의해취득되는이우선권이어떻게해서줄곧존속할수있으며또최초의선점자가점유를그만둔이후에도요구될수있는, 안정적이고항구적인소유로될수있는가?〉

〈농업은인류의번식의자연적인결과였다. 그리고역으로농업은인류의번식을촉진했으며항구적인소유권의확립을필요했다. 수확에대한확신이없었다면, 누가밭을갈고씨를뿌리는노고를다했겠는가?〉

밭을가는이를안심시키기위해서는그에게수확에대한점유를보장하는것으로충분했다. 스스로경작하는한, 토지에대한그의선점권을인정해주었던것이다. 이것이그가권리로서바랄수있는모든것이었고, 이것이문명의진보가요구하는모든것이였다. 그러나, 소유! 소유! 선점하지도경작하지도않은땅에대한횡령권, 그누가이권리를부여할권위를지녔단말인가? 그누가이권리를요구할수있는가?

〈농업만으로는항구적인소유를확립하기에충분하지않았다. 실정법이필요했으며, 그법을집행하기위해서는사법관들이필요했다. 요컨대민법상의상태 état civil 가필요했다. 인류의증가는농업을필요하게만들었다. 농사짓는이에게자기노동의결실을보장해주자는요구가항구적인소유권과그것을보호하는법률들의필요를느끼게했다. 따라서민법상의상태의성립을가져온것은바로소유의덕이다.〉

그렇다, 여러분이만들어놓은바와같은우리의민법적상태의성립, 전제정에서군주정과귀족정을거쳐서오늘날민주정에이른, 그러나항상압제적인민법적상태의성립을말이다.

〈소유의권이없었다면사람들을법이라는유익한속박에묶어두는일이불가능했을것이다. 그리고항구적인소유가없었다면땅은줄곧광대한삼림으로남아있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명쾌한 저술가들의 뒤를 쫓아 다음과 같이 말하자. 만일 일시적 소유, 즉 선점에 의한 우선권이 시민 사회의 성립에 앞서는 것이라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바와 같은 항구적인 소유는 민법의 소산이라고. 일단 획득되고 나면 소유는 소유자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 소유자가 사물에 대한 점유나 보유를 상실한 이후에도 소유는 보존된다는 점, 그리고 소유는 제 3 자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격률로써 확립해 준 것이 바로 민법이다.》

〈따라서 원시 상태에서는 뒤섞여 있었던 소유와 점유는 민법에 의해서 뚜렷하고 독자적인 두 가지 사실로 되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법률 용어의 어법에 따르면 어떠한 공통점도 없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엄청난 변화가 소유에 일어났는가를, 그리고 시민들이 소유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이란 소유권을 제정함에 있어서 결코 심리적 사실의 표현도, 자연법칙의 전개도, 도덕 원리의 적용도 아니었다. 법률은 그 단어가 갖는 모든 효력에 있어서 그 권한들을 넘어서 어떤 권리를 창출했던 것이다. 법률은 하나의 추상, 은유, 허구를 실현했다. 그것도,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견해보지도 않고, 그에 따른 애로점들을 고민해보지도 않은 채, 심지어 바람직한 일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말이다. 법률은 이기주의를 재가했으며, 기괴한 주장들을 늘어놓았다. 법률은 마치 밀빠진 독을 메우고 지옥을 채울 힘을 가지거나 한 듯이 불경한 회교들을 끌어모았다. 맹목적인 법률, 무자비한 인간의 법률, 법률이 아닌 법률, 이것이 사회의 수호신인 양 줄곧 부활되고 복권되고 갱신되고 강화되면서 민중의 의식을 혼란케 하고 지배자들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국민들에게 온갖 재앙을 몰고 왔다. 그리스도교가 비난했던, 그러나 성서를 읽을 능력이 없었던 만큼이나 자연과 인간을 연구할 열의도 거의 없었던 무지한 성직자들이 신격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법률이다.

그런데 법률은 소유권을 창출하면서 어떤 지침을 따랐는가? 어떤 원리가 법률을 인도했는가? 법률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무나 놀랍게도 평등이었다.

농업은 토지 점유의 토대이자 소유의 우연적 원인이었다. 이것은 농사짓는 이에 게 생산수단을 동시에 보장해주지 않는 한, 그에게 그의 노동의 결실을 결코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강자의 침탈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약탈과 사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점유자들은 그들 사이에 항구적인 구획선과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쌓을 필요를 느꼈다. 해마다 인구는 늘어나고 경작자들의 탐욕도 한더해 갔다. 사람들은 야망이 넘지 못한 표석을 세움으로써 그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고민었다. 이리하여 공공의 안전과 각자의 평온한 향유에 필요한 평등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물론 할당된 몫이 결코 지리적으로 평등한 것은 아니었다. 절대적인 평등을 가로막는 많은 권리들이 있었다. 이들 권리란 한편으로는 상속, 증여, 교환 등(어떤 것들은 자연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잘못 해석되고 심지어 잘못 적용되었다) 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생과 지위의 특권들처럼 무지와 폭력에 따른 비합법적인 착안물들이었다. 그러나 원리는 어느 경우나 항상 동일했다. 요컨대 평등이 점유를 재가 했듯이, 또한 평등이 소유를 재가 한 것이다.

제 3 장 소유권의 동인으로서의 노동에 대하여

현대 법률학자들은 너무나 할 것 없이 경제학자들이 말한 것을 근거로 원초적 선점의 이론은 너무 파괴적이라고 폐기하고 나서 소유는 노동에서 나온다는 이론에 전적으로 매달렸다. 우선, 이는 순환논법의 한 망상이었다. 쿠쟁씨는 노동하기 위해서 선점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나로서는 선점권은 모두에게 평등하므로 노동하기 위해서 평등에 따라야만 한다고 말했다. 장-자크 루소는 외쳤다. ‘이 벽은 내가 지었다. 나는 이 땅을 나의 노동에 의해서 얻었다’라고 부자들이 말하는 것은 허사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누가 당신에게 벽을 지을 건축선(建築線)을 허가했소? 우리가 당신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는 노동을 가지고 무슨 근거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말이지요?’라고 반문할 수 있다.》 이 추론 앞에서 모든 궤변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노동설을 내세우는 이들은 자신들의 체계가 법전과 완전히 모순되며 법전의 모든 조항과 규정들은 원초적 선점이라는 행위에 근거한 소유를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만일 노동만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전유(專有)에 의해서 소유를 낳는다고 하면, 민법전은 거짓말이고 헌장(憲章)은 허위이며 우리의 모든 사회 제도는 권리의 침해일 것이다. 노동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소유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후과 다음장에서 벌여야 할 토의에서 아주 명쾌하게 도출될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의 입법이 자가 당착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법규는 그 자체의 원리나 현재의 입법과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소유권을 노동에서 찾는 학설이 소유권을 선점에서 찾는 학설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평등을 함축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독자는 내가 어떻게 재산과 능력의 불평등에서 이 평등의 법칙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 무척 궁금할 것이다. 곧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소유의 원리로 선점 대신 노동이 들어선 이 놀라운 과정에 대해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나서, 소유자들이 상투적으로 내세우는 몇 가지 편견들 - 입법에 의해서 재가 된 것지만 노동을 내세우는 학설에 의 해 완전히 뒤집혀진 편견들 - 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독자여, 당신은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방청한 적이 있는가? 그의 술책, 농간, 핑계, 둘러대는 짓을 보았는가? 진술할 때마다 반격을 당하고 혼동에 빠지며, 인정사정없는 판사에 의해 들짐승처럼 내몰리고 온갖 가정(假定)으로 추궁을 당한 나머지, 그는 고집하고, 고쳐 말하고, 앞의 말을 뒤집고, 모순된 말을 늘어놓는다. 그는 삼단

따라서선점자는누구나당연히점유자또는용익권자가되나, 소유권자로서의 자격은가질수없다. 용익권자의권리란다음과같은것이다. 그는자신에게맡겨진 사물에대한책임이있다. 그는사물의보존과개발을염두에두면서일반적인용도에따라서그것을이용해야만한다. 그는결코사물을변형시키거나축소하거나망가트릴권리가없다. 그는자신이결과물을거두는동안에다른이가사물을이용할수있도록그용익권을나눌권리가없다. 한마디로말하자면, 용익권자는사회의감시아래있으며노동의조건과평등의법칙에종속되어있는것이다.

따라서〈사용하고남용할권리〉라는, 소유에대한로마인의정의는무효화된다. 이러한정의는폭력이남은배덕이며, 여태껏민법이재가한것가운데가장기괴한주장이다. 인간은자신의용익권을사회로부터받는것이며, 사회만이항구적인 방식으로점유권을행사하는것이다. 개인은사라지지만사회는죽지않는다.

이너무나당연한진실을토론하느라나의영혼은얼마나깊은혐오에사로잡히는가! 우리는오늘날이러한진실들을의심하는가? 이진실들이승리하도록하기 위해서또다시싸워야할것인가? 이성으로되지않는다면완력으로이진실들을우리의법률속에도입할수있는가?

〈선점권은만인에게평등하다.〉

〈선점의척도는의지意志에있는것이아니라, 공간과수의가변적조건들에있다. 따라서소유는성립할수없다.〉

어떤법전도일찍이표명한적이없는것, 어떤헌법도일찍이허용한적이없었던 것이바로이것이다! 민법이나만민법이모두반대한것이바로이러한공리이다!

그러나다른체제를내세우는이들의향의또한들린다. 〈노동! 소유를구성하는것은노동이다.〉

독자여, 속지말기를. 소유의이새로운토대는첫번째것보다더못한것이다. 나는이제독자들의양해를구하면서, 사태를한층더명쾌하게펼쳐보이고나서독자들이여태껏들어온어떤것보다더부당한주장을논박할것이다.

농사짓는이에게는해마다씨를뿌릴발이필요했다. 미개인들에게있어서, 해마다서로다투고싸우는일을되풀이하거나이곳에서저곳으로끝없이그들의집과가족과기구를실어나르는대신, 양도할수없는일정한세습재산을각자에게할당하는것보다더편하고더간단한방책이있겠는가?

원정에서돌아온병사는그가조국에바친봉사때문에무일푼이되는일이없어야했으며그의유산을되찾아야만했다. 따라서소유는의향만으로 (nudo animo) 보존되고소유자의동의와행위예의해서만상실된다는것이관례로되었다.

한가족이사멸했을때토지의분배를다시하는일이없어야했으며할당의평등은세대가바뀌어도그대로보존되어야만했다. 따라서자식들과친척들이망자亡者와맺고있는혈족및인척관계의정도에따라서그들의조상을계승하는것이자연스럽고정당하게보였다. 여기에서우선, 단한사람의상속인만을인정하는불건적이고가부장적인관습이생겼고, 나중에는평등의원리를이와는정반대로적용함으로써자식들모두에게아버지의재산상속을인정하게되었으며, 더나아가우리시대에와서는장자상속권이결정적으로폐지되었다.

그러나본능에따른조직의이조야한형태들과참된사회과학사이어떤공통점이있다는말인가? 통계, 토지대장, 정치경제등에대해조금도식견이없었던사람들이어떻게우리에게입법의원리를전수해줄수있다는말인가?

현대의어느법학자는말한다. 법률이란사회적필요의표현이자사실의선언이며, 입법자는법률을만드는것이아니라그것을기술할뿐이라고. 이러한정의는전혀정확하지않다. 법률이란사회적필요들을충족하는데따라야하는준칙인것이다. 인민이법률을표결하는것도입법자가법률을표명하는것도아니며, 학자가법률을발견하고명문화할뿐이다. 그러나사실상법률은애초에는〈필요의표현〉이자그필요를충족하는수단들에대한지침일수밖에없었으며지금까지도그외에달리아무것도아니었다. 샤를콩트(Ch. Comte, 1782~1837, 프랑스의경제학자, 『소유론』의저자-옮긴이) 씨가자신의책의절반이나할애해서입증하고자했던바가바로이것이다. 법률학자들은기계처럼충직하고, 완고하고, 철학적사고와는거리가멀고, 자구字句의의미에얽매이나머지선언의있으나통찰력이부족한사람들의사려깊지못한히구에불과했던것을마치과학의결정판인양간주했다.

소유권의옛창시자였던입법률학자들은세습재산을보존하는영속적이고절대적인권리, 두루통용된다는이유로그들에게는공평하게보였던이권리가그재산을양도하고매각하고증여하고획득하고상실할권리르초래한다는사실을예견하지못했다. 또한그들은자신들이그권리를통해확립하고자했던목적이었던평등자체가바로그권리에의해파괴될수도있다는사실을예견하지못했다. 설령이사실을예견할수있었다고해도, 그들은그것을고려로놓지않았을것이다. 목전의필요가우선이었으며, 따라서그러한경우에흔히일어나기마련이듯이, 곤란한점들이우선은너무사소해보여서그냥지나쳐버렸던것이다.

순진한입법자였던이법률학자들은, 비록소유란의향만으로보존되는것이라 할지라도, 바로그소유가세를놓고임대하고이자를빌려주고거래를통해이익을 남기고지대를설정하고농지에세금을매길권리들처럼의향으로보존되더라도그 실체는다른곳에서점유되는권리들을수반한다는것을예견하지못했다.

우리의법률을만든즉장들인이법률학자들은만일상속권이할당의평등을보 존하도록자연적으로주어진방식과는다른그어떤것이라면, 가정들은곧가장파 국적인배제의희생물이될것이고사회는자신의가장신성한원리들중하나에의해 속속들이침탈당해서풍요와빈곤속에서저절로소멸될것이라는사실을예견하지 못했다.¹

이들법학자는또이런저런따위를예견하지못했다. 그러나내가이점을자꾸들 추어낼필요가있을까? 결과들은저절로드러날것이며, 또지금은법전전부를통 께로비판할때도아니다.

고대민족들의소유의역사는우리에게는이미고증과호기심의대상외에아무 것도아니다. 사실이권리를남기지않는다는것은법해석의준칙이며, 소유역시이러 한준칙을피할수없다. 따라서소유권의보편적인정이소유권자체를정당화하지 는않는다. 인간은유성의기원과천체의운행에대해잘못생각했듯이, 사회의구 성, 권리의성격, 정의의적용등에대해잘못생각했다. 인간의해묵은견해들을신 조로받아들일수는없다. 인도인들이네개의카스트로나누어져있다는것, 나일강 과갠지스강연안에서는토지가혈통과직책의존귀성에비례해서분배되었다는것, 그리스인과로마인은소유를신들의가호아래두었으며경계표지와토지대장작성 이그들에게는종교적의식들을동반했다는것, 이러한사실들이우리에게무슨중 요성이있는가? 특권의형태들이다양했다는사실이불의를정당화할수는없는노릇이다. 음탕한비너스신의신비가부부사이의정결에반하는어떤것도증명하지 않듯이, 소유의신주피터의숭배가시민들사이의평등에반하는어떤것도증명해 주지않는다.

소유권을증명하는인간의권위는무효이다. 왜냐하면소유권은필연적으로평 등에의존하는만큼그자체의원리와모순되기때문이다. 소유권을재가해준종교 의동의는무효이다. 왜냐하면어느시대에나사제는군주에게봉사했으며, 신들은 항상정치인들이원하는바대로말해왔기때문이다. 흔히소유의덕으로돌려지는 여러사회적이익들은소유를변호하기위해동원될수없다. 왜냐하면그러한이익 들은모두점유의평등이라는원리에서나오는것이기때문이다 (사람들은점유와 소유를잘구별해내지못했다).

그렇다면, 소유에대한아래와같은장광설의진정한의미는무엇인가?

¹ 바로여기에서우리조상들의단순함이있는그대로드러난다. 우리조상들은친자식이없을경우 사촌형제들로하여금유산을상속하게했다. 그러나한가문안에서부와가난의양극단을피하기위해서 바로이사촌들을이용해서서로다른두가계사이에유산을균등하게나누는데까지생각이미치지못 했다. 예를들어보자.

〈소유권의설정은인간의제도들중가장중요한것이다...〉²

그렇다, 군주제가가장영예로운제도이듯이말이다.

〈대지에서인간의번영의첫째원인이요...〉

왜냐하면사람들이마치정의를소유의원리인양생각하기때문에.

〈...소유는인간이품은야망의정당한목적, 그의생존의희망, 그의가족의안식 처, 즉한마디로말하자면가정과도시와정치적공동체의초석이되었다.〉

점유만이이모든것을남는다.

〈모든사회제도와모든시민적제도의영원한원리이자...〉

그렇다, 소유란영원하다. 일체의부정否定이그러하듯이. 자, 이것이소유에 토대를둔모든제도와법이사멸하게될이유이다.

〈자유만큼값진재산이고...〉

돈많은소유자에게는말이다.

〈사실상, 거주할수있는땅의경작을가져다주며...〉

경작하는이가소작인이아니라고해서땅이더형편없이경작되겠는가?

〈노동의보장과기품을주며...〉

소유로말미암아노동은하나의조건이아니라하나의특전이된다.

〈정의의적용이다...〉

재산의평등이없는정의란도대체무엇인가? 거짓분동分銅을가진저울이아 닐가.

〈모든도덕과〉

굶주린배는하등도덕을모른다.

〈모든공공질서는〉

그렇다, 소유의보존은말이다.

〈소유권에의거한다.〉

존재하는모든것의버팀목, 존재해야하는모든것의걸림돌, 이것이바로소유 이다.

이제요약해서결론을이끌어내자.

선점은평등에이를뿐만아니라소유를 〈가로막는〉 것이다. 왜냐하면인간은 누구나자신이존재한다는사실만으로선점권을가지기때문이며살기위해서는경 작하고노동할재료가필요하기때문이다. 또다른한편으로는선점자의수가출생 과사망에의해계속변하므로일손이요구하는자재의분량도선점자의수에따라달 라진다. 따라서선점은항상인구에종속되는것이며, 마찬가지로점유란법적으로 결코고정될수없으며, 점유가소유로변모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² 지라드 Girad, 『로마인의소유권에대한연구』

세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자본이일정한 경우생산은소유가아니라노동에비례하기때문이다.

생산물의 10% 로소작료 100 을지불하기위해서는생산물이 1,000 이어야만한다. 생산물이 1,000 이기위해서는 1,000 명의노동자가필요하다. 따라서누구나지대수취자로서의삶을누릴평등한권리를가진이들지주-노동자(Travailleurs Propriétaires, 지주이면서동시에일하는자를말한다-웁긴이) 100 명을지금쉬게한다면, 우리는이들에게그들의수입을지불할수없는상태에빠진다. 실제로, 원래 1,000 이었던생산력은 900 으로줄고, 생산역시 900 으로줄게되므로, 그 10% 인 90 만이소작료로남게되는것이다. 따라서지주들이소작료전액을다받으려한다면, 이들 100 명중 10 명은소작료를받지못하거나, 아니면이들모두가 10% 만큼의감소를받아들여야만한다. 왜냐하면지주가노동을그만둔다고해서그손실을노동자가떠맡을수는없는일이기때문이다. 노동자들은결코자기직분을다하지못한적이없으며나다름없이생산을해왔으니말이다. 자신의나태함에따른결과를떠맡아야하는것은바로지주들이다. 그러나지주는그가더누리려한다는바로그사실로인해더욱가난해진다. 자신의권리를행사하려함으로써, 그는그권리를상실한다. 이렇게재산이란우리가그것을붙잡으려하면할수록줄어들고없어져버리는듯이보인다. 재산은찾으면찾을수록손에서떨어지는것이다. 수량에따라가변적이고산술적배열에따라상실될수도있는이권리란과연어떤것인가?

지주-노동자는 ① 노동자로서 0.9 의임금과, ② 지주로서 1 의소작료를받았다. 그는스스로에게이렇게말했다. <내가받은소작료로충분하다. 나는더얻으려고일할필요가없다.> 따라서그가생각했던수입은 1/10 만큼줄어드는셈이다. 어쩌서그렇게되는지를그가생각조차하지못한사이에말이다. 생산에참여했을때, 그는자신이지금되찾지못하는이 1/10 만큼의생산자였던것이다. 그리고그가자신을위해서만일하고자생각했을때, 그는자기생산물을교환하는데서일정한손실을입은것이며, 그결과자기소작료의 1/10 만큼을자기자신에게지불하게하는셈이었다. 다른이들처럼그는 1 을생산했으나, 0.9 만을받은것이다.

만일노동자가 900 명이아니라 500 명밖에없었다면, 소작료총액은 50 으로줄었을것이다. 마찬가지로 100 명뿐이었다면, 10 으로줄었을것이다. 그러므로소유자경제의법칙으로다음과같은공리를세우자. <불로수득은일하지않는자의수가늘어날수록줄어든다.>

이첫번째결론은우리를한층놀라운또하나의결론으로인도할것이다. 그것은소유를제거하지않고서, 소유자들에게해를입히지않고서, 아주보수적인방법으로단숨에소유의모든부담에서우리를해방시키는문제이다.

노동자 1,000 명으로이루어진한사회소작료가 100 이라면, 900 명의경우는 90, 800 명의경우는 80, 100 명의경우는 10 등등이된다는것을우리는알

콩트씨를계속인용해보자.

<노동자들은이높지에서물을빼고잡목과덤불을없애도록, 한마디로말해서땅을간척하도록고용된다. 그들은그땅의가치를높이고더큰재산으로만든다. 노동자들이거기에부가한가치는식량과일당의형태로그들에게지불된다. 그러면이가치는자본가의소유가된다.>

지불은충분하지않다. 왜냐하면노동자들의노동이가치를창출했으며, 이가치는그들의소유이기때문이다. 노동자들은그가치를팔지도다른것과교환하지도않았다. 그리고당신, 자본가인당신은그가치를사들이지않았다. 당신이지금해준물품및당신이며런해준생계수단의대가로전체의일부에대한권리를갖는다면, 그것은물론아주정당한일이다. 당신은생산에기여했다. 그러므로향유에참여해야마땅하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당신의권리가노동자들, 당신이원하든원치않든생산과정에서당신의동료였던노동자들의권리를무효로만들지는않는다. 임금에대해당신은뭐라고말하는가? 당신이노동자들에게일당으로지불하는돈은그들이당신에게넘겨준영구적인점유의겨우몇년치몹에지나지않는다. 임금은노동자가나날이자신을유지하고회복하는데필요한비용이다. 그것을판매대금으로여기는것은당신의오산이다. 노동자는아무것도팔지않았다. 노동자는자신의권리도, 그가당신에게한양도의범위도, 당신이그와맺었다고주장하는계약의의미도알지못한다. 노동자편에서는완벽에가까운무지가, 당신편에서는사기와강탈이라고까지하는할수없어도착오와놀라움이함께한다.

다른예를들어서이모든것을더욱명확하고더욱진실에가깝게밝혀보자.

메마른토지를경작가능하고생산성이높은토지로바꾸는데얼마나많은어려움이따르는지모르는사람은없을것이다. 그어려움은정말엄청나서대개의경우고립상태에서홀로일하는사람은그땅이자신에게조금만이라도식량을마련해줄수있는상태가되기전에죽고말것이다. 개간을위해서는공동체의단합된노력과산업의모든자원이다동원되어야한다. 콩트씨는이주제에대해수많은참된사실들을열거하고있으면서도사실상자신의논설에어긋나는증거들을꺼내오고있다는것을눈치채지못한다.

20 또는 30 가구로이루어진한개척마을이덤불과잡목으로뒤덮인황량한지역에들어서고, 원주민들이협약에의해그마을에서퇴거하는데동의했다고가정하자. 각가구는많지는않지만그래도누구나동물들, 곡물, 연장, 약간의돈, 식량따위중에서선택할수있을만큼충분한자금을지니고있다. 땅이할당되고각자는최선을다해주거지를마련하고자신에게주어진몹의땅을개간하기시작한다. 그러나난생처음겪는피로, 믿을수없는고역, 파멸적이고거의결실없는노동으로몇주일을보낸후, 우리의입주자들은자기일을불평하기시작한다. 그들은조건이가혹하게느껴지고, 자신들이처한비참한신세에대해불평을늘어놓는다.

돌연이들중가장약삭빠른이가돼지한마리를잡아서일부는소금에절이고나머지는나누어주기로결심하고궁핍에빠진자기동료들을찾아나선다. 그는호의에가득찬여조로말한다. 벗이며, 보잘것없는일때문에, 기껏지독한생활을하러

고이고생인가! 당신네들에게이득이될거래를하세. 당신들에게먹을것과술을제공할것이니. 당신들은날마다그만큼씩얻게될걸세. 우리는함께일할것ियो, 신이여만세, 내뱃들이여, 우리는즐겁고만족할걸세!

팅빈위뿔들이이런장광설에저항할수있다고믿는가? 가장굶주린사람들이미덥지못한초청자를따라나선다. 사람들은일을시작한다. 함께한다는미덕, 경쟁심, 희열, 상부상조가노력을배가시킨다. 일은순식간에진척되고사람들은노래하고웃는가운데자연을길들인다. 얼마안가서땅이모습을바꾼다. 길들여진땅은씨뿌리기만을기다린다. 이제, 소유자는자기가부린노동자들에게지불을하며, 노동자들은고마운인사를하고몰려나면서그와함께지낸행복했던나날을아쉬워한다.

다른사람들도이런보기를쫓으며마찬가지로성공을거둔다. 그러고나서어떤이들은정착을하고나머지는홀어진다. 한사람한사람자기개간지로돌아간다. 그러나개간을하려면우선먹고살아야한다. 남을위해경작하는동안자기땅은돌보지못하지않았는가. 씨를뿌리고수확을거두는데이미일년을빠앗겼다. 사람들은자기의노동력을빌려줌으로써, 자기가먹을식량을절약할수있으므로더많이벌것으로생각했고더잘살면서도더많은돈을모으리라고생각했다. 잘못된생각이로다! 남을위한생산도구를창출했을뿐, 자기를위해서는아무것도창출하지못한것이다. 개간의어려움은여전했다. 걸친옷은해지고, 식량은바닥나고, 주머니는텅비고, 결국특정인만이득을본다. 모두가받들어일했던그자, 혼자만이생산할수있는위치에남게된까닭에다른이에게부족한식량을제공해줄수있는바로그자말이다. 그러고나서, 가련한개간자가돈이바닥날때쯤, 멀리서부터먹잇감냄새를맡는동화속의식인귀처럼, 먹을것을잔뜩가진자가다시나타난다. 그는어떤사람들에게는일당으로고용하겠다고제안하고, 어떤사람들에게는그척박한땅조각을헐값에사겠다고제안한다. 물론사들인땅에서그는아무일도하지않으며앞으로도그럴것이다. 즉, 그는자신을위하여, 어떤이의땅을다른어떤이로하여금경작하게하는것이다. 따라서 20 년이지나고나면, 애초에는동등한재산을지녔던 30 여명의개개인중에서다섯또는여섯명만이지역전체의소유자가될것이고, 나머지는보는이의연민을자아낼정도로빈털터리가될것이다.

운 좋게도내가태어난이부르주아도덕성의시대는다덕에대한감각이정말무더져버렸다. 따라서나는, 허다하고매한소유자들이내가발견한모든것이근거없고부당하지않느냐고내게묻더라도결코놀라지않을것이다. 비열한영혼이여! 되살아난시체여! 눈앞에서일어나는도적질이당신에게자명하게보이지않는다면, 어떻게당신을납득시킬수있겠는가? 인간은감언이설을동원해서타인들로하여금자기의사업을위해봉사케하는비결을알고있다. 그다음에일단단합된노력으로부름을얻고나면, 그는자기에게재산을만들어준사람들의복리를증진시키는일을거부한다. 자기나름대로규정한여러조건들을들먹이면서말이다. 그런데당신은이러한행위가왜사기냐고묻고있는것이다! 노동자들에게보수를지불했고더이상아무것도빚진것이없다는구실로, 자기의사업은바쁘면다른이들을위해

여하는것으로취급해왔다. 이러한조건에서라면결코소유가존재할수없으리라는것은쉽사리생각해볼수있다. 어떤일이일어나겠는가?

정절도염치도없는천성적으로호색한인소유자는질서와규율의생활과는절대로어울리지않는다. 그가재산을사랑한다면, 그것은그가원할때, 원하는만큼, 자기의안락을얻기위해서이다. 먹고살기에충분하다고느끼면, 그는쓸데없는일이나안일한생활에몸을내맡긴다. 그는즐기고, 바보짓하고, 신기한것과새로운자극을찾아나선다. 소유는자기스스로를만끽하기위해서일상적인처지를내팽개치고사치스러운일과세속적인향락에눈을돌려야만한다.

손안에서소실되고마는지대를마다한다거나그만큼사회의노동부담을덜어주려하기는커녕, 우리의 100 여소유자들은몸을뽀고휴식을취한다. 이들의발뺨때문에생산의절대량은 100 만큼줄어들지만소비는마찬가지여서, 생산과소비가균형을이룬듯이보인다. 그러나우선소유자들은일을하지않으므로, 그들의소비는경제원칙에따르자면비생산적이다. 따라서사회에는예전과마찬가지로생산물에의해지불되지않는 100 만큼의노동이있는것이아니라노동없이소비되는 100 만큼의생산물이있게된다. 생산과소비중어느항목에나타나든간에결국적자는마찬가지인것이다. 정치경제학의격언이잘못된것이든아니면그격언을거스르는소유가불가능한것이든둘중의하나이다.

경제학자들은비생산적인모든소비를하나의악으로, 인류에게저지른도둑질로간주하고, 소유자들에게마냥절제와노동과검약을권고해마지않는다. 그들은소유자들에게자신의유용성을찾으라고, 얻은것을다시생산에투자하라고권유한다. 그들은사치와태만에대해가장끔찍한욕설을퍼붓는다. 이러한훈육이훌륭한일이라는것을누군들모르겠는가. 그러나아쉬운것은상식이결여되어있다는점이다. 노동하는소유자, 즉경제학자들의표현을빌리면 〈자신을유용하게만드는〉 소유자는바로이노동과이유용성에의해지불받는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소유자가자신이몸소이용하지않으면서도수입만을챙기는재산들에대해서는덜나태한가? 그가무슨일을하건그의처지는비생산적인것이며 〈흉물스러운〉 것이다. 소유자는소유자이기를그만두지않는한, 낭비하고파괴하는일을그칠수없다.

그러나이것은소유자가가져오는가장사소한악에지나지않는다. 사회는게으른자도부양한다는것을우리는아무튼잘알고있다. 사회에는늘맹인, 불구자, 정신병자, 저능아등등이있다. 그러니사회가몇몇게으른자를부양못할이유가있겠는가. 그러니불가능한일들이복잡하게뒤엉키고겹겹이쌓여가는것이다.

오로지자신들만을위해서노동하니말이다. 마지막으로, 이징수는지주들에게어떤효용도주지않을것이다. 왜냐하면지주들은스스로소비하기에충분한밀을수확한데다가, 교역도산업도없는사회에서그것으로다른어떤것도취득할수없으므로, 사실상자신들의소득이가져오는이점을상실할것이니말이다.

이와같은사회에서는생산물의 1/10 이소비되지않고남기때문에, 노동의 1/10 이지불되지않고남는셈이다. 생산비용이그생산물의효용가치보다더드는것이다.

여기서, 밀생산자 300 명을다른분야의일거리에배당해보자. 예컨대, 정원사나포도재배농 100 명, 제화공이나재단공 60 명, 가구공이나대장장이 50 명, 여타다른직업인들 80 명, 그리고부족함이없도록학교선생님 7 명, 촌장 1 명, 재판관 1 명, 성직자 1 명을두도록하자. 각직종은제나름대로부족전체를위해생산한다. 그러면총생산량을 1,000 으로할경우, 개개인에게돌아가는소비량은 1 이된다. 즉개인은밀, 고기, 곡물을 0.7 만큼, 포도주와정원을 0.1 만큼, 신발과옷을 0.06 만큼, 철물과가구를 0.05 만큼, 여타다른생산품을 0.08 만큼, 모두합해서 1 만큼을소비하는셈이다.

그러나사회는 10% 의지대를지불해야한다. 그리고우리는농부들만이그것을지불하든일하는자모두가지불하든그결과는마찬가지임을알게될것이다. 농부는자신이지불해야하는몫에비례해서식료품값을올린다. 그러면제조업자들이곧이러한상승추세를뒤따르게되고, 몇차례엮치락뒤치락하고난다음에형평이회복될것이다. 결국개개인언저리의동등한양을지불하는것이다. 그러므로한나라에서농부만이지대를낸다고생각하면큰오산이다. 국민전체가지불하는것이다.

따라서내가말하고자하는것은, 만일 10% 를징수당한다고치면, 개개인의 소비는다음과같이줄어든다는것이다. 밀 0.63, 포도주와정원 0.09, 신발과옷 0.054, 철물과가구 0.045, 여타다른생산품 0.072, 교육 0.0063, 행정 0.0018, 예배 0.0009. 다시말해모두합하면 0.9 가된다.

일하는자는 1 을생산하는데 0.9 만을소비한다. 따라서그는자신의노동의가격에서 10% 만큼을잃어버린것이다. 요컨대그의생산에도는비용은항상그생산물의효용가치보다비싸다. 다른한편으로, 소유자가차지하는이 10% 는소유자에게무가치하게된다. 왜냐하면소유자스스로도일을하므로자신들이생산한생산물의 90% 를가지고다른이들처럼살수있으며, 따라서부족한것이없을터이니말이다. 그들이그것을소비할수도교환할수도없다면, 그들이차지한빵, 고기, 포도주, 옷, 집따위의양이두배로된들무슨소용이있겠는가? 따라서지대는나머지다른이들에게와마찬가지로그들에게도무가치한것으로남게되며그들의손안에서소실되고만다. 이가설을확대해서생산물의수효와종류를늘려보라. 당신은마찬가지결론을얻게될것이다.

지금까지나는소유자를생산에참여하는자로, 즉세가말한것처럼단순히자신의도구에의해서참여하는것이아니라자기스스로의노동에의해서실질적으로참

서는달리할일이없다는구실로, 그는다른이들이자기사업에도와주었음에도불구하고이들의사업을돕기를거부한다. 그리고고립에따른무력감속에서버림받은노동자들이물려받은유산을담보로돈을마련해야할절박한지경에빠졌을때, 바로그, 즉이뻔뻔한소유자, 이벼락부자사기꾼이나타나서노동자들을악탈하고파멸시킬계획을짜고있다. 그런데당신은이것이정당하다는말인가! 정신차려라, 나는당신의논초리에서, 본의아닌무지에서오는순진한놀라움을넘어서는죄의식의질책을읽는다.

자본가는노동자들에게 〈수당 les journées〉 을지불했다고사람들은말한다. 정확하게표현하려면, 자본가는매일노동자들을고용할때마다그날의 〈일당 une journée〉 를지불했다고말해야한다. 이것은결코같은말이아니다. 왜냐하면노동자들의협동과조화, 그들노력의집중과동시성이나오는이거대한힘에대해자본가는아무것도지불하지않았기때문이다. 200 명의정예병이몇시간만에룩소르 Luqsor 의오벨리스크를단단한지반위에세웠다. 한사람이 200 시간안에같은일을해낼수있다고당신은생각하는가? 그런데도자본가의셈법으로는임금의액수가같다는말인가. 사막을개간하는일, 집을짓는일, 공장을가동하는일 따위는오벨리스크를세우는일, 산을옮기는일과같은것이다. 가장작은재산, 가장빈약한기업, 가장보잘것없는공장의운용도한사람의힘으로는도저히이룰수없는다양한노력과재능의결합을요구하는것이다. 경제학자들이이점에생각이미치지못한것은놀라운일이다. 그러므로자본가가얻은것과지불한것사이에서우리를맞추어보자.

노동자는자신이일하는동안먹고살수있는정도의임금을필요로한다. 당연히그는소비하면서만생산할수있기때문이다. 사람을부리는자는누구나그에게먹을것과생계유지에필요한것, 아니면그에맞먹는임금을부담해야만한다. 이것은모든생산에서가장먼저해야할몫이다. 나는, 이점에서자본가가자신의의무를다했다고일단인정한다.

노동자는자신의생산에서당장의생계외에도장래의생계에대한보장책을찾아야한다. 그렇지않으면생산의원천은고갈될것이며노동자의생산능력은소실될것이다. 달리말하자면, 해야할노동은마친노동에서끊임없이다시태어나야하는것이다. 이것이재생산의보편적법칙이다. 이리하여소유자농민은 ① 자신의수확속에서, 자신과가족의생계수단뿐만아니라자신의자본을유지, 증진시키고가족을사육할수단, 한마디로말해서계속노동하고항상재생산할수단을찾으며, ② 생산도구의소유속에서, 경작하고노동할토지에대한항구적인보장을찾는다.

자기의노동력 services 을제공하는자가경작할수있는근거는무엇인가? 소유자가자기를필요로한다는추정과소유자가자기를무상으로고용하려는의사를가지고있다는추정된사실이다. 옛날에평민이영주의선심과선의에의해토지를얻었듯이, 오늘날노동자는고용주와소유자의선의와필요에의해일을얻는다. 이

것이바로사람들이임시적 précaire¹ 자격의점유라고부르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임시조건은부당한것이다. 당연히그것은시장에서의불평등을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노동자의임금은노동자의일상적인소비를거의넘어서지못하고내일의임금을보장해주지못하는반면에, 자본가는노동자가생산한도구에서미래를위한독립성과안전을보장받는것이다.

그런데이재생산의효모, 이영원한생명의씨앗, 생산의도구와토대의이러한준비야말로자본가가생산자에게빚지고있는것이며다시는돌려주지않는것이다. 그리고이것은노동자의빈곤, 유한자有閑者의사치, 조건의불평등을만드는기만적인거부행위이다. 사람들이인간의에의한인간의착취라고널리불렀던것이바로여기에서나온다.

실은다음세가지중어느하나여야한다. 즉 ① 노동자는모든임금을제하고자신이생산한것을고용주와함께나눌것이다. ② 그렇지않으면, 고용주는생산노동의등가물을노동자에게돌려줄것이다. ③ 그렇지않으면, 고용주는노동자의고용상태를항상유지해주어야만할것이다. 생산물의분배, 노동의상호성, 항구적인노동의보장, 자본가는이세가지대안중어느하나를피할수없다. 그러나자본가가두번째와세번째조건에만족할리없다. 그는직간접으로자신의사업에힘써준이수천의노동자들에게봉사할수도없고, 그들모두를영원히고용할수도없다. 따라서소유의분배만이남는다. 그러나소유가분할되면, 모든조건들은평등해질것이다. 대자본가들도대소유자들도존재할수없게된다.

따라서콩트씨가자신의가설에따라, 자본가가자신이대가를지불한모든사물에대한소유권을차레로획득하는것을우리에게보여줄때, 그는점점더개탄할만한거짓추리에빠지게된다. 그리고그의논증이늘변함없는만큼, 우리의답변도늘한가지이다.

〈여러노동자들이건물을짓는데고용되어있다. 어떤이는채석장에서돌을고르고, 어떤이는운반하며, 어떤이는다듬고, 또어떤이는제위치에가져다놓는다. 그들하나하나가자기손을거쳐간재료에일정한가치를더한다. 그리고이가치, 즉개개인의노동의산물은개개인의소유이다. 그는가치를창출하자마자곧그것을건물소유자에게팔아버리고건물소유자는그대가로먹을것이나임금을지불한다.〉

〈분할하고통치하라 divide et impera〉. 분할하라, 그러면당신은통치할것이다. 마찬가지로분할하라, 그러면당신은부자가될것이다. 분할하라, 그러면당신은사람들을속일수있을것이며, 그들의이성을흐리게하고, 정의를우롱할수있을것이다. 노동자들을서로떼어놓으면, 각자에게지불된일당이각자가개인으로생산한가치를넘을수도있다. 그러나문제는그점이다. 20 일동안 1,000 명이노동한힘에대해서단한명이 55 년동안노동한것과마찬가지로지불

¹ précaire 는 precor, 즉 〈나는간청한다〉라는말에서나왔다. 왜냐하면양도문서는영주가자신이부리는사람들즉농노의간청에따라경작을허락했다는사실을명시했기때문이다.

두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가용인되는곳에서생산은효용가치이상의비용이들기때문이다.

앞의명제는법률적인성격의것이었으나, 이명제는경제적인성격의것이다. 이명제는, 폭력을기원으로하는소유가결과적으로무가치를낳는다는것을입증하는데쓰인다.

세는말한다. 〈생산은하나의거대한교환행위이다. 교환이생산적이라면생산에들어간모든노동의가치가생산된물건의가치와균형을이루어야만한다. 만일이조건이충족되지않았다면, 교환은불평등했던것이고, 생산자는받은것보다더많이내준셈이다.〉

그런데가치는효용을필수적인기반으로하기때문에, 효용을갖지못한모든생산물은당연히무가치한것이고, 교환될수없으며, 따라서생산에들어간노동을〈지불하는〉구실을다할수없다.

따라서생산이소비와균형을이룰수는있어도결코소비를넘어설수는없다. 왜냐하면효용을생산하는곳에서만실제로생산이이루어지며, 소비의가능성이있는곳에서만효용이존재하기때문이다. 그리하여과잉생산에의해소비되지않고남은모든생산물은그소비되지못한양에대해서는효용과가치를잃은것이며교환대상이될수없다. 따라서무엇이든간에보상받을수없게된다. 그것은이미생산물이아닌것이다.

소비의경우도, 그소비가정당성을가지려면, 즉소비다운소비가되려면효용을재생산해내야만한다. 만일소비가비생산적일경우, 소비가생산물을소모하는일은가치를파손하는것이고, 생산물을완전히쓸모없게만드는것이며, 생산물의값어치를그가치이하로떨어뜨리는것이기때문이다. 인간은응당소모할권한을지닌다. 그러나인간은자신이재생산하는것만을소비한다. 따라서올바른경제활동에는생산과소비사이에서하나의등식이존재한다.

이러한점들을전제로해서, 외부와의교섭이단절된채일정한영역에틀어박혀서사는 1,000 가구의한부족을가정해보자. 우리에게이부족은인류전체를대표할수있다. 지구에널리흩어져있는인류는참으로고립된존재이니말이다. 사실한부족과인류전체의차이는그수적인규모에있을뿐, 경제적인면에서의결과는완전히갈것이다.

이제단지밀만을재배하는이 1,000 가구가생산량의 10% 에해당하는수입을매년현물로그들중 100 명에게지불해야만한다고가정해보자. 이경우불로소득권은사회의생산에대한징수와같다는것을알수있다. 이징수는어디에쓰이는가?

이징수는부족에게식량을공급하기위한것일수없다. 왜냐하면이식량공급은지대와는아무상관이없으니말이다. 또한이징수는결코노동과생산물에그대가를지불하는몫이아니다. 왜냐하면소유자들은다른이들과마찬가지로노동할때

이에반해서, 지주는자신의도구중아무것도내어주지않는다. 그는영원토록 자신의도구에대한대가를지불받으며영원토록그것을보전한다.

사실지주가받는지대는도구의유지와수선에드는비용을목적으로한것이아니다. 이비용은고스란히빌린자의몫으로남으며그도구의보전에관심을가진정도만큼만소유자와관련될뿐이다. 만일지주가그비용을떠맡는다해도, 그는자신 이선불한돈을어김없이되돌려받는다.

요컨대, 이지대는지주가생산에참여하고있다는점을표현하는것이아니다. 그도그런것이이러한참여는대장장이나집수레공의참여와마찬가지로자신의도구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할때만의미를지니며, 이경우지주는더이상소유자일수없게된다.

따라서지주와소작인사이에는가치의교환도노동의교환도이루어지지않는다. 따라서우리가공리公理에서말한것처럼, 소작료는진정불로소득일뿐이며, 한편으로는사기와폭력에, 다른한편으로는무기력과무지에도대를돌본인간탈행위이다. 경제학자들은〈생산물은생산물에게만귀입된다〉라고말한다. 이격언은소유권에대한유죄판결이다. 소유자는스스로도자신의도구에의해서아무것도생산하지못하며어떤대가도치르지않으면서생산물을취득한다. 따라서소유자는기생충이거나좀도둑이다. 따라서소유가권리로서만존재할수있다면, 소유는불가능하다.

〈추론〉 1. 소유권을〈자신의노동의결실을향유할권리〉라고정의한 1793년의공화정헌법은엄청나게잘못된것이다. 그것은다음과같이말했어야한다. 즉소유권은타인의재산과타인의노동과땀의결실을자기마음대로향유하고처분할권리이다.

2. 토지, 가옥, 가구, 기계, 도구, 금전등등을가진자들중에서그것을수리비를초과하는비용으로빌려주는자는기만적인전매꾼이며사기와횡령의죄를면할수없다. 한마디로말하자면손해배상의구실로그러나사실상빌려주는대가로징수하는모든임대료는소유권의행위이며도둑질이다.

〈역사적해설〉 승전국이패전국에요구하는공납은진정소작료와마찬가지이다. 십일조, 재산이전세, 부역그리고 1789년의혁명이폐지한영주부과조등은소유권의여러형태이다. 그리고귀족, 영주, 성직이권자, 성직록수해자따위의이름으로이권리를누리는자들은소유자이외에달리아무것도아니다. 오늘날소유를옹호하는것은혁명을규탄하는것이다.

된것이다. 그러나이 1,000 명이단 20 일만에, 한명의힘으로는 100 만세기동안노력을되풀이해도이주지못할것을해낸것이다. 거래는정당한가? 거듭말하지만, 결코아니다. 당신은개개인의힘모두에대해지불했지만, 집합적인힘에는지불하지않았다. 따라서당신이결코얻지못한집합적인소유권이여전히남는다. 당신은그것을부당하게향유하고있는것이다.

20 일의임금이이많은사람들을 20 일동안먹이고재우며입히기에충분하기를나는바란다. 그러나계약기간이끝난후일거리가없어지면이사람들은어떻게되는가? 그들은생산물을이루어내자마자곧소유자들에게팔아넘기고, 소유자는곧그들을저버릴터이니말이다. 노동자모두의단합된노동덕에확고하게자리잡은소유자는안전한생활을누리고더이상노동과빵의결핍을걱정하지않는데반하여, 노동자는자신의자유를팔아버리고종속시킨바로이소유자의호의외에는달리희망을걸곳이없다. 따라서소유자가자신의안락과권리안에웅크리고앉아서노동자를고용하기를거부한다면, 노동자는어떻게먹고살것인가? 그는비옥한땅을마련하고도거기에씨를뿌리지못할것이고, 안락하고화려한집을짓고도거기에머물지못할것이며, 모든것을생산하고도아무것도누리지못할것이다.

노동에의해우리는평등로나아간다. 우리가내딛는한걸음한걸음이우리를평등으로더욱가깝게인도한다. 그리고노동자들의힘, 근면성, 노력여부가동일하다면, 재산도마찬가지로동일해질것이명백하다. 사실사람들이주장하고또우리가앞에서동의한것처럼, 노동자가자신이창출한가치의소유자라면, 다음과같은사실이뒤따른다.

- 1) 노동하는자가한가한소유자를대신해서얻는다.
- 2) 모든생산은필연적으로집단적인것이므로, 노동자는자기의노동에비례해서생산물과이익에참여할권리를갖는다.
- 3) 모든축적된자본은사회적소유이므로, 누구도배타적인소유권을가질수없다.

이러한추론들은피할수없다. 이추론들만으로도우리의경제전반을뒤흔들고우리의제도와법률들을변혁하기에충분하다. 이러한원리를세운바로그사람들이왜이제와서그원리를따르기를거부하는가? 세 Say, 콩트, 엔스켄등과같은이들이왜소유는노동에서나온다고말하고나서뒤이어선점과시효취득이라는것에소유를불들어매려하는가?

그러나이레변가들이자신의모순과맹목에빠지도록내버려두자. 인민의양식이그들의모호한태도를심판할것이다. 우리로서는하루빨리이양식을제도하고올바른길을보여주도록하자. 평등이다가온다. 이미우리는평등과좁은간격을두고있다. 내일이면이간격을뛰어넘을것이다.

제 6 절 사회에서 모든 임금은 평등하다.

생시몽주의자들 Saint-simoniens, 푸리에주의자들 fouriéristes, 또 일반적으로 오늘날 사회경제와 개혁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깃발 아래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몫을, 각자의 성취에 따라 각자의 능력을.(생시몽)

각자의 자본, 각자의 노동, 각자의 재능에 따라 각자의 몫을.(푸리에)

비록 모양새를 갖추어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노동과 근면의 해취득되는 자연의 생산물들은 모든 종류의 탁월함과 우월성에 대해 주어지는 보상이요 찬가이며, 영광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토지를 하나의 거대한 투기장으로 취급하는데, 이 투기장에서는 이제 창과 칼이 부딪치는 폭력이나 배신의 해가 아니라 획득한 부, 과학, 재능 심지어 덕망의 해가 격이 흥정된다. 요컨대 이들 및 이들 과 더 볼어 누구나 최고의 능력에는 마땅히 최고의 보수가 돌아간다는 것을, 상거래 식이지만 모호함을 피할 수 있는 말투로 표현하자면, 〈보수〉는 성취와 능력에 비례해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이 두 개혁가의 제자들은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공식적인 해석과 어긋날 것이며, 자신들이 내세운 이론의 통일성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부인한다고 해도 하등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두 분파는,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역시 능력의 불평등을 배양했던 자연에 대한 유추를 빌려서 조건들의 불평등을 주장하는 일을 영예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한 가지 사실을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구상한 정치조직이 너무 완벽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항상 자연적 불평등과 일치하리라는 사실이다. 조건들의 불평등 - 나라면 보수의 불평등이라고 말할 것이다 - 이 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능력의 척도를 규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데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²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몫을, 각자의 성취에 따라 각자의 능력을.

각자의 자본, 각자의 노동, 각자의 재능에 따라 각자의 몫을.

생시몽이 죽고 푸리에가 스스로를 신격화한 이후에, 그들의 사도 중 누구도 이 위대한 격언에 대한 과학적 논증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는 푸리에주의자들 중 누구도 이 이중의 경구가 두 가지 다른 해석에 열려 있다는 점을 의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100 대 1 로 내기를 걸겠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몫을, 각자의 성취에 따라 각자의 능력을.

각자의 자본, 각자의 노동, 각자의 재능에 따라 각자의 몫을.

는다. 벌초꾼이 없는 초원은 건초도 그루 풀도가 저다 주지 않는다. 자연은 이용하고 생산할 거대한 원료와도 같다. 그러나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낳지 못한다. 즉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자연의 생산물들은 인간에 대해서는 아직 생산물 이 아니다.

자본, 도구, 기계도 역시 비생산적이다. 망치와 모루는 대장장이나 철이 없다면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방앗간은 제분업자나 곡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빙지 못한다. 도구와 원료를 한꺼번에 집어 넣어 보라. 예컨대 호미와 씨앗을 기름진 땅 위에 뿌린다거나 용광로를 만들어 불을 지펴 놓고 공장문을 닫아 보라. 당신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관찰은, 그의 동료들보다 뛰어난 양식을 지닌 한 경제학자가 이미 제기한 바 있다. 〈세는 자본에 그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자본은 그 자체로는 무기력한 도구이다.〉(자크 드로 J. Droz, 『정치경제학』)

마지막으로, 노동과 자본이 합쳐지더라도 잘 조합되지 못하면 여전히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모래사막을 갈고, 하천물을 휘젓고, 활자活字를 체로 걸러 보라. 이 모든 일은 당신에게 밑도 생선도 책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당신의 노고는, 해로도 토스의 말에 의하면, 페르시아 대왕이 건설케 한 배다리(船橋)를 산산조각 낸 바다를 벌주기 위해 300 만의 병사들이 막대기로 24 시간 동안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두들긴 크세르크세스(Xerxes, 기원전 486~465, 그리스를 침공한 페르시아 왕-웁긴이) 군대의 엄청난 노고만큼이나 비생산적일 것이다.

도구와 자본, 토지, 노동 따위는, 만일 이것들을 서로 떼어서 추상적으로 고려한다면, 비유적 관점에서만 생산적일 뿐이다. 자신의 도구, 생산력, 자신의 토지를 사용한다 그 때에 다른 무엇을 요구하는 소유자는 따라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실, 즉 자본이 그 자체로 무엇인가 생산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상의 생산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케 함으로써 그는 말 그대로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는 셈이다.

〈반론〉 그러나 만일 대장장이나 짐수레공이, 한마디로 모든 제조업자가 자신 이 제공한 도구들의 대가로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만일 토지가 하나의 생산 도구라면, 왜 이 생산 도구는 그 진정한 또는 가상의 소유자에게 생산물의 일부에 대한 몫을 보장해주어서 안 된다는 말인가?

〈답변〉 여기에 바로 수수께끼의 매듭이 있으며, 소유권의 비밀이 있다. 불로 수득권의 기묘한 효과에 대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만 한다.

농기구를 제작하고 수선하는 노동자는 일시 불이든 분할 불이든 〈단한 번〉 그 대가를 지불 받는다. 일단 노동자에게 그 대가가 지불되고 나면, 그가 넘긴 기구는 이미 그의 것이 아니다. 그는 결코 같은 기구, 같은 수리에 대해 이중으로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그가 매년 농민과 나누어 가진다면, 이는 그가 매년 농민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때문이다.

² 생시몽에 따르면, 생시몽파의 사제는 로마 교회에서 본뜬 교황의 무오류성에 의거해서 각인의 능력을 판정해야만 했다. 푸리에에 따르면, 서열과 공적은 입헌제도를 본뜬 표결과 선출에 의해서 정해될 것이다. 이 위대한 인물은 명백히 독자를 우롱했다. 그는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우리는소유자가없이는지낼수없다. 소유권이존재하지않는다면, 농사꾼은지주가없는밭을갈려고서로싸울것이며밭은황폐한채로남을것이다.〉

이렇게, 지주의역할은농사꾼들에게서모든것을빼앗음으로써그들을화해시키는데있다. 오, 이성이여! 오, 정의여! 오, 경제학자들의놀라운과학이여! 이들에따르면, 지주는조개하나를놓고다투고있는두명의나그네앞에서조개를벌려서먹어버리고는이렇게판결한페랭-당댕 (Perrin-Dandin, 라블레의소설, 『팡타그뤼엘』 에나오는인물로아무렇게나재판을하는재판관의전형-웁긴이) 과 마찬가지로이다.

법정은당신들들에게조개껍데기를주는바이다.

소유권에대해이보다더형편없는말을할수있을까?

세는우리에게, 소유자가없다면땅을서로차지하려고싸울농사꾼들이어째서오늘날바로마찬가지의점유를위해서소유자들에맞서싸우지않는가를설명해줄것인가? 이것은명백히농부들이지주들을정당한점유자라고믿기때문이며또한가상假想의권리에대한존중심이이들에게서탐욕을억누르기때문이다. 나는제2장에서소유없는점유만으로도사회의질서를유지하기에충분하다는사실을입증한바있다. 그런데지주가있는농부보다도주인이없는점유자를인정하는것이더어려울까? 자신을희생하면서이른바게으른자들의권리를존중하는, 이일하는자들은생산자와산업가들의자연권을침해하는것인가? 뭐라고! 농사꾼이점유를그만두어그토지에대한자신의권리를잃게된다면, 그는더욱탐욕스럽게될것이라고! 그리고불로수득금을요구하지않는다거나타인의노동에과세하지않는것이소송과싸움의원천이될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의논리는정말기묘하다. 그러나여기서끝나지않는다. 지주가토지의정당한주인이라고인정해보자.

〈토지는하나의생산도구이다〉 라고경제학자들은말한다. 이는옳은말이다. 그러나이들이명사를형용사로바꾸어서 〈토지는생산적인도구이다〉 라고말한다면, 이는극악무도한오류이다.

케네 Quesnay 와옛경제학자들에따르면, 모든생산은토지에서나온다. 반면에스미스, 리카도, 드트라시는생산을노동에서찾는다. 세를비롯해서그의뒤에나타난경제학자들은토지와노동과자본 〈모두〉 가생산적이라고가르친다. 이것은정치경제학의절충주의이다. 진실인즉토지도노동도자본도생산적이지않다. 생산이란이세가지요소, 즉모두가필수적이거나따로떼어놓으면불모인이세가지요소가결합한결과이다.

사실상, 정치경제학은생산, 분배 그리고부가가치의소비를취급한다. 그러나어떤가치인가? 그것은인간의노력에의해생산된가치, 즉인간이자신의용도로원재료에가한변형의결과물이지자연의자생적인생산물이아니다. 인간의노동은손을대는순간에만이루어지며, 인간이이러한노고를다할때에만가치가생산된다. 그때까지는바다의소금, 샘의물, 밭의풀, 숲의나무등은인간에게는존재하지않는것이나다름없다. 어부와어부의그물이없는바다는생선을가져다주지않는다. 벌꿀꾼과벌꿀꾼의도끼가없는숲은꿀나무도목재도가져다주지않

흔히말하듯이가장평이한의미로 in sensu obvio, 즉표면적이고통속적인의미로해석되는이명제는그러나거짓이고모순에차있으면서부당하다. 자유에적대적이고압제를비호하며반사회적인이명제는소유자적편견의절대적인영향력아래서숙명적으로받아들여진다.

우선, 〈자본〉 은보상의기본요인에서제외되어야한다. 푸리에주의자들은, 그들의몇몇팜플릿을통해내가이해하는바로는, 선점권을부정하고노동외에다른소유의원리를인정하지않는다. 비슷한전제아래그들은조금만추론해본다면, 자본은선점권에의해서만그소유자에게이익을가져다주지만, 이러한생산은정당하지않다는사실을이해할것이다. 사실노동이소유의유일한원리라면, 나는어떤다른사람에게소작료를받고경작시키자마자내땅의소유자가될수없을것이다. 우리는이것을논박할여지가없이입증했다. 그런데이것은모든자본에대해서마찬가지이다. 따라서어떤기업에자본을투자하는일은법의엄정한해석에따르자면이자본을등가의생산물과교환하는것이다. 무익해보이는이토론을여기에서되풀이하지말자. 나는 〈자본에의한생산〉 이라불리는것에대해서다음장에서깊이있게다룰것이다.

이렇게자본은교환될수있으나, 소득의원천이될수는없다.

이제, 〈노동〉 과 〈재능〉, 즉생시몽의말을빌리면 〈업적〉 과 〈능력〉 이남는다. 이것들을차례로검토해보자.

보수는노동에비례해야만하는가? 달리말하자면더많이일한자가더많이받는것은정당한가? 이문제에두배로관심을집중할것을독자에게당부한다.

문제를한번에해결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질문을제기하는것으로충분하다. 노동은하나의 〈조건〉 인가아니면 〈전투〉 인가? 내가볼때, 답은의심할여지가없다.

신은인간에게말했다. 〈네얼굴에땀을흘려네빵을먹을지라. 너는몸소네빵을생산하라, 그리고네가스스로의노력을조절하고인도할줄아는만큼너는크고작은즐거움을만끽하면서일할것이다.〉 신은 〈너는네이웃과빵을다투리라〉 고말씀하신것이아니라 〈너는네이웃과함께일하리라. 그리고너와네이웃은모두평화롭게살리라〉 고말씀하셨다. 너무나단순해서때로는모호한해석을넣는이율법의의미를펼쳐보자.

우리는노동에서두가지요소, 즉 〈결합 association〉 과 〈이용재료 matière exploitable〉 를준별해야만한다.

결합된자로서노동자들은평등하다. 그리고한노동자가다른노동자보다더많은보수를받는것은모순이다. 왜냐하면한노동자의생산물은다른노동자의생산물로밖에지불될수없다는점을고려할때, 만일두생산물이불평등하다면그가치의차이즉가장큰생산물과가장작은생산물사이의차액은사회에의해획득될수없으며, 따라서교환도이루어지지않아임금의평등에아무런영향을주지못할것이기때문이다. 그결과, 가장힘센노동자에게는사회적불평등이아니라구태여말하자면자연적불평등이생길것이다 (그의힘과생산적활력은아무에게도상처를주

지않는다). 한마디로말하자면, 사회는평등한생산물들만을교환한다. 사회는사회를위해행해진노동에만대가를지불한다. 따라서사회는모든노동자들에게평등하게지불한다. 이들이사회밖에생산할수있는것은이들의목소리나머리카락의차이정도밖에는사회에영향을미치지못한다.

나는지금스스로불평등의원리를세우고있는듯이보일수도있다. 아니다, 그와정반대이다. 사회를위해이루어질수있는노동, 즉교환가능한노동의합계는운영자금이일정하다면노동자의수가늘어날수록그리고각자에게주어진일의양이줄어들수록커진다. 따라서자연적불평등은, 노동의결합이확대되고더많은사용가치가사회적으로생산됨에따라줄어들게된다. 따라서사회에서노동의불평등을가져올수있는유일한요소가있다면그것은선택권이나소유권일따름이다.

그런데경작, 제초, 수확등으로계산되는이하루당사회적일이 200 제곱미터의면적에대하여평균필요노동시간으로 7 시간을요구한다고가정하자. 어떤노동자는 6 시간만에, 어떤노동자는 8 시간만에, 그리고대다수는 7 시간만에일을마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누구나요구되는양의노동을제공하기만하면투자한노동시간에상관없이임금의평등에대한권리를갖는다.

6 시간만에자기일을끝마칠수있는노동자는자기의힘과활동이더크다는구실로, 자기보다덜속달된노동자의일감을빼앗고그리하여그의노동과빚을강탈할권리가있는가? 누가감히이런주장을고집할수있겠는가? 다른사람보다먼저일을마친이는원한다면휴식을취할수있으리라. 힘을재충전하고영혼의양식을얻고삶을쾌적하게가꾸기위해운동이나유익한일에몰두하는것도좋으리라. 그는누구에게도해를입히지않고이런일을할수있다. 또한다른이에게보탬이되는일을할수도있으리라. 활력, 친분, 근면그리고이로말미암은모든개인적장점은자연의몫이며, 어느정도까지는개인의몫이다. 사회는이들에게합당한응분의평가를부여한다. 그러나사회가이들에게주는보수는그들의능력이아니라그들이생산한것에비례한다. 이렇게각자의생산물은모두의권리에의해제한된다.

만일땅의넓이가무한정이고이용할재료의양이무진장이라고할지라도, 우리는〈각자의노동에따라각자의몫을〉이라는격언을받아들일수가없다. 왜그런가? 다시한번사회는그구성원의수에관계없이그들이생산한생산물로만지불할따름이므로모두에게동일한임금을줄수밖에없기때문이다. 단지, 우리가앞에서한가정에따라아무도강자가자신의장점을활용하는것을막을수없기때문에, 사회적평등의바로한복판에서자연적불평등이라는거추장스러운일이되살아날것이다. 그러나토지는주민의생산력과그들의확장능력의측면에서매우제한되어있다. 더구나생산물의극도의다양성과극단적인노동분업은사회적과업을한층더해내기쉽게만든다. 그러므로바로이생산가능성의한계와생산작업의수월함에의해서절대적평등의법칙이우리에게주어지는것이다.

그렇다, 삶은하나의전투이다. 그러나이전투는결코인간에대한인간의전투가아니라자연에대한인간의전투이며, 우리들각자는몸소여기에참여하지않으면안된다. 이투쟁에서강자가약자를도우려나선다면, 그의선행은칭찬과사랑을

면생산물은값이더싸질것이라고주장했으며나아가소작료의근거를민법에서만찾았다. 이러한견해는민법을소유권의토대로보는견해의논리적귀결이다. 그러면성문화된이성이라할민법이왜이러한독점을옹인했는가? 독점을말하는자는필연적으로정의를배제한다. 그런데소작료가법률에의해공인된독점이라고말하는것은불의가정의를자신의원리로한다고말하는것과마찬가지로모순된이상이기이다.

세는독점자란〈상품에조금도효용을더하지않는자〉이기때문에소유자는결코독점자가될수없다고부캐념에게답한다.

소작인의생산물은얼마만큼의효용을소유자에게서받는가? 소유자는밭을갈고, 씨를뿌리고, 거두어들이고, 낫으로베고, 키질을하고, 잡초를뽑았는가? 바로이와같은작업을통해소작인과그의일꾼들은재생산을위해그들이소비하는원료들의효용을높이지않았는가.

〈지주는토지라는자신의생산도구로상품의효용성을높인다. 이도구는밀을구성하는원료들을어떤상태로받아들여다른상태로돌려준다. 땅의활동은화학작용과같은것이다. 이작용에의해서밀이라는원료는스스로해체됨으로써증대되는식으로일정한변형을겪는다. 따라서땅은효용의생산자이다. 그리고그것(땅?) 이그소유자에게돌아갈이윤이나소작료의형태로그효용을지불받고자할때, 이는소비자가지불하는것에대한대가로소비자에게아무것도주지않고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그것은생산된효용을소비자에게주는바, 바로이효용을생산하기때문에땅은노동과마찬가지로생산적인것이다.〉

이모든것을명확히밝혀보자.

농사꾼을위해농기구를제작하는대장장이, 수레를만들어주는목수, 농사꾼의허간을짓는석공, 그리고자신들이준비한도구로농업생산에기여하는골조공, 광주리공등은모두효용의생산자이다. 이자격으로그들은생산물의일부에대한권리를가진다.

〈의심할나위가없다. 그러나토지는마찬가지로하나의도구이며, 그사용에대해서는대가가지불되어야한다. 따라서...〉라고세는말한다.

토지가하나의생산도구라는것에나는동의한다. 그러나그것을만든사람은누구인가? 소유자인가? 소유권의효력에의해, 땅에스미어있는이〈도덕적자질〉에의해, 땅에원기와비옥도를더해주는것은바로소유자인가? 소유자의독점이라는것은바로여기에서생긴다. 그는자신이도구를만들지도않으면서그사용료를챙기니말이다. 차라리조물주가나타나서스스로소작료를요구하고나설지여다 - 그러면우리는조물주에게지불하리라. 아니면소유자가스스로그대리인이라고자처한다면위임장을보여줄지여다.

세는〈소유자의노고는자신에게는수월한것이다. 나는이를인정한다〉고덧붙인다.

고백은솔직하다.

초과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소작제는 인구 증가로 말미암아 열등지의 경작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야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의미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토지의 비옥도 차이가 어떻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져올 수 있는가? 〈부식토〉의 다채로움이 어떻게 입법과 정치의 원리를 낳는가? 이형이상학은 내게 너무나 미묘하고 심원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만 더 해줄 뿐이다. 면적이 같은 토지 A와 B가 있다고 하자. A는 주민 1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반면에, B는 9,000명만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인구증대로 인해 A에 사는 주민들이 B를 경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A 땅의 지주들은 A 땅을 빌린 소작인들에게 10대 9의 비율로 산출된 지대를 받는다. 내가 생각건대, 리카도, 매컬록, 밀등이 말한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만일 토지 A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민을 먹여 살리고 있다면, 즉 A 토지의 주민들이 인구수를 고려해 볼 때 먹고 살기에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소작료를 지불할 수 있는가?

만일 이들이 토지의 차이가 소작료의 〈원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계기〉였다고 말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단순한 관찰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는 셈이다. 즉 그것은 소작료의 근거는 평등의 욕구에 그 원리를 두고 있으리라는 사실이다. 사실,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면, 그 누구도 반대급부 없이 열악한 땅을 경작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따라서 리카도, 매컬록, 밀에 따르면, 소작료는 이유과 노고를 보상해 줄 요량으로 생긴 일종의 손해보상금인 셈이다. 이 실제적인 평등의 기제는 좋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자. 하지만 그의 도는 나무랄 데 없는 것이었다. 리카도, 매컬록, 밀은 이로부터 소유권에 유리한 어떤 논거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 이들의 이론은 그들 자신과 어긋나는 것이며 그들의 목을 죄는 것이다.

맬서스 Malthus는 소작료의 원천은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식량을 제공하는 토지의 능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로서는 맬서스에게 왜 성공적인 노동이 게으른 자에게 그 생산의 결과물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가를 묻고 싶다.

그러나 맬서스님은 자신이 말한 사실을 설명하는 데서 착각하고 있다. 물론 토지는, 만일 〈경작자〉라는 말이 소작인만을 뜻한다면, 그것을 경작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식량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 재단사는 몸소 입을 옷보다 더 많은 옷을 만들며, 가구공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가구를 만든다. 그러나 모든 직업들이 서로를 전제로 하고 서로를 지탱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 농사꾼만이 아니라 온갖 직업인들, 심지어 어의사나 교사에 이르기까지 〈토지의 경작자〉로 말해지며 또 그래야만 한다. 맬서스가 소작료에 적용한 원리는 상업의 원칙이다. 그런데 상업의 기본 법칙은 생산물의 등가 교환이므로, 이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모두 법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맬서스의 그릇된 평가는 정정되어야 한다.

스미스 Smith를 논평하면서 부캐넘 Buchanam은 소작료를 독점의 결과로 간주했으며 노동만이 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독점이 없었다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도움은 자유롭게 베풀어져야 하며 무력에 의해 강제되거나 돈을 받고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경주 트랙은 같은 것이며 지나치게 길지도 지나치게 험난하지도 않다. 끝까지 달린 사람은 누구나 결승점에서 대가를 받는다. 그러나 반드시 일등일필요는 없다.

인쇄소에서 노동자는 대개 도급제로 일한다. 식자공은 조판할 수 있는 활자수에 따라, 인쇄공은 인쇄한 종이매수에 따라 봉급을 받는다. 여기에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재능과 기술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일거리가 없는 것 calence 즉 실업에 대한 걱정이 없는 한, 조판일이나 식자일이 부족하지 않은 한, 누구나 자유롭게 열심히 일에 전념하며 자기 능력을 펼친다.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번다.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번다. 그러나 일거리가 줄기 시작하면, 식자공과 인쇄공은 일감을 나눈다. 독차지하려는 자는 도둑이나 배신자만큼 미움을 산다.

이 인쇄업의 관행 안에 경제학자나 법률가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한 하나의 철학이 있다. 우리의 법학자들이 인쇄소에서 볼 수 있는 분배적 정의의 원리를 자신들이 만든 법전에도 입혔더라면, 그들이 이러한 민중의 본능적 관행을 비굴하게 흉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고쳐서 일반화시키기 위해 고찰했더라면, 이미 오래전부터 자유와 평등은 난공불락의 기초 위에 터잡았을 것이며, 더 이상 사람들은 사회적 차별의 불가피성이나 소유권 따위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건강한 개개인의 육체의 수에 따라 노동이 할당된다면, 하루당 평균 노동시간은 프랑스의 경우 5시간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정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노동자들의 불평등을 말하는가? 불평등을 낳는 것은 로베르 마케르 (Robert Macaire, 19세기 중엽 통속극의 작중 인물로 은행가, 실업가 등 현대 판도독의 전형-윙킨이) 의 〈노동〉이다.

〈많이 노동한 자는 많이 번다〉라는 의미로 해석된 〈각자의 노동에 따라 각자의 몫을〉이라는 원리는 따라서 명백히 잘못된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나는 경제학적인 오류, 즉 사회적 노동에서 일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물리학적 오류, 즉 생산 가능한 물건의 양이 무제한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자기의 일을 반밖에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텐가? 무척 난처할 것이 아닌가?〉 아마도 이들은 그들이 받은 절반치 임금에 만족할 것이다. 자신들이 제공한 노동에 따라 지불을 받았으므로,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각자의 성취에 따라 각자의 몫을〉이라는 격언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것이 바로 평등의 법칙이다.

게다가 경찰제도나 산업 조직에 관련된 많은 난관이 여겨서 제기될 수도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단 한 마디로 답할 것이다. 이 모든 난관은 평등의 원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어떤 일은 늦장을 부리면 생산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런데 사회는 몇몇 사람들의 태만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며, 노동권에 대한 존중 때문에, 이들이 거부한 생산품을 사회가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장만하지도 못한다는 말인가? 이 경우에 봉급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사회에 돌아가야 한다. 사회는 스스로의 힘으로든 아니면 대표자들에게 의해서든, 그러나 항상 일반적 평등은 침해되지 않고 나태한 자들만이 자신의 태만 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중단된 노동을 해나갈 것이다. 게다가 사회는 뒤쳐진 자들에 대해 너무나 혹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사회 자체의 존속을 위해서 악폐를 감시할 권리를 갖고 있다.

사람들은 또 덧붙일 것이다. 〈모든 산업에는 지도자, 훈육자, 감독관 등이 필요하다. 이들은 그러한 과업에 종사해야 하는가?〉 아니다, 지도하고, 감시하고, 훈육하는 것이 이들의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들 가운데서 노동자들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하며 피선거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이든 교육이든 모든 공적 직위들이 다 마찬가지이다.

이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노동을 노동자의 수에 따라 분배할 필요를 입증한다. 사회적 과업 즉 평등한 과업은 성취할 수 있게끔 모두에게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과, 다른 노동자의 생산품에 의해서가 아니면 노동자에게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은 보수의 평등을 정당화해 준다.

제 7 절 능력의 불평등은 재산의 평등의 필요조건이다.

당신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론이 사실 생시몽의 격언의 두 번째 구절을, 푸리에의 격언의 세 번째 구절을 이루고 있다.

반론은 다음과 같다: 해야 할 노력이 모두 한결같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아주 뛰어난 재능과 지력을 요구하는 것도 있으며, 이러한 우수성 자체가 값어치를 낳는다. 예술가, 학자, 시인, 정치인 등은 그들의 탁월성에 준해서만 평가받으며, 이러한 탁월성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등한 관계를 파괴한다. 지식과 재능의 이 최고 권위자들 앞에서 평등의 법칙은 사라진다. 그런데 평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인에서 소설가로, 조각가에서 채석장이로, 건축가에서 석공으로, 화학자에서 요리사 등으로 내려간다. 능력은 등급지어지고, 목표와 속屬과 종種으로 세분된다. 재능의 양극단은 중간 단계의 재능들에 의해서 연결된다. 인류는 거대한 계서제를 이루며, 이 계서제 안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이 생산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긴 값어치에서 자기의 진가를 찾는다.

이러한 반론은 늘 만만하게 보였다. 그것은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평등의 주장자들에게도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된다. 그것은 전자를 엄청난 오류 속에 몰아넣었으며, 후자로 하여금 믿기 어려운 정도의 어설픈 말을 내뱉게 했다. 그라쿠스 바뵈프 (G. Babeuf, 1760~1797, 프랑스의 혁명가, 평등주의 음모 혐의로 처형됨-옴긴이) 는 모든 우월성을 〈단호히 배격하고〉 심지어는 〈사회적 재앙으로 고발하

는 거래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에게는 하나의 공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온전자금의 소유자라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산업가들은 아무에게도 이 자를 지불할 의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봉급 및 경비와 함께 자본의 이자마저도 공제한 연후에 비로소 이익을 계산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대금업자들은 자기 수중에 가능한 돈을 남겨 두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에는 필연적으로 이자가 따르는 만큼, 만일이 이자가 누군가의 예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자본금에서 빠져나와 그만큼 자본이 줄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불로소득권에 의해서 자본은 스스로에게 상채를 입힌다. 파피니아누스 (Papinianus, 고대 로마의 법률학자-옴긴이) 가 다음과 같은 우아하고 힘찬 문구로 표현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이자는 총액을 잡아먹는다 (Foenus mordet solidum)〉. 여기서 너무 자주라틴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이는 일찍이 고리대금업자가 장능했던 국민에게 바치는 경의인 것이다.

첫 번째 명제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無에 대해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명제에 대한 검토는, 경제학자들이 그토록 논쟁을 일삼았던 소작료의 기원에 대한 검토와 매한가지이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쓴 글을 읽을 때면, 나는 추악함과 몰상식에서로 겨루고 있는 이 명칭한 구절들로 인해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 잔인한 결말만을 빼버리면, 이는 달에 사는 코끼리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리다. 도둑질, 공갈, 횡령에 지나지 않고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법한 기원을 찾으려 하는 것은 실로 소유자가 내보이는 어리석음의 절정이며, 충분히 계발될 수도 있을 정신이 편벽한 이기주의에 빠져 든 최고의 주술이다.

세는 말한다. 〈농민이 밀재배에 드는 원료들을 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 중에는 우리가 밭이라고 부르는 큰 도구가 있다. 밭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작인에게 지나지 않는다면, 농민은 이 도구를 생산에 사용한 대가를 소유자에게 지불한다. 소작인은 그 비용을 구매자에 의해서 보상받고, 그 구매자는 다른 구매자에 의해서 보상받는 식으로 중국에는 생산물이 소비자에게 이른다. 그러면 소비자는 애초의 지불금에 더해서 생산물이 자기 손에 들어오기까지 든 일체의 지불금을 다 갚는 셈이다.〉

생산물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연달아 불어난 지불금은 제쳐두고, 여기서 우리는 최초의 지불금, 소작인이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지대만을 다루도록 하자. 소유자가 지대를 자신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자.

리카도 Ricardo, 매크록 Macculloch, 밀 Mill 에 따르면, 본래의 미에서 소작료란 〈가장 비옥한 토지의 생산물을 그보다 열악한 토지의 생산물과 비교할 때의

급수의 다섯번째항이 될 것이며, 3% 의이자율에따르는 그소득은 비율을 3 으로 하는 산술급수의 다섯번째항이 된다.

100 200 300 400 500

3 6 9 12 15

이런 종류의 대수표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아주 진기한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얻을 수 있다. 소유자들이 아주 높은 등급까지 계산해서 자기 집에 걸어놓은 이 대수표는 우리에게 놀라움에 놀라움을 더해줄 것이다.

불로소득권의 〈대수〉 이론에 의하면, 소득과 합산한 재산은 〈그단위수를 100 으로 나누어 이자율을 곱한 총액과 같은 수치〉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 만 프랑으로 평가되고 5% 의 비율로 임대된 가옥은 다음 식 ($100,000 \times 5 \div 100 = 5,000$) 에 의해 5,000 프랑의 소득을 가져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2.5% 비율로 3,000 프랑인 토지는 다음 식 ($3,000 \times 100 \div 2.5 = 120,000$) 에 따르면 12 만 프랑의 가치가 된다.

첫번째 경우에 이자의 증가를 나타내는 급수의 비율은 5 이며, 두번째 경우에 2.5 이다.

〈비평〉 소작료, 지대, 이자 등의 이름으로 알려진 불로소득금은 1 년단위로 지불된다. 집세는 매주, 매월, 매년단위로 지불된다. 이윤과 이익은 교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생긴다. 따라서 불로소득금은 시간에 비례할 뿐만 아니라 사물에 비례한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고리대는 암과 같이 증식한다 (faenus serpit sicut cancer)〉 라고 말했던 이유이다.

2. 보유자에 의해 소유자에게 지불되는 불로소득금은 보유자에게는 완전한 손실이다. 왜냐하면 만약 소유자가 그가 받은 불로소득에 대한 대가로, 그가 보유자에게 허용해 준 것이 상의 그무엇을 잃어버려야 한다면, 그의 소유권은 완전할 수 없으며 그는 〈최상의 법으로 (jure optimo)〉, 〈완전한 법으로 (jure perfecto)〉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로소득권에 의해서, 선점을 허용한 대가로 선점자의 손에서 소유자의 손으로 넘어간 모든 것은 소유자에게는 영원히 획득되는 것이고, 선점자에게는 완전한 손실이 되는 것이다. 이제 중여, 자선, 노동에 의한 임금, 인도한 상품의 가격 등에 의해서가 아니면 그무엇도 선점자에게 되돌아올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로소득은 빌린 자에게는 완전한 손실인바, 이는 〈사물은 분해되어 소멸한다 (res perit solvendi)〉 라는 라틴어가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3. 불로소득은 국외자에게 맞서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유자에게 맞서 발생한다. 사물의 지배자는 소유자로서의 자신과 점유자로서의 자신을 구별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이용한 대가로, 그가 제 3 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이용료를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는 셈이다. 따라서 자본은 그것을 빌린 차용인이나 출자 받은 자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자본가 자신에게서도 이자를 낳는다. 실제로, 내아파트의 집세 500 프랑을 받는 대신에 내가 직접 그곳에 살며 누린다면, 나는 내가 포기한 만큼의 집세에 대해나 자신에 대한 채무자가 되는 셈이다. 이원리

기〉를 원했다. 자신이 원하는 공동체의 건물을 짓기 위해 그는 모든 시민들을 가장 키가 작은 이의 수준으로 낮추었다. 우리는 무지한 유권자들이 지식의 불평등을 배척하는 것을 보았으며, 나로서도 언젠가 누군가가 미덕의 불평등에 맞서 들고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추방당했고,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셨으며, 에파미논다스 (Epaminondas, 기원전 418~362, 테베의 장군, 정치가-윙킨이) 는 방탕하고 우둔한 대중 선동가들보다 이성과 덕망에서 앞선다는 이유로 재판정에 섰다. 맹목적이고 부에 짓눌린 대중에게 재산의 불평등이 새로운 압제자의 출현을 두려워할 이유를 주는 한, 이러한 어리석은 짓은 되풀이될 것이다.

우리 주변 아주 가까운 데서 눈에 띄는 것보다 더 기괴한 것은 없으리라. 그리고 때로는 진실 그 자체야말로 가장 그럴듯한 법이다. 장자크루소는 〈우리가 매일 보고 지나치는 것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관찰하려면 많은 철학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리고 달랑베르 (D'Alembert, 1717~1783, 프랑스의 계몽철학자-윙킨이) 는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진실도, 주의를 기울여보지 않는 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한다〉 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의 족장격인 세이 - 나 는 두 인용문을 세에게서 빌렸다 - 는 이 인용문들을 잘 인용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장님을 비웃는 자는 안경을 꺼야 할 것이며, 그를 알아본 자도 근시안에는 불과하다.

놀라운 일이다! 사람들을 그토록 놀라게 한 것이 평등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평등의 조건이라니! 자연의 불평등이 평등의 조건이라니! 이 무슨 궤변인가! 내가 착각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주장을 다시 되풀이한다. 즉 능력의 불평등은 재산의 평등의 〈필수〉 조건이라고.

사회에서는 두 가지 사실, 즉 〈기능〉 과 〈관계〉 를 구별해야 한다.

(1) 〈기능〉 노동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완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일상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수공업자는 자기의 일 *métier* 을 알아야만 한다. 노동자가 자기의 일을 충실히 숙지하므로 여기에서는 기능의 담지자와 기능사이에 등식이 성립한다.

인간사회에서 기능들은 서로 비슷하지 않으며, 따라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존재해야 한다. 게다가 어떤 기능들은 더 큰 지성과 능력을 요구하며, 따라서 우수한 정신과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성취해야 할 일이 필연적으로 수완가를 부르기 때문이다. 필요는 관념을 낳고, 이 관념은 생산자를 만든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불러일으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지성이 스스로 자문하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깊이 깨달은 것만을 열렬하게 원하며, 우리가 잘 깨달을수록 더욱더 잘 생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능은 필요에 의해, 필요는 욕구에 의해, 그리고 욕구는 즉각적인 지각과 상상에 의해 주어지므로, 상상을 담당하는 지성역시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셈이다. 따라서 해야 할 어떠한 노동도 노동자보다 우월하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능이 기능의 담지자를 부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기능의 담지자가 기능에 앞서 존재한다.

그런데 자연의 경제를 우러러보자. 우리가 안고 태어났으나 우리 개인들의 고립된 힘만으로는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이 무수한 필요들에 대하여, 자연은 개체에게는 주어진 지 않은 힘을 집단 *espèce* 에게 주지 않았는가. 여기에서 〈업무의 전통〉에 근거한 원리, 즉 〈분업〉의 원리가 나온다.

게다가, 어떤 필요들은 충족되려면 인간의 지속적인 창조를 요구하는 반면에, 어떤 다른 필요들은 단 한 명의 노력만으로도 몇 백만 명을 그것도 몇 세기 동안이나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복과 식량의 필요는 끝없는 재생산을 요구한다. 반면에, 우주 체계에 대한 지식은 단 두 세 명의 우수한 사람에 의해서 영구히 획득될 수 있다. 이를테면 하천의 영속적인 흐름은 우리의 통상을 유지하고, 우리의 기계를 돌린다. 그러나 태양은 하늘 한복판에서 홀로 세상을 비춘다. 자연은 노동자나 목자들을 창조해 내듯이 그렇게 많은 플라톤, 베르길리우스 (Vergilius, 기원전 70~19, 고대로마의 시인-유품인), 뉴턴, 퀴비에 Cuvier 등을 창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자연이 원하는 바는 천재의 희소성을 천재가 만들어 낸 생산물들의 내구력에 비례시키는 일이며, 동시에 능력들의 수를 각각의 충분함 여부에 따라 조절하는 일이다.

나는 여기서 사람들의 재능과 지성의 차이가 우리의 개탄할 문명에서 유래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날 〈능력의 불평등〉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은 조건에서라면 사실 〈능력의 다양성〉에 다름 아닌 것인지 묻고자 하지 않는다. 최악의 입장에서서, 나는 내가 사람들을 기만하려 하거나 난점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을 사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재능의 온갖 불평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자 한다.³ 평준화를 좋아하는 어떤 철학자들은 지력은 누구나 대등하며 차이점은 교육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고백컨대, 나는 이러한 학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학설이 실령진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이른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들이 다 균등하다면, 그 능력들이 어느 정도까지 힘을 다 하든 간에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누구도 강제당하지 않으므로), 가장 잘 보상받아야 할 것은 조야하고 거칠며 때로는 매우 힘겨운 기능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각자의 성취에 따라 각자의 몫을〉이라는 원리에 못지 않게 평등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다른 사회를, 즉 모든 종류의 재능이 필요의 수에 비례하고 기능의 계층제를 존중하면서도 생산자가 개인에게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생산할 것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회를 내 눈앞에 제시해 보라.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재산의 평등을 추론해 낼 것이다.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요점이다.

³ 나는 여기서, 조건들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굳이 특정인의 성향과 재능의 천박함을 들먹거리는지를 떠올리지는 않겠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마음과 정신의 수치스러운 비속성은, 소유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던져진 빈곤과 비천에서 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오겠는가? 인간성을 거세하는 것은 바로 소유이다. 그런데 바로 이 소유가 인간을 메마른 고목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수목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파문 anathème〉인데, 이는 위에서 말한 경우 외에, 소유자가 부재하는 경우라도 그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을 금지하는 것이며, 소유를 침탈한 모든 자들을 신성모독, 불명예, 벌금형 따위에 처하고 세속 권력에 인도한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봉헌 dédicace〉인데, 이에 의해서 소유자 즉 사물의 수호인으로 정해진 수호성인은 신이 성소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거기에 거하게 된다. 이러한 봉헌 효과에 의해서, 사물의 실체가 말하자면 소유자의 인격으로 전화되며, 이 인격체가 그 사물의 형질과 외양 아래 자리잡게 된다.

법률학자들이 내세우는 순수한 교리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툴리에 Toullier 는 말한다. 〈소유란 사물에 내재하는 ‘도덕적 특질’이자, 그 사물을 소유자와 결부시켜 주며 그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끊어질 수 없는 ‘실재적인 관계’이다.〉 로크는 신이 질료에 〈지력〉을 불어넣지 않았을까 하고 정중하게 의문을 표명했다. 툴리에는 소유자가 질료에 〈도덕성〉을 부여한다고 확언한다. 소유자를 신격화하는 데 달리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는 과찬이 아니다.

〈소유는 불로수득의 권리이다.〉 즉 그것은 노동하지 않고 생산하는 능력이다. 그런데 노동하지 않고 생산한다는 것은 무로부터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한마디로 말하자면 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질료에도 덕성을 부여하는 일보다는 덜 힘든 일일 터이다. 따라서 법률학자들이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은 성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일이다. 〈내가 말했다시피, 당신들은 신이시며, 모두 지고하신 그분의 아드님들이십니다.〉

〈소유는 불로수득의 권리이다.〉 우리에게 이 공리는 『묵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이름과 같은 것인바, 이 이름 안에 그 짐승의 온갖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 이 이름의 신비를 푸는 자는 모든 예언의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짐승을 물리칠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렇다! 우리가 소유라는 스프링스를 무찌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공리를 완벽하게 해명함에 의해서이다. 이명약관화한 사실, 즉 〈불로수득권〉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이 도회한 뱀의 꿈틀대는 파리안 에까지 추적해 들어갈 것이고, 이가 공할 춘충, 벗어 던진 거대한 허물자루는 적에게 내맡기면서도 그 무수한 흡반 吸盤이 달린 머리는 늘 가장 강한 자의 칼도 피해 내는 이 괴물이 내보이는 치명적인 휘감기의 횡수를 셈할 것이다. 괴물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용기 외에 그 무엇이 필요하다. 마법의 지팡이로 무장한 프롤레타리아가 대적하고 나서기 전까지 이 괴물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쓰여 있지 아니한가.

추론 | 1. 불로수득의 양은 사물에 비례한다. 이자율이 얼마든 간에, 즉 이자율을 3%, 5%, 10% 로 올리든, 아니면 1/2, 1/4, 1/10 로 낮추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자율 증가의 법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 법칙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화폐가치로 평가된 모든 자본은 100 을 비율로 하는 산술 급수의 한 항으로, 그리고 이 자본이 가져오는 소득은 이자율을 비율로 하는 또 다른 산술 급수의 대응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본금 500 프랑은 비율을 100 으로 하는 산술

는단한가지만, 즉불로수득(不勞收得, aubaine : aubaine 은원래옛날에귀화하지않는외지인이죽을때남긴재산을해당지역의영주가차지하는것을뜻했으나, 오늘날에는힘안들이고부당하게취득한모든재산을뜻한다. 여기서는불로수득으로옮긴다-옮긴이)의권리만을다루어보도록하자.

2. 이명제는보편적으로받아들여지는것이다. 이명제를부인하는자는누구나사실들자체를부인하는셈이며, 그즉시로보편적관행과어긋나게된다.

3. 이명제는명약관화하다. 그도그럴것이이명제가표명하는사실은늘현실적이든임의적이든소유를동반하기마련이며, 소유가스스로를나타내고확립하며주장하는것은특히이사실에의해서이기때문이다.

4. 마지막으로, 이명제를부인하는것은자체모순이다. 불로수득권은실질적으로소유에내재하는것이며소유와아주긴밀하게결부되어있는만큼, 불로수득권이존재하지않는곳에서는소유란무의미하다.

〈비평〉 불로수득은그것을낳은사물에따라여러가지이름을지닌다. 토지에대해서는〈소작료 fermage〉, 가옥및가구에대해서는〈임대료 loyer〉, 영구대여에대해서는〈지대 rente〉, 금전에대해서는〈이자 intérêt〉, 교환에대해서는〈이익 bénéfice〉, 〈벌이 gain〉, 〈이윤 profit〉 - 세가지를임금, 즉노동에대한정당한대가와혼동해서는안된다 - 등이다.

불로수득은일종의국왕특권, 즉유형또는무형의신서信誓에서유래하는것으로, 그명목적이고관념적인선점에근거해서소유자의권한에속한다. 소유자의표찰이물건에붙는다. 이것만으로그누구도〈소유자의〉허가없이이물건을선점할수없도록하기에충분하다.

소유자는자신의물건을선점할권리를무상으로양도할수있으나통상적으로는매각한다. 실제적으로이매각은사취이자형령이다. 그러나소유의권한이라는법적허구에의해이러한매각은, 그이유를알지도못하면서다른경우에서라면엄중히처벌받지만, 소유자에게는이윤과정의의원천이된다.

소유자가자신의권리를제공하는대신요구하는몫은금전적표식으로, 아니면예상되는생산물에대한현물배당몫으로표현된다. 따라서소유자는불로수득권의덕에거두기는하나발을갈지않고, 수확은챙기나경작하지는않으며, 소비는하나생산을하지는않고, 향유하지만아무일도하지않는다. 소유의신들은『시편』작가(다윗을가리킴-옮긴이)의우상들과는전혀다르다. 후자는손이있으나아무것도만지지않는다. 반면에전자는〈손이있으므로만진다(manus habent et palpabunt)〉.

불로수득권을확립하는절차는신비롭고초자연적이기까지하다. 옛날에비교단에입회하는의식절차가그러했듯이소유자의서임에는대단한예식이따른다. 그것은첫째로, 사물의〈축성 consécration〉이다. 축성은누구나소유자의서명이적힌허가장을얻어그의물건을사용하고자할때마다그에합당한공물을소유자에게바쳐야만한다는사실을알리는것이다.

(2) 〈관계〉 노동의요소를다루면서, 나는같은종류의생산적봉사에서사회적과업을수행하는능력이누구에게나주어져있기때문에개개인의힘의불평등이보상의불평등을낳는근거가될수없다는사실을보여주었다. 그럼에도어떤능력들은어떤종류의봉사에는전혀유용해보이지않으며, 인간의재능을둘러놓은것은종류의생산물에만제한한다면즉시로수많은무능력이생겨날것이고, 따라서엄청난사회적불평등이나타날것이라고말하는것은정당하다. 그러나내가구태여말하지않아도누구나재능의다양성이이러한난점을방지해준다는사실을알것이다. 이것은매우자명한진실이므로여기서더거론할필요가없다. 따라서문제는, 한가지같은기능을수행하는노동자들이서로평등하듯이기능들역시서로평등한가치를입증하는일로귀착된다.

사람들은내가천재성, 지식, 용기등을거부하는것에, 달리말하자면세상사람들이감탄해마지않는모든우월성들, 위엄에대한경의, 권력과부에서오는영예따위를거부하는것에놀란다. 그러나거부하는것은내가아니다. 그것을거부하는것은바로경제이고, 정의이며, 자유이다. 자유! 이는논에서처음으로나는그이름을일깨운다. 자유로하여금스스로변론에나서게하고자신의승리를찾도록하자.

모든거래는생산물이나용역의교환을목적으로하므로〈상행위〉로규정할수있다.

상거래 commerce 를말하는자는동등한가치의교환을말한다. 그도그럴것이가치가동등하지않고손해를본계약당사자가그사실을알아차린다면, 그는교환에동의하지않을것이며상거래란이루어질수없기때문이다.

상거래는자유로운사람들사이에서만이루어진다. 물론강압과사기에의해서거래가이루어질수도있지만거기에는상거래란존재하지않는다.

자유롭다는것은이성과능력을향유하며열정에눈이멀지않고두려움에강제되거나방해받지않으며허위에기만당하지않는다는것을말한다.

그런데어떤교환에서나계약당사자들중한쪽이다른한쪽에손해를끼치고서는아무것도얻을수없다는일종의도덕적의무가존재한다. 즉상거래가정당하고진실되기위해서는모든불평등에서벗어나야만한다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상거래의첫번째조건이다. 두번째조건은상거래가자발적이어야한다는것이다. 즉당사자들끼리자유롭고충분한이해를가지고거래해야한다.

따라서나는상거래또는교환을일종의사회적행위로정의한다.

주머니칼을얻기위해자기마누라를팔고, 유리알을얻기위해아이들을팔며, 심지어술한병을얻기위해자기몸을파는흑인은자유롭지않다. 그가거래하는인육상인은그와한동아리가아니라그의적이다.

땀한조각을얻기위해몸을바쳐일하고, 마구간에서자기위해궁궐을짓고, 누더기를걸치기위해아주비싼천을짜고, 아무것도없이지내기위해모든것을생산하는, 문명사회의노동자들은자유롭지않다. 그가몸바쳐일하는주인은임금과용역의교환에의해그와한동아리가되는것이아니라그의적이다.

사랑으로조국에봉사하는것이아니라두려움에끌려조국에봉사하는병사는 자유롭지않다. 그의동지들, 그의상관들, 장관또는군사재판기구들, 이모두가그의적이다.

토지를빌린농민, 자본을빌린실업가, 통행세, 염세鹽稅, 특허세, 영업세, 인두세, 동산세등등을바치는납세자, 그리고이들을대표해서표결하는대의원, 이들모두는지성도자신의행동에대한재량도갖고있지않다. 그들의적은바로소유자들, 자본가들그리고정부이다.

사람들에게자유를주고그들의지성에불을밝혀서자신들이맺은계약의의미를알도록하라. 그러면당신은재능과지식의우월성에조금도구애됨이없이가장완벽한평등이그들사이의교환을주재하는것을볼수있다. 그리고당신은상업적사고의범주에서는, 즉사회의영역에서는우월성이란단어가아무의미도갖지못함을알수있을것이다.

호메로스가내게자신아인쓰시를잃어준다고하자. 나는이송고한천재에게귀를기울인다. 단순한목자요천한일꾼인나는그에비하면아무것도아니다. 사실, 작품과작품을비교한다면, 『일리아드』에견주어볼때내가만든치즈나내가만든누에콩이무슨가치가있겠는가? 그러나그의불후의시를대가로호메로스가내게서가진것모두를빼앗아가고나를노예로삼으려한다면, 나는그의노래를듣는즐거움을포기하고그를물리칠것이다. 나는『일리아드』를안들으면그만이고, 정필요하다면『아이네이스』를기다릴수있다. 반면에호메로스는내가만든생산물없이단하루도버틸수없다. 그러므로호메로스로하여금내가제공해야하는아주보잘것없는것이라도받도록하자. 그리고나는그의시를통해배우고, 용기를얻고, 위안을받도록하자.

당신은외칠것이다: 뭐라고! 인간과신을노래하는자의대가가이것이라고! 수치와고통이따르는은전恩典이라니! 이무슨야만스러운관용인가! 소리치지마시기바라오. 소유는시인을크로에수스(Croesus, 기원전 6 세기리디아의왕, 전설적인부호-웁긴이)로만들기도하고거지로만들기도한다. 평등만이지인에게영예를부여할줄알고, 갈채를보낼줄안다. 그렇다면무엇이문제인가? 노래하는자의권리와듣는자의의무를규정하는일이다. 그런데이문제를해결하는데아주중요한가지사항을유의하자. 즉파는자와사는자, 두당사자는모두자유로우며그순간부터각자의권리주장은아무효과가없다는사실, 그리고한쪽이자신의시에대해다른한쪽이자신의은전에대해가질수있는올바른또는과장된견은계약조건에아무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사실을말이다. 우리는판가름내리는기준을재능에대한고려가아니라생산물에대한고려에두어야한다.

아킬레우스 (『일리아드』에나오는그리스의영웅-웁긴이) 의시인이마땅한보수를얻기위해서는우선자신을상대방에게납득시키는일부터시작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러고나서야그의시와얼마간의급료사이의교환은자유로운행위이자동시에정당한행위가될것이다. 즉시인의급료는그의생산물과동일해질것이다. 그렇다면이생산물의가치는무엇인가?

이실현되고있다는사실을, 우리가찾아나서거나원하지않았는데도도처에서조건의평등을세우게될순간이다가오고있다는사실을, 그리고평등과더불어, 평등안에서만, 평등에의해서만, 자연과진리에따른정치질서가수립될것이라는사실을우리는마침내깨닫게될것이다.

인간의열정이란얼마나맹목적이고완고한가를이야기하고자할때사람들은, 만일진리를부정하는데에무엇인가얻을것이있기만하담녀누구나서슴지않고산술적진리의확실성을뒤흔들어놓을방책을찾을것이라고말하곤한다. 지금이바로그런진기한경험을할기회이다. 나는소유를그고유한경구들에의해서가아니라산술에의거해서공격한다. 그러니소유자들로하여금나의계산을검증할준비를하도록하자. 왜냐하면그들에게는안된일이지만나의계산이옳다면, 그들이패한것이니말이다.

소유의불가능성을증명하면서나는소유의부당성을증명할수있다. 요컨대,

〈정당〉한것은하물며 〈유익〉하다.

〈유익〉한것은하물며 〈진실〉하다.

〈진실〉한것은하물며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가능한것에서나온것은바로그럼으로써진실, 유용성, 정당함에서나온것이다. 따라서선형적으로어느사물의정당성여부를그불가능성에의해판단할수있다. 만일이사물이절대적으로불가능한것이라면, 그것은절대적으로부당한것이라리라.

소유는물리적으로그리고수학적으로불가능하다

논증

공리-소유란소유자가자신의표찰을불인사물에대해행사하는불로소득권이
다.

이명제는완벽한의미에서의공리이다. 왜냐하면,

1. 이것은결코정의定義가아니다. 그도그럴것이이명제는소유권이내포하는것, 즉팔고, 교환하고, 양도할권리, 형태와내용을바꿀권리, 소비할권리, 파괴할권리, 사용하고남용할권리등을다표현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이모든권리는소유의다양한작용들이므로우리는그것들을각각고찰해볼수도있지만여기서

제 4 장 소유는 불가능하다

소유자들이 내세우는 마지막 논거, 그 막강한 힘으로 그들을 안심시키는 맹렬한 논거는 그들에 따르면 조건의 평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건의 평등은 몽상이라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표정으로 외친다. <오늘 재산을 균등한 몫으로 나누어 주자. 그러면 내일이 평등은 사라질 것이다.>

터무니 없는 확신에 차서 그들이 아무데서나 늘어놓는 이 진부한 반대에 그들은 <아버지에게 영광 있으라 (Gloria Patri)> 라는 식으로 다음과 같이 사족을 달기를 잊지 않는다. <만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찬가는 여러 가지 곡조로 울려 퍼진다.

만일 모든 사람이 주인이라면, 아무도 복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부자가 없다면, 누가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겠는가?

그리고 만일 가난한 자들이 없다면, 누가 부자들을 위하여 일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로서는 더 이상 매도만 당하지 말고 응답을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만일 내가 불가능한 것은 바로 소유 그 자체라고 입증한다면, 소유는 모순이고 몽상이며 유토피아라고 입증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형이상학이나 법학의 논증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치와 등식고와 산술에 의해서 입증한다면, 금세 꺾어질 난 소유자의 공포는 어떠할까? 그리고 독자여, 당신은 이러한 반격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수가 세계를 지배한다 (mundum regunt numeri). 이 속담은 항성이나 분자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도덕과 정치의 세계에서조차 진실이다. 법의 요소들은 대수학의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같다. 입법이나 통치는 분류표를 만들고 세력들의 균형을 맞추는 기술에 다름 아니다. 법률학은 산술의 규칙안에 있다. 이장과 다음장은 바로 이 놀라운 원리의 토대를 놓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때에 거대하고 새로운 행로가 독자의 눈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숫자들의 조화 안에서 철학과 과학의 종합적인 통일성을 보게 시작할 것이며, 자연의 이 깊고 엄숙한 단순성 앞에서 감탄과 열정에 가득 차서 최초의 사도처럼 외칠 것이다. <진실로, 신은 수와 무게와 양을 가지고 만물을 지으셨도라.> 우리는 조건의 평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조건의 평등에 갖다 붙이는 그 허울 좋은 불가능성은 인간의 천성에 어긋나는 정치형태인 소유라든가 공동체라는 것 안에서 조건의 평등을 생각하는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매일 매일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지어 실현 불가능하다고 우리 스스로 확언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 조건의 평등

우선나는 『일리아드』 즉 공정하게 보상되어야 할 이 결박이 실제로 더할 나위 없이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 자유의사에 따라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중이 그것을 사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교환될 수 없으며, 그 내재적 가치는 조금도 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 가치 즉 시의 생산적 효용성은 영적으로 줄어 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편의 무한無限과 다른 한편의 무無 사이에서 양쪽 모두에 대등한 거리를 두면서 지불해야 할 임금의 액수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가 대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결정해야 하는 것은 팔린 물건의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인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해진다. 즉 이상대적 가치란 무엇인가? 『일리아드』와 같은 시의 저자에게 물어야 할 마땅한 보수는 얼마인가?

이 문제는 정치경제학이 학문으로 정립된 후에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였다. 그런데 정치경제학은 그 문제를 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결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경제학자들에게 따르면, 물건의 상대적 가치 즉 교환 가치는 절대적 기준으로 정해질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세는 말한다. <한 물건의 가치는 확정된 양을 가지고 있으나 주어진 순간에만 그러할 뿐이다. 그것의 본성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아무 것도 그것을 항구적으로 고정시킬 수 없다. 물건의 가치는 욕구와 생산수단들에게 반을 두고 있는데 이 욕구와 생산수단들은 매 순간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무쌍함이 정치경제학의 제반 현상을 복잡하게 만들며, 때로는 관찰하고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나는 여기에 어떤 치료책도 가져다 줄 수 없다. 사물의 본성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세는 다른 곳에서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다. 가치는 효용에 토대를 두고 있고, 효용은 온전히 우리의 필요, 번덕, 기분 따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치는 의견만 같이나가 변적이라고. 그런데 정치경제학은 가치 및 그 가치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에 대한 과학이다. 교환 가치가 절대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정치경제학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그것이 어떻게 과학일 수 있는가? 경제학자 두 사람이 서로 마주쳐 다보면서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떤 면에서 이들이 감히 형이상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을 비웃을 수 있는가? 뭐라고! 데카르트는 어떤 어리석은 이는 철학은 과학이라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부동의 토대 (aliquid inconcussum) 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으며 고지식하게도 그것을 찾았다. 그런 데 경제학의 위대하고도 위대한 신 헤르메스 Hermes 인세는 정치경제학은 과학이라는 이 엄숙한 주제를 부연 설명하는 데 책의 반을 할애하고 나서, 이 과학은 그 대상을 규정할 수 없다고 용기 있게 단언한다. 이것은 정치경제학은 원리도 토대도 없다는 말과 매한가지가 아닌가! 따라서 고명하신 세는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으며 그가 말하려는 문제를 모르고 있다.

세가 든 예는 나름대로 결실을 맺었다. 정치경제학은 그것이 현재 다른 지점에서 볼 때 존재론과 유사하다. 결과와 원인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 것도 설명하지 못하며 아무 결론도 맺지 못한다. 경제법칙들이라는 이름으

로 장식한 것은 몇 가지 흔해빠진 일반론으로 환원된다. 이 일반론에 걸맞은 부리는 문체와 전문 용어로 옷을 입히면 무언가 심오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사회문제들에 대해 내린 해결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들의 땀과 흘린 작품들이 가끔 어리석은 짓에서 벗어나고 할지라도 곧 우스꽝스러운 짓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이다. 지난 25 년 동안 정치 경제학은 마치 두터운 안개처럼 프랑스를 뒤덮으면서 정신의 비약을 가로막고 자유를 짓누르고 있다.

산업의 모든 창조물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따라서 정당하고 참된 시장 가치를 갖는가? - 그렇다.

인간의 모든 생산물은 인간의 다른 생산물과 교환될 수 있는가? - 역시 그렇다.

얼마만큼의 몫이나 막대한 결례와 맞먹는가?

우리가 이 엄청난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난 6,000 년 동안 인류가 찾던 사회체제의 열쇠를 질 수 있으리라. 이 문제 앞에서 경제학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선다. 읽고 쓸 줄 모르는 농민은 서슴없이 답할 것이다. 같은 시간 안에 같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만큼이라고.

따라서 어떤 물건의 절대적 가치는 그 물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다. 모래 속에서 주워 올리는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가? - 전혀 가치가 없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생산품이 아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다듬고 세공한다면 얼마나 가치가 나을까? - 직공에게 드는 시간과 비용만큼이다. -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왜 그리도 비싼가? -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가장 희소한 물건들도 가장 흔한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그것을 얻어 향유할 수 있도록 교환과 분배를 규제해야 만한다. - 그러면 의견의 가치는 무엇인가? - 거짓말, 불의, 도둑질이다.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합의의를 이끌어 내기가 쉬워진다. 우리가 무한한 가치와 무가치 사이에서 찾는 중간항이 모든 생산물에 대하여 그것의 생산에 들어간 시간의 비용의 합계로 표현된다면, 원작자가 30 년의 노동과 여행이니 책자 등등의 비용으로 1 만 프랑을 들인 시 한 편에 대해서 노동자의 평균적 봉급 30 년치와 1 만 프랑의 보상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 총액을 5 만 프랑이라고 가정하자. 이 걸작을 손에 넣은 사회가 100 만 명을 수용하고 있다면, 나의 부담액은 5 상 팀인 셈이다.

이것은 몇 가지의 견을 일깨운다.

(1) 같은 생산물이라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 투자된 시간과 경비가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다. 이 점에서 가치의 양이 변동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은, 가치 변동의 원인들 안에 생산수단, 취향, 번덕, 기호, 의견 따위를 마구 뒤섞어 놓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변동이 아니다. 요컨대, 어떤 물건의 참된 가치는 화폐적 표현에서는 변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대수적 표현에서는 불변인 것이다.

(2) 수요를 가진 모든 생산물은 그것에 들어간 시간과 경비만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지불되어야 한다. 수요가 없는 모든 생산물은 생산자의 손실이며 상업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라고.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현재의 계약에서 지불금을 얻는다. 그는 자기 빚을 갚지 못하고 죽는다. 어떻게 그가 조금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는 절약에 대해 말한다. 소유자의 행태이다. 평등체제에서는 앞으로의 재생산이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절약은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 이 절약은 자본화될 수 없는 만큼 그 즉시로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더 이상 〈궁극원인〉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다음 장을 읽으면 더욱 잘 이해될 것이다.

결론을 맺자.

일하는 자는 누구나 사회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지불불능 상태로 죽어 가는 채무자이다. 소유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수탁을 부인하고 일수, 월수, 연수로 보관료를 받기를 원하는 불성실한 보관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시한 원리들이 몇몇 독자들에게는 여전히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나는 이 원리들을 가장 우둔한 머리로도 알 수 있는 더 구체적이고 흥미진진한 결론들로 가득 찬 형태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소유를 〈배제〉의 능력으로 고찰했다. 이제부터는 〈침해〉의 능력으로 살펴보겠다.

(3) 평가의 원리에 대한 무지, 또 대개의 경우 그 원리를 적용하는데 따르는 어려운 상업상의 기만은 원천이며 재산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가장 유력한 원인들 중 하나이다.

(4) 어떤 산업들, 어떤 생산물들의 값을 지불하는 경우, 재능이 희소할수록, 생산물이 비싸수록, 예술과 과학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그만큼 인구가 더 많은 사회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자면, 50 명의 농사꾼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학교 선생 한 명을 부양할 수 있다면, 구두수선공 한 명에는 100 명이, 편자공 한 명에는 150 명이, 재단공 한 명에는 200 명 등등이 필요하다. 농사꾼의 수가 1,000 명, 1 만명, 10 만명 등으로 늘어난다면, 그 수가 증가하는데 비례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무원들의 수도 같은 비율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높은 직능들은 가장 힘 있는 사회들에서만 가능하게 된다.⁴ 바로 이 점에서 만능력의 차이가 나타난다. 천재성과 그 영예의 표지는 거대한 민족에게서만 탄생하고 또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천재의 이성적 조건은 그의 사회적 권리에는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다. 그렇기는 커녕, 천재가 뒤늦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경제적, 시민적 질서에서는 가장 높은 지성도부의 평등에, 즉 지성보다 앞섰고 지성이란 그것의 꼭대기 장식일 뿐인 바로 이 평등에 종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지만 엄연한 진실이다. 여기서 심리학이 사회경제학을 뒷받침해주고, 물질적 보상과 재능 사이에는 어떤 공통의 척도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조건 아래서 모든 생산자들의 조건은 평등하다는 점을, 따라서 이 생산자들과 온갖 부류의 재산들 사이의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사실상, 사람의 손을 거치는 모든 작품은 그 작품에 들어가는 원료와 비교할 때 무한한 값어치를 갖고 있다. 이 점에서, 나막신 한 켤레와 호두나무 줄기 사이의 차이는 스코파스(Scopas, 기원전 5 세기 그리스 조각가-유킨이)의 조각상과 대리석 한 덩어리 사이의 차이만큼 크다. 뉴턴 같은이의 정신이 그가 거리와 질량과 운행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무미건조한 지구의 지구儀보다 우월한 바로 그만큼, 가장 단순한 수공업자의 재능은 그가 사용하는 재료보다 우월하다. 당신은 재능과 천재성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영예와 부를 요구한다. 나에게서 촌부로서의 재능을 평가해다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서 호메로스의 재능을 평가하리다. 지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성 그 자체이다. 다양한 여러 유형의 생산자들이 감탄과 찬미의 연사를 서로 주고 받을 때 생기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생산물을 교환하는 일은 어떠한가? 이러한 교환은 재능이나 천재성에 대한 고려와는 관계없이 경제적 추산 아래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교환을 규제하는 법칙은 막연하고 무의미한 감탄이 아니라 차변(借邊, le doit)

⁴ 철학 교수 한 명에게 봉급을 지불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민이 필요한가? 3,500 만명이다. 경제학자 한 명에게는? 20 억명이다. 그러면 학자도 예술가도 철학자도 경제학자도 아닌, 그저 신변잡기 소설을 쓰는 글쟁이에게는? 한 사람도 필요치 않다.

과대변(貸邊, l'avoir) 사이의정당한균형, 즉상업적인산술에서부터나오는것이다.

그런데사고파는자유가임금의평등에대한유일한근거이고, 사회는권리와는아무런관련이없는어떤타성적인힘에서만재능의우월성에맞선도피처를구할수있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있다. 이들의오해를풀어주기위해서나는왜모든능력들에대해같은보수가지불되어야하는지를, 그리고왜임금의차이가부당한지를설명할것이다. 나는사회적수준에순응할의무가재능의내재적속성이라는점을보여줄것이며, 천재의우월성이라는바로그도대위에재산의평등이라는원칙을세울것이다. 앞에서나는모든능력들사이에는임금이균등해야한다는점을소극적인차원에서지지했다. 이제나는그점에대한직접적이고적극적인이유를제시할것이다.

우선경제학자의말을들어보자. 그가어떻게추론하는지를, 그리고정당하게생각할줄아는지를보는것은항상즐거움일이다. 게다가경제학자가없었다면, 웃음을자아내는그의실수와논이휘둥그레질추론이없었다면, 우리는아무것도알지못했을것이다. 평등은, 경제학자에게는대단히역겨운것이라할지라도, 사실정치경제학에서많은것을얻고있다.

〈어느의사(원문에는변호사라고되어있으나이역시좋은예가아니다) 의가족이그의교육에 4 만프랑을들었다고했을때, 이금액은그의머리에투여된자본이라고할수있다. 투하된자본이앞으로매년 4,000 프랑정도의수입을가져올것으로기대해보자. 의사가 3 만프랑을번다면, 따라서자연이부여한그의개인적능력에서나오는수입의몫은 2 만 6,000 프랑인셈이다. 이러한계산에따른다면, 이자율을 10% 로할경우, 자연적자본은 26 만프랑이된다. 그리고그의가족이그에게학비로제공한것은 4 만프랑이다. 이두가지자본금을합한것이바로그의재산이다.〉(세, 『경제학강의』 등).

세는의사의재산을두부분으로나눈다. 하나는의사의교육에지불된자본이고, 다른하나는그의개인적재능에따른것이다. 이러한구분은정당하다. 이구분은사물의이치에맞으며보편적으로받아들여진다. 이구분은또한능력의불평등에대한중요한논증의대전제구실을한다. 나는이대전제를아무런유보조건없이받아들인다. 이제그결과를보자.

(1) 세는의사의교육에들어난 4 만프랑을그의대변쪽에집어넣고있다. 하지만이 4 만프랑은그의차변쪽에넣어야한다. 왜냐하면이지출은비록그를위해쓰이기는했지만그가쓴것이아니라따라서이 4 만프랑을자기것으로하기는커녕의사는그것을자기의생산물에서공제하고빚진자에게갚아야한다. 게다가세는자본이생산적이라는그릇된원리에의거해서추론하다보니, 그것을 〈상환〉의대상이나아니라 〈소득〉의원천으로보고있다는점을주목하자. 이렇게, 재능의교육에들어난지출은바로그재능이갚아야만하는빚인것이다. 살아있다는바로그하나의사실만으로도그는자신이자라는데들어난것만큼의액수에대한채무자이다. 이는너무도자명하고논박의여지가없는사실이므로, 만일어느가정에서한아이

따라서수천의여러생산자들의생산품으로살지않는자는한명도없다. 사회전체로부터소비물자를받지않으며, 그소비물자와더불어재생산수단을받지않는노동자는한명도없다. 〈나는내가소비하는것을나 혼자서생산한다. 나는그누구도필요하지않다〉라고누가감히말할수있겠는가? 옛경제학자들이유일한참된생산자라고주한농사꾼, - 농사꾼은석공, 목공, 재단사, 제분업자, 제빵업자, 정육업자, 향료상, 대장장이등의덕택으로주거를마련하고, 가구를들이고, 의복을입고, 먹을것을구하고, 몸을돌본다 - 말하자면이농사꾼은혼자서생산한다고뵈낼수있을까?

각자의소비는모든사람에의해서주어진다. 마찬가지로각자의생산은만인의생산을전제로한다. 한생산물은반드시다른생산물을동반한다. 고립된산업이란불가능한일이다. 농사꾼의수확은, 다른이들이그를위해헛간, 수레, 쟁기, 의복따위를만들어주지않았다면어떻게되었을까? 학자에게서적상이없었다면, 출판업자에게주물공과기계공이없었다면, 그리고이들모두에게또다른많은일꾼들이없었다면어떻게되었을까? 진부한말을늘어놓는다고핀잔할터이니더이상길게명단을나열하지않겠다. 나열하기란너무쉬운일이니말이다. 모든산업은상호적인관계에따라하나의단일한묶음으로결합되어있다. 모든생산은서로에게목적이되고또수단이된다. 재능의모든다양성이란열등한것에서우수한것에이르는일련의변용태變容態일뿐이다.

그런데개개생산물에대한모두의참여라는이논박할수없는엄정한사실은모든개개의생산을공동의것으로만드는결과를낳는다. 따라서생산자의손을벗어난개개의생산물은사회에의해서미리저당잡힌셈이다. 생산자자신은자기가만든생산물의아주작은부분에대해서만권리를가지며, 그전체분모는사회를구성하는개개인의수와맞는다. 반면에이생산자는자기의것이아닌모든다른생산물에대해권리를가지며, 따라서모든다른이들에맞서일종의저당권을갖는셈이다. 마찬가지로다른이들도그에맞서저당권을가짐은물론이다. 그러나이러한상호저당이결국소유를용인해주기는커녕점유까지도파괴한다는것을모르는가? 노동자는자신의생산물의점유자조차아니다. 그가생산물을완성하자마자사회가즉시그것을자기것이라고주장한다.

사람들은말하리라. 그러나설령그렇다고해도, 설령사회가개개노동자에게자신의생산물에대한등가물을주기때문에, 생산물은생산자개인에게속하는것이아니라할지라도, 이등가물, 이임금, 이보상, 이보수는그의소유라고. 이소유는정당하다는것을당신은부정하는가라고. 노동자가자신의임금을다쓰지않고절약할경우누가감히그와다룰것이냐고. 노동자는자기노동의값어치에대한소유자조차아닐뿐더러그것을결코마음대로처분할수도없다. 잘못된정의定義에속아넘어가지말자. 자신의생산물에대한대가로노동자에게주어지는것은그가행한노동에대한보수로주어지는것이아니라, 해야할노동에대한지급이자선물로서주어지는것이다. 우리는생산하기전에소비한다. 노동자는하루일과가끝난다음에이렇게말할수있으리라. 〈나는어제의비용을지불했다. 내일나는오늘의

국민전체가그리고오직국민만이이들작가, 학자, 예술가, 공무원등에게보수를지불한다. 그보수가어떤경로를통해이들에게전달되든지간에말이다. 어떤기준으로국민은이들에게지불하는가? 평등의기준에의해서다. 나는재능의가치에대한평가를통해이를입증했다. 다음장에서나는일체의사회적불평등의불가능성이라는것에의해이를확증할것이다.

지금까지의논의를통해우리는무엇을입증했는가? 정말이지우스꽝스러워보일정도로아주단순한아래와같은사실들이다.

여행객이자신이지나가는대로를자기것으로하지않는것과마찬가지로, 농사꾼은자기가씨를뿌리는밭을자기것으로하지않는다.

그럼에도노동자가자신들이노고를이유로자신이이용하는재료를자기것으로한다면, 그재료를이용하는모든이들은마찬가지자격으로소유자가된다.

물질적이든정신적이든모든자본은집합적소산이며따라서집합적재산을이룬다.

강자는약자의노동을강압적으로침해할권리가없으며, 유능한자는단순한자의선의를이용할권리가없다.

마지막으로, 누구나자신이원하지않는물건을사도록강요당하지않으며자신이사지않은물건의값을지불하도록강요당하지않는다. 따라서한생산물의교환가치는사는이의의도나파는이의의도를척도로하는것이아니라그것에들어간시간과비용을척도로하기때문에소유는누구에게나항상평등하다.

이것은너무나도덕없는진실들이아닌가? 물론이다! 아무리덕없는진실처럼보여도, 독자여, 당신은이보다더진부하고덕없는일들을볼것이다. 그도그렇것이우리는기하학자들과는반대방향으로가고있으니말이다. 기하학자들의경우, 이들이앞으로나가면나갈수록문제는더욱어려워진다. 이와반대로우리는가장추상적인명제들로부터시작해서공리公理로끝을맺을것이다.

그러나이장을끝맺기전에경제학자도법학자도꿈꿔보지못한엄청난진실들중하나를드러내보자.

제 8 절정의의질서안에서는노동은소유를파괴한다.

이명제는앞선두절의결론이다. 우선이를요약해보자.

고립된인간은자신의욕구의아주작은부분만을만족시킬수있을뿐이다. 그의모든힘은사회안에있으며모든사람들의노력의현명한결합속에있다. 노동의분업과협업은생산물의양과종류를증대시키며, 기능의전문화는소비재의질을높인다.

의교육에그의형제들의교육보다 2 배또는 3 배의비용이들었다면, 형제들은상속재산을나누기전에비례적인자기몫을가질권리가있다. 재산이미성년자들의이름으로관리되고있는경우라도, 이것은후견권의문제에서어떠한어려움도따르지않는다.

(2) 재능에대한교육비를상환해야할의무에관해내가지금말한것에대해서, 경제학자들은조금도개의치않는다. 그도그렇것이재능을가진사람이자신의가족을계승할경우, 자신이지고있는 4 만프랑의빚에대한채권도상속하게되며따라서그채권의소유자가된다고이들은생각한다. 그러나여기서우리는재능의권리문제를벗어나서선점권의문제와다시마주치게되며, 우리가앞의제 2 장에서제기한모든문제가다시나타난다. 선점권이란무엇인가? 상속이란무엇인가? 상속권은누적 cumul 의권리인가, 아니면단순한선택 option 의권리인가? 의사의아버지는누구에게서재산을얻었는가? 그는소유권자였는가, 아니면단순한용익권자였는가? 그가부자였다면, 그의부는어떻게설명되는가? 그가가난했다면, 어떻게그가그토록막대한지출을감당할수있었는가? 만일그가구호금을받았다면, 어떻게그가구호금이자선가에맞서채무자에게유리한특전을받았는가?

(3) 〈자연이부여한그의개인적능력에서나오는수입의몫은 2 만 6,000 프랑이다.〉 (세, 앞의책). 여기서출발해서세는우리의사의재능은 26 만프랑의자본과맞먹는다고결론짓는다. 이능숙한계산가는결과를원칙과바꾸어생각하고있다. 의사가얻는수입에의해재능을평가해야하는것이아니라, 오히려그와는반대로재능에의해그의급료가산정되어야한다. 왜냐하면문제의의사가자신의모든장점에도불구하고아무것도벌지못하는때도있을수있기때문이다. 이경우에이의사의재능또는재산을영으로평가해야한다는말인가? 유감스럽게도세의추론에따른결론은바로이런식이다. 명백히불합리한결론이다.

그런데어떤재능이든그것을현금으로평가한다는것은불가능한일이다. 그도그렇것이재능과돈은서로공통의척도로측정될수없기때문이다. 납득할만한어떤이유로의사가농민보다두배, 세배혹은백배의수입을올려야한다고증명할수있겠는가? 이것은탐욕, 필요, 압제따위에의해서가아니면해결된적이없는아주어려운문제이다. 재능의권리는이런식으로결정되어서는안된다. 그러면어떻게결정되는가?

(4) 우선나는의사가어떤다른생산자보다불리하게보수를받아서안되며다른사람들과대등한수준아래에머물러서도안된다고말한다. 나는이점을줄기차게입증할것이다. 그러나나는의사가이평등의수준을넘어서도안된다고덧붙인다. 왜냐하면그의재능이란그가한번도지불하지않은공동의재산이며그는그공동의재산에대한영원한채무자기때문이다.

모든생산도구의창출이집합적인힘의결과인것과마찬가지로, 한인간에게있는재능과학문은보편적지성과일반적지식의소산이며, 이는많은거장들에의해그리고상대적으로열등하나근면한많은사람들의도움을받아서서히축적된것이다. 의사가자신의선생님에게지불하고, 자기책과자격증의값을치르고, 모든비

용을 다 청산했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지 않았다. 이는 자본가가 노동자들에게 봉급을 지불하면서도 자신의 영지와 성채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재능을 가진 이는 자기 자신 안에서 유용한 도구를 생산해 내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그는 공동점유자이다. 그는 소유자가 아닌 것이다. 그에게는 자유로운 노동자와 축적된 사회적 자본이 동시에 존재한다. 노동자로서 그는 자신의 본래의 능력인 도구의 사용이나 기계의 조작에 관여한다. 자본으로서 그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이 용된다.

재능의 우월성이라는 것이 타인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봉급을 공동의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 보다는 차라리 낮추는 동기를 재능에서 찾아야 하리라. 모든 생산자는 교육을 받는다. 모든 노동자는 재능이자 능력 즉 달릴 말하자면 집합적 재산이다. 그러나 그 재산을 창출하는데 드는 비용은 같지가 않다. 농사꾼이나 장인을 길러 내는데는 교사와 시간과 교양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 창조의 노고, 굳이 말하자면 사회적 회피 기간은 능력의 탁월성에 비례한다. 그러나 의사, 시인, 예술가, 학자는 아주 소수만을 그 것도 더더게 생산하는 반면에, 농사꾼의 생산은 훨씬 실패 부담이 적고 몇 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든 간에, 그 능력이 창출되자마자, 인간은 이미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근면한 손이 빚어낸 재료와 같이, 인간은 생산 devenir 의 능력을 지녔을 뿐이며, 사회가 그를 존재 être 로 만들었다. 도자가 가도공에게 〈나는 있는 그대로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다〉 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술가, 학자, 시인은 사회가 그들에게 오직 학문과 예술에만 전념하도록 허용해주었다는 바로 그 사실만으로도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길러 내고 온갖 다른 부담을 면제해 준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사회는 엄격히 말해서 산문이나 시, 음악이나 회화 없이도, 즉달과 복극성의 운행에 대한 지식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먹을 것이나 잠잘 곳이 없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물론,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복음서에 따르자면, 인간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죽음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미를 알고 즐기며, 자연의 경이를 탐구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영혼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보존하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의 의무가 고귀함에 의한 인간에게 요구되듯이, 뒤의 의무는 필요에 의한 인간에게 요구된다.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훈육하는 일이 영예이듯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도 귀중하다. 따라서 사회가 분업의 원리에 충실하여 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 예술이나 학문의 사명을 맡기고 공동의 노동을 면제해 줄 때, 그는 자신이 생업에서 면제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사회에 보상할 책임을 진다. 사회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것뿐이다. 만일 그가 더 이상을 요구한다면, 그의 봉사를 거부하고 그의 주장을 무효로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의 천성에 맞지 않는 노동을 살

기 위해서 감당해야만 할 때, 천재는 무기력을 느끼고 최악의 생존 상태로 떨어질 것이다.

어느 유명한 인류성악가가 러시아의 여황제 예카테리나 2 세에게 2 만 루블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 돈은 내가 장군들에게 주는 돈보다 더 많은 양이요〉 라고 예카테리나는 말했다. 〈폐하, 장군들에게 노래를 시키시지요〉 라고 상대는 답했다.

예카테리나 2 세의 러시아보다 더 강국인 프랑스가 라셀 Rachel 양에게 〈100 루이 (louis, 옛금화, 1 루이는 20 프랑-푼긴이) 를 받고 출연하든지 아니면 면화를 짜시오〉 라고 하거나, 뒤프레 Duprez 씨에게 〈2,400 프랑으로 노래하든지 아니면 포도밭에 가시오〉 라고 말했다고 하자. 비극 배우 라셀 양과 성악가 뒤프레가 무대를 떠날 것으로 당신은 생각하는가? 그렇게 된다면, 라셀 양과 뒤프레 씨가 제일 먼저 후회할 것이다.

하셀 양은 코메디-프랑세즈 Comédie-Française 에서 연봉 6 만 프랑을 받는다고 한다. 그녀와 같은 재능인에게는 보잘 것 없는 보수이다. 왜 10 만 프랑, 20 만 프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왜 황실 경비와 같아서는 안 되는가? 이 무슨 짜짜한 일인가! 라셀 양과 같은 예술인과 값을 흥정하려 하는가?

극단 측은 답할 것이다. 손해를 보지 않고는 더 이상 지불할 수 없으며, 젊은 단원의 뛰어난 재능은 인정하지만 보수를 결정하면서 극단의 수입과 지출의 명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이다.

이 모든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앞에서 말한 것을 확인해 줄 따름이다. 즉 예술가의 재능은 무한할 수 있지만, 그의 금전상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돈을 지불하는 사회에게 그가 가져다 준 효용성에 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자체의 자원의 양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파는 이의 요구는 사는 이의 권리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라셀 양은 테아트르-프랑세즈 Théâtre-Français 에 6 만 프랑 이상의 수입을 올리게 준다고 들린다. 나는 그 말에 여전히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극장 측을 비난한다. 테아트르-프랑세즈는 누구에게서 돈을 거두는가? 실로 자유로운 호사가들로부터이다. 옳다. 그러나 이 호사가들이 극단에 지불할 모든 돈을 얻어내는 노동자들, 세입자들, 조각인들, 이자와 담보로 돈을 빌리는 채무자들, 이들은 자유로운가? 그리고 이들의 생산물의 대부분이 자신들과 상관없이 극장에서 소비되고 있을 때, 당신은 이들의 가족이 굶고 있는 일은 없으리라고 나를 안심시킬 수 있는가? 프랑스 국민이 이들 예술가, 학자, 공무원에게 줄 급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실정을 알고 난 후에 완전히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라셀 양과 그녀의 모든 동료들이 받는 보수는 오만심을 포상하고 방종을 고무하기 위해 폭력으로 탈취된 강제 현금일 뿐이리라.

우리가 기만적인 거래를 받아들이고 노동자가 권력의 위압과 재능의 이기심에 눌려 한가한 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며 충분히 개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론이 조장하고 갈채를 보내는 이 기괴한 불평등들에 늘 분개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나우리인간들이모두한동아리가아니라는것이있을수있는일인가? 앞의두장에서이야기한것을돌아켜보자. 즉, 우리가서로연결되기를원치않을지라도, 일의추세, 소비의필요성, 생산의법칙, 교환의수학적원리등이우리를서로결합시킨다. 이규칙에대한유일한예외는소유자의경우이다. 소유자는자신의불로수득권에의해생산에임하므로그누구와도결합되어있지않으며, 따라서누구도그에게나누어주어야할의무가없는것과마찬가지로누구와도자기의생산물을나누어야할의무가없다. 소유자만을예외로하고, 우리모두는서로를위해서일하고, 타인의도움없이몸소아무일도할수없으며, 서로끊임없이생산물과용역을교환하고있다. 이모든것이사회적행위들이아니면그무엇이겠는가?

그런데상업사회든산업사회든농업사회든평등을넘어서는생각할수없다. 평등은그필수적인존재조건이다. 따라서이사회와관련된모든일들에서, 사회를위배하는일, 정의의위배하는일, 평등을위배하는일은정확히같은것이다. 이모든것을인간모두에게적용해보라. 그러면지금이야기한바대로, 독자는충분한통찰력을지니게될것이고더이상나의안내를필요로하지않을것이다.

이원리에따른다면, 한사람이어떤발을차지해서이발은내것이라고말하는것은, 만일다른사람도그처럼발을차지할능력을가지고있는한부당한일이아니리라. 마찬가지로그가다른곳으로이사할요량으로이발은그것과대등다른발과교환한다면, 그것은부당한일이아니다. 그러나만일그가다른어떤이로하여금자기자리를대신하게하고는그에게〈내가쉬는동안나를대신해일해라〉라고말한다면, 그는부당하고한동아리가아니면〈불균등〉하게된다. 그는소유자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책무를다하지않으면서사회적생산물을다른사람들만큼, 아니왕왕다른사람들보다더많이누리고있는게으름뱅이, 방탕아는도둑놈이자기생충이고비난받아마땅하다. 우리는그들에게아무것도주지말아야할것이다. 그러나그들도살아가야하는이상, 그들을감독하고일하게해야하는것이우리의의무이다.

사회성은감성적존재들사이의인력과같은것이다. 정의는성찰과인식을수반하는바로이인력이다. 그런데우리는어떤일반적관념아래서, 어떤오성의범주안에서정의를인식하는가? 균등한양의범주안에서이다. 여기서정의에대한아주오래된정의定義가나왔다. 즉, 〈정의는평등이요불의는불평등이다 (Justum aequale est, injustum inaequale)〉.

그러면정의를실천한다는것은무엇인가? 그것은평등한노동조건아래서각자에게재산을평등하게나누는것이다. 즉그것은사회의일원으로행동하는것이다. 우리의이기심이아무리불평을늘어놓아도소용이없다. 명백한증거와필연앞에서는어떤핑계도있을수없다.

선점권이란무엇인가? 그것은노동자들이나타남에따라노동자들사이에서땅을나누는자연적인방식이다. 이권리는일반이익앞에서사라지며, 이일반이익은말하자면사회적이익이므로또한선점자의이익이된다.

에서보았다. 이런식으로사회에노동자가단 1 명뿐이라면, 소작료는차지한땅의규모나가치에상관없이 0.1 이될것이다. 따라서〈토지자본이일정하다면, 생산은소유에비례하는것이아니라노동에비례한다〉.

이원리에따라, 모든소유에대한불로수득의최대치는얼마여야하는지를생각해보자.

토지임대차계약이란원래무엇이었던가? 그것은소유자가토지에서나오는소득의일정몫을자기가가진다는조건으로자기의토지에대한점유를임차인에게양도하는계약이다. 만일가족수가늘어서소작인이소유자보다 10 배강해진다면, 그는 10 배더생산할것이다. 이것이지주가소작료를 10 배나올리는이유가될수있는가? 그의권리는〈내가많이생산하는만큼, 나는많이요구한다〉라는것이아니라,〈내가더손을떼면뭘수록, 나는더요구한다〉라는것이다. 그러므로소작인가족수의확대, 소작인이부리는일꾼의수, 소작인이일에동원하는자원들, 즉생산을증대시키는이모든요인들은지주와는무관한것이다. 그의요구는그자신에게있는생산능력에의해측정되어야하며, 다른이에게있는생산능력에의해측정되어서는안된다. 소유는불로수득의권리일뿐, 결코머릿수에따른권리가아닌것이다. 혼자서는겨우몇에이커의땅도경작하기힘든자가, 자기의땅이 1 만헥타르라고해서, 혼자서생산할수없는것의만배를어떻게사회에요구할수있다는말인가? 어쩌서임대료가, 소유자가거기서얻을수있는효용에비례해서가아니라임차인의재능과힘에비례해서늘어나야한다는말인가? 따라서우리는두번째경제법칙을인정하지않을수없다.〈불로수득금은소유자의생산을분수分數로해서측정된다.〉

그런데이생산, 이소유자의생산이란무엇인가? 달리말하면, 토지를가진영주나주인이그것을소작인에게빌려주면서자신이희생하는몫이라고당당하게말할수있는것은과연무엇인가?

소유자의생산능력이다른노동자들의생산능력과마찬가지로 1 이므로, 토지를양도함으로써그가내어주는생산물도역시 1 이된다. 따라서불로수득의비율이 10% 라면불로수득금의최대치는 0.1 이될것이다.

그러나우리가앞에서살펴본것처럼, 소유자가생산에서물러설때마다생산물의총량은 1 씩줄어든다. 따라서소유자의손에들어오는불로수득금은, 그가노동자로남아있는동안에 0.1 에해당하지만, 그가일을그만두고물러서는경우소작료감소의법칙에따라 0.09 가될것이다. 이것은우리를다음과같은마지막공식으로인도한다.〈지주의소득의최대치는노동자 1 명의생산물 (이생산물이일정한수치로표현된다면) 의제곱근과같다. 이소득이감내하는감소분은, 소유자가일을하지않을경우에는, 1 을분자로하고생산물을표현하는수치를분모로하는분수와같다.〉

이리하여, 일하지않는소유자또는공동체의외부에서자기자신만을위해일하는소유자의소득의최대치는노동자 1 인당평균생산 1,000 프랑의 1/10 로산정하면, 90 프랑이될것이다. 따라서프랑스에해마다평균 1,000 프랑의소득을누

리나 그것을 비생산적으로 소비하는 100 만명의 소유자가 있다면, 그들이 매년 지불하는 금액은 10 억 프랑이 아니라, 법의 엄정함과 가장 정확한 계산에 따라 9,000 만 프랑이어야 한다.

주로 노동계급을 짓누르는 부담금 중에서 9 억 1,000 만 프랑을 덜어낸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계산은 끝나지 않았다. 노동자는 아직도 자기 권리의 모든 내용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여준 바와 같이, 일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응당 돌아가야 할 최소한으로 줄어든 불로수득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선점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점권은 만인에게 동등한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같은 자격으로 소유자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산물의 일부에 대해 동등한 소득을 취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노동자가 소유권을 이유로 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면, 소유자는 바로 같은 권리에 의해 같은 지대를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들의 권리는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이들 사이의 차이는 영구히 된다.

〈주석〉 만일 소작료가 법적으로 소유자의 추정된 생산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소유의 범위나 비중에 관계없이, 개개의 소토지 소유자들 대다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이 이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착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전부를 동시에 착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약해보자. 불로수득권은 생산의 법칙에 의해 규정된 대단히 좁은 범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선점권에 의해 무효화된다. 그런데 불로수득권 없는 소유가 없으며 따라서 소유는 불가능하다.

네 번째 명제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일 불로수득권이 이성과정의 법칙에 종속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수당, 즉 그 〈최대치〉가 노동자 한 명당 그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의 일부를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 보상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논증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불로수득권 - 주저없이 말하자면 도둑질 권리 - 이외에 성의 통제를 감수하겠는가? 불로수득권은 이성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데 말이다. 소유자는 양식과 사물의 이치가 자신에게 부여해주는 바대로의 불로수득에만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10 배, 100 배, 1,000 배, 100 만 배로 지불받는다. 소유자로서 그는 자기의 소유물에서 단지 1 만크의 생산물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전하기 여한 바 없는 사회를 상대로, 소유자로서의 생산 능력에 비례하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수당세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그들의

점유 행위가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모두에게 동등한 선점권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일뿐이다. 이 경우에 우리의 의무감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예견 능력인 바, 이에 견줄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위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강탈 행위에 매달리게 하며 우리를 도둑이나 살인자로 만든다. 동물은 본능의 의무를 계산하는 법이 없으며, 하물며 거기에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인간, 즉 가장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에게 지능이 법에 복종하지 않을 동기가 되어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인간은, 법의 쓰임새는 오로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회 앞을 거짚을 놓는다. 만일 우리의 신중함이 우리의 이기심을 위한 도구로만 쓰인다면, 차라리 신이 우리에게서 그 신중함을 다시 앗아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뭐라고!〉 당신은 말할 것이다. 〈내가 일해서 얻은 빵, 바로 내 빵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다시 만 날 일도 없으며 아마도 배는 망덕으로 보답할 어쩔 낫선 사람과 나누어야만 한다고! 이 빵이 적어도 함께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그 빵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 일했다면, 그는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힘을 보탠 만큼, 그는 권리가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함께 생산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먹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의 오류는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 사이에 진정으로 하나의 사회가 결성되고, 그 기본 원칙이 승인되고 기재되고 서명되었다면, 그때부터 그 결과에서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두 사람이 서로 힘을 합쳐서 물고기를 낚는 가운데, 그 중 한 사람이 물고기를 건져 올리지 못할지라도 그가 자기 동료가 낚은 물고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 만일 상인 두 명이 함께 회사를 세우는 경우, 그 회사가 운영되는 동안 손해와 이익은 공동의 몫이다. 각자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생산했기 때문에, 몫을 나눌 때, 고려되는 것은 생산자로서가 아니라 공동 경영자로서이다. 이것이 바로 노예 (농장주는 노예에게 지푸라기와 쌀을 준다) 나 문명 사회의 노동자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형편 없는 임금을 준다) 가 농장주나 고용주와 함께 생산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동아리가 아닌 까닭에 생산물의 분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마차를 끄는 말이나 우리의 쟁기를 끄는 소는 우리와 함께 생산하나 우리와 한 동아리가 아니다. 우리가 생산물을 차지하며 말이나 소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는다. 우리가 부리는 동물이나 우리가 부리는 노동자는 이렇게 그 처지가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이들에게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정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친절에 의해서 일뿐이다.¹

¹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히브리어로 〈정의를 행한다〉, 그리스어로 〈측은히 여긴다〉 (élémosinen, 여기서 프랑스어 aumône 이나 왔다), 라틴어로 〈사랑 또는 자비를 행한다〉, 프랑스어로 〈자선을 베푸다〉 라는 말에 해당한다. 이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원래의 의미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의무를, 두 번째는 단지 동정을, 세 번째는 애정, 즉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를, 네 번째는 선의의 기쁨을 나타낸다.

제 2 절 사회성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계에 대하여

나는 앞에서 내가 말한 사실, 즉 인류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 하나를 강조하고 자한다.

우리로서 하여금 사회를 이루게 하는 힘인 공감의 인력은 그 본질상 맹목적이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앞선 권리들을 존중하지도 그렇다고 공적이나 우선권을 구별하지도 않고 항상 그때 그때의 충동에 빠져들곤 한다. 그것은 부르는 사람이면 누구나 따라가는 잡종개와도 같다. 그것은 남자를 보면 누구나 아빠라고 부르고 여자를 보면 누구나 유모로 여기는 젖먹이 아이와도 같다. 그것은 자기 종족과의 교류를 박탈당하고 고립 속에서 동료에게 달라붙는 생물과도 같다. 사회적 본능의 이러한 근본적 성격은 경박한 사람들의 우정을 참을 수 없고 싫어지게 까지만 든다. 새 얼굴을 대할 때마다 낯을 빼앗기고, 덮어놓고 사근거리며, 찰나의 사귀기 때문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귀한 정서를 저버리는 그런 경박한 사람들의 우정 말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결함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 속에 있다. 이 단계에서의 사교성은 우리와 닮은 존재를 생각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자기력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상호적이기는 하나 전달되지는 않는다. 사랑, 친절, 연민, 동정등,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대로 이름 붙일 수는 있으나 그 평가에 갇힐 만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 어느 것도 인간을 동물보다 우위에 놓을 수 있을 만 하지 않다.

사회성의 두 번째 단계는 정의의 한바, 우리는 이것을 〈우리와 동등한 인격을 타인에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감정의 차원에서 볼 때, 정의는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나 한결 같다. 그러나 인식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인간만이 〈정의로움〉에 대한 완벽한 관념을 가질 수 있다. 물론 그것이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도덕성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 놓을 수는 없지만 말이다. 우리는 곧 인간이 어떻게 동물들이 도달할 수 없는 사회성의 세 번째 단계에 이르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사회, 정의, 평등〉이라는 세 가지가 서로 동의어이고 서로 통하는 표현들이며 마땅히 서로 바꾸어 쓸 수도 있는 용어들이라는 사실을 형이상학적으로 논증해야만 한다.

난파선을 피해 약간의 식량만을 가지고 겨우 나룻배에 옮겨 탄 어떤 사람이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를 구조해야만 하는가? 그렇다. 나는 구조에 나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에 대해 반사회적 대죄, 즉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또한 그와 식량도 나누어 먹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조를 바꾸어 물어야 한다. 즉, 만일 사회가 나룻배에 대해 의무를 진다면, 사회는 마찬가지로 식량에 대해서도 의무를 져야만 하는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함께 사회를 이루는 자의 의무는 절대적이다. 인간의 사회적 본능은 인간에 의한 물건의 선점보다 앞서는 것이며, 후자는 전자에 종속되는 것이다.

힘, 머릿수, 근면성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긴다. 농사꾼에게 사내 아이 한 명이 태어난다. 〈옳거니, 불로소득이 하나 더 늘었다〉라고 소유자는 말한다. 소작료에서 인두세로의 이러한 탈바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법률 학자들, 우리의 신학자들, 이 꾀주머니 박사님들은 어떻게 불로소득권의 이러한 확대를 막지 않았는가?

소유자는 자기의 생산 능력에 비추어 자신의 소유지를 다 이용하는 데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산해 보고 나서 그 수만큼 소유지를 분할한다. 그리고 그는 〈각자 나에게 불로소득을 지불하라〉고 말한다. 따라서 소득을 늘리려면, 소유지를 나누기만 하면 된다. 소유자는 자기 몫의 이익을 자기가 행한 노동에 근거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본에 근거해서 계산한다. 이런 식의 치환 행위 예의 해 주인의 손으로는 하나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바로 그 소유자가 그 주인에게 10 개, 100 개, 1,000 개, 100 만 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소유자는 자기에게 달려오는 일꾼의 이름을 적을 채비만 하면 된다. 그의 일은 허가장과 영수증을 내주는 일뿐이다.

이토록 수월한 일거리에도 만족하지 않고 소유자는 자신이 늘고 먹으면서 생기는 적자를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적자는 생산자에게로 전가되고, 소유자는 늘 생산자에게 동일한 보상을 요구한다. 소작료가 일단 천정부지로 오르고 나면, 소유자는 절대 그것을 내리는 일이 없다. 물가의 양등, 일손의 부족, 계절에 따른 장애,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는 개의치 않는다. 자신이 일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가 흉년을 걱정하겠는가?

여기서 일련의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난다.

세는 세금을 공격할 때는 언제나 몇 지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지주가 소작인에게 세리稅와 마찬가지로의 약탈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서한에서 맬서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징세관들, 그 위탁업자들이 생산물의 1/6 을 소비한다면, 그들은 이로 인해 생산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것의 5/6 로 먹고 살도록 강요하는 셈이다. 그들은 이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각자가 자신이 생산한 것의 5/6 만가지고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원한다면, 나 역시 그 점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생산물의 1/6 이 아니고, 2/6 아니면 그 반을 요구할 경우라도 생산자가 마찬가지로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를 묻고 싶다. 그러면 나는 생산자가 2/3 를... 나아가 3/4 을 빼앗기더라도 여전히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싶다. 그들이 더 이상 아무 대답도 못 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 프랑스 경제학자들의 대부께서는 만일 소유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 예의 해는 이렇지만 않았더라면, 소작제가 낳는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부모와 아이 넷, 합해서 여섯 명으로 이루어진 한 농민가정이 있다고 하자. 이들은 작은 전답을 갈며 생활한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럭저럭 수지를 맞추고 있으며,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면 저축할 돈도 남지 않지만 빚질일도 없다고 가정하자. 종

은해도있고나쁜해도있지만그들은생활해나간다. 풍년이들며, 아버지는포도주를좀더마시고, 딸들은드레스를사고, 아들들은모자를산다. 약간의낙농품도먹고, 이따금씩고기도맛본다. 내가말하고자하는것은바로이러한사람들이파산하고몰락한다는사실이다.

왜냐하면우리의공리의세번째귀결에따르자면, 이들은자신이그소유자인자본에대해서이자를지불하지않으면안되기때문이다. 이자분을 8,000 프랑, 이자율을 2.5% 라고하면, 해마다지불해야할이자 200 프랑이된다. 따라서만일이 200 프랑을총생산에서따로떼어져축하고자본화시키는대신, 소비에돌린다고하면, 가계의지출에서매년 200 프랑씩적자가생기고그리하여 40 년이 지난후에는이선량한사람들은알지도못하는사이에자기자산을다먹어치우고알거지가된다.

우스꽝스러운결론이다. 그러나비참한현실이다.

징병이다가온다... 징병이란무엇인가? 그것은정부가가정에대해행사하는불시의소유권행위이며, 인력과금전의약탈이다. 농민들은자기자식들이떠나는것을결코반기지않는다. 이점에서그들은조금도잘못이없다고나는생각한다. 스무살의젊은이가병영에서무엇인가를번다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그는거기서몸을망가뜨리지않으면, 자기혐오에빠진다. 대개병사의사기는그가군복에대해 품은증오심에의해판단하면된다. 불행한백성아니면쓸모없는백성, 이것이바로 국가의부름을받은프랑스인의처지이다. 있어서는안되지만, 벌어지는일이다. 10 만명에게물어보라. 그러면단한명도내말을부인하지않을것이다.

우리의농민이징집된자식두명을되찾으려면, 빌린돈 4,000 프랑을내야한다. 우리가앞에서말한대로이자 5% 로계산해서 200 프랑이다. 해마다그럭저럭수지의균형을맞추어온가족의생산이지금까지 1,200 프랑즉한사람당 200 프랑이었다고하면, 이이자를갚기위해서는여섯명이일곱명분의일을하거나아니면다섯명분의소비를해야한다. 소비를줄일수는없는일이다. 어떻게생필품을줄인다는말인가? 생산을늘리는일도불가능하다. 더잘더많이일할방도가없으니말이다. 어중간한방법을택해서다섯명반만큼소비하고여섯명반만큼생산하면어떨까? 위장에는타협이없다는것을, 일정한한계아래로는절식을할수없다는것을, 즉건강을해치지않고허리띠를줄라매는일이불가능하다는것을곧체험할것이다. 생산을여섯명반으로늘리더라도서리, 가뭄, 가축병따위가뒹쳐서농민의희망은완전히꺾인다. 요컨대지대는값을길이없게되고, 이자는늘어만가고, 작은땅덩어리는차압당하고, 원래의점유자는추방당한다.

이렇게, 소유권을행사하지않는동안은행복하게살던가정이이권리의행사가요구되자마자비참한상태에빠진다. 소유란, 충족되려면땅을차지한이가말만으로그땅을넓히고또기름지게할수있는이중의능력을요구하는것이다. 토지의단순한점유자라면, 그는거기에서먹고살수것을찾을수있다. 그가소유권을주장한다면, 그땅은그에게부족하게된다. 자신이소비할만큼만을생산할수있는동안

가장고결한덕도결국에는본능의맹목적인충동으로환원되는것이다. 시성諷聖과신격화의근거가바로이런것이러니!

그러나우리들즉두발두손을가진동물과다른생물들사이에는차이점이존재한다. 차이점은무엇인가?

철학도는주저없이이렇게답할것이다. 즉, 그차이는우리가우리의사회성을의식하는데반해서동물은그들의사회성을의식하지못한다는사실, 우리가우리의사회적본능의작동에대해성찰하고추론하는데반해서동물은그렇지않다는사실에있다고말이다.

한걸음더나아가자. 우리가우리를지배하는사회적본능 (우리는이것을정의라고부른다) 에저항하는것이우선타인에게, 다음에우리자신에게해로운일이라고깨닫게되는것은바로우리자신만이지니고있는듯이보이는성찰과추론의능력에의해서이다. 이기적인간, 도둑, 살인자, 즉사회의배신자들이자연에대해죄를짓고있으며또고의로악을행할때에는타인과자기자신에게죄가된다는점을우리에게가르쳐주는것은바로이성이다. 우리와같은인간존재가자신의행위에책임을지지않으면안된다고생각하도록하는것은한편으로는우리의사회적본능이며, 다른한편으로는우리의이성인것이다. 양심의가책, 징벌및형법의정의의원리가바로이것이다.

그러나이모든것은인간과동물사이에지능의차이를입증하는것일뿐, 결코정서 affections 의차이를입증하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우리동료들과의관계에대해이치를따지기도하지만, 마찬가지로먹고마시고여자를고르고집을선택하는등의아주자질구레한행동들에대해서도이치를따지니말이다. 우리는하늘과땅에있는모든사물들에대해이치를따진다. 우리의추론능력이미치지않는것은아무데도없다. 그런데우리가외계의현상들에대해얻은지식이그현상들의원인이나법칙들에영향을미치지않듯이, 성찰은우리의본능을일깨움으로써우리의감각적특질을계발해주시는하지만그성격자체를바꾸어놓지는않는다. 성찰은우리에게도덕성이무엇이라고가르쳐주시는하나도덕성을바꾸거나수정하지는않는다. 실수를저지른다음에우리가스스로품는불만, 불의를보고우리가느끼는분노, 응분의징벌이나마땅한보상이라는관념따위는성찰의결과이나본능이나정념의직접적인결과가아니다. 우리의사회적의무에대해우리가가지고있는지능 (나는배타적지능이라고말하지는않는다. 왜냐하면동물도마찬가지로잘못을저질렀다는감정을느끼며, 무리들중하나가공격을당하면함께덤벼들기때문이다), 즉선과악에대한의식은도덕성에관한인간과동물사이의차이를이루어내지는못한다.

자신을 베푸는 자는 헐벗은 자를 동료로 대한다. 물론 완벽한 의미에서 동료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나누는 금액 정도로만 동료로 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것을 무력이나 교활한 짓으로 빼앗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사회성을 파괴하는 자이다. 그는 강도이다.

길에 누워있는 나그네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치료해 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고, 돈을 나누어 주는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의 동료이자 이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돌아보지 않고 나그네를 지나쳐 버리는 사제는 그나 그네에게 동료일 수 없으며 적으로 남는다.

이 모든 경우에서 인간은 자신의 동료에 대한 내면적인 인력에 의해, 은근한 공감에 의해 이끌린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함께 사랑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슬퍼하게 한다. 따라서 이 인력에 저항하려면 자연에 어긋나는 어떤 지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인간과 동물들 사이에 어떤 뚜렷한 차이를 이루어 내지는 않는다. 동물들의 경우도, 새끼의 연약함이 어미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한, 즉 새끼들을 어미에게 결합시키는 한, 목숨을 걸고 새끼들을 보호한다. 마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우리 영웅들을 생각나게 할 정도로 용기를 발휘하면서 말이다. 어떤 동물들은 사냥감을 쫓아서 모이고, 먹이를 나누기 위해서로 찾고 서로 부르다 (어떤 사람이 표현한 바에 따르면, 서로 초대한다). 위험이 닥치면 동물들은 서로 돕고, 서로 보호하며, 서로에게 알린다. 코끼리는 도랑에 빠진 동료가 빠져 나오도록 돕는다. 암소들은 이리떼의 습격을 막기 위해 둥글게 진열을 짜고 뿔을 위로 쳐들며 어린 새끼들을 가운데 넣어 보호한다. 말이나 돼지는 어느 한 마리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을 때 구하러 달려간다. 동물들이 서로 짝을 이루고, 수컷이 암컷을 어루만지며, 서로에게 충실하게 대하는 광경을 내가 어찌 다 묘사하랴! 그러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동물들 사이의 사교, 우애, 사랑을 보여주는 이 감동적인 우화가 동물들이 먹을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수컷이나 암컷을 서로 차지하려고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는 일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덧붙여 두자. 동물들은 우리 인간들과 아주 흡사하다.

사회적 본능은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나 많은 적든 존재한다.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같은 것이다. 인간은 보다 필연적으로 더욱 줄기차게 결합한다. 동물은 고립에 더 강하게 버티는 듯하다. 인간에게 사회적 욕구는 더 긴급하고 더 복잡하다. 짐승에게 사회적 욕구는 덜 뿌리 깊고, 덜 다양하며, 덜 요구되는 듯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경우 종과 개체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나, 동물의 경우에는 종의 보존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자신에게만 유일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그 무엇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회적 본능, 도덕 감각은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나 다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이 해하는 몇몇 자선 과정의 외현신과 위의를 행동으로 두고 인간 스스로 신을 닮아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이 동물적인 충동에 따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선량하고 애정 깊고 동정심 많으며 올바르다. 또한 우리는 성을 잘 내고 먹이를 탐내고 사치를 즐기고 고집이 세다. 즉 우리는 동물과 같다. 우리의

에는 그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은 결실은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일 뿐이다. 도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자신이 생산할 수 없는 것을 갚아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소유자가 공동체적 생산에서 뒤로 물러앉아 새로운 방식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기 시작하면서 소작농이 처하게 된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과제가 설로 다시 돌아간다.

여느 때처럼 같은 양을 생산했다고 확신하고 있던 농민 900 명은 소작료를 지불하고 나니 지난해보다 1/10 만큼 가난해진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란다. 사실 인즉, 이 1/10 은 한 때 생산과 공공 지출에 참여했던 지주-노동자가 생산했던 것이고 또 그에 의해 지불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은이 1/10 이 생산되지 않으며 지불되기만 할 뿐이다. 즉 그것은 생산자의 소비에서 차압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 불가해한 적자를 메우려고 노동자는 되갚을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자신하면서 돈을 빌린다. 그런데 이 확신은 결국 이듬해에 먼저 빌린 돈에 이자까지 덧붙인 또 한번의 대부로부터 귀착될 뿐이다. 누구에게서 빌리는가? 지주로부터이다. 지주는 그가 노동자에게서 받은 돈 중에서 남아도는 몫을 노동자에게 빌려준다. 그리고 지주가 되돌려주어야 마땅할 이과잉 징수액은 이자 대부의 형태로 다시 그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 이리하여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소유자는 갚을 능력이 없는 생산자에게 불을 해 주기를 꺼린다. 그리고 생산자는 늘 빼앗기면서도 그에게서 빼앗아 간 것을 늘 빌리고, 마침내 알거지가 된다.

이번에 그는 수단을 강구한다. 그는 곡물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제조업자도 그만큼 자기 제품 값을 올린다. 반작용이 계속되고 몇 차례 요동이 따르거나 하면, 농민이 제조업자에게 전가했다고 생각하는 소작료는 거의 상쇄된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셈이 성공했다고 자축하는 동안 그가 또 다시 가난해졌음을 알게 된다. 물론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가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가격 상승은 누구에게나 미치는 것이니, 소유자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1/10 만큼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9/10 만큼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빛이며, 이 빛 때문에 노동자는 빌리고, 이자를 갚고, 검약하고 또 굶어야만 한다. 갚지 않아도 되나 갚고 있는 이 9/100 때문에 굶는 것이다. 빚을 탕감하기 위해 굶는 것이다. 그 빚의 이자를 탕감하기 위해 굶는 것이다. 흥년이 들면, 굶는 일은 아사에게까지 이른다. 〈더 일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도한 노동은 굶는 일만큼이나 치명적이다.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 일해야 한다〉라는 말은 ‘더 생산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라고 그들은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생산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가? 노동과 자본과 토지의 결합된 작용에 의해서이다. 노동의 경우, 소작인의 의당 그것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본은 저축에 의해서만 마련된다. 그런데 소작인이 무언가 저축할 것이 있다면, 그는 곧 그것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 더 양보해서, 그에게 자본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자. 그래도 그가 경작하는 땅덩이가 늘 같은 면적이라면, 그 자본이 그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늘려야 할 것은 바로 땅덩어리이다.

그들은마침내 〈더잘, 더생산적으로일해야한다〉라고말할것인가? 그러나 소작료는생산량을최대한으로잡은평균치를바탕으로계산한것이다. 그렇지않은경우, 지주는소작료를올린다. 이런식으로, 대지주들은인구의증대와산업의 발전에따라사회가자신들의소유지에서얼마나더생산할수있는지를알때마다그 만큼순차적으로임대료를올리지않았는가? 소유자는사회의공익에는무관심하다. 그러나그들은마치매처럼먹이에는올때지않고언제든지뒹쳐서먹여치울채비가되어있다.

우리가지금인구 1,000 명의사회에대해관찰한사실들은각나라에서나인류 전체에서더큰규모로재현되고있다. 물론그모양새는한없이다채롭고변화무쌍하지만, 여기서그것을묘사하는것은나의의도가아니다.

요컨대, 소유는황령에의해서노동자들을헐벗게만든다음에탈진으로서서히죽게만든다. 약탈과살인이없으면, 소유는무無이다. 그런데약탈과살인에의해서소유는즉시지지기반을잃고소진된다. 따라서소유는불가능하다.

다섯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사회는소유에의해자기자신을먹여치우기때문이다.

집을너무많이실으면, 당나귀는기진맥진하지만인간은줄곧앞서걸어간다. 이고집스러운끈기, 이것을소유자는잘알고있으며여기에돈을벌희망을건다. 자유로운노동자는 10 을생산한다. 그러나나를위해그가 12 를생산할것이라고소유자는생각한다.

사실상, 우리가앞에서말한농부는자기땅을저당잡히는데동의하여자기태어난집에작별을고하기전에필사의노력을다한다. 그는새땅을소작한다. 그는 1/3 만큼더씨를뿌릴것이다. 그러면이새수확의절반이자기몫이되는고로, 그는 1/6 만큼만여분으로수확해서지대를지불할것이다. 오호통재라! 생산을 1/6 만큼불리기위해서농부는 1/6 이아니라 2/6 만큼더노동을해야만하는것이다. 그가수확을거두는것은이러한대가를치르고서이며, 그는신앞에서라면지불하지않아도필소작료를지불하는것이다.

소작인이한것을이번에는기업가가따라한다. 소작인은더많은땅을경작하며이웃을땅에서내쫓는다. 기업가는상품가격을낮추고, 제조와판매를독점하며경쟁자들을몰리치려애쓴다. 소유를만족시키려면우선노동자는자신의필요이상으로, 그다음에자신의힘이상으로생산해야만한다. 왜냐하면소유자로격상한일부노동자가자리를비움으로써한편은늘다른한편의결과이기때문이다. 그러나자신의능력과필요이상으로생산하려면, 다른이의생산을차지해야만하며따라

1754~1840, 프랑스의정치저술가-윌킨이) 씨의유명한정의도무조건배제하지는않는다. 비록이정의가미지의것에의해가지지않는것을, 즉지능에의해살아있는존재를설명하고나아가인간의본질적인특성인동물성에대해서는입을다무는이중의결함이있기는하지만말이다.

인간은따라서사회를이루고사는동물이다. 사회를말하는자는관계의총화, 즉한마디로말하자면체계를말한다. 그런데체계란특정한조건들아래서만존속하는것이다. 그러면인간사회의조건들은무엇이며, 〈법칙들〉은무엇인가?

인간들사이의 〈권리〉란무엇이고, 〈정의〉란무엇인가?

여러학파의철학자들과함께다음과같이말하는것은아무소용이없다; 그것은신성한본능이고, 영원한천상의목소리이며, 자연이준가르침이고, 이세상모든사람을밝히는빛이며, 우리마음속에새겨진법칙이다; 그것은양심의외침이고, 이성의명령이며, 감정의영감이고, 감각의취향이다; 그것은타인속의자기애, 즉계명된이기심이다; 그것은어떤내재적관념이고, 순수이성에뿌리를둔실천이성의정언명령이다; 그것은정념의인력이다등등. 이모든말이멋지게보이는만큼, 진실일수도있다. 그러나이모든말은무의미하다. 우리가이러한미사여구를열폐이지나놓아놓더라도 (수많은책속에서찾아볼수있다) 문제는단한줄도진척되지않는다.

〈정의는공통의효용〉이라고아리스토텔레스는말한다. 이것은사실이다. 그러나동반반복에불과하다. 샤를콩트씨는자신의 『입법론』 에서 〈공공행복이입법자의목적이어야만한다는원리는어떤뛰어난이성에의해서도부정될수없다. 그러나우리가그원리를표명하고증명했을때라도, 환자의치료가의사의목적이라고말함으로써의학이진보하지않는것처럼입법도진보하지않는다〉라고말하지않는가.

다른길을택하도록하자. 〈권리〉란사회를규율하는원리들의총화이다. 인간에게정의란이원리들을존중하고준수하는것이다. 정의를실천한다는것은사회적본능을따르는것이다. 따라서정의를나타내보이는것은사회를나타내보이는것이다. 따라서우리가일정수의여러상황들에서발생하는인간들서로간의행위를관찰한다면, 인간이언제사회를이루고, 언제사회를이루지않는가를쉽사리깨달을수있을것이다. 그리고그결과로부터추론함으로써법칙을얻을수있다.

가장단순하면서도가장확실한경우들로부터출발하자.

자식을생명의위험으로부터지키고자식을먹이기위해모든것을바치는어머니는자식과함께사회를이룬다. 그녀는좋은어머니이다. 아이를버리는어머니는사회적본능 (모성애는사회적본능의수많은형태중하나이다) 에충실하지못하다. 그녀는자연을저버린어머니이다.

만일내가익사할위험에서한사람을구하러물속에뛰어들면, 나는그의형제이자그의동료이다. 만일내가그를구하기는커녕물속에쳐박아버린다면, 나는그의적이자그의살해범이다.

제 1 부

제 1 절 인간과 동물의 도덕 감각에 관하여

철학자들은 종종 인간의 지능과 동물의 지능을 구별해주는 명확한 구분선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거론해왔다. 철학자들은 그들이 따라야만 했던 유일한 방침인 관찰에 이르기 전에 습관대로 커다란 어리석음을 내보이곤 했다. 이 끝없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이는 철학이라고는 조금도 내세우지 않는 겸허한 학자, 즉 프레데릭 퀴비에 (Georges-Frédéric Cuvier, 1773~1848, 박물학자·옮긴이) 였다. 퀴비에에 아주 단순한 구분,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체계보다 값진 명철한 구분을 보여주었다. 즉 그는 〈지능〉으로부터 〈본능〉을 떼어낸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도 다음과 같은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 즉 〈인간과 야수의 도덕 감각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 아니면 정도의 차이일 뿐인가?〉

만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명제의 뒷부분을 감하지 않았다면, 그의 주장은 도덕과 종교에 상처를 입히는 파렴치하고 신성모독적인 일로 보였을 것이다. 교회법정과 세속법정은 이 구동성으로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말투로 이 불경스러운 역설을 단죄했겠는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외쳤다. 〈양심, 양심이라는 인간명예에는 그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정의와 불의, 공덕과 죄과라는 관념은 인간의 고귀한 특권이다. 세속의 취향에 맞서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숭고한 능력, 자유와 정의에의 해점점신을 닦아갈 수 있는 이 숭고한 능력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 아니, 덕이라는 성스러운 이미지는 인간의 마음 속에만 심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나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동물 (zôon logikon kai politikon) 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이 정의는 그 후 에나온 다른 어떤 정의들보다 낫다. 그러나 나는 〈인간은 기관器官들의 힘에 말미암은 지능이다〉 라는 보날 (L. de Bonald,

서 생산자의 수가 감소된다. 이렇게 소유자는 우선 스스로 생산에서 멀어짐으로써 생산을 감소시킨 후, 다시 노동을 독차지함으로써 생산을 감소시킨다. 계산해보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대를 지불한 후에 노동자가 입은 손실은 1/10 이다. 노동자는 그 정도 분량만큼 자신의 생산을 늘리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자는 일을 더하는 것밖에 달리 수단이 없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지대를 완전히 받아낼 수 없는 지주들의 불만, 더 성실하고 더 일을 잘한다고 여겨지는 다른 소작인들이 지주에게 내미는 유리한 제의와 언질, 비밀스런 흥정이나 음모, 이런 것들이 노동의 할당에서의 변동이나 일정수의 생산자들의 퇴출을 결정한다. 다른 이들의 생산에 1/10 을 덧붙이기 위해서 900 명 중에서 90 명이 퇴출될 것이다. 그러면 총 생산은 늘어날 것인가? 결코 아니다. 노동자 810 명이 900 명의 생산을 맡고 있지만, 그들이 생산해야만 하는 것은 1,000 명의 몫이다. 그런데 소작료는 노동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토지 자본에 비례해서 책정되는 것이며 절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부채는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되고 피로는 쌓여만 간다. 이것이 바로 열명 중에 한 명을 죽이고 또 다시 열명 중에 한 명을 죽이곤 하는 사회의 모습이다. 이 사회는, 실패, 파산, 정치적·경제적 파국 따위가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평형을 회복해 주고 보편적 고난의 참된 원인에 관심을 돌리게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붕괴하고 말 것이다.

자본과 토지의 침탈에 이어서 경제적 과정들이 뒤따르는데,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일정수의 노동자들을 생산에서 축출하는 것이다. 이자가 어디에서나 소작인이나 기업가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들은 떠나할 것이 없이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일꾼들에게 적게 지불한다면, 그것으로 지대와 이자를 갚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이 놀라운 발견은 노동을 쉽고 신속하게 만들어 주며 나아가 노동자들을 수천씩 죽이는 그만큼 많은 끔찍한 기계들이 된다.

〈몇 년 전 에스트라포드 Strafford 백작부인은 1 만 5,000 명을 영지에서 내쫓은 후 이들을 소작인으로 다시 고용해서 땅의 가치를 높였다. 이 사적인 통치 행위가 1820 년에 어느 스코틀랜드의 대지주에 의해 소작농 600 가구에게 다시 되풀이되었다.〉 (티쏘 Tissot, 『자살과 폭동에 대하여』).

내가 인용한 저자는 현대 사회들을 뒤쫓는 반항 정신에 대해 웅변조의 글을 쓰고 있으나 정작 추방당한 사람들의 반항을 부인할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않고 있다. 나로서는 반항이 첫 번째 권리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바이다. 오늘날은 다만 나의 신앙 고백이 이해되기를 바랄 뿐이다.

사회는 자기 자신을 먹여치운다. 첫째는 노동자들에게 대한 폭력적이고 주기적인 억압에 의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아왔고 또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둘째는 소유가 생산자의 소비에서 취하는 몫에 의해서 말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자살 행위는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나, 얼마 안 가서 첫째 것이 둘째 것에서 새로운 원기를 얻게 되어, 이제 폭리에 더해 기근이 노동을 더욱 필요하게 만들고 동시에 더욱더 물게만들 것이다.

상업과경제학의원리에따르자면, 한기업이성공하려면그생산물이 (1) 자본의이자와, (2) 이자본의유지와, (3) 모든노동자와기업가의임금의총액과같아야만하며여기에더하여가능한만큼더많은이익이실현되어야만한다.

소유가지닌금전적이고탐욕적인재능을찬미하자. 불로수득이지닌각양각색의이름에맞추어소유자는 (1) 이자의형태로뿐만아니라, (2) 이윤의형태로그것을얻을권리를요구한다. 자본의이자제조비에들어간선금의일부일뿐이라는것이소유자의주장이다. 어느공장에 10 만프랑을투자해서그중에경비를공제하고연 5,000 프랑의수입을얻었다면그것은이윤이아니라자본의이자일뿐이라는것이다. 그런데소유자는공짜로일하는인간이아니다. 우화에나오는사자처럼, 소유자는자기의자격하나하나에대해지불케하고, 그리고나서는함께일한사람들에게는하나도남기지않는다.

첫째것을차지한다. 내가사자이니말이다.

둘째것을가져간다. 내가가장힘이세니말이다.

셋째것도내몫이다. 내가더뛰어나니말이다.

넷째것을누군가가가져가면, 그는화를입을것이다.

(Ego primam tollo, nominor quia leo:

Secundam quia sum fortis tribuetis mihi:

Tum quia plus valeo, me sequetur tertia:

Malo adficietur, si quis quartam tetigerit.)

이우화만큼더유쾌한것이있겠는가.

나는기업가, 나는첫째몫을차지한다.

나는노동자, 나는둘째몫을차지한다.

나는자본가, 나는셋째몫을차지한다.

나는지주, 나는전부다차지한다.

파에드루스 (Gaius Julius Phaedrus, 기원전 20~?, 우화작가. 이솝이야기를라틴어로옮겼다-옮긴이) 는이 4 행으로소유의모든형태를요약하고있다.

내가말하고싶은것은, 이이자, 하물며이이윤이불가능하다는사실이다.

노동자들은서로어떤관계를맺는가? 노동자들은거대한산업사회의다양한구성원들로서제각기노동및기능분화의원리에따라전체생산중그일부를떠맡고있다. 우선이사회가축산업자, 무두장이, 제화공이라는세명의개인으로한정되어있다고가정해보자. 사회의산업은구두를만드는데있다. 사회의생산물에서각생산자가차지하는몫이얼마냐고내가묻는다면, 어떤학생이든상업이나회사의규칙에따라그몫은생산물의 1/3 이될것이라고답할것이다. 그러나여기서중요한것은관계적으로서로결합되어있는노동자개개인의권리들을균형잡는문제가아니다. 중요한것은서로결합되어있든아니든우리의세노동자가의당그렇게하지않을수없으며원하건원하지않건현실적필요성이나수학적필연성이이들을서로결합시킨다는사실을입증하는일이다.

제 5 장 정의와 불의의 개념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 그리고 통치와 권리의 원리에 대한 규정

소유는 불가능하다.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유를 혐오하면서도 그것을 원한다. 우리의 사고는 평등에 매달려 있으나 그것을 실현할 줄을 모른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의지 사이의 이뿌리 깊은 반목을 누가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것인가? 정의와 사회의 가장 신성한 원리가 되어 버린 이 불길한 오류의 원인을 누가 보여 줄 것인가?

내가 감히 나서서 바이며, 그것에 성공하길 원한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정의를 침해하였는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선 정의란 무엇인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9. 마지막으로, 소유는그자체로는존재하지않는다. 소유는발생하고행동하기위해서어떤대외적인요인, 즉 〈무력〉과 〈사취〉를필요로한다. 달리말하자면, 소유는결코소유와대등하지않다. 그것은부정否定이고, 허위이며, 〈무無〉이다.

구두를만드는데는세가지공정이필요하다. 즉가죽을사육하는일, 가죽을마련하는일, 재단및바느질이요구된다. 가죽의가치는농부의축사에서나올때 1 이라면, 무두장이의작업장에서나올때는 2 가되고, 제화공의가게에서나올때는 3 이된다. 각노동자가일정한정도의효용을생산했다. 결국생산된효용을모두합하면이물건의가치가나온다. 따라서각생산자는우선자신의노동을, 다음에는다른생산자들의노동을지불해야만한다. 그러므로 10 개의가죽구두를얻기위해서는, 농부는 30 개의생가죽을주어야만할것이며, 무두장은 20 개의무두질한가죽을주어야할것이다. 왜냐하면 10 개의가죽구두는연속된두공정을거친만큼생가죽 30 개의가치가나가기때문이고, 마찬가지로 20 개의무두질한가죽은무두질공정을거친만큼생가죽 30 개의가치가나가기때문이다. 그러나제화공이자기의상품 10 개에대해서농부에게 33 개, 무두장에게 22 개를요구한다면교환은성립할수없을것이다. 왜냐하면그럴경우농부와무두장은제화공의노동에대해 10 을지불한후, 그들자신이 10 을주고판것을 11 을주고되사지않으면안되기때문이다. 이것은불가능한일이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이것은제조업자가무언가이익을날길때마다늘어나는일이다. 이익이지대이든소작료든지자이든이윤이든말이다. 우리가지금이야기하는작은사회안에서만일제화공이공구를마련하고가죽재료를사들인후그리하여자금이회수될때까지살아가기위해서이자로돈을빌린다면, 그는그이자를갚기위해서농부나무두장에게서이득을올리지않으면안된다는것이명백하다. 그러나이익이라는것은사기를벌이지않는한불가능하기때문에, 이자는불쌍한제화공의부담이될것이고결국그를파산으로몰고갈것이다.

나는터무니없이단순화된어떤가상의경우를예로들었다. 세가지기능만으로축소된인간사회란있을수없다. 가장덜문명화된사회라도이미수많은산업을전제로하고있다. 오늘날산업적기능(나는산업적기능이라는말로모든유용한기능을지칭한다) 의수는아마도 1,000 개이상일것이다. 그러나기능인의수가몇명이든간에경제법칙은항상동일하다. 요컨대, 〈생산자가살기위해서는그의임금이그의생산물을되살수있어야만한다〉는것이다.

경제학자들은이른바그들이주창하는과학의이근본원리를부정할수없다. 그러면그들은왜그토록고집스럽게재산을옹호하고, 임금의불평등과고리대의정당성과이윤의정당함을옹호하는가? 이모든것이경제법칙에어긋나고거래를불가능하게만드는데도말이다. 한기업가가원료를 10 만프랑에서사들이고임금과품삿으로 5 만프랑을지불한다. 그러고나서그는생산물에서 20 만프랑을얻으려한다. 다시말해서그는원료와노동자들의노동에서이익을얻으려하는것이다. 그러나원료의공급자와노동자들이자신들의임금을합치더라도자신들이기업가를위해생산한것을되살수없다면, 이들은어떻게생활할수있겠는가? 문제를파고들어보자. 자세한설명이필요하다.

노동자가자신의노동에대해하루당평균 3 프랑을받는다면, 노동자를고용한부르주아가자신에게돌아갈보수(비록그것이자신의자본에대한이자라할지

라도) 에더하여무엇인가더얻고자한다면, 그는상품의형태로노동자의일당을되 팔아서 3 프랑이상을빼내지않으면안된다. 따라서노동자는자신이고용주에게 생산해준것을되살수없게된다. 사정은어떤직업에서나마찬가지이다. 재단공, 모자공, 가구공, 대장장이, 무두장이, 석공, 보석세공인, 인쇄공, 점원등등, 심지어자영농이나포도재배자에이르기까지, 이들은자신의생산물을되살수없다. 그도그런것이이런저런형태로이득을얻고있는고용주를위해생산하면서도이들은자신의노동에대하여그노동으로얻은것보다더많이지불해야하니말이다.

프랑스에는 2,000 만명의노동자가과학, 예술, 산업등은갖분야에흠어져서 인간생활에필요한온갖물건들을생산하고있다. 이들의일당총액이연간 200 억 프랑에달한다고가정하자. 그러나소유권때문에그리고무수한불로수득, 사례금, 십일조, 이자, 뇌물, 이윤, 소작료, 집세, 지대그리고천차만별의이익금때문에, 생산물은소유자와고용주들에의해 250 억프랑으로평가된다고하자. 이것은무엇을의미하는가? 살기위해서바로이생산물들을되살지않을수없는노동자들은그들이 4 로생산한것을 5 를주고되사야만한다는것을의미하며닷새중에하루를굶어야만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계산이잘못이라고입증할수있는경제학자가프랑스에있다면, 나는나의잘못을지적해달라고간청하는바이다. 그러면내가오해해서그리고악의로소유에 대해퍼부은모든공격을취소할것을약속한다.

이제이이익의결과들을살펴보자.

만일노동자의임금이어떤직업에서나동일하다면, 소유자의선취에따른결손도어디에서나동일하게느껴질것이다. 그와동시에악의근원이너무나도명백하게드러나기때문에이미오래전부터잘알려지고또억제되었을것이다. 그러나청소부의임금에서장관의임금에이르기까지임금사이에도재산에서와마찬가지로 불평등이존재하기때문에악자에대한강자의약탈은파문을이루듯번져서사회계서제에서가장아래자리잡은노동자일수록더욱큰결핍을느낄것이며, 인민의최하층계급은말그대로헐벗고다른사람들에의해산채로먹힐것이다.

노동자대중은그들이짚피복도, 그들이만든가구도, 그들이버린쇠불이도, 그들이다듬은보석도, 그들이새긴판화도살수없다. 그들은자기가씨를뿌린밀도, 자기가재배한포도로담근포도주도, 자기가기른가축의고기도손에넣을수없다. 그들에게는자기가지은집에살권리도, 자기가소재를제공한연극을구경할권리도, 자기육체에필요한휴식을즐길권리도허용되지않는다. 왜그런가? 이모든것을즐기기위해서는요구하는값을치르고그것을사야만하는데, 불로수득권이 이를허용하지않기때문이다. 노동자들은굶주린채넋을잃고쳐다보는휘황찬란한상점들의간판위에서굶은글씨로새겨진문구를읽는다. <이것은그대가만든 것이나그대가가지지못하리라 (Sic vos non vobis!).>

노동자 1,000 명을고용하고이들각자에게서하루당 1 수 sou 씩버는공장주는노동자 1,000 명을도탄에빠트리려고준비하는자이다. 이익을보는자는누구나기아계약을맺었다. 그런데인민은소유가자신을굶주리게만드는수단이되

<우리들중누가이웃에게향료를팔것인가?> <그것을가게에내놓도록하자> 라고경제학자는외친다. 가장기민한자, 가장교활한자가가장정직한자이며가장 훌륭한상인이라.

이것이바로나폴레옹법전의정신이다.

열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는평등을 부정하기때문이다.

이명제에대한설명은앞의명제들에대한요약이다.

1. 경제법의원리는 <생산물은생산물에의해서만살수있다> 는것이다. 소유는효용을생산할때에만옹호될수있는것이며아무것도생산하지못한다면그순간부터비난의대상이된다.

2. <노동이생산물에의해균형을이루어야한다> 는것은경제의법칙이다. 소유에의해생산이그가치보다더많은비용이든다는것은엄연한사실이다.

3. 또다른경제법칙. 즉, <자본이주어질경우, 생산은더이상자본의규모에 의해측정되는것이아니라생산력에의해측정된다> . 그런데소유는노동에대한고려없이소득이늘자본에비례할것을요구하므로, 이런점에서소유는원인과결과사이의이대등관계를인정하지않는다.

4. 와 5. 명주를짓는누에와마찬가지로노동자는결코자신을위해서생산하는 것이아니다. 소유는두배의생산을요구하면서도그것을얻기는커녕, 노동자를헐벗게하고죽여버린다.

6. 자연은인간개개인에게하나의이성, 하나의정신, 하나의의지만을주었다. 그런데소유는한인간에게복수의투표권을부여하면서그의정신도복수성複數性을 띠고가정한다.

7. 효용을재생산하지않는모든소유는파괴행위이다. 소유는소비에임하든, 저축에임하든, 자본화에임하든, <무효용> 을낭으며불모와죽음의원인이된다.

8. 자연권의충족은일종의등식과도같다. 달리말하자면, 한물건에대한권리는반드시이물건에대한점유에의해충족되는법이다. 따라서자유에대한권리와자유로운인간조건사이, 아버지가될권리와부성사이, 안전에대한권리와사회보장사이하나의균형, 즉등식이성립한다. 그러나불로수득권과이불로수득의실현사이에는등식이성립하지않는다. 왜냐하면불로수득이실현됨에따라서그불로수득은제 2 의불로수득에대한권리를놓고, 제 2 의불로수득은제 3 의불로수득에대한권리를놓는식으로끝없이이어질것이기때문이다. 소유는그대상과절대로조응하지못하므로, 자연이나이성에어긋나는권리이다.

그결과, A는 자신이 B보다더부자라는바로그이유만으로원하기만하면 B를먹어치울것이다. A와 C가 B와 D를약탈하는것은결코소유권에의해서가아니라힘의권리에의해서이다. 소유권에의해서는두이웃 A와 C는상인 B와 D나 마찬가지로아무것도할수없다. 그들은서로에게서빼앗지도, 서로를파괴하지도 못하며, 서로상대방을희생시켜부자가될수없다. 침탈행위를받는것은바로강자의권리에의해서인것이다.

그런데제조업자가자신이원하는대로임금을인하하는것도, 부유한상인이나 돈많은지주가자기들의생산물을원하는값에파는것도바로이러한강자의권리에 의해서이다. 기업가는노동자에게다음과같이말한다. <내가당신노동력을사든 말든내자유이듯이, 당신이다른데에서일하든말든당신자유이다. 나는그만큼 만지불할것이다.> 상인은고객에게이렇게말한다. <사든지말든지하십시오. 내가내상품을팔든안팔든내자유이듯이, 당신이당신돈을쓰든말든당신자유요. 나는그만큼을원하오.> 그러면누가양보해야하는가? 가장약한쪽이다.

따라서힘이없는소유는소유에대해서무기력하다. 힘이없다면, 소유가불로수득에의해증대될수없으니말이다. 결국, 힘이없는소유는무용지물이다.

<역사적해설> 식민모국의설탕과토착민의설탕의문제는우리에게이소유의 불가능성에대한놀라운사례를보여준다. 두산업을그대로내버려둔다면, 토착기업인은식민업자에의해파산당할것이다. 사탕무산업을장려하기 위해서는사탕수수에세금을매겨야만한다. 한쪽의소유를유지하려면, 다른한쪽의소유를침해해야만하는것이다. 이문제에서가장주목할만한점은실상사람들이가장덜관심을두어온점이기도한다음과같은사실이다. 즉이렇게하든저렇게하든소유는침해될수밖에없다는점이다. 두산업이시장에서균형을유지하도록하기 위해서각각비례세금을매겨보라. 그러면 <최고가액 maximum> 이등장할것이며소유에이중으로타격을주게될것이다. 즉, 당신이매긴세금은한편으로상업의자유를훼손하게되며, 다른한편으로소유자들사이의평등을무시하게된다. 사탕무쪽의손해를보상해주라. 그러면당신은납세자의소유를침해하게된다. 여러품질의담배를재배하듯이, 국민의세금을들여두품질의작물을재배해보라. 그러면당신은어느한종류의소유를파괴하게된다. 이마지막대기가가장단순하고최선의방책일지모른다. 그러나국민을여기에끌어들려면, 능란한정신과관대한의지가합쳐져야하는데, 이는오늘날실현불가능한일이다.

경쟁, 즉상업의자유 - 한마디로말하자면교환되는소유 - 는여전히오래도록 우리의상업입법의기초가될것이며, 이상업입법은경제적관점에서불때모든유형의민법과일체의통치를다포괄할것이다. 그런데경쟁이란무엇인가? 그것은단히경기장에서의결투이며, 그결투에서권리란무기에의해판가름나는것이아닌가.

<누가거짓증언을하는가, 피고인가증인인가?> 라고야만시대의우리조상들은말했다. <그들을싸우게하라. 이긴자가옳다> 라고한층더야만적인우리의판사님께서대답한다.

는그노동마저도얻지못한다. 왜그런가? 임금이불충분한까닭에노동자들은노동을독점하지않을수없으며굶주림으로죽기전에경쟁으로인해서로가서로죽이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진리를들추어내자면끝이없다.

만일노동자가자신의봉급으로자신의생산품을살수없다면, 생산품은생산자를위해만들어진것이아닌셈이다. 그러면누구를위한것인가? 가장돈많은소비자를위해서, 달리말하자면사회의일부집단을위해서일뿐이다. 그러나사회전체가일을한다면, 사회는사회전체를위해생산하는것이다. 따라서사회의일부만이 소비한다면, 조만간사회의일부가일을쉬어야만한다. 그런데일을쉰다는것은노동자에게나소유자에게나죽는일이다. 여러분은결코여기에서벗어날수없으리라.

상상할수있는가장개탄할광경은생산자들이자신들의편견탓에깨닫지못한이수확적필연성에, 이수의힘에저항하여싸우고있는장면이다.

인쇄공 10 만명이 3,400 만명에게충분히읽을거리를제공할수있다면, 그리고이들중 1/3 정도만이그책값을감당할수있다면, 이 10 만의노동자는서점에서팔릴수있는양보다 3 배나더생산하게되리라는것은명백하다. 노동자의생산이소비의필요를초과하지않기 위해서는노동자가 3 일중이들은일을쉬든지아니면매주, 매달또는매 4 분기마다 1/3 씩서로교대해야만한다. 즉그들생애의 2/3 동안살지않아야한다는말이다. 그러나산업이란소유자의영향력에의해서, 이런식의규칙을따르지않기마련이다. 생산물의양이많으면많을수록, 생산공정이빠르면빠를수록, 책한권당원가가낮아지기때문에, 적은시간안에더많이생산하고자하는것이산업의본질이다. 매진될징조가보이는즉시공장은일꾼들로꽂차고모두일에달라붙는다. 이때거래는번창하며지배하는자도지배받는자도서로줄거워한다. 그러나사람들이일을하면할수록그만큼휴업을준비하는셈이다. 많이웃는만큼많이울게되리라. 소유제도아래서는근면의꽃이장례식화환을장식하는데쓰일뿐이다. 노동자는일하면서자신의무덤을파고있다.

공장이멈출때도자본은이자가붙는다. 따라서생산업자는당연히생산경비를줄임으로써생산을유지하려한다. 여기에서임금의인하, 기계의도입, 여성또는아동노동에의한남성노동의대체, 숙련도의저하, 불량제품등이생긴다. 생산은계속된다. 왜냐하면생산비의저하가판로의확대를가능하게하기때문이다. 그러나언제까지나생산이계속될수는없다. 왜냐하면원가의하락이생산의양과속도에토대를두는것인만큼, 생산능력이그어느때보다도소비를초과하게되기때문이다. 소유의원리가끔찍스러운결과를내는것은바로이때, 즉생산이노동자들앞에멈추어서고노동자들이임금으로그날의생계를겨우때우기도힘겨울때이다. 이때에는저축도검약도있을수없고하루라도더살게해줄조금의자본축적도있을수없다. 오늘공장문이닫히고, 내일광장에는굶주림이넘친다. 모레는병원에서죽거나아니면감옥에서끼니를때울것이다.

새로운사건들이일어나서이끔찍한상황을한층더복잡하게만든다. 상품이넘치고가격이너무떨어진결과, 기업가는곧자기가빌린자본의이자도갚지못하게

된다. 그러면 겁먹은 주주들은 서둘러 자금을 회수하고 생산은 정지되며 노동은 중단된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자본이 산업에서 빠져나가 증권거래소에 물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나는 일전에 블랑키(A. Blanqui, 1798~1854, 프랑스의 경제학자-유클리) 씨가 자본가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개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 자본이 동위원인은 실로 단순하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떤 경제학자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거나, 좀더 정확히 말하면 그에 대한 언급을 회피해야만 했다. 그 원인이란 바로 〈경쟁〉이라는 것이다.

내가 경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종의 두 산업 사이의 대립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들이 서로 상대방을 이기고자 벌이는 동시다발적인 분투를 가리킨다. 오늘날이 분투는 너무나 엄청나서 상품가격이 생산비나 판매비를 건지지 못할 정도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하고 나면, 자본가에게는 이자가 커녕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상업 및 산업 침체의 첫 번째 원인은 자본의 이자인데, 이 이자라는 것은 아주 옛날에 그것이 돈을 빌려 쓴 대가를 지불하는 데 쓰일 때 마다 그리대라는 이름으로 이구동성으로 비난을 받았으나, 이제 지대, 소작료, 이익 따위의 명칭으로 사용되자 사람들은 굳이 비난하려 들지 않는다. 마치 빌려 쓴 물건의 종류가 사실상 〈도둑질〉에 불과한 대부분의 대가를 응당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듯이 말이다.

자본가가 얻는 불로소득이란 바로 이런 것이며, 상업 공황의 빈도와 강도가 바로 이런 것이리라. 첫 번째 것이 주어진다 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두 가지를 알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은 사회를 규율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가? 그러면 가용 자본의 양, 즉 이자를 가져오는 자본의 양과 그 이자의 법정 비율에 대해 문의하라. 벌어진 사건들이란 일련의 파산에 다름 아닐 것이며 그 파산의 건수와 강도는 자본의 활동력 자체에 비례할 것이니 말이다.

1893년에 기록된 파산은 파리 한 지역에서만 1,064 건이었다. 이 비율은 1840년 초 몇 달 동안 줄곧 유지되었으며 내가 이 글을 쓸 무렵에도 위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듯이 보인다. 게다가 스스로 문을 닫은 상사의 수가 파산이 선포된 상사의 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대홍수의 해 우리는 회오리바람의 파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의 파탄은 때로는 은밀하고 상시적일 수 있으며, 때로는 간헐적이고 격렬할 수 있다. 이것은 소유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양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소유가 분할되어 있고 소규모 산업이 많은 나라에서는 각자의 권리와 주장은 상대방의 권리와 주장에의 해균형을 이루게 되며 따라서 소유의 침탈력은 서로 상쇄된다. 여기에서는 사실상 소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불로소득권이 거의 행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삶의 안정성에 관한 한 노동자들의 처지는 그들 사이에 절대적인 평등이 존재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자유롭고 완벽한 결사체가 주는 모든 이점을 박탈당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 즉 누구도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이 불행에의 한 몇몇 개별적인 희생자를 제외한다면, 사회는 이러한 유형의 평등 속에 평온을 유지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사람이 가난해져야만 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왜냐하면 A에게서 소유권이나 불로소득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Z에게는 거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건들의 평등과는 별개로, 권리의 평등이 어떻게 진실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정치경제학의 부당성은 명백하다. 〈기업가인 나는 노동자의 노무를 살 때, 노동자의 임금을 내기 업의 순생산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와는 반대로 순생산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노동자는 그것을 자신의 순생산안에 포함시킨다. …〉(세, 『정치경제학』)

이것은 노동자의 경우, 그가 얻는 모든 것이 〈순생산〉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가의 경우 그가 얻은 것 가운데서 자신의 보수를 제외 한 나머지 것만이 〈순생산〉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기업가만이 이득을 얻을 권리가 있는가? 이 권리는 근본적으로 소유권과 같은 것인데 왜 노동자에게는 거부되는가? 경제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노동자는 자본이다. 그런데 자본이란 그 수리 및 유지에 드는 비용 외에도 이자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유자가 자신의 자본을 위해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얻어 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왜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자본에 대해 해와 유사한 이자를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가?

따라서 소유권 권리의 불평등이다. 왜냐하면 소유가 권리의 불평등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재산의 평등일 것이며 따라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헌법은 만인에게 권리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의해 소유는 불가능하다.

II. A라는 영지의 소유자는 그가 이 토지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자기 이웃인 B의 땅을 가로챌 수 있는가? 〈아니다〉라고 소유자들은 대답한다. 그러면 이것이 소유권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제 여러분은 일련의 유사한 명제들을 통해서 이를 보게 될 것이다.

모자상인 C는 이웃에서는 모자상인 D에게 그의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그만두라고 강제할 권리가 있는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C가 모자 하나당 1프랑의 이윤을 남기려 하는 반면에, D는 50상팀으로 만족한다. 분명히 D의 절제가 C의 욕구를 해친다. C는 D가 헐값에 장사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는가? 확실히 아니다.

D가 원한다면 C보다 50상팀 더 싸게 모자를 팔 자유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C가 모자를 1프랑 더 싸게 내놓을 자유가 있다. 그런데 D는 가난하나, C는 부자이다. 따라서 한 두 해 지난 다음, D는 이 경쟁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반면, C는 판매를 독차지하게 된다. 소유자 D는 소유자 C에 대해 무엇인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소유자 D는 자기의 소유권과 장사를 회복하기 위해 소유자 C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D가 더 부자였다면, 그 역시 C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할 권리가 있었을 테니 말이다.

같은 이유로 대지주 A는 소지주 B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당신 땅을 내게 파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땅을 팔지 못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B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는 한, A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다.

만일 우리의 제도들이 계산착오를 원리로 삼고 있다면, 이 제도들은 그만큼 기만 행위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사회 기구 전체가 소유라는 이 절대적인 불가능성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부라는 것은 하나의 허깨비이며 현 사회는 하나의 유토피아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아홉번째 명제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유는 소유에 대해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I. 우리의 공리의 세번째 귀결에 따르면, 이자는 국외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와도 충돌하고 있다. 이 경제 원리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 한눈에 보더라도 이보다 더 단순한 것은 없으리라. 하지만 이보다 더 불합리하고, 이보다 더 명확히 모순되며, 이보다 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다.

제조업자는 그의 집이나 그의 자본의 임대료를 자기 자신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즉 〈제조업자는 자기에게 지불한다〉, 달리 말하자면, 제조업자는 자신의 생산품을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불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소유에 의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듯이 보이는 제조업자가 그의 이익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품들에 의해서도 얻고자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90 상탔이 들어간 물품에 대해 1 프랑 (1 프랑은 100 상탔-푼이) 의 값을 자신에게 지불시키고 시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그와 같은 작업은 돈을 상인의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길 뿐, 그에게는 아무 이익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거래하는 한 개인에 대해 진실인 것은 상업 세계 전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실이다. 10 명이든, 15 명이든, 20 명이든 원하는 만큼 긴 생산자들의 사슬을 상상해보자. 생산자 A 가 생산자 B 에게서 이익을 취한다면, 경제 원리에 따라서 B 는 C 에게서, C 는 D 에게서 다시 그만큼의 몫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일이 결국 Z 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Z 는 과연 누구에게서, 처음에 A 가 취한 이익을 회수할 것인가? 〈소비자에게서〉 라고 세는 답한다. 가련한 위선자여! 이 소비자는 그러면 A, B, C, D 등등 혹은 Z 와는 다른 별개의 인물인가? Z 는 누구로부터 회수할 것인가? 만일 그 가치의 최초 소비자 A 로부터 회수한다고 하면, 이미 누구에게도 이익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소유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반대로 Z 가 그 부담을 짊어진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그 사회에 속하지 않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인정해주고 있는 소유권과 이익권을 그에게는 거부하는 것이니 말이다.

따라서 국민이란 인류 전체와 마찬가지로 자체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대한 산업 사회와도 같은 것이니만큼, 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다른 한

여겨보라. 사회는 칼날 위에서 겨우 균형을 잡고 있는데 불과하다. 아주 작은 충격으로도 사회는 쓰러지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대개 소유의 회오리바람은 국지화되어 있다. 한편으로 지대는 일정한 수준에서 머물며, 다른 한편으로 경쟁 및 잉생산의 효과에 의해 공산품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농민의 처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계절에 의해 좌우될 뿐이다. 따라서 소유의 탐욕이 주로 미치는 것은 공업에서이다.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업 공황〉이지 〈농업 공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작농은 볼로수득권에 의해 조금씩 먹혀 들어가는 데 반해서, 제조업자는 단숨에 먹혀 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장의 휴업, 재산의 파탄, 노동자 계급의 축출이 생기며, 이들 중 일부는 거리에서, 병원에서, 감옥에서, 도형장에서 죽어간다.

이 명제를 요약해보자.

소유자는 그가 노동자에게 지불한 것보다 더 비싼 값으로 생산물을 노동자에게 판다. 따라서 소유는 불가능하다.

다섯번째 명제에 대한 토론

I. 몇몇 개혁가들, 심지어 어떤 학파에도 속하지 않으며, 가장 수가 많고 가장 가난한 계급의 운명을 개선하고자 물두하는 대다수 저술가들 역시 오늘날 날더 나은 노동의 조직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푸리에의 사도들은 우리에게 줄곧 〈팔랑스테르로! Au phalanstère!〉라고 외치면서 그와 동시에 다른 파벌들의 어리석음과 우스꽝스러움에 대해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이들은 〈5 와 4 를 더하면 9 가 되고, 2 를 빼면 9 가 남는다〉는 계산을 고안해 낸, 여섯 명 남짓의 유래 없는 천재들로서, 이 놀라운 산술을 믿으려 하지 않는 프랑스의 아둔함을 개탄한다.¹

사실 푸리에 주의자들은 한편으로 그들이 만들어 낸 〈각자의 자본, 각자의 노동, 각자의 재능에 따라 각자의 몫을〉이라는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유와 볼로수득권의 옹호자임을 자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가 사회의 모든 부를 향유하기를, 간단히 말하자면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을 완전히 자기가 향유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마치 노동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지 않을까? :

¹ 푸리에에는 정수 整數를 분수 分數로 곱해야만 했기 때문에 피승수 (곱해지는 수) 보다 훨씬 큰 값을 찾는 데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조화로운 상태에서는 수의 이영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균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은 마치 조화론자들이 불붙는 열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나는 학식이 깊은 어떤 푸리에 주의자에게 이러한 물리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나는 잘 모른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고 그는 내게 대답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은 화체설 présence réelle (로마가 틀릭에서 성체 성사 중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믿음- 편집자주) 을 믿지 않았다.

일하라, 너는하루에 3 프랑을받으리라. 너는 55 수로살것이며나머지는소유자에게줄것이다. 그러면너는 3 프랑을쓴셈이다.

만일이말이사를푸리에의체계를가장정확히요약한것이아니라면, 나는팔랑스테르주의자들의어리석음을나의피로써보증할것이다.

만일소유가유지된다면, 그리고노동이지출을절대로메울수없다면, 산업과농업을개혁하는일이, 한마디로말해서노동을한다는것이무슨소용이있겠는가? 소유를폐지하지않는다면, 노동의조직은또하나의기만일뿐이다. 생산을 4 배로늘린다해도, 이는불가능한일은아니라고생각하지만쓸데없는짓에불과하다. 생산물의증가분은만일그것이소비되지않는다면아무가치도없는것이며소유자는그것을이자로서받아들이기를거부할것이니말이다. 설령생산물의증가분이소비된다고해도소유에수반되는온갖애로사항들이다시나타날것이다. 정념情念의인력引力이라는이론이여기서는거짓이라는사실, 그리고나쁜정념, 즉소유의〈정념〉을조화시키려했다는것은푸리에가무엇이라말하든간에그가자기마차의바퀴에빗장을질러놓은셈이라는사실은인정해야만한다.

팔랑스테르경제학의영동함이너무드러지다보니많은사람들이소유자에대한푸리에의온갖중경심에도불구하고그가소유의숨은적이나니었나의혹을품는다. 이러한견해는몇가지그럴듯한이유에의해지지될수도있다. 그러나나는이러한의견에동의하지않는다. 이인물에게협잡꾼기질은너무많고성실성은너무적다. 나로서는푸리에의속내가달랐다기보다는차라리어디서나드러날정도로무지했다고믿고싶다. 그의제자들은어떠한가. 사람들이이들에대해어떤의견을가지려면, 우선이들스스로가단호하게그리고심정적주저없이자신들이소유의보전을원하는지아닌지를밝혀야만하며, 〈각자의자본, 각자의노동, 각자의재능에따라각자의몫을〉이라는이들의유명한격률이무엇을의미하는가를확실하게밝혀야만한다.

II. 그러나반쯤개종한어떤소유자는말할것이다. 은행, 지대, 소작료, 집세, 온갖고리대를그리고마침내는소유를폐지함으로써생산물을각자의재능에맞게분배하는것이가능하겠느냐고말이다. 이것이바로생시몽의생각이었으며, 이것이바로푸리에의생각이었다. 사실이것은인간의의식에내재한욕구인바, 장관더러농민처럼살라고응당요구할수는없는일인것이다.

아, 미다스(Midas, 그리스신화에나오는프리기아의왕. 들의정령판 Pan 이자신의피리소리를음악의신아폴론의수금소리와겨루었을때심판관토몰로스는아폴론의승리를선언했다. 미다스가이에이의를제기하자아폴론은미다스의귀를길게늘여서당나귀귀로만들어버렸다-옮김이) 여! 그대의귀는길기도하다! 뭐라고! 더나은대우란실상불로수득권과같은것이라는사실을그대는절대이해하지못하리라! 물론불평등과공동체적삶을한몫음으로보려했다든가불평등과소유를한몫음으로보려했다는것은생시몽이나푸리에또는그들의추종자들에게서흔히발견되는오류였다. 그러나그대, 수치에 밝고, 경제학에능하고, 몸소만든대수표를몽땅외우고다니는그대가어떻게이토록엄청난오류를범할수있는가?

성왕루이 Saint Louis 의시대에살았던어떤사람이(그뿐만아니라그의후손들역시) 바로이 100 프랑을빌리고는값기를거부했다고가정해보자. 그후손들이나할것없이악의에찬사람들이었고마침내시효취득이만료되었다고인정하더라도, 그마지막자손은이 100 프랑을이자에이자를더해서값아야만할것이다. 그액수는앞에서우리가보았듯이거의 108 조프랑에달할것이다.

재산은날로더욱빠르게증식되고있다. 앞에서든에는자본의 1/20 에달하는이익을가정했다. 그러나그이익이자본의 1/10, 1/5, 1/2, 심지어자본그자체와맞먹는경우도드물지않다.

평등의불구대천의적인푸리에주의자들, 평등의주창자들을〈탐욕꾼 requin〉으로취급하는푸리에주의자들은생산을 4 배로늘림으로써자본과노동및재능의모든요구를만족시키길원한다. 그러나생산이 4 배로늘어날때, 소유는그축적력과자본화효과에의해서순식간에생산물과자본, 토지, 심지어노동자들까지흡수해버린다. 팔랑스테르에서자본투자나이자대부를못하도록금지할것인가? 그러면소유가의미하는바를무엇이라고설명할수있을까?

이런식의산술을더밀고나가지는않겠다. 계산은천차만별일수도있으며내계산만을고집할수도없으니말이다. 내가묻고자하는것은단지점유권관련소송에서판사들이과연어떤규정에따라그이자를결정하는가하는것이다. 문제를한단계더높이끌어올려서나는다시묻는다.

입법자는, 소유의원리를공화정에도입하면서그로인해초래될모든결과들을헤아려보았을까? 그는가능성의법칙을알고있었을까? 만일알고있었다면, 왜법전은그것을기술하고있지않은가? 왜소유자가그의소유를불리고이자를요구하도록내버려두는, 재판관이이소유의권한을인정하고확립하도록내버려두는, 국가가끝없이새로운조세를매기도록내버려두는, 이끔찍스러운방종이생겨났는가? 인민이예산을거부하고, 소작인이소작료를거부하며, 기업인이자본의이자를거부하는권리를가지려면, 어떤경계선을넘어서야하는가? 놀고먹는자가얼마만큼이나일하는자를착취할수있는가? 약탈의권리는어디에서시작해서어디에서끝나는가? 생산자가소유자에게 〈나는이제더는당신에게값을것이었다〉라고말할수있을때는언제인가? 소유가언제만족하겠는가? 도둑질이허용되지 않을때는언제인가?

입법자가가능성의법칙을알고있으면서도그것을전혀고려하지않았다면, 그의정의正義란도대체무엇인가? 그가그것을모르고있었다면, 그의학식이란도대체무엇인가? 그가교활하든어리석든간에우리는그의권위를인정해야만하는가?

우리의헌장과법전들이불합리한가정을원리로삼고있다면, 법률학교에서무엇을가르치겠는가? 최고재판소의판결은무엇인가? 우리의의회들은무엇을심의하는가? 〈정치〉란무엇인가? 우리는누구를 〈정치인〉이라부르는가? 〈법률학〉이란무엇을의미하는가? 차라리우리는 〈법률무지학 jurisignorance〉이라말해야하지않겠는가?

러나이는있을수없는일이다. 그도그렇것이공채가발행되었다면, 이는경상비가 부족했기때문이니말이다. 아니면정부가쓰는경비를재생산에충당해야만한다. 그러나이는생산기반을확장하지않는한불가능하다 (이는우리의가정과는다른다). 아니면마지막으로, 빚을상환하기위해납세자가새로운세금을내야만한다. 이는불가능한일이다. 왜냐하면새로운세금이시민모두에게균등하게할당된다면, 시민의절반아니면그이상세금을내지못할것이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새로운세금이부자들에게만징수된다면, 이는강제징수요소에대한위해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재정실무는, 차용의방식이비록아주위험하기는할지라도 여전히가장편리하고가장확실하며가장비용이덜먹히는길이라는사실을보여주었다. 따라서정부는돈을빌린다. 즉끊임없이자본화에임하고또예산을늘린다.

따라서예산은줄어들기는커녕필연적으로줄곧늘어날뿐이다. 이는아주단순 명료한사실인바, 경제학자들이그들의온갖학식에도불구하고이사실을깨닫지 못했다니그저놀라울뿐이다. 그들이이사실을깨달았다면, 어찌그것을비난하지 않았겠는가?

〈역사적해설〉 오늘날사람들은예산경감에큰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하는 재정조치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 이것은국채율 5% 에관한문제이다. 그렇다면, 정치적·법률적인문제는논외로하고재정문제만을고려하더라도, 국채율을 5% 에서 4% 로변경할경우, 앞으로는같은연유와같은필요로인해 4% 를 3% 로, 3% 를 2% 로, 2% 를 1% 로줄여야할것이며, 마침내는모든종류의국채율을폐기해야만한다는것이진실이아니겠는가? 그러나이것은사실상조건들의평등이나소유의폐지를법령화하는것과마찬가지이다. 그런데내가보기에, 끄떡도 않는필연의수레바퀴에질질끌려가느니보다불가피한혁명에대처하는것이현명한국민에게더어울리는일인듯하다.

여덟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의축적력은무한대인반면소유가작용을미치는수량은제한되어있기때문이다.

만일평등하게살고있는사람들이그들중하나에게배타적인소유권을부여해서, 이유일한소유자가인류에게 100 프랑을복리로빌려주고 24 세대가지난후의자손들에게그것을갚게한다고하면, 이돈 100 프랑은 600 년이지나면 107 조 8,540 억 1,077 만 7,600 프랑이될것이다. 이것은프랑스의자본금을 400 억프랑으로가정한다면, 무려 2,696 과 1/3 배에해당하는액수이다. 이것은동산과부동산을포함해서지구전체가치의 20 배가넘는금액이다.

경제학의관점에서볼때인간의생산물은그의개인적능력여부와는상관없이한인간의노동으로서의가치밖에없으며, 한인간의노동은마찬가지로한인간의소비로서의가치밖에없다는사실을그대는이제기억하지못하는가? 그대는내게 19 세기의시이예스(Emmanuel Joseph Sieyès, 1748~1836, 프랑스의로마가톨릭성직자, 정치작가. 프랑스혁명의최고정치이론가중한사람이었으며프랑스영사관과제 1 프랑스제국에서도두드러진역할을했다-편집자) 라할만한가련한팽에로-페레라(S. Pinheiro-Ferreira, 포르투갈의정치인, 법학자-옮긴이), 이위대한헌법의초안자를연상시킨다. 그는국민을 12 개의계급또는등급으로나누어각각 10 만프랑, 8 만프랑, 2 만 5,000 프랑, 1 만 5,000 프랑, 1 만프랑등의봉급을책정했으며, 가장낮은등급에는시민이받을수있는최저치봉급인 1,500 프랑과 1,000 프랑을책정했다. 팽에로-페레라는차별을좋아했으며고위관직없는국가나사령부없는군대를생각조차하지못했다. 그리고그는또한자유, 평등, 우애를사랑했거나아니면사랑한다고믿었기때문에, 우리옛사회의 좋은점과나쁜점들사이에서절충점을찾아서이것으로헌법을구성했다. 경탄할팽에로-페레라여! 수동적복종에까지이르는자유, 언어의통합에까지이르는우애, 재판과단두대에서평등, 이것이그의공화국의이상이었다. 평가받지못할천재여. 금세기는그들받아들이지못하나다음세기는그의양육을하리라.

들어라, 소유자여. 사실능력의불평등은존재한다. 그러나법적으로는승인되지도, 허용되지도, 가정되지도않는다. 3,000 만명의사람드레대해뉴턴같은인물은한세기에하나로죽는다. 심리학자는이토록멋진천재성에감탄하지만, 입법가는기능의회소성만을본다. 그런데기능의회소성이그기능을맡은사람에게남다른특권을주지는않는바, 이는한결같이중요한다음의여러이유때문이다.

(1) 조물주가원래의도한바에따르면, 천재의회소성이란결코탁월한재능을부여받은인간앞에서사회가무릎을꿇게하는동기가아니었다. 그것은각자의기능이모두에게널리도움이되도록하기위한섭리의수단일뿐이다.

(2) 재능은자연의선물인것이상이므로자연의창조물이다. 그것은축적된자본이며, 그것을받은자는수입자에지나지않는다. 사회가없다면그리고그사회가배편교육과든든한도움이없다면, 가장훌륭한천성도그영예를빛내야할영역에서조차범상한능력에미치지못할것이다. 한인간의지식이방대하면할수록, 그의상상력이탁월하면할수록, 그의재능이풍부하면할수록, 그를교육하는데더많은비용이들었을것이고, 그에앞선자들과그가닮고자한자들이더욱탁월하고더욱수가많았을것이며, 따라서그가사회에대해지는부채는더큰것이다. 농사꾼은요람에서태어나서관에들어갈때까지일을한다. 반면에예술과과학은뒤늦게그것도드물게만일때를맞는법이며, 때로는그열매가채익기도전에나무가죽어버리기도한다. 사회는장래성을믿고재능을길러냄으로써모든것을희생하는것이다.

(3) 능력을비교할수있는척도는존재하지않는다. 재능의불평등은대등한발전조건아래에서라면재능의특수성에지나지않는다.

(4) 급여의 불평등은 불로소득권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장 유리할 경우, 즉 모든 노동자가 최대치의 생산을 제공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생산물이 이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몫이, 생산을 노동자의 수로 나눈 값과 같아야만 한다.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얼마가 남아서 더 높은 급여를 지불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모두에게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그러나 노동자들의 소비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산과 대등하지 않을 때, 임금 은 생산적 노동을 보상할 수 없을 것이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산물을 되살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소유가 야기한 온갖 곤경에 다시 빠져들 것이다. 나는 헐벗은 노동자에 대해 저질러진 부당 행위, 적대감, 치솟는 야욕, 불타는 증오심 따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때려놓으려고 하고 있지만 본론과는 직접 부합하지 않으니 말이다.

한편으로, 개개 노동자의 과업이 짧은 시간을 요구하고 수월하며, 그것을 성공리에 해낼 수 단도 평등하다면, 어떻게 훌륭한 생산자와 시시한 생산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다른 한편, 재능과 능력의 실질적 동등성에 의해서든 사회적 협동에 의해서든 기능도 모두 동등하다면, 어떻게 그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자신의 탁월한 천재성을 구실로 그에 걸맞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말하는가? 평등 안에서 임금은 항상 능력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임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자가 자신을 재생산하는데 드는 소비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생산에 임하는 활동 자체가 그의 소비를 이루는 것이며, 이 소비는 우리가 요구하는 바의 생산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천문학자가 관측을 생산하고, 시인이 시를 생산하고, 학자가 경험을 생산할 때, 이들은 관측 도구 소비하고, 책을 소비하며, 여행 등등을 소비한다. 그러므로 사회가 이 소비를 충당해 준다면, 천문학자와 시인과 학자가 자신에게 걸맞은 어떤 사례금을 달리 또 요구한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결론을 맺자.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몫을, 각자의 성취에 따라 각자의 능력을〉이라는 생시몽의 격률은 평등 안에서, 아니 평등 안에서만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다.

III. 소유가 초래하는 가장 큰 해악, 가장 끔찍스럽고 늘 따라다니는 해악은 소유가 존재하는 한, 인구가 아무리 줄더라도 늘 필연적으로 포화 상태라는 것이다. 어느 시대에도 사람들은 인구 과잉을 불평했다. 어느 시대에도 소유는 바로 자신이 유일한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만연한 빈곤을 거북살스러워했다. 더욱이 소유가 빈곤을 퇴치할 요량으로 궁리해 낸 여러 수단들만큼 기묘한 것도 없다. 흉폭한 일과 더 무니 없는 일이 우열을 다투듯 벌어졌다.

유아유기 遺棄는 고대에 늘 있어 온 관행이었다. 크고 작은 노예 살육, 내란과 전쟁역시 여기에 동원되었다. 소유권이 강고하게 자리잡은 로마에서는 이 세 가지 수단이야 주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온 결과, 제국 말기에는 주민들의 씨가 말라 버릴 정도였다. 야만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아무도 찾아볼 수 없었다. 농촌은 버려지고 도시들은 거리마다 잡풀이 무성했다.

사실 소득은 생산 기반을 늘려야만 증대될 수 있다. 대리석 벽으로 울타리를 쌓고, 황금 호미로 밭을 갈아 무소용 없는 일이다. 그러나 영지를 계속 늘려 가는 것, 즉 라틴계 사람들이 쓰는 말로 〈점유지들을 계속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에 때문에, 그럼에도 소유자에게는 자본화할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소유자의 권리 행사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소유는 자본화하고, 자본화함으로써 이자를 증식시킨다. 그럼 상업, 제조업, 은행 등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개별 사례들에 머물지 말고 시민 모두에게 관련되는 더 중요한 사실을 인용해 보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끝없는 증가에 대해서이다.

세금은 해마다 늘어난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증대가 공공 행정의 어느 분야에서 나타나는지 정확히 짚어서 말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하기가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 무언가 안다고 누가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가장 능란한 재무관들도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지 않은가? 통치학의 대가들마저 수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마당에, 우리가 달리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예산 증대의 직접적인 원인들 무엇이든간에, 세금은 아무튼 사람들을 절망에 몰아넣을 정도로 날로 늘어나고 있다. 누구나 그것을 보고 있고, 누구나 그것을 말하고 있으나, 아무도 그 근본 원인을 알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⁵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달리 될 수 없으며 또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국민은 우리가 〈정부〉라고 부르는 대지주의 소작인과도 같다. 국민은 땅을 사용한 대가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소작료를 정부에 지불한다. 전쟁을 할 때 마다, 전쟁에서 지거나 이길 때 마다, 군수품을 바꿀 때 마다, 기념비를 세울 때 마다, 운하를 뚫고 도로나 철도를 놓을 때 마다, 정부는 돈을 빌리게 되고, 납세자가 그 이자를 지불한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생산 기반을 증대시키지 않고 운용 자본을 늘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부는 내가 앞에서 막 이야기한 바와 같은 소유자로서 자본화 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공채가 발행되고 그 이자가 확정되어도, 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산을 줄이려 한 다음과 같은 일들이, 그러나 실은 불가능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공채 소유자들이 자신의 이자를 포기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소유권의 포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면 정부가 파산해야 하는데, 이는 정치 원리에 대한 기만적인 부정이다. 아니면 정부가 빚을 상환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공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아니면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만 한다. 그

⁵ 영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1월 23일 의상원 회의에서 백일하게 드러났다. 재정 상태는 건전하지 못했다. 몇 년 전부터 세출이 세입을 초과했으며, 내각은 해마다 신규 차관을 도입함으로써 겨우 균형을 회복했다. 1838년과 1839년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자만 2,250만 프랑에 달했다. 1840년에는 세출이 세입을 2,250만 프랑 정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를 제출한 것은 리폰 경이다. 멜버른 Melbourne 경은 그에게 이렇게 답했다. 〈고결한 백작께서 공공 지출이 줄곧 늘어난다고 언명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옳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나 도 백작과 마찬가지로 이 지출에 어떤 절약 방안이나 치유책이 있으리라고 '희망할 만 한 여지가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시오날 National』, 1840년 1월 26일자)

자는두배로봉급을받는관료와도같다. 일하는소유자와일하지않는소유자사사의차이가바로여기에있다. 그러나소유자는자신이노동함으로써자신의보수만을생산할뿐, 자신의소득을생산하지는않는다. 그리고소유자는자신이처한조건에서가장수치맞는일거리에매달리기마련이므로, 소유자의노동은사회에유익하기보다는유해하다고말할수있다. 소유자가무슨일을하건간에, 소유자가자신의소득을소비하는것은사실상그소득을잃어버리는일이다. 소유자가일하고보수를받는다는사실이이러한손실을보상해줄수도정당화해줄수없다. 이손실은다른이들의생산에의해마냥보충되지않는한, 소유자체를소멸시키게될것이다.

II. 따라서소유자가소비하는행위는생산품을근절시킨다. 그러나만일소유자가저축을한다면사태는더악화된다. 소유자가한쪽편에쌓아두는물건들은완전히다른세계로넘어간다. 아무것도, 심지어그희미한흔적도더이상찾아볼수없게된다. 만일달로여행할순수단이있다면, 그래서소유자가자신이축적한재산을그곳으로가지고갈생각에서로잡히기만한다면, 얼마지나지않아우리의지구마저그에의해달로 옮겨질것이다.

저축하는소유자는자신도그것을향유하지못할뿐더러다른이도향유하지못하게막는다. 그에게는점유도소유도없다. 그는수전노처럼보물을보듬어안고는도무지생각을않는다. 그는보물을두고눈요기를하고, 옆에두고눈운채, 끌어안고잠이든다. 그러나부질없는짓이리라. 금화가금화를낳는것은아니니말이다. 향유없이완전한소유가있을수없고, 소비없이향유가있을수없으며, 소유의상실없이소비가있을수없다. 이것이야말로조물주의심판이소유자를몰아넣은필연적궁지이다. 소유에서주있으라!

III. 자신의소득을소비하는대신자본화하는소유자는그소득을생산에적대시키게되며, 따라서스스로자기의권리행사를불가능하게만든다. 왜그런가. 소유자가투자에따른이자분을높이면높일수록, 그는임금을줄이지않을수없다. 그런데그가임금을줄이면줄일수록, 달리말하자면기계의유지와보수에드는비용을줄이면줄일수록, 노동의양은줄어들수밖에없고그에따라생산의양나가소득의원천이줄수밖에없기때문이다. 아래의예는이러한사정을여실히보여준다.

경작지, 목초지, 포도밭및주와소작인의가옥으로구성된영지가있다고가정해보자. 이영지는모든경작설비를포함해서 10 만프랑의가치가나가고그이자율은 3% 에달한다고하자. 만일소유자가자신의소득을소비하는대신, 그소득을영지를확장하는데가아니라영지를미화하는데투자한다면, 그는자신이자본화한 3,000 프랑에대한다가매년소작인에게 90 프랑을더요구할수있는가? 결코그렇지않다. 왜냐하면, 이러한조건에서라면소작인은비록그전보다더많이생산하게되지는않더라도아무런대가도받지못하고노동하도록강요당하지않을수없으며, 분명히말해두지만, 임대를유지하기위해서어썌 수없이손실을감수하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중국에서는아주오랜옛날부터기아가빈민을일소하는역할을떠맡았다. 쌀이가난한이들의유일한호구책이었기때문에변란이일어나서수확이모자라면단며칠만에수만명씩굶어죽었다. 중국의연대기를기록한사관들은어떤황제가재위한어떤해에기근이일어나 2 만, 3 만, 5 만, 10 만명이죽었다는식으로적고있다. 그리고사람들은죽은자를땅에묻고나서다시아이를날기시작하고, 또다시기근이일어나서같은일이되풀이된다. 시대를막론하고공자孔子의경제학이란바로이런것인모양이다.

다음의내용은어떤현대경제학자에게서빌려온것이다.

〈14, 15 세기부터영국은기근에허덕었다. 걸인들은법으로엄하게처벌되었다.〉 (그러나인구는오늘날의 1/4 도안되었다.)

〈에드워드왕은동남행위를투옥형으로다스렸다. …1574 년과 1656 년의칙령은재벌일경우같은조치를취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엘리자베스여왕은각교구가빈민을먹여살리라고명을내렸다. 그러나빈민이란누구인가? 찰스 2 세는다른사람의이의제기가없이 40 일동안거주한경우그교구에정주하는것으로결정했다. 그러나이의제기가있을경우뜨내기는도시를떠나야했다. 제임스 2 세는이법을개정했으며, 윌리엄왕은또다시그것을개정했다. 조사하고, 보고서를작성하고, 개정하는와중에빈곤은증대하고노동자는초취한물골로죽어갔다.〉

〈빈민에게징수된세금은 1774 년에 4,000 만프랑을넘어섰으며, 1783 년, 1784 년, 1785 년에는각각 5,300 만을넘어섰다. 1813 년에는 1 억 8,750 만프랑, 1816 년에는 2 억 5,000 만프랑을넘어섰고, 1817 년에는 3 억 1,700 만프랑에이른것으로추정된다.〉

〈1812 년에교구에등록된빈민의수는 400 만명으로추산되는바, 이는인구의 1/3 에서 1/4 에이르는수치이다.〉

〈프랑스. 1544 년에프랑수아 1 세는빈민을위한보시세를강제로제정했다. 1556 년과 1586 년에는이법이왕국전역에적용되었다.〉

〈루이 14 세치세때는 4 만명에이르는빈민들이수도에횡행했다 (인구비례로보면오늘날과상황이비슷하다). 구걸행위는엄하게처벌받았다. 1740 년에파리의고등법원은해당관할구역내에서강제각출금을다시도입했다.〉

〈제헌의회는재앙의대단함과치유의어려움에기가질린 나머지현상유지를결정했다.〉

〈국민공회는빈민에대한부조를‘국가의채무’라고규정했다. 그러나그법령은시행되지않았다.〉

〈나폴레옹역시재앙을치유하려애썼다. 그러나그가생각해낸법령은징역형이었다. 이로써짐은걸인들의파렴치함과적빈이가져온불치병의혐오스러운광경으로부터부자들을보호하리라〉 고그는말했다. 아, 위인이여!

나열하자면끝이없을이러한사실들에서두가지결론이어나온다. 하나는빈곤이인구와는무관하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빈곤을퇴치하려고동원된어떤처방도무용지물이라는것이다.

로마가톨릭교회는병원과수도원을세웠으며, 보시를권장했다. 즉구걸을장려했다. 사제들을통해표현된로마가톨릭교회의정신은여기서더나아가지못했다.

기독교국가들의세속권력은부자들에게는세금을매길것을, 가난한자들은내쫓고가둘것을명했다. 즉, 한편으로는소유권의침해를, 다른한편으로는시민권의박탈과살인을명했다.

현대경제학자들은빈곤의원인이전적으로인구과잉에있다고생각해서우선인구증대를억제하기에몰두한다. 이들중어떤이는가난한자에게는결혼을금지시키기를원한다. 따라서이들은종교적독신을비난한후에강제적독신을제의하는셈인데, 이강제적독신은방탕한독신생활로변하기마련이다.

반면, 어떤이들은이방법, 즉그들이말하는바에따르면가난한자에게서〈이세상에서그가아는유일한즐거움〉을빼앗는너무난폭한방법에찬동하지않는다. 그들은다만가난한자들에게〈신중〉을촉구하는정도만으로만족한다. 이것이바로멜서씨, 시스몽디씨, 세씨, 드로씨, 뒤샤텔씨의견해이다. 그러나가난한자가신중을보여주길원할ாய면, 부자가모범을보이는것이필요하다. 왜결혼연령이부자에게는 18 세, 가난한자에게는 30 세로정해져야하는것인가?

다시금, 이들이그토록꾸준히노동자들에게권장하는이결혼의신중함이라는것이과연무엇을의미하는가를밝혀보도록하자. 왜냐하면이런류의문제를모호한채로남겨둔다는것은실로어처구니없는일이며, 나로서도경제학자들이제대로이해하고있지못한것이아닌가의심이들기도하기때문이다. 〈고루한사제들은사람들이결혼에대해신중하게나온다는말을듣자깜짝놀란다. 이들은사람들이‘생육하고번성하라’는신의계시를어기는것이아닌가하고겁을먹는다. 이들은독신자들을파문하러할것이다.〉(J. 드로, 『정치경제학』)

드로씨는너무순진하고너무신학적심성이부족한탓에고집불통도덕론자들이경각심을갖는이유를납득할수없었다. 이순진한무지가그의심성의순수함에대한가장훌륭한증거이다. 종교는결코조혼을장려한적이없으며, 종교가비난하는이〈신중함〉이라는것은산체스(T. Sanchez, 1550~1610, 에스파냐출신의예수회신부, 『프로뱅시알』에서파스칼의놀림감이된다-옮김이)가말한다음과같은구절에표현된바와같다. 〈아이를가질우려때문에씨를그릇밖에흘리는것이허용되겠는가?(An licet ob metum liberorum semen extra vas ejicere)〉

데스튀트트라시는어느쪽의신중에도동의하지않는듯이보인다. 그는말한다. 〈나로서는우리의쾌락을줄이고구속하려는도덕론자들의열의도, 우리의다산성을높이고인구증대에박차를가하려는정치가들의열의도받아들이지않는다고밝혀둔다.〉 그의의견인즉, 사람은할수있는한사랑을나누고또결혼을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사랑과결혼의결과는빈곤을증식시키는것이다. 우리의철학자는이점을별로개의치않는다. 악의필연성이라는교의에충실한그는모든문제의해결책을바로약에서찾는다. 따라서그는덧붙인다. 〈인구증대는사회의모든

1. 만일우리가경제학자들을본받아노동자를살아있는기계로간주한다면, 노동자에게돌아가는임금은이기계를유지하고보수하는데필요한경비로볼수있다. 일당 3, 5, 10, 15 프랑을주고노동자나점원을고용하고나아가관리비용으로 20 프랑을쓰는한공장주는자신의지출을손실로여기지않는다. 그지출이생산물의형태로자신에게되돌아온다는것을알고있기때문이다. 이렇게〈재생산적소비〉는그에게〈노동〉과마찬가지이다.

소유자란무엇인가? 그것은일하지않는기계, 아니면자신의즐거움을위해서나기분내키는대로만노동할뿐아무것도생산하지않는기계이다.

소유자적으로소비한다는것은무엇인가? 그것은노동하지않고소비하는것이며, 재생산하지않고소비하는것이다. 왜냐하면, 다시한번말하지만, 소유자가노동자로서소비하는것은그에의해서그자신에게다시회수되기때문이다. 소유자는자신의소유와맞교환해서자신의노동을제공하는것이아니다. 만일그렇게한다면, 그는더이상소유자가아닐것이니말이다. 노동자로서소비함으로써소유자는벌고있거나, 아니면적어도그가소비한것을되찾기때문에하등잃을것이없다. 반면에소유자적으로소비함으로써그는가난해진다. 소유를향유하기위해서는따라서소유를파괴해야만한다. 요컨대진정소유자가되기위해서는소유자기기를그만두어야하는것이다.

자신의임금을소비하는노동자는파손되었다가또다시생산에임하는기계이다. 반면에자신의불로소득을소비하는소유자는바닥없는심연이요, 물을빨아들이는모래사장이며, 헛되이씨뿌리는돌밭이다. 이모든것이진정진실일진대, 생산을원하지않고또생산방법조차모르는소유자는자신의소유를사용하면할수록돌이킬수없이그소유를파괴하게된다는사실을잘깨닫고있기때문에자기몫을대신해서누군가에게생산을시키기로마음을굳힐것이다. 경제학이그불멸의정의正義로서, 〈자신의자본에의한생산, 자신의도구에의한생산〉이라고부르는것이바로이것이다. 그런데이것은〈노예에의한생산, 도둑또는폭군으로서의생산〉이라불려야마땅한것이다. 소유자인그가생산한다고! ...그렇다면도둑역시〈나는생산한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소유자적소비는〈유익한〉소비와는대조적으로〈사치〉라고이름붙여왔다. 방금이야기한바에따르면, 그다지풍요롭지못한나라에서사치가만연할수있으며, 사치가만연하면할수록그나라는그만큼더빈곤해지고, 그역도마찬가지라는사실을우리는이해할수있다. 경제학자들이사치에대해그토록놀라운혐오감을복돋운덕에, 오늘날거의전부라고는말할수없지만대다수소유자들이자신의나태를부끄럽게여긴나머지노동하고저축하며또자본을투자하고있다. 이것은사태를더욱악화시키는일이다.

다음과같은사실을거듭지적해두도록하자. 즉자신이노동을하므로소득을누릴자격이있다고믿고있으며그와동시에자신의노동에대한급료를받고있는소유

개의치않던존볼 (John Bull, 영국대중소설에등장하는작중인물. 전통적영국인의별칭-웁긴이) 은차라리섬기고구결하길택했다. 그러면, 그대, 선량한자크 (bonhomme Jacques, 프랑스농민의별칭-웁긴이) 는?

소유는정치적·시민적평등과양립할수없다. 따라서소유는불가능하다.

〈역사적해설〉 1. 1789 년삼부회에서제 3 신분대표의수를두배로늘리기로결정한것은소유에대한대대적인침해행위이다. 귀족과성직자는프랑스땅의 3/4 를차지하고있었다. 따라서그들이국민의 3/4 만큼대표성을가져야할것이였다. 인민만이거의유일하게세금을내고있으므로제 3 신분대표수의배가는정당하다고호자는말한다. 만약세금에대해서표결하는것만이문제였다면, 이는웁은추론일것이다. 하지만사람들은통치와헌법의개혁을말했다. 이때부터제 3 신분의배가는소유에대한침탈이자공격이였다.

2. 만일현재급진적반대파의대표들이권좌에오른다면, 이들은모든국민방위군을유권자로만들고모든유권자가피선거권자로되는개혁을단행할것이다. 이는소유에대한공격이다.

이들은공채이자를끌어내릴것이다. 이는소유에대한공격이다.

이들은일반의이익을위해가축과말의수출에대한법령을제정할것이다. 이는소유에대한공격이다.

이들은과세의근거를변경할것이다. 이는소유에대한공격이다.

이들은인민들에게무상교육을실시할것이다. 이는소유에대한모반이다.

이들은노동을조직할것이다. 즉노동자에게노동을보장해주고노동자가이익배분에참여토록할것이다. 이는소유의폐지이다.

그런데바로이급진파들이소유의열렬한옹호자이니, 이는그들이자신이하고있는일을알지도못하며자신이원하는바를알지도못한다는근본적인증거이다.

3. 소유는특권과전제의으뜸가는원인이다. 따라서공화제의선서문구는변경되어야만한다. 비밀결사가가입하는자는 〈나는왕정에대한증오를맹세한다〉라고선서하는대신에이제부터는 〈나는소유에대한증오를맹세한다〉라고바꿔말해야만한다.

일곱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는자신이취득한것을소비함으로써잃어버리고, 저축함으로써폐기해버리며, 자본화함으로써생산에적대하기때문이다.

계급들에서계속되기때문에, 상류계급들에서의잉여인구는계속하층계급들로밀려나며, 최하층계급은필연적으로빈곤에의해절멸한다.〉 이철학자에게는확신에찬추종자가거의없다. 그러나이철학은무엇보다도실제의해입증된다는논박할여지가없는이점을가지고있다. 얼마전에프랑스의하원에서선거법개정을논의할때들려온이야기역시바로이철학이다. 〈가난한자들은늘존재하기마련이다〉라는것이바로장관이야라고 (F. Arago, 1789~1853, 프랑스의정치인으로선거법확대를주장했다-웁긴이) 씨의주장을반박할때쓴정치적수사이다. 〈가난한자들은늘존재하기마련이다!〉 아무렴, 소유와함께.

많고많은놀라운것들을만들어낸 〈재주꾼〉 인푸리에주의자들은이번에는자신들의천품을감출수없었다. 이들은인구증대를억제할수있는네가지수단을선보였다.

(1) 여성의체력. 이점에서그들의주장은경험과어긋난다. 왜냐하면, 비록건강한여성들이늘빨리임신을하는것은아니지만적어도건강한아이를낳는것이바로그녀들이기때문이다. 따라서출산에서그녀들은이점을갖는다.

(2) 종합적운동. 달리말하면모든육체적능력의균등한발달이다. 만일이발달이균등하다면, 어떻게생식능력이감퇴하겠는가?

(3) 미식법. 불어식으로말하면혀의철학이다. 푸리에주의자들은풍성하고기름진음식은여성을불임으로만든다고단언한다. 마치수액의과잉이꽃을더아름답고더풍성하게보이게하지만실은번식력을고갈시키듯이말이다. 그러나이러한비유는잘못이다. 꽃의번식력저하는, 장미를살펴보면알수있듯이수술, 즉수컷기관이꽃잎으로변하는데서오는것이며또한과다한습기로화분이생식력을잃는데서오는것이다. 따라서미식법이원하는바의성과를얻으려면, 여성을살찌게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 남성을생식불능으로만들어야한다.

(4) 화류계의풍류. 즉궁창公娼이다. 나는푸리에주의자들이불어로아주잘통용하는생각을표현하는데왜그리스단어를사용하는지모르겠다. 앞의수단과 마찬가지로이수단역시문명의관습을흉내낸것이다. 푸리에자신은그증거로궁창의예를들고있다. 그런데그가내세운사실들에대하여전히아주커다란의혹이멤돌고있다. 파랑뒤샤텔 (Alexandre Jean-Baptiste Parent du Châtelet, 1790~1836, 프랑스의생리학자, 의사-웁긴이) 이자신의책 『매춘에대하여』에서공식적으로말한것이바로이것이다.

내가끌어모을수있었던정보들을종합해보면, 국민들이일상적으로실행하고있으며또철학자나경제학자또는최근의개혁가들이거론한바있는빈곤과다산성에대한치유책은다음의목록에망라되어있다. 즉, 마스터베이션

masturbation, 오나니즘 onanisme², 남색, 동성애, 중혼³, 매음, 거세, 금욕, 낙태, 유아살해⁴ 등이다.

이모든수단이불충분하다고판명되고나면, 이제남는방안은추방이다.

유감스럽게도추방은가난한자의수를줄임으로써오히려그비용을높일뿐이다. 소유자가생산물에대해징수하는이자가단지이생산물의 1/20 에상당한다면 (법률에의해이자는자본의 1/20 이다), 20 명의노동자가단지 19 명의몫만을생산하는셈이다. 왜냐하면이들중소유자라고불리는사람이한명있어서두명몫을먹어치우기때문이다. 가장가난한 20 번째노동자가죽었다고가정해보자. 다음해의생산은 1/20 만큼감소할것이며따라서이제 19 번째노동자가자기몫을내놓고죽어야할것이다. 소유자에게지불해야하는것은 19 명분생산의 1/20 이아니라 20 명분생산의 1/20 이기때문에 (세번째명제를보라), 살아남은노동자개개인이빼앗겨야만하는것은자신의생산물의 1/20 에다가 1/400 만큼을더한값이다. 달리말하자면 19 명중한명이죽어야만한다. 따라서소유와더불어가난한자들이죽어가면갈수록그것에비례해서가난한자가더생기는셈이다.

멜서스는생산이산술급수로증대하는데반해서인구는기하급수로증대한다고학자답게는증했지만, 〈빈곤을가져오는〉 소유의이힘은지적하지않았다. 이점을잊지않았다면, 그는우리가다산성을억제할방책을찾기에앞서서불로수득권을폐지하는일부터시작해야한다는사실을이해했을것이다. 왜냐하면이권리가용인되는곳에서는토지의넓이와비옥도에관계없이늘과잉인구가존재하기때문이다.

사람들은아마도인구의평형을유지하기위해서내가무슨수단을제시할수있느냐고물을것이다. 이문제는조만간해결되지않으면안될문제이니말이다. 내가여기서이수단이무엇이라고이름붙이지않는것을독자들은허락해주시기바란다. 내가생각하기에는증명하지않고말만하는것은무익한일인데, 내가말하는수단을아주말끔히여실하게밝히려면적어도틀을갖춘한권의논문이필요하니말이다. 이것은아주단순하고도중대하며, 아주범용하면서도숭고하고, 아주진실하면서도오해를불러일으키며, 아주신성하면서도세속적인그무엇이기때문에, 이것을상세히설명하거나증하지않고이름만붙인다는것은경멸과불신만을불러일으

² 오나니즘과마스터베이션의차이는물론후자는혼자하는행위이고전자는둘이, 즉남녀가하는행위라는것이다. 더구나오즘남편들은남성적쾌락의하나로추잡한오나니즘을즐긴다. (Hoc inter se differunt onanismus et manuspratio, nempe quod haec a solitario exercetur, ille autem a duobus recipitur, masculo scilicet et faemina. Porro foedam hanc onanismi venerem ludentes uxoria mariti habent nunc omnium suavissimam)

³ 중혼, 즉일처다부제.

⁴ 최근에영국에서멜서스의제자라고자처하는어떤저자가한소책자에서유아살해를공개적으로요구하고나섰다. 그는법률이정한수보다자식이많은가족의경우, 〈유아살해의연례행사〉를제 의했다. 그리고그는남아도는유아들을특별히매장하기위해조각상, 정원, 분수, 화단등으로장식된 웅대한묘지를만들자고주장했다. 어머니들은이지복의장소를찾아가어린천사들의명복을빌고위안을얻고나면곧집에돌아와땀아이를낳고또그곳에보내게될것이다.

키는데소용될따름이다. 우리에게는다음한마디로충분하리라: 평등을확립하자, 그러면치유책이보이리라. 진리란오류나범죄와마찬가지로연이어나타나는 것이니말이다.

여섯번째명제소유는불가능하다. 왜냐하면소유는압제의어머니이기때문이다.

통치란무엇인가? 통치란공공의경제, 곧국민전체의노동과재산에대한최상의관리이다.

그런데국민은마치시민모두가주주인거대한회사와같은것이다. 각자는총회에서발의권을가지며, 주식배분이균등하다면한표씩의투표권을행사한다. 그러나소유제도아래서는주주들이출자한몫이서로엄청나게불균등하다. 어떤이는단한표밖에갖지못하는반면에, 어떤이는수백표를가지는것이다. 예컨대내가 100 만프랑의소득을누린다면, 즉내가 3,000 만에서 4,000 만프랑에달하는부동산을소유한지주이며이재산이그자체만으로도국민자산의 3 만분의 1 의몫에해당한다면, 내가그재산을관리하는일이통치의 3 만분의 1 을구성할것이며, 따라서 3,400 만인구를기준으로할때나는혼자서단순주주 1.133 명만큼의투표권을가지게되는것이다.

그러므로아라고씨가국민방위군 Grande nationale 전원에게투표권을줄것을요구한것은나무랄데없는정당한일이었다. 그도그렇것이모든시민은적어도하나씩의국민주주에등재되어있으며, 따라서저마다한표의권리를갖기때문이다. 그러나이저명한웅변가는그와동시에, 상업회사들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개개유권자가자신이소유한주식만큼의투표권을가져야한다고요구해야만했으리라. 왜냐하면, 그렇지않을경우이는국민이개개인의의사를묻지않고이들의재산을처분할권리를가진다고주장하는것과마찬가지이며, 따라서소유권과상충하기때문이다. 소유제도를가진나라에서선거권의평등은소유에대한침해인것이다.

그런데만일주권이재산에비례해서만개개시민에게귀속될수있을뿐이면서도그렇게되어야만한다면, 소주주들은거대주주들에의해좌우되기마련이다. 거대주주들은마음만먹으면소주주들을노예로삼고, 마음대로찍을뺏어주고, 그들의아내를빼앗고, 그들의아들들을거세시키고, 그들의딸들을매춘부로만들고, 늙은이들을상여밥으로삼을수있을것이다. 거대주주들은자기돈으로자기의하인들을먹여살리고자하지않는한, 어쩔수없이이렇게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이것이바로오늘날영국에서일어나는일이다. 자유, 평등, 존엄따위에그리

피에르조제프프루동
소유란무엇인가?
권리와통치의원리에대한연구 - 첫번째연구
1840 년

kr.theanarchistlibrary.org

노동의권리란무엇인가? 그것은요구되는조건들을충족시킴으로써자기몫의재산을얻어낼수있는권리이다. 요컨대그것은사회의권리며평등권이다.

관념과본능이결합한산물인정의는인간이느낄수있고관념을가질수있게되는즉시인간안에모습을드러낸다. 여기서사람들은정의를내재적이고원초적인감정이라고여겼으나이는논리적으로보나시간순서로보나잘못된견해이다. 그러나감정의능력과지능의능력에서태어난정의는굳이말하자면그잡다한구성에의해내게는〈자아 moi〉의통일성과단일성의가장강력한증거들중하나로보인다. 이는마치청각과시각이섞인다고해서반은청각적이고반은시각적인양면감각이만들어질수없듯이, 유기체가그자체로는이와같은혼합물을생산하지못하기때문에더욱그러하다.

정의는그이중적특성으로인해, 우리에게 2, 3, 4 장에서보아온모든논증들에대해우리가결정적으로옳다는것을입증해준다. 한편으로〈정의〉의관념은사회의관념과동일하고사회는응당평등을내포하기때문에, 소유를옹호하기위해고안된모든계변의근저에서어김없이평등이발견된다. 왜냐하면, 소유는그것이정의롭고사회적인것일때에만옹호될수있고소유란불평등에다름아닌만큼, 소유가사회와합치된다는것을증명하기위해서는불의가정의이고불평등이평등이라는모순된명제들을주장하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다른한편으로정의의두번째요소인평등의개념은사물에대한수학적비율에따라우리에게주어졌기때문에, 노동, 생산및소비에필요한균형을파괴하는소유즉노동자들사이의재산의불균등분배는불가능할수밖에없다.

그리하여모든인간은서로결합되어있다. 누구나마찬가지로정의를부여받고있으며누구나평등하다. 그렇다면사랑이나우정과같은남다른감정은정의에어긋나는것인가?

이것은설명을필요로한다.

조금전에나는내가구하러나설수있는위험에처한어떤사람의경우를가정했다. 이제나는목숨이위태로운두사람에게동시에구원을요청받았다고가정한다. 그러면나는다른한사람을그냥죽게내버려둔채혈연, 우정, 사권또는존중심등에이끌려서내게가장가까운사람에게먼저달려가도록허용되고또심지어그렇게하도록요청받는것인가? 그렇다. 왜그런가? 왜냐하면전체사회안에는우리들각자에게개개인만큼이나많은개별사회들이존재하고있으며, 따라서사회성이라는바로그원리에입각해서우리는우리주위에형성된친근성의순서에따라우리에게요구되는의무를다하지않으면안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우리는다른이들에게앞서서자기부모, 아이들, 친구, 동료등을먼저생각해야만한다. 그러면이선호성의바탕은무엇인가?

재판관이그의친구와그의적사이에벌어진소송에대해판결을내려야할경우가있다. 그는이경우에〈가장먼저〉보다〈가장가까운자〉를선호해서그와정반대의증거들에도불구하고그의친구에게승소판결을내려야하는가? 아니다. 왜냐하면만일그가자기친구의불의를선택한다면, 그는사회계약을어긴자기친구

의 불충에 공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하자면 자기 친구와 함께 사회 전체에 맞서서 동맹을 맺는 셈이다. 편애의 효력은 사랑, 존중, 신뢰, 친밀감과 같이 우리에게 고유한 개인적인 관계들의 경우에만 작동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버지는 이웃의 아이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자기 아이에게 뛰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관의 경우 권리의 인증이 개인적 일수도 임의적 일수도 없다. 어떤 자에게 손해라 끼치면서 다른 자를 도와 준다는 것은 그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커다란 사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말하자면 동심원 모양으로 개별 사회들을 구성한다는 이 이론은 여러 종류의 사회적 의무들이 서로 간의 대립과 갈등을 낳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즉 고대 비극의 주요 소재가 되었던 문제들을 푸는 열쇠를 제공한다.

동물의 경우 정의는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이다. 약자를 지키고, 사냥에 나서고, 무리 지어 약탈하고, 공동 방어에 나서고 이따금씩 개별적으로 돕는 경우를 제외하면, 동물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일어서지 못하는 병든 동물, 함정에 빠진 어설픈 동물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먹을 것도 얻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치료하거나 궁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병상에서 치료를 받는 다거나 수용소에서 음식을 제공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물들의 자기 무리에 대한 무관심은 자원의 부족에서 뿐만 아니라 지능이 모자라는 데서 생긴다.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친근성의 차이는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물들은 습성, 좋은 이웃 관계, 같은 혈연에서 생기는 애정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것보다 저것을 더 좋아하는 선호성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와 비교해 볼 때, 동물의 기억은 허약하고, 감정은 막연하며, 지능은 거의 백지 상태이다. 그러나 사물을 식별하는 힘은 동물에게도 존재하는 바, 이 점으로 볼 때 동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은 전적으로 우리의 오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폭넓은 기억력과 깊은 판단력을 가진 우리 인간은 사회적 본능이 우리에게 일깨워 준 행위들을 더 늘리고 서로 결합시킬 줄을 안다. 우리는 그 기억력과 판단력을 더 효율적으로 다듬으며 권리의 정도와 탁월성에 맞추어 배분할 줄 안다. 짐승도 사회를 이루고 살며 정의를 실행할 줄 알지만 성찰이나 사변이 없이 본능에 몸을 내맡긴다. 동물의 〈자아〉는 사회적 감정을 평등의 관념에 결합시킬 줄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평등이라는 관념은 추상적이라서 동물에게는 빠져 있는 것이다. 그 반면에, 사회는 평등한 배분을 의미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하는 우리 인간은 추론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권리들의 규칙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력을 더 밀고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의식은 아주 작은 역할만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와 지능이 아주 비슷한 어떤 동물들에게서 희미한 미광처럼 나타날 뿐인 권리의 관념이 어떤 미개인들의 경우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플라톤이나 프랭클린 Franklin 과 같은 이들의 경우 최고의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개인들에게 나타나는 도덕 감각의 발달이나 국민들에게 나타나는 법률의 진보를 추적해 보라. 그러면 정의나 입법적 완결성이라는 관념은 어느 경우에나 지능과 정비례함을 알 수 있다. 철학자들이 단순하다고 믿는 정의롭다

는 관념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다. 그 관념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본능에 의해서 주어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과 대등한 공적이라는 관념에 의해서 주어진다. 죄의식이 정의가 유린되었다는 자각과 의지적 선택이라는 관념에 의해서 주어지듯이 말이다.

요약해보자. 본능은 그 본능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수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해 온 여러 가지 사회의 사실들은 동물적 사회성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의, 즉 평등의 이치 아래 인식된 사회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우리를 동물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 3 절 사회성의 세 번째 단계에 대하여

독자들은 아마 내가 제 3 장에서 적성의 다양성과 본능에 대해 말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리라. 인간들 사이에 재능과 능력의 총화는 누구나 같으며 인간의 천성은 모두 유사하다. 지금이 대로의 우리 모두는 시인이자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예술가이자 장인이자 농사꾼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에 동일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한 사회 안에서는 이 인간과 저 인간 사이에, 한 인간 안에서는 이 능력과 저 능력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동일한 능력에서의 이 다양한 정도의 차이, 특정 작업에 대한 이 재능의 우월성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 사회의 토대 자체를 이루고 있다. 지능과 천부의 재능이 자연에 의해서 그토록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토록 커다란 축복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라는 유기체는 어떤 특정 재능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개개 노동자는 자기 직능에 전념함으로써 충분히 자기 동료들이 이러한 작업과 발견들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지식을 언제나 얻을 수 있다. 자연의 이단순하지만 현명한 보살핌에 의해서 노동자는 자기의 작업에만 고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마음의 해동료들과 결합하기에 앞서서 생각에 의해서 동료들과 맺어져 있다. 따라서 그에게는 사랑이 지능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동물들의 사회는 이와 같지 않다. 어떤 종이든 개개 동물의 적성들은 아주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그 양적 측면에서 서로 대등하며, 그 적성들이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강도의 측면에서도 서로 대등하다. 먹이를 찾는 다거나, 적을 피하는 다거나, 구멍을 판다거나, 동지를 짓는 다거나, 개개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할 줄 안다. 동물들은 몸이 자유롭고 기력이 왕성한 한 자기 이웃의 도움을 기다리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며, 그 이웃도 마찬가지이다.

한 동아리가 되어 사는 동물들은 서로 이웃을 이루기는 하지만 그들 사이에 어떤 생각의 나눔이나 어떤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물은 모두가 같은 짓을 하고, 아무것도 배우거나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으며,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느끼며 서로 접촉할 뿐, 결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 관

념, 감정, 생산물, 용역따위를 끊임없이 교환한다. 사회에서 습득되고 실행되는 모든 것이 그에게 필요하다. 이 엄청난 분량의 생산물과 관념들 중에서 각자가 홀로 행하고 홀로 얻어야 할 것은 마치 태양 앞에 있는 원자만큼이나 아주 적은 양이다. 인간은 사회에 의해서만 인간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힘들 사이의 조화와 균형에 의해서만 존립할 수 있다.

동물에게 사회는 〈단순한〉 양태를 띠지만, 인간에게 사회는 〈복잡한〉 양태를 띤다. 동물과 동물을 이어주는 바로 그 본능에 의해서 인간은 인간과 이어진다. 그러나 인간의 결합은 동물의 그것과 다르다. 도덕성의 차이를 낳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합 양태의 차이이다.

나는 소유를 사회 상태의 토대로 간주하는 바로 그 법칙들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어찌 면지나 칠 정도로 장황하게 입증하였다. 즉 그 사실은, 조건들의 불평등은 누가 무엇을 먼저 점유했다는 점에 의해서도, 재능, 용역, 근면성, 능력 따위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점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들의 평등이 자연권, 자유, 생산의 법칙, 물리적 천성의 한계, 그리고 사회의 원리 그 자체의 필연적인 결과라 할지라도, 이 평등이 〈차별〉과 〈대변〉의 한계 너머로 사회적 감정이 비등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선행이나 사랑이라는 정신 상태는 그 한계를 넘어선다. 경제가 그 균형을 달성했을 때, 영혼은 자기 고유의 정의의 누리기 시작하며 인정 人情은 한없는 애정 속에서 꽃을 피운다.

이때에 사회적 감정은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새로운 성격을 띤다. 그것은 강자에게는 관용의 기쁨으로, 대등한 자들 사이에서는 진솔한 우정으로, 약자에게는 감탄과 감사의 행복으로 나타난다.

힘과 용기와 재능이 우월한 인간은 자신이 모든 것을 사회에 빚지고 있으며, 사회가 없다면 그 자신도 있을 수 없고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이 사회의 최말단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 이상, 그것만으로도 사회가 자신에게 해 줄 바를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인간은 자기 능력의 탁월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인간에게서 영예와 존중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은 바로 인간이 몸소 인류에게 바치는 자발적인 존중심이며 자신은 자연의 도구일 뿐이라는 자각이다. 인간이 자신을 구별하고 나아가 자신을 높여서 동물들은 도달할 수 없는 사회적 도덕성의 일정한 단계에 이르는 것은 굳이 말하자면 바로 이러한 심정과 정신의 동시적인 고백, 즉 위대한 존재에 대한 참된 갈망에 의해서이다. 헤라클레스는 괴물들을 때려눕히고 강도들을 징벌하여 그리스를 구했으며, 오르페우스는 천하고 거친 펠라스고이인들을 교화시켰지만, 이들은 공로의 대가로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여기에 가장 고상한 시적 창조가 있으며, 여기에 가장 고상한 정의와 미덕의 표현이 있다.

헌신의 기쁨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만일 인간 사회를 굳이 그리스 비극의 공연에 비교한다면, 나는 숭고한 정신과 위대한 영혼의 무리가 〈제 1 연행〉을 맡고 사소하고 미천한 무리가 〈제 2 연〉을 맡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뒤의 무리는 힘들기만 하고 보잘 것 없는 역할을, 그러나 다수

혀쓸모가없다면, 병원에집어넣으면된다. 어떤경우라도그에게폭행을가하거나 법을강제할수는없는일이다.

인간에게는두가지가능한상태만이있다. 즉사회안에있거나아니면사회밖에 있거나이다. 사회안에서조건들은각자라도달할수있는존중과평가의정도가다 를뿐필연적으로평등하다. 사회밖에서인간은착취의대상이고자본화된도구이며때로는불편하고쓸모없는가구이다.

여성의권리와여성의남성에대한관계는여전히규정되어야할문제이다. 혼인 법은민법과마찬가지로아직미완성이다.

아일랜드가빠져든빈궁의가장중요한원인들중하나는다국교회성직자들의막 대한수입이었다. 이렇게이교도든, 정교파든, 개신교든, 교황파든, 누구도서로 를비난할근거가없다. 모두가마찬가지로정의에서길을잃었으며, 모두가십계명 의여덟번째계율 (〈도둑질하지말라〉) 을무시했던것이다.

에서오는효과나배역의전체적인조화로보아야주요한역할을떠맡고있다. 그 들은앞의무리가구상한역할을상연한다. 그들은앞의무리에이끌려가면서도앞 의무리에게서아무런도움도받지않는다. 그러면서도그들은앞의무리에게찬사 를보내고갈채와경탄을아끼지않는다.

감사에는송배와열광이뒤따른다.

그러나내마음을기쁘게하는것은평등이다. 선행은압제로변질되고, 찬미는 노예근성으로변질된다. 그러나우애는평등의딸이다. 오, 나의친구들이여! 시 샘이나영예가없이나가당신들옆에서살수있으면좋은것만. 평등이우리를하나 로결합시키고운명이우리의자리를마련해주면좋은것만. 내가당신들중누구에게가장큰존경심을바쳐야할지를고민하기전에그냥죽을수있으면좋은것만.

우애는사람들의동심童心에아주값진것이다. 관용, 감사 (여기서나는뛰어난능력에게바치는찬미에서나오는것만을감사라고부른다) 그리고우애는내가〈형평 équité〉² 즉〈사회적비례배분〉이라부르는어떤특유의정서에서나오는 서로다른세가지색조들이다. 형평이정의의를좌우하지는않는다. 그러나정의는 항상형평을토대로삼음으로써그것에존중을덧붙여서마침내는인간에게서사회 성의세번째단계를구성한다. 우리가우리의도움을필요로하는약자들을고그들 을우리과대등한위치로끌어올리는일, 우리가강자의노예가되지않으면서도그 들에게그에상응하는존중과영예를바치는일, 우리가비록교회의대가로서나마 우리이웃, 우리친구, 우리와동등한자들에게서받은것에대해그들에게감사하는 일, 이모든것이우리의의무이자동시에기쁨이되는것은바로형평의해석이다. 형평은이성과정의의에의해이상적인상태로고양된사회성이다. 그가장통상적인 특징은〈우아함〉 또는〈예의바름〉인바, 이는몇몇민족들의경우그것만으로 도사회적의무의대부분을함축하고있다.

그런데이감정은짐승들에게는알려져있지않다. 짐승들은사랑하고서로집착 하고무엇인가에대한편애를드러내기도하지만, 존중이라는것을이해하지못한 다. 우리는짐승들에게서관용도찬미도예의바름도찾아볼수없다.

이감정은지능에서나오는것이아니다. 지능은그자체로서계산하고추산하고 수지를따지만결코사랑하지않으며, 보기는하지만느끼지못하니말이다. 정의 가사회적본능과성찰의혼합물인것처럼, 형평은정의와취향혼합물, 내가원하는 식으로표현하자면평가하고이념화하는능력의혼합생산물이다.

인간에게나타나는사회성의세번째이자마지막단계인이혼합물은우리의복 합적인소통양식에의해결정된다. 이소통양식안에서는불평등, 아니더적절히말 하자면능력의차이와기능의전문화에의해일하는자들이점점서로더멀어지는경 향이있으므로그만큼더사회성이요구되는것이다.

² 여기서형평이라는말은라틴인들이〈후마니타스 humanitas〉라고부르는것, 즉인간에게 고유한종류의사회성을의미한다.〈휴머니티 humanité〉는모두에게온화하고상냥한것으로상처 를입히지않고지위를, 미덕들, 능력들을구별할줄안다. 그것은사회적공감및보편적사랑을나타내는 분배적정의이다.

이것이바로보호하면서도억압하는힘이협오스러울수밖에없는이유이다. 이것이바로경탄할예술작품과더없이조야한산업생산물을같은눈으로평가하는천치같은무지가더없이경멸을자아내는이유이다. 이것이바로 <나는네게지불했다> <나는네게아무것도빚진것이없다> 라고말하면서승리를뽐내는오만불손한범용이더없이협오스러운이유이다.

〈사회성〉, 〈정의〉, 〈형평〉, 이것은그삼중의단계에서우리로서금우리동료들과의소통을추구하게하는본능적인능력에대한정확한정의定義이다. 이본능적능력의물리적표현형태는 〈자연및노동의생산물에서의평등〉이라는정식으로나타난다.

사회성의이세가지단계는서로를지지하고또서로를가정한다. 정의없는형평은존재하지않으며, 정의없는사회는무의미하다. 만일내가재능에보답하기위해감의생산물을빼앗아서올에게준다면, 그것은감을부당하게약탈한것일뿐감의재능을겉말게평가한것이아니다. 만일내가사회에서내동료보다더많은몫을차지한다면, 우리는진정한동아리가아니다. 정의란, 무게를달고길이를 잴수있는유형의물질들을배분하는데참여하는것을허용함으로써나타나는사회성이다. 반면에형평이란측정될수없는물질, 즉경의와존중을동반하는정의이다.

여기서몇가지결론이도출된다.

(1) 우리가우리마음대로한사람에게다른사람보다더많이, 그것도상상할수있는최대한으로우리의존중을표현할수있다고할지라도, 우리는우리마음대로공동재산에서더많은몫을그에게줄수는없다. 왜냐하면우리에게는정의의의무가형평의의무에앞서며, 전자가늘후자보다앞서나아가야만하기때문이다. 형제의죽음과남편의죽음사이에서선택하도록폭군에의해강요당한한여인이남편은다시맞이할수있지만형제는그럴수없다는구실로남편을저버린다면, 그녀는아마도옛사람들에게는칭송을받았을지도모른다. 그러나내가보기에, 이여인은그녀안에있는형평의감정에따르기는했지만정의를저버렸으므로악행을범한것이다. 왜냐하면부부의사회는우애의사회보다당연히더긴밀하며이웃의목숨이곧우리에게속한것은아니기때문이다.

마찬가지원리에의해서, 임금의불평등이재능의불평등을구실로법적으로허용될수는없다. 왜냐하면재산의분배는정의에속한문제로서경제의영역일뿐경탄의영역이아니기때문이다.

끝으로증여, 유산및상속에대해말하자면, 사회는가족의애정과사회고유의권리두가지에동시에이끌리나머지사랑과호의가정의침범하도록허용해서는안된다. 오랫동안아버지의일에협력해온이들이아버지의일을물려받기에그누구보다더적합하다고믿는다는것은흡족한일이다. 마찬가지로한창작업에임하다가갑작스럽게죽음을맞게된한시민이그의천직에대한자연적취향과애정으로미루어볼때후계자를정하기에가장적합하며그후계자에게온갖유산들중선택하도록할수있다고믿는다는것역시흡족한일이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사회는단

가저울공포를일깨우소서. 그들이앞을다투어회개하게이끄시고남보다먼저뉘우치는자를용서하소서. 그러면위대한자든미천한자든박식한자든무지한자든부자든가난한자든이루말할수없는우애속에맺어질것이며, 모두함께새로운찬가를부르면서당신의제단을세울것입니다. 자유의신이여, 평등의신이여!

자크는죽으면서두아들피에르와장을재산상속자로남겼다. 자크의재산은이들에게동등하게배분되었다. 그러나피에르는딸을하나만둔반면, 그의형제인장은아들여섯을두었다. 평등의원리와상속의원리에동시에충실하고자한다면, 피에르와장의자녀들이두사람의유산을일곱등분해야만할것이명백하다. 그렇지않으면, 외부사람이피에르의딸과결혼할경우그로인해조부자크의재산의절반이다른집안으로넘어갈것이기때문이다. 이는상속의원리에어긋나는일이다. 게다가장의자식들은여럿이다보니까가난한반면에, 피에르의딸은혼자인덕분에부자이다. 이는평등의원리에어긋나는일이다. 겉으로는상반되어보이는이두가지의원리를결합시켜폭넓게적용해보자. 그러면사람들은, 오늘날제대로알지도못하면서공격하고있는이상속권이평등의유지에전혀걸림돌이되지않는다는사실을깨닫게될것이다.

우리가어떤정부가래서살든지간에, 〈죽은자가산자를붙잡는다〉라는말, 즉인정된상속자가누구이든간에유산과상속은존재하리라는것은언제나진실이다. 그러나생시몽주의자들은상속인이사법관에의해지명되길바란다. 다른이들은, 자연의의지가평등의법칙테두리안에서구현되어야한다는취지에서, 상속인이죽은자에의해서선택되고법률에의해서추진되길원한다. 오늘날, 실제로상속을통제하는것은우연이거나변덕이다. 그런데입법분야에서우연이나변덕이규칙인양받아들여질수는없는일이다. 자연이우리를평등하게만든후에우리에게상속의원리를제한한것은바로우연이가져오는끝없는혼란을피하기위해서이다. 이는사회가우리에게우리형제들중에서우리의일을이루기에가장유능한이를선택하도록권면하는목소리와같은것이다.

아킬레우스와아작스는서로결합되어있는가, 그렇지않은가? 모든문제는여기에달려있다. 만일이들이서로결합되어있기는커녕, 둘다가가멤논에게돈으로고용되어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규정에는어떠한이의도제기도리수없다. 노예를부리는주인은두배의충성을바칠노예에게두배의술값을약속할수있을것이니말이다. 전제정의법칙, 예종의법칙이바로이것이다. 그러나아킬레우스와아작스가서로결합되어있다면, 그들은평등하다. 아킬레우스가 4 명의힘을가지고있고, 아작스가 2 명의힘을가지고있다고한들, 그것이무슨문제인가! 아작스는자신은늘자유롭다고답할것이며, 또아킬레우스가 4 명의힘을가지고있으면 5 명이그를죽일것이며결국몸으로충성을바치는데는그도아킬레우스만큼위험을무릅쓰다고답할것이다. 동일한추론을테르시토스에게도적용할수있다. 만일그가싸움을몰르면, 요리사나보급병이나술창고관리인을시키면된다. 만일그가전

의법이자공식적인법인반면에, 존중, 우정, 인정, 찬미따위는 〈형평〉 의또는 〈비례〉 의법으로귀착한다.

아홉째, 자유로운결사, 즉생산수단의평등과등가교환에한정하는자유야말로가능한유일한사회형태, 정의롭고참된유일한사회형태이다.

열째, 정치학은자유과학이다. 인간에의한인간의통치는어떤이름으로장식하더라도압제일뿐이다. 사회의가장완벽한모습은질서와아나키의결합에서발견된다.

케케묵은문명의종말이다가왔다. 새로운태양아래서지표면도새로워질것이다. 한세대가사멸하도록내버려두자. 노쇠한독직자들이사막에서죽도록내버려두자. 거룩한대지가그들의뼈를덮지는않으리라. 세기의부패에격분하고정의의열정에목마른젊은이여, 만일그대가조국을사랑한다면, 만일그대가인류의행복을염려한다면, 자유의대의를과감히껴안아라. 그대의낡은이기심을벗어던지고갓태어난평등의도저한물결에몸을맡기라. 그물결에잠긴그대의영혼은지금껏몰랐던정기와활력을얻으리라. 그대의유약해진천성은억누를길없는활력을얻으리라. 이미시들어버린그대의마음은아마도다시젊어지리라. 맑아진그대의눈앞에서모든것이면모를일신할것이다. 새로운감정들이그대에게서새로운관념들을날을것이며, 종교, 도덕, 시, 예술, 언어등이더장대하고더아름다운모습으로그대에게나타날것이다. 그러면그대는그대의신념을확신하고심사숙고끝에더욱열정적이되어보편적경쟁의여명을맞이하게될것이다.

그대, 사악한법률의슬픈희생자, 빈정거리는세상에의해덜벗고두드러맞은그대, 결실없는노동과희망없는휴식에지친그대여, 용기를잃지말라. 그대의눈물은보상을받으리라. 아버지들이고통속에서씨를뿌렸으니, 아들들이환희속에서그것을거두리라.

아아, 자유의신이여! 평등의신이여! 내가이성의의해깨닫기전에이미나의마음속에정의의감정을심어준신이여, 나의간절한기도를들어주소서. 내가지금껏써내려온것을내게불러준이가바로당신시오. 당신은나의사상을만들어주고나의연구를지도하였으며, 나의정신을호기심에서, 나의마음을집착에서벗어나게해주었소이다. 그것은내가주인과노예앞에당신의진리를널리펼치게하기위함이아니었습니까. 나는당신이준힘과재능에의해말했을따름입니다. 당신의작업을완수하는것은바로당신의몫입니다. 당시는내가나의이익을추구하는지아니면당신의영광을추구하는지알고있습니다. 아아, 자유의신이여! 아아! 나에대한세상의기억을지워주소서. 인류가자유롭기만바랄따름입니다. 마침내깨우친인민을그저나의희미한그림자속에서볼수있게해주소서. 고귀한교육자들이인민을게도하게주소서. 사심없는마음이인민을인도하게주소서. 가능한만큼우리의시련의시간을줄여주소서, 오만과탐욕은평등속에묻어버리소서. 우리를예종속에가두어놓는이영예에대한허망한욕구를꺼버리소서. 이가련한자녀들에게자유속에는어떤위인도영웅도없다는것을알려주소서. 권세자에게, 부자에게, 그리고내가당신앞에서는절대그이름을부르지않을자들에게그들의탐욕이

한사람에게만이이익이돌아가는어떤자본과산업의집중도, 어떤노동의독점도어떤침탈도허용해서는안된다.³

(2) 형평과정의, 사회는같은부류의개체들과의관계에서만살아있는생명체로존재할수있다. 이것들은한중에서다른중에게로, 예컨대이리에게서염소에게로, 염소에게서인간에게로, 인간에게서신에게로, 하물며신에게서인간에게로는발생하지않는다. 정의, 형평, 사랑등을최고존재에게부여하는것은일종의순수한신인동형론이다. 그리고정의, 인자, 긍휼등우리가신에게부여하는여타의형용어들은우리의묵도서에서삭제되어야한다. 신은신과의관계에서만정의롭고, 공정하며선하다고간주될수있다. 그런데신은고독한유일자이다. 따라서신은선량, 형평, 정의와같은사회적감정들을체험할수없다. 양치는목동은자신의양과개에대해서정의롭다고말할수있는가? 아니다. 그러나만일그가생후 6 개월된새끼양에게서 2 살난숫양에게서만큼이나많은양털을깎으려한다면, 그가강아지에게어미개에게말겨져야할양들을돌보는일을요구한다면, 사람들은그가부당하다고말하는것이아니라미치광이라고말하리라. 인간과동물사이에애정은있을수있으나사회는있을수없기때문이다. 인간은동물을 〈물건〉 으로서, 구태여말하자면 〈감정이있는물건〉 으로서사랑하나 〈인격〉 으로서사랑하지않는다. 따라서철학이미신이우리에게가져다준열정들을신의관념에서제거해버렸다면, 그다음에는우리의자유분방한신앙심이신에게가져다준이러한덕성마저제거해야할것이다.⁴

만일신이이땅에내려와우리보다불어살게되더라도, 신이우리와의함께어울리지않는한, 우리는신을사랑할수없으리라. 신이무엇이든부를생산하지않는한, 신에게아무것도줄수없으리라. 신이우리의잘못을입증하지않는한, 아무도신의말에귀를기울일수없으리라. 신이자신의위력을우리에게내보이지않는한, 아무도신을찬미할수없으리라. 우리의존재와관련된모든감정적, 경제적, 지적법칙들은우리가신을다른사람들과마찬가지로대하라고, 즉이성과정의와형평에따라대하라고명하고있다. 여기서내가얻은결론은만일신이인간과직접적인교섭에들어가려면그가곧인간이되어야만한다는것이다.

³ 〈적에게서빼앗은전리품 12 개를아킬레우스와아작스에게나누어주거나분배해야만했다 고가정해보자. 만일두사람이평등했다면, 전리품역시산술적으로평등했을것이다. 즉아킬레우스가 6 개, 아작스가 6 개를가졌을것이다. 그런데만일이산술적인평등에따른다면, 테르시토스역시아킬레우스와대등한몫을받을것이다. 이는더없이부당하고쾌심한일이리라. 그러면이러한불공정을피하기위해서사람들의가치를비교하고그가치에따라할당된몫을준다 고하자. 즉아킬레우스가아작스보다두배의가치가나간다고하면아킬레우스의몫은 8, 아작스의몫은 4 가될것이다. 여기에산술적인평등이아니라비례적인평등이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분배적정의라고부른것은바로이러한공훈의비교 rationum 이다. 그것은기하학적비율에의해결정된다.〉 (톨리에, 『법령별프랑스법』).

⁴ 남녀간에는사랑, 정념, 습관의유대등, 원하는모든것이존재할수있으나진실로사회는존재하지않는다. 남자와여자는동료를이루지않는다. 남자와여자사이에성별의차이는종의차이에의해동물들사이에생기는것과같은자연적차이를낳는다. 따라서나는오늘날여성해방이라불리는것에갈채를보내기는커녕, 이러한극단적일이일어난다면, 차라리여성을가두어버릴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왕들의신이이미지이자신의의지의집행자라할지라도, 왕들이우리에게서사랑과부와복종과영예를얻으려면그들스스로우리처럼노동하고, 우리와교제를나누며, 자신들의지출에맞추어생산하고, 중복과함께의논하며, 몸소큰일들을해내야만할것이다. 하물며, 어떤이들이주장하는것처럼만일국왕들이국가의공무원이라면, 그들에게돌아가야하는사랑은그들의개인적다정함어부에따라측정될것이고, 그들에게복종해야할의무는그들이내리는명령의권위에따라측정될것이며, 왕실의경비는시민의수로나눈사회적생산의총액에의해측정되어야할것이다.

이렇게, 법률학, 경제학, 심리학등모든것이우리에게평등의법칙을부여한다. 권리와 의무, 재능과노동에따른보상, 사랑과열정의약동, 이모든것이균등한척도에의해미리정해지며수와균형에의존한다. 조건들의평등, 이것이야말로사회들의원리이고, 보편적연대성, 이것이야말로원리의재가이다.

조건들의평등은우리의정념과우리의무지탐에한번도실현된적이없다. 그런데이법칙에대한우리의반발은조건들의평등을더욱더필요한것으로만든다. 이것은역사에의해늘 입증된바이며, 일련의사건들에의해우리에게알려진바이다. 사회는등식等式에서등식으로진전한다. 제국들에서발생하는혁명은경제학자들의눈에는때로는서로공제되는대수적인양들의약분으로만, 때로는시간의불가피한작용에의해나타나는어떤미지수의등장으로만보일뿐이다. 수량은역사의섭리이다. 물론인류의진보에는다른요인들이있다. 인민들을고일어나게만드는수많은내밀한원인들중에서, 소유에맞선프롤레타리아들의주기적인소요보다더강력하고, 더규정적이며, 더알아차리기쉬운것은없다. 인구가증대할때면어김없이배제와침해의원리에따라몸을움직이는이소유는모든혁명들의발생원리이자결정요인이었다. 종교전쟁과정복전쟁들은, 인종의말살에까지이르지않았을경우에는, 그저우연한교란으로그쳤으며즉시인구의산술적인증대로보상되었다. 이것이바로소유가갖는축적의힘이며, 이것이바로사회의퇴폐와사멸의법칙이다.

중세의피렌체를보라. 겔프파 (Guelfes, 교황파-웁긴이) 와기벨린파 (Gibelins, 황제파-웁긴이) 라는이름으로잘알려진, 그러나실은무장한채서로싸우는하층민과소유자귀족계급에지나지않는, 두파벌사이의다툼으로늘쫘겨진이상인과중개업자의공화국을보라. 피렌체는은행가의지배를받다가결국빛에쫓겨몰락하지않았는가.⁵

고대의로마를보라. 로마는건국이후고리대에시달리다가, 그래도전세계가그비참한프롤레타리아들에게 <노동> 을제공해주는동안잠시번영했으나, 대외적으로평온한시기에는내란으로피투성이가되고, 결국인민의왕성한정력과더불어마지막남은도덕감각까지잃게되자쓰러져죽지않았는가. 카르타고, 내부

⁵ 미슐레 Michelet 씨는콜레주-드-프랑스에서의강연에서, <코시모데메디치 Cosimo de Medici 의금고는페렌체의자유무덤이다> 라고말했다.

이것으로나는내스스로제안했던일을끝마쳤다. 소유는타도되었다. 소유는다시회복하지못하리라. 이는설이읽히고전해지는모든곳에서소유에대한죽음의씨앗이뿌려지리라. 거기에서는조만간특권과예종이사라지리라. 거기서는이성의지배가의지의전제를대체하리라. 실로, 다음과같은아주단순한명제들앞에서어떤계변들, 어떤고집불통의편견들이버틸수있으랴.

첫째, 개별적 <점유 possession>⁹는사회생활의조건이다. 소유 propriété 의 5,000 년역사가그것을증명해준다. 즉, 소유는사회의자살이다. 점유는권리와양립할수있으나소유는권리와대립한다. 점유를보존하고소유를제거하자. 이와같은원리의변경에의해서만당신은법률, 정부, 경제, 제도들에서모든것을바꿀수있을것이다. 당신은이땅에서악을내몰수있을것이다.

둘째, 선점권 droit d'occuper 은만민에게평등하기때문에, 점유는점유자의수에따라달라진다. 소유는성립할수없다.

셋째, 노동의결실역시만민에게동일하기때문에, 소유는외부의착취에의해그리고임대료에의해상실된다.

넷째, 인간의노동은필연적으로집합적힘의소산이기때문에, 일체의소유는바로똑같은이유에서집합적이되며분할될수없다. 정확히말하자면, 노동은소유를파괴한다.

다섯째, 노동능력은노동구도와마찬가지로축적된자본이자집합적재산이기때문에, 능력의불평등을구실로삼은보수와기회의불평등은불의이며도독질이다.

여섯째, 상거래는계약당사자들의자유와교환되는생산물들의등가성을그필요조건으로한다. 그런데가치는개개생산물에들어간시간과비용의총화로표현되는것이고자유는절대침해될수없는것이기때문에, 노동자들은권리와 의무에서평등하듯이임금에서도필연적으로평등해야한다.

일곱째, 생산물은생산물에의해서만구매된다. 그런데모든교환의조건은생산물의등가성이기때문에, 이익은불가능하고부당하다. 경제의가장기본적인이원칙을준수하라. 그러면빈곤, 사치, 압제, 악덕, 범죄등이배고픔과더불어우리에게서사라질것이다.

여덟째, 인간들은자신들의완전한동의에의해서결합하기에앞서서생산의물리적, 수학적법칙에의해서결합하고있다. 따라서조건들의평등은정의, 즉사회

의갈채는그들의몫이될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신자요사도로서보다는사기꾼이자열치기로서의인상을심어주는이게시론에서그들스스로벗어나길바랄따름이다.

⁹ 개별적점유는결코대규모경작이나경작의단일화에장가되지않는다. 내가토지세분화에따른애로사항을말하지않는것은누구나다알고있을사실을다른이들이이미다말하고난뒤에굳이반복할필요가없다고여겼기때문이다. 그러나나는, 빈곤이영세경작에서나온다고그토록멋지게주장해온경제학자들이그근원이온전히소유에있다는것을알아차리지못했다는사실에, 특히그들의토지생산화계획이소유의폐지의시작이라는것을알아차리지못했다는데에그저놀랄따름이다.

자유는경쟁을장려하며그것을파괴하지않는다. 사회적평등속에서경쟁은대등한조건들아래서이루어져야할따름이다. 포상은경쟁그자체에주어질뿐승자도패자도있을수없다.

자유는자기희생을찬양하고자기희생에따른고통을높이평가한다. 그러나자유가자기희생을반드시필요로하는것은아니다. 사회적균형을유지하는데는정의만으로충분하다. 자기희생은필요이상의행위이다. 그렇지만, 〈나는내몸을바친다〉라고말할수있는이에게복이있도다.⁷

자유는본질적으로조직화의원리이다. 인간들사이의평등이나국민들사이의균형을확립하기위해서는농업과공업, 교육, 통상및집산의중심지들이각지방의지리적·풍토적조건, 생산물의종류, 주민의특성과자연적재능등에따라아주정당하고현명하며아주알맞은비율로잘배분되어야만한다. 어떤지역도인구및소비와생산의과잉또는결핍에의해고통받지않도록말이다. 여기에서공법학과사법학그리고참된경제학이시작된다. 새로운법률들을기술하고세상을평온하게하는것은, 이제그릇된소유의원리에서벗어난법률학자들의몫이다. 이들에게는지식과천재가부족하지않다. 이들은이미그렇게할기반을갖고있다.⁸

⁷ 「평등주의자 l'Egalitaire」라는제목으로첫호를출판한어느월간지는자기희생을평등의원리로내세우고있다. 이것은온갖개념들을혼동시키는일이다. 자기희생그자체는최고도의불평등을전제로한다. 자기희생에서평등을구하는것은평등이자연에반한다는사실을인정하는것이니말이다. 평등은정의에, 엄밀한권리에, 소유자자신이나세우는원리들에토대를두어야만한다. 그렇지않으면평등은존재할수없을것이다. 자기희생은정의보다우월하다. 그것은법으로강제될수없으니, 자기희생이란그성격상보상이없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물론, 모든사람들이자기희생의필요성을인정하는것은바람직한일이며, 「평등주의자」의생각은아주좋은모범이다. 그러나불행히도자기희생은아무것에도도리치못한다. 사실, 〈나는희생하길원치않소〉라고당신에게말하는자에게무엇이라고대답하겠는가? 그를강제해야할것인가? 자기희생이강제로이루어질때, 그것은억압, 예종, 인간에의한인간의착취라불린다. 프롤레타리아들이소유에게자기를희생한다는것은바로이러한의미에서이다.

⁸ 내가보기에현대의모든사회주의자들중에서푸리에의사도들이오래전부터가장앞서나가는자들이며사회주의라는이름에값하는거의유일한자들인듯하다. 만일그들이자신들의과업을이해했다면, 만일그들이인민에게호소할줄을알고, 공감을일깨울줄알며, 모르는것에대해서는입을다물줄알았다면, 만일그들이좀더오만한주장을내세우고공적이성에대해좀더많은존중심을보여주었다면, 아마도그들덕에개혁이시작될수있었으리라. 그러나그토록결연한이개혁가들이어떻게권력과풍요앞에, 즉더욱반개혁적인것앞에줄곧무릎을꿇은것일까? 이이성의세기에그들이어떻게세계가신화나우화에의해서가 아니라 〈논증적 이성〉에의해변혁된다는것을이해하지못했을까? 문명의화해할수없는적인그들이어떻게문명이남은가장불길한소산, 즉소유, 재산및서열의불평등, 폭음, 폭식, 축첩, 매음, 요술, 잡술, 주술등등을문명에게서빌려온것일까? 도덕, 형이상학, 심리학등그들조차이해하지못하는과학들이바로그들의체계그자체를이루고있는마당에, 왜그들은이과학들에대해비난을늘어놓는가? 명칭밖에모르는많은사물들에대해억측을늘어놓는것이주된공적일뿐인한인물들이더이상기묘할수없는말로신경화하는이기벽은어디서나오는것일까? 어떤한인물의무오류성을인정하는자는누구든지그것으로인해서다른사람들을가르칠수없게된다. 이성을포기하는자는누구든지곧자유로운탐구를스스로삼게된다. 팔랑스테르주의자들은만일힘이있었다면실패하지않았을지도모른다. 그들이이성적으로추론하고방법을세워추진하고우리에게게시가아닌논증을제시해주길바랄따름이다. 그러면우리는기꺼이귀를기울일것이다. 그들이공업, 농업, 상업을조직하고, 노동을매력적인것으로만들고, 가장미천한직분도고귀한것으로만들기를바랄따름이다. 그러면우리

경쟁에의해끊임없이분열된상업과금전의도시카르타고를보라. 티르, 시돈, 예루살렘, 니네베, 바빌론, 무역경쟁으로인해, 아니오늘날의표현을빌리자면판로의부족으로인해차레로몰락한이들도시를보라. 잘알려진이많은사례들은만일인민이, 만일프랑스가그힘찬합성을내지르면서소유제도의폐지를선언하지않는다면어떤운명이현대국가들을기다리고있을지를충분히보여주지않는가?

여기서나의작업을끝마쳐야하리라. 나는가난한자의권리를입증했으며, 부자의횡령을보여주었다. 이제나는정의를요구한다. 물론판결의집행은나의몫이아니다. 만일부당한향유를몇년더늘릴요량으로어떤이가, 평등을입증하는것만으로는불충분하니평등을조직해야만한다고, 그것도아무런마찰을일으키지않고평등을확립해야한다고주장한다면, 나는정당하게다음과같이대답할것이다. 즉, 피억압자에대한배려는장관들의곤혹스러움에우선한다고. 그리고조건들의평등은원초적인법칙이며공공경제와입법도여기에의존한다고. 노동의권리, 그리고재산의균등한분배에대한권리는권력의근심걱정앞에서도양보할수없는것이다. 법전의모순들을조정한다거나하물며정부의실책에괴로워하는것은결코프롤레타리아의몫이아니다. 이와는반대로, 정치적평등의원리에바탕을두고 스스로를개혁하는것은바로시민적·행정적권력체의몫이다. 공공연한악행은비난받아야하며또근절되어야만한다. 입법자는어떻게대처해야할지자신이잘모른다는것을명백한불의에대한핑계로삼아서는안된다. 바로잡는일은미루어질수없다. 정의, 사법, 권리의인정, 프롤레타리아의복권, 이모든것이이루어지고나면, 재판관이여, 집정관이여, 당신들은경찰의동정에신경을쓰고, 나아가공화국의통치에미리대비하는것이중요리라.

또한나는나의독자들중어느누구라도내가파괴할줄은알지만건설할줄은모른다고나를비난하리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 평등의원리를입증함으로써나는사회라는건물의초석을놓았다. 그리고나는그이상의일을해냈다. 나는정치와입법의문제를해결하려면따라야할절차의실례를보여주었다. 과학자체에대해서말하자면, 나는그원리이상의것은알지못하고, 오늘날어느누구라도자신이남다른통찰력을지니고있다고뽐낼만한처지가아니라고생각한다. 많은이들이 〈내게로오라. 그러면당신에게진실을가르쳐주겠노라〉고외친다. 이런사람들은자신의사적인의견, 자신의열정적인확신을마치진실인양착각한다. 이들은진실이라는것에대해대개잘못생각하고있다. 사회에대한과학은모든다른인간과관련된과학들과마찬가지로영원히미완의상태이다. 사회가포괄하는문제들의깊이와다양성은거의무한대가깝다. 우리는이과학의 ABC 에겨우도달해있다. 우리가아직은체계들 système 의단계들을넘어서지못하고있다는사실, 그리고우리가줄곧사실들의문제를토론에서의다수결로대체한다는사실이그증거이다. 어떤문법학회는언어학의문제를다수결투표로해결했다. 우리의회들에서의토의도, 비록그결과가그리치명적이지는않더라도, 여전히우스꽝스럽기짝이없다. 우리가사는이시대에진실한저술가의과업은사기꾼과거짓말쟁이의입에재갈을물리고, 일반인들로하여금상징이나강령이아니라는증에만만족하도록교육하는일

이다. 과학에대해논의하기에앞서우선과학의대상을결정하고그방법과원리를발견해야만한다. 과학을짓누르는것가지편견들을물리쳐야만한다. 바로이것이 19 세기의사명이다.

나로서는그렇게하기로다짐해왔다. 앞으로도나는나의파괴작업에충실할것이며, 폐허와잔해더미속에서꿈임없이진리를찾아나설것이다. 나는일을어중간하게끝내는것을좋아하지않는다. 그리고내가만일언약의궤에서손을댄다면내가그뚜껑을벗겨내는데에만만족하지않으리라고믿어도좋다. 불의라는성역을둘러싼신비를벗겨내야하고낡은언약의석판을부숴버려야하며, 모든낡은송배대상들을집승의먹이로던져버려야한다. 정치학전체의요약판이자 20 여입법회기의상징인헌장憲章이우리에게주어져있다. 한통치자의오만이자고대의지혜의축소판이라할법전이쓰였다. 아, 그런데! 이헌장, 이법전중에서어떤한조항도남지않으리라. 박학한학자님들은지금부터라도방침을정해서재건을준비해야하리라.

그러나오류를파괴하는일은응당그반대진리를전제하는것인만큼, 나는정치학의첫번째문제, 오늘날모든지성을사로잡고있는다음의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는이글을끝맺을수가없다. 〈소유가폐지되면, 사회의형태는어떻게되는가? 그것은공유제 communauté 인가?〉

자유는아나키이다. 왜냐하면자유는의지의통치를용납하지않으며단지법의권위, 즉필연의권위만을받아들이기때문이다.

자유는무한한다양성이다. 왜냐하면자유는법의한계내에서는모든의지를존중하기때문이다.

자유는비례균형이다. 왜냐하면자유는공적에대한야망과영예에대한경쟁에모든여지를남겨놓기때문이다.

우리는이제쿠쟁씨를본받아다음과같이말할수있다. 〈우리의원리는진실이다. 우리의원리는훌륭하고사회적이다. 그러므로거기서모든결론을얻기를두려워말자.〉

인간에게있는〈사회성〉은성찰을통해〈정의〉가되고, 능력들의맞물림을통해〈형평〉이되며, 〈자유〉를그정식으로삼는다. 사회성은도덕의참된원리이고우리의모든행동의원리이자규준이다. 사회성은철학이탐구해오고종교가강화해온보편적동기이며, 인간의이기심에의해밀려났으나그렇다고순수이성에의해서는결코보완되지않는보편적동기이다. 〈의무〉와〈권리〉는우리들안에서욕구로부터생겨나는바, 이욕구라는것은외부존재와의관련에서생각하면〈권리〉가되며, 우리자신과의관련에서생각하면〈의무〉가된다.

우리는먹고자려는욕구가있다. 그러나우리가수면과영양에필요한물품들을마련하는것은권리이며, 자연이필요로할때그것들을사용하는것은의무이다.

우리는살기위해노동하려는욕구가있다. 그러나그것은권리이자또한의무이다.

우리는아내와아이들을사랑하는욕구를갖는다. 그러나그들의보호자이자버팀목이되는것은의무이며, 그들에게서다른누구보다더사랑받는것은권리이다. 부부사이의정절은정의이며, 간통은반사회적인범죄인것이다.

우리는생산물을다른이의생산물과교환하려는욕구를갖는다. 그러나교환이서로대등하게이루어져야한다는것은권리이다. 그리고우리는생산하기에앞서서소비해야만하므로, 만일모든것이우리에게달려있다면, 우리가소비를한다음에곧생산에매진해야한다는것은의무이리라. 자살은기만적인파산인것이다.

우리는이성의빛에따라우리의과업을다하고자하는욕구를갖는다. 그러나우리가우리의자유의지를보유하는것은권리이다. 다른사람의자유의지를존중하는것은의무이다.

우리는동료들에게존중받고자하는욕구를가진다. 그러나우리가그들의칭찬에값하는것은의무이며, 우리가우리의업적에따라평가받는것은권리이다.

자유는상속의권리나유언의권리와전혀어긋나지않는다. 자유는평등이이권리들에의해침해당하지않도록감시하는것으로만족할따름이다. 자유는우리에게말한다. 〈두유산사이에서선택하라. 다가질수는없다〉라고. 양도, 한사限嗣 상속, 양자결연, 그리고감히말하자면〈성직계승권 coadjutoreries〉 따위와관련된모든입법들은다시만들어져야한다.

제 3 절제 3 의사사회형태의결정 — 결론

따라서소유를토대로하는어떤통치도, 어떤공적경제도, 어떤행정도가능하지않다.

공유제는〈평등〉과〈법 loi〉를추구한다. 반면에소유는이성의자주성및개인적공적의산물로서, 모든사물에대한〈독립성〉과〈비례균형 proportionnalité〉을원한다.

그러나획일성을규범으로삼고평준화를평등으로여기는공유제는전제적이되고또부당하게된다. 반면에소유는그전제專制와침해에의해곤압제적이고비사회적으로변한다.

공유제와소유는선善을원한다. 그러나그두가지가각각낳는것은악이다. 왜그런가? 그것은이두가지가서로배타적이기때문이며제각기사회의두요소를무시하고있기때문이다. 즉공유제는독립성과비례균형을무시하는반면, 소유는평등과법을존중하지않는다.

그런데만일우리가평등, 법, 독립성, 비례균형이라는이네가지원리에토대를둔사회를머릿속에그려본다면, 다음과같은사실들을알게된다.

1. 평등은어떤경우라도정의와형평을침해하지않는다는것. 물론이때평등이란〈조건들의평등〉즉〈수단들〉의평등만을의미한다. 그리고〈복리의평등〉이란평등한수단들로써노동자들이달성해야할몫이다.

2. 법은사실들에대한과학에서유래하는것으로서필연성그자체에의존하기때문에결코독립성과충돌하지않는다는것.

3. 개개인상호간의〈독립성〉즉사적이성의자주성은재능과능력의차이에서유래하는것으로서, 법의한계안에서는아무위험없이존속할수있다는것.

4. 〈비례균형〉은물질의영역이아니라지능과감정의영역에서만인정되는것으로서, 정의및사회적평등을침해하지않고도준수될수있다는것.

공유제와소유의종합이라할수있는이제 3 의사사회형태를우리는〈자유〉⁶라고부를것이다.

자유인성격을규정하는데에서우리는공유제와소유를무차별적으로결합시키지는않는다. 그것은불합리한절충주의이리라. 우리는분석적방법을통해그것들각각에서진실한것, 자연의요구와사회성의법칙에순응하는것을찾아내고나아가이질적인요소들을제거한다. 그러면그결과물은인류사회의자연적형태에적합한어떤표현을제시해준다. 그것이바로자유이다.

자유는평등이다. 왜냐하면자유는사회상태안에서만존재하는데평등을넘어서서는사회가있을수없기때문이다.

⁶ libertas(자유), liberare(해방하다), libratio(해방), libra(저울, 리브르 [화폐단위-울긴이]), 이모든표현들의어원은동일하다. 자유란권리와무의균형잡는일이다. 인간을자유롭게한다는것은다른사람들과균형을잡는것, 즉자신을다른사람들의수준에놓는것이다.

제 2 부

제 1 절우리의오류의원인들에대하여: 소유의기원

인간사회의참된형태를확정하려면다음과같은문제를미리해결해야만한다. 즉, 소유는우리의자연적조건이아님에도불구하고어떻게확립되었는가? 동물들에게서는그리도확고한사회적본능이왜인간에게서는찾아볼수없는가? 사회를위해태어난인간이왜아직도한동아리를이루지못하는가?

나는인간이〈복잡한방식으로〉결합한다고말했다. 이것이물론적합한표현은아닐지라도, 이표현으로내가특징짓고자하는사실자체, 즉재능과능력들이복잡하게뒤엉켜있다는사실자체는여전히진실이다. 그러니이재능과능력들이그한없는다양함으로인해의지의무한한다양함을낳는다는사실, 이로인해성격, 경향, 굳이말하자면〈자아〉의형태가불가피하게달라진다는사실을보지못하는자가있을까? 따라서지능의영역에서와마찬가지로자유영역에서도개인들만큼이나많은유형들, 머릿수만큼이나많은독창성들이존재하며, 그것들의기질, 성향이가지각색의생각들로채색되어서반드시서로일치할수만은없다는사실을보지못하는자가있을까? 인간은그천성과본능에의해사회에속하도록미리운명지어져있다. 그러나인간의개성은늘변화무쌍하고다양하기해서사회와대립한다.

동물들의사회에서모든개체는어김없이똑같은일들을해낸다. 동일한천성이그들을이끌고, 동일한의지가그들에게활력을불어넣는다. 짐승들의사회는, 그모양이동굴든꼭대기든, 사각형이든삼각형이든늘완전히똑같은원자들의집합체인것이다. 그들의개성은일률적이며, 따라서단하나의자아가그들모두를지배한다고말할수있다. 홀로든사회를이루든동물들이수행하는작업은그들의특성을날날이드러내주고있다. 꿀벌의무리가성질도같고가치도대등한개꿀벌들로이루어져있듯이, 꿀벌집은모양도크기도완전히똑같은춤춤이반복되는구멍들로이루어져있다.

그러나 인간의 지능은 사회적인 명과 개인적 필요를 동시에 계산에 넣고 있기 때문에 전 혀 다른 모양새를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주 당연한 결과이지만 인간의 의 지역시 아주 각양각색이다. 꿀벌의 의지는 항구적이고 단일한 모양새를 띤다. 그것은 꿀벌을 이끄는 본능이고 정본화하며, 이유 일한 본능이 동물의 삶, 행복 및 존 재 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재능은 다양하고, 이성분 불확실하며, 따 라 서 의지도 각양각색이고 막연하다. 인간은 사회를 추구한다. 그러나 인간은 규제와 단조로움을 피한다. 인간은 모방을 잘하기는 하지만 자기만의 생각을 중시하고 자 기의 작업에 열중한다.

만일 인간이 꿀벌과 마찬가지로 이미 정해진 재능과 특성 사물에 대한 완벽한 이해력을,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기능들에 대한 선천적인 지식을 가지 고 태어나지만, 성찰하고 추론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사회는 저절로 조 직될 것이다. 이 사람은 밭을 갈고, 저 사람은 집을 짓고, 어떤 이는 쇠불이를 버리고, 또 어떤 이는 옷을 만들고, 누구는 물건을 가게에 쟁이고, 또 누구는 물건의 분배를 떠 맡을 것이다. 자기가 노동해야 하는 까닭을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맡은 몫보다 일을 더 했느냐 덜 했느냐를 염두에 두지도 않으면서, 개개인은 명령에 따르고, 생산물을 가져다 주고, 임금을 받고, 시간이나 면칠 것이다. 인간은 이 모든 일을 아무런 타산 없이, 누구도 질투하지 않고, 감독관에게 어떤 불평도 늘어놓지 않고 행할 것이며, 감독관은 어떤 부당 행위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국왕들은 통치 하나 군림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군림한다는 것은 보나파르트 Bonaparte 가 말했듯이 사 육당하는 〈소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가 모두 맡은 바 위치에서 으 로 국왕들은 어떤 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을 것이며, 권위자나 조언자의 역할 보다 는 차라리 결집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는 토피바퀴처럼 맞물려 돌아 가는 공동체는 존재할지 모르나, 성찰되고 자유로이 수용되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 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만 숨씨를 발휘할 수 있다. 인간은 성찰한 다. 그도 그럴 것이 관찰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곧 성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추론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추론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성찰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한 상을 만들고, 추론함으로써 잘못을 범 한다.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믿고, 옳고 집이 되며, 자기의 견을 맹신하고, 자기를 존 중하며 남을 멸시한다. 이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고립된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이 성을 부정해야만, 달리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만 다수에게 복종할 수 있는 데,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고립, 이 합리적이기심, 요컨대 이 의견의 개인주의는 경험의 관찰에 의해서 진리가 입증되지 않는 한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다음의 마지막 비교는 이 모든 사실을 한층 명백하게 보여 줄 것이다.

만일 꿀벌 무리의 맹목적이거나 합일적이고 조화 된 본능에 돌연 성찰과 추론이 첨 가 된다면, 이 작은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우선, 꿀벌들은 틀림 없이 무엇인가 새로운 작업 방식을, 예컨대 벌집 구멍들을 원형으로 또는 사각형으로 바 꾸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온갖 방식과 구상이다 동원될 것이다. 마침내 오랜 경험의

마다역설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마침내 역설들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을 독자들이 이해해 주기 바랄 따름이다. 게다가 가는, 입법자의 붓 대신에 입법의 칼 이다 시 시민들의 수중에 들어 간다면, 시민의 자유에 어떤 위험이 닥칠 지를 알지 못 한다. 집행권은 본질적으로 의지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수임자에게 위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민의 진정한 주권이 바로 이런 것이다.⁵

소유자, 도둑, 영웅, 주권자 (이 모두는 사실 동의어이다) 는 자신의 의지를 법 률인양 강요하지만 어떤 모순도 느끼지 않고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다. 즉 그는 자신 이 입법권이자 동시에 집행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왕의 의지와 과 학적이고 참된 법률로 대체하는 일을 가차 없는 투쟁 없이 는 성취될 수 없으며, 이러 한 끊임 없는 대체야말로 소유자 다음으로 역사의 가장 강력한 요인이자 정치 운동 들 의 가장 비옥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으리라.

그런데 소유는 필연적으로 전제, 자의적인 통치, 음탕한 의지의 지배를 낳는다. 이것이 야말로 진정 소유의 본질이기 때문에, 소유를 극복하려면 소유란 무엇인가 를 상기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떠올려 보는 것만 으로 충분하다. 소유란 〈사용〉하고 〈남용〉하는 권력이다. 따라서 만일 통치가 하나의 경제 적 행위라면, 만일 통치가 생산과 소비를, 노동과 생산물의 배분을 유일 한 목적으로 삼는 것이라면, 어떻게 통치와 더불어 소유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만 일 재화가 소유물이라면, 어떻게 소유자가 국왕, 전제적인 국왕, 그들의 후천적 능 력에 비례하는 국왕이 아니란 말인가? 그리고 만일 개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 영역 내에서 지고의 주권자라면, 자기 영지의 전 영역에서 불가침의 왕이라면, 어떻게 소 유자들의 통치가 혼란과 혼동 이 아니란 말인가?

⁵ 만일 이와 같은 생각이 언젠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침투해 들어 간다면, 이는 대의 정부나 연설가들 의 폭압에 의해서 일 것이다. 옛날에 과학, 생각, 말들은 하나의 동일한 표현 속에 섞여 있었다. 즉, 생각 과 학식이 깊은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말이 빠르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 후부 터 말은 추상 작용에 의해 과학과 이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이러한 추상은, 논리학자들이 지적하 듯 이, 조금씩 사회에서 실현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말을 아끼는 여러 부류의 학자들이 있는 가 하면, 말의 과학에서는 전혀 학자라고 할 수 없는 언변가들이 있다. 그리하여 철학자는 이미 학자가 아니다. 그는 언 변가이다. 입법자나 시인들은 옛날에는 학식이 깊고 숭고한 사람들이었다. 오늘날 이들은 언변가이다. 언변가는 소리나는 초인종, 아주 날카로운 마찰에도 끝없이 소리를 내는 종이다. 언변가에게서, 물 흐르는 듯 한 담화는 언제나 사상의 빈곤과 정비례한다. 언변가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들이 우리를 소스라치 게 하고, 우리를 진력나게 하며, 우리를 강탈하고, 우리의 피를 빨고, 우리를 조롱한다. 학자들은 어떤 가.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그들이 한마디라도 하려 하면, 누군가 곧 말을 차단한다. 그들은 그저 쓰기 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은이세상이시작될때부터무너져왔다. 인간이평등안에서정의를찾듯이, 사회는 아나키 anarchie 안에서질서를찾는다.

〈아나키〉, 즉주인이나주권자의부재, 우리가하루하루접근해가는통치형태가바로이것이다. 그러나우리는인간을규준으로삼고인간의의를법칙으로삼는뿌리깊은습관에의해아나키를마치무질서의절정이자혼동의표현인양여기고 있다. 17 세기파리의한부르주아에대한이야기가있다. 이순박한사람은베네치아에는국왕이없다는말을듣더니놀라움에서깨어나지못한채이우스팡스러운말에포복절도하여죽을지경이었다는것이다. 우리의편견이바로이와같은것이다. 즉, 우리가살아있는한, 우리는한명이든여러명이든우두머리를원하기마련이라는것이다. 나는여기에소책자한권을가지고있는데, 열렬한공산주의자인이저자는마치또한명의마라 (Marat, 1743~179, 프랑스대혁명기의민중선동가-윙킨이) 인양독재를꿈꾸고있다. 우리들중가장앞선자들은주권자들의수가가능한한 많기를바라는자들일뿐이며, 따라서국민방위군의충성을확보하는것이이들의 가장열렬한소망이다. 아마도곧누군가는이시민군을찬양하나머지 〈모두가왕이다〉 라고말할것이다. 그러나나는그에게답할것이다. 아무도왕이아니라고. 우리는중든삶든한동아리를이루고있을뿐이라고. 내정에관한모든문제는각도 별통계자료를토대로해결되어야한다. 그리고외정에관한모든문제는국제적통계에따라처리될사항이다. 통치과학은응당학문아카데미의한분야에속해야하며, 수상이마땅히그상임비서를맡아야한다. 그리고시민이면누구나아카데미에의견서를제출할수있으므로모든시민이다입법자인셈이다. 그러나그누구의의견도그것이입증될때에만고려대상이되는만큼, 어느누구도자신의의지로이성을대체할수없으며그누구도왕이아니다.

입법과정치의자료가되는모든것은과학의대상이지의견의대상이아니다. 입법권은이성에만, 방법론적으로인정되고입증된이성에만속한다. 어떤권력에라도거부권이나제재권을부여하는것은압제의절정이다. 정의와합법성, 이두가지는수학적진리만큼이나우리의동의여부와는무관한사항이다. 강제되기위해서는인식되는것만으로충분하다. 인식되기위해서는그저고찰하고연구하기만하면된다. 그런데인민이주권자가아니라면, 입법권이인민에게서나오는것이아니라면, 인민이란과연무엇인가? 인민은법의수호자이다. 인민은 〈집행권〉이다. 시민은누구나 〈이것은진실이다. 저것이옳다〉 라고말할수있다. 그러나그의확신은그자신만을강제할따름이다. 그가선언한진실이법이되기위해서는그진실이인정받아야만한다. 그러면법을인정한다는것은무엇인가? 그것은수학또는형이상학의작업을검증하는것이다. 요컨대그것은경험을반복하고, 현상을관찰하며, 사실을입증하는것이다. 오직국민만이 〈명령하고결정하노라〉 고말할수 있다.

지금까지내가말한모든것은사실기존관념과는정반대되는것이며, 따라서내가현재의정치적논의를뒤집고자하는것으로보이리라고자인한다. 그러나나로서는하나의역설에서부터출발했기때문에, 진정옳게추론을전개하자면매순간

결과기하학적지식의도움을얻어육각형모형이가장좋다고입증될때까지말이다. 그다음, 반란이일어날것이다. 수벌에게는자기가먹을것은자기가마련하라고요구할것이며, 여왕벌에게는당신도일하라고요구할것이다. 일벌들사이에는질투심이생기고, 불화가폭발하며, 각자는자기만을위해생산하게되고, 마침내벌집은버려지고꿀벌들은멸종할것이다. 악이마치이꽃밑에숨어있는뱀처럼꿀벌공화국에스며들것이다. 그것도꿀벌공화국의영예가되었어야할것들, 즉성찰과추론에의해서말이다.

그러므로도덕적악, 즉우리를사로잡고있는문제의경우사회의무질서는당연히우리의성찰하는능력에의해설명된다. 빈곤, 범죄, 폭동, 전쟁등은조건들의불평등을그원인으로하며, 조건들의불평등은소유에서유래한다. 소유는이기심에서나오고, 이기심은개인의의식에서생기며, 개인의의식은이성의전제專제에서직접유래한다. 인간은범죄나야만에서출발했던것이아니라, 어리숙함과무지와무경험에서출발했다. 인간이부여받은본능들은절대적이기는하나추론이라는조건아래놓여있다. 따라서인간은처음에는조금밖에사고하지못하며잘못추론하곤한다. 다음에인간은이잘못된추론의덕에조금씩자기생각을고치고자기이성을완성해나간다. 그것은하찮은일에자신의모든것을바치고난후후회하며눈물짓는야만인의모습이다. 그것은자신의장자상속권을불은떡과팔죽과바꾸고나서곧거래를취소하려하는에서 Esau 의모습이다 (구약『창세기』 25 장 21~34 절-윙킨이). 그것은, 자신도고용주도평등이었다면임금은늘볼충분할수밖에없다는사실을깨닫지못하기때문에불완전고용상태로일하면서끊임없이임금인상을요구하는문명화된사회의노동자의모습이다. 나아가그것은자기유산을지키다죽은나뭇 Naboth 의모습이고 (구약『열왕기』 상편 21 장-윙킨이), 노예가되느니할복자살을택한카토 (Marcus Cato, 기원전 93~46, 로마의정치인으로카이사르의전제에맞서싸우다자살했다-윙킨이) 의모습이며, 사상의자유를지키기위해독배를마신스코라테스의모습이다. 그것은자유를요구한 1789년의제 3 신분의모습이며, 곧생산수단과임금의평등을요구하는인민의모습일것이다.

인간은사회적으로태어난다. 달리말하면, 인간은자신의모든관계에서평등과정의를갈구하나그와동시에독립성과칭송을원한다. 이여러가지필요들을한꺼번에만족시키기어렵다는사실이바로지의전제專제와그에따르는황령의첫번째원인이다. 다른한편으로, 인간은자신의생산물을끊임없이교환해야할필요가있다. 그러나여러종류의가치들을균형있게평가할능력이없기때문에인간은그저어림으로만, 즉자신의열정이나변덕에따라판단하는것으로만족한다. 그리하여인간은부정직한거래에몸을내맡기게되고, 그결과언제나풍요와빈곤을낳는다. 이렇게인류의가장큰죄악들은인류가자신의사회성을잘못행사한데서, 인류가그토록자랑삼던정의를그토록개탄할정도로무지하게행사한데서나오는것이다. 정의의실천은하나의과학이며, 그것의발견과전파는우리의권리와의무에대해우리를계도해줌으로써조만간사회적무질서를종식시킬것이다.

우리의본능에대한이점진적이고고통스러운교육, 우리의자생적인지각에서 허는치치지못하는사이에성찰된인식으로변해가는과정은동물들에게서는절대찾아볼수없다. 동물들의본능은고정불변이며, 또한계도의여지가없기때문이다.

동물들에게서본능과지능을분명하게구별해낸프레데릭퀴비에의말을들어보자. <본능은감수성, 피자극성, 지능과마찬가지로원초적이고고유한힘이다. 걸려들었던뎃을알고피하는여우와늑대, 인간의말몇마디를알아듣고인간을따르는개와말은‘지능’에의해그렇게하는것이다. 남은음식물을숨겨놓는개, 벌집을만드는꿀벌, 동지를짓는새는‘본능’에의해그렇게할뿐이다. 인간에게도본능이존재한다. 뒷먹이가태어나자마자젖을빠는것은어떤특유의본능에의해서이다. 그러나인간에게서거의모든것은지능에의해이루어지며, 지능이본능을보충한다. 동물은이와정반대이다. 동물의경우, 본능이지능의보충물로주어지는것이다.> (플루랑 Flourens, 『프레데릭퀴비에의관찰에대한분석적요약』)

<우리는, 동물의‘감각중추’에, 일상적이고우연적인감각들이으레명령하는대로, 행동을촉발하는생득적이고항구적인이미지나감각들이존재한다는사실을인정할때에만본능에대한명확한관념을얻을수있다. 동물의행동을유발하는것은언제나일종의꿈또는환영이다. 본능과관련된모든것에서우리는동물들을일종의최면술에걸린존재로취급할수있다.> (프레데릭퀴비에, 『동물계입문』)

이렇게지능과본능이정도의차이가있을뿐인간에게나동물에게나공통된것이라면, 인간을구별짓는것은무엇인가? 퀴비에에따르면, 그것은 <성찰>, 즉 <우리자신을되돌아봄으로써우리자신의변화를지적으로고찰하는능력>이다.

이러한말은명쾌하지않으며설명을요구한다.

동물들에게지능이있다고인정한다면, 마찬가지로어느정도든성찰력이있다고인정해야만한다. 왜냐하면전자는후자없이존재하지못하며, 퀴비에자신도여러예를들어그것을증명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박학한관찰자가, 우리를동물과구별해주는성찰이라는것을 <우리자신의변화를고찰하는능력>으로정의하고있음을주목하라. 내가자연주의철학자의엄격한정식을가능한최선을다해보충함으로써이해시키고자하는점이바로이것이다.

동물이획득한지능은동물이본능적으로수행하는작업들을결코바꾸어놓지못한다. 지능은이작업들을방해할수있는어떤예기치못한사건들에대처하기위해서주어진것에지나지않는다. 이와는반대로, 인간에게서본능적행동은끊임없이성찰된행동으로변한다. 이리하여인간은본능적으로사회적이기도하지만또한매일같이추론과선택에의해사회적이된다. 태초에인간은본능에의해자기의말을창조했다.¹ 인간은영감에의해시인이되었다. 오늘날인간은문법을하나의

¹ 언어의기원의문제는프레데릭퀴비에가제시한본능과지능의구별에의해해결된다. 언어는결코미리계획된자의적이거나인습적인고안물이아니고, 의사소통이나계시로신에의해주어진것이다. 언어는, 벌집이꿀벌의본능적이고무의식적인창조물인것처럼, 인간의본능적이고무의식적인창조물이다. 이런의미에서언어는인간의이성의소산이아니므로인간의작품이아니라고말할수있다.

때문에복종하는것이아니라국왕이그명령의근거를입증했기때문에복종하는것이라면, 이때부터인간은어떤권위도인정하려하지않으며스스로를자기의왕으로삼은것이라고확언할수있다. 인간을다스리려하면서도그러한권위의전거로다수자의존중만을들고나오는우두머리는불행할지라. 왜냐하면조만간소수자가다수자로될것이고, 따라서이신중하지못한전제자는쫓겨날것이며그가많은모든법령들은철회될것이니말이다.

사회가계몽됨에따라국왕의권위는줄어든다. 이것은역사가어김없이입증하는사실이다. 국민들이처음탄생했을때, 인간은추론하고성찰해야아무소용이없었다. 방법도원리도몰랐으며이성을활용할줄조차몰랐기때문에, 인간은자신이올바르게사물을보고있는지아니면속고있는지조차알지못했다. 당시왕들의권위는엄청났기때문에어떤기성학설도이를거역하려들지않았다. 그러나점차적으로경험은습관을놓고습관은관례를놓았다. 그러고나서관례는격률로입안되고원리로확립되었다. 달리말하자면관례는이제법률로표현되었으며살아있는법률인국왕도이제이를준수해야만했다. 이윽고관례와법률들의수효가부쩍늘어나고군주의의지가일반의지에의해말하자면휘감겨버리는시대가왔다. 왕좌에오를때, 국왕은관례와상례에따라통치할것이며자신은이제스스로법을만드는사회의집행권력에불과할따름이라고선서해야만했다.

이때까지는모든일이본능적인방식에따라, 말하자면당사자들도모르는사이에어루어졌다. 그러나이러한추세의피할길없는결말을보자.

몸소배우고관념들을습득하는능력에의해인간은마침내 <과학>의관념, 즉사물의현실에일치하며관찰에의해얻어지는인식의체계에도달하게된다. 따라서인간은과학을, 즉무기물의체계, 유기물의체계, 인간정신의체계, 세계의체계를탐구한다. 어찌인간이마찬가지로사회의체계를탐구하지않을수있겠는가? 그러나이시점에이르면인간은정치적진실, 즉정치과학은주권자의의지, 다수자의의견, 대중의의지와는완전히별개의것임을깨닫는다. 국왕, 대신, 사법관, 인민은의지체意志體로서는과학의관점에서아무것도아니며누여겨볼만한가치도없다는것을깨닫는것이다. 인간이사회적동물로태어났다면, 그에대한아버지의권위는그가이성을연마하고교육을끝마친후아버지와동류가되는바로그날로효력을상실한다는사실, 진정한우두머리나진정한국왕은증명된진실이어야한다는사실, 정치란하나의과학이지공간이아니라는사실, 입법자의기능은마침내는진실에대한방법론적탐구로귀착된다는사실, 이러한사실들을인간은마침내깨닫게된다.

그러므로특정한사회에서인간에대한인간의권위는그사회가도달한지적발전의수준과반비례한다. 그리고이권위의있음직한지속기간은아마도진정한통치, 즉과학에따른통치에대한소간일반적인열망에의거해서측정할수있다. 그리고힘의권리와책략의권리가정의의점점더광범위해지는결정력앞에서위축되어마침내평등안에서소멸되어야만하는것과마찬가지로, 의지의주권은이성의주권앞에몸을굽히고마침내과학적사회주의안에서소멸될것이다. 소유와왕정

도덕이나역사의문제에자신의선동가적인어두운기질을끌어들이면서, 인류는원칙적으로우두머리도국왕도갖고있지않았다고확언하는철학자들은인간의본성에대해아무것도모르고있다. 왕정, 그리고절대왕정도민주정과마찬가지로, 아니그이상으로아주오래된통치형태이다. 사람들은태고적부터영웅들, 산적들, 편력기사들이왕관을차지고스스로왕이되는것을보아왔기때문에, 왕정과전제라는두가지를혼동한다. 그러나왕정은인간의창조와더불어시작되었으며소극적공유제의시기에도존속했다. 반면에영웅주의및그것이낳은전제는정의의관념의첫번째형태즉힘의통치와더불어시작되었을뿐이다. 공적을서로비교해보아최강자가최적자라고판단된후부터연장자는최강자에게자리를양보해야만했으며, 왕정은전제적이된것이다.

왕정의자생적, 본능적기원, 말하자면왕정의생리학적기원은태초부터왕정에초인간적인성격을부여했다. 인간은왕을신과결부시켰으며, 신으로부터최초의왕들이탄생했다고말했다. 여기에서왕가의신성한계보, 신들의화신, 구세주의설화가생겼다. 여기에서지금도그기이한주창자들이버티고있는왕권신수설이생겨났다.

왕권은원래선발에의한것이였다. 왜냐하면인간이거의생산을하지않고아무것도점유하고있지않던시기에는세습의관념을넣고아버지의왕권을아들에게보장할정도로소유의힘이막강하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러나인간이땅을갈고도시를세웠을때, 여러가지직능들이다른것들과마찬가지로독차지되였다. 여기에서왕위세습과성직세습이생겼다. 여기에서가장일상적인직업들에까지도세습의원리가적용되는일이생겨났다. 여기에서신분들의구별, 서열에따른오만함, 평민의비참함이생겨났다. 이로써내가앞에서가산상속의원리에대해말한것, 즉공석을메우고미완의작업을완수하기위해자연이마련해준방식이확립된것이다.

세월이흐르면서인간의야욕에의해횡령자, 왕위 〈찬탈자〉 따위가출현했으며, 어떤이는참주 tyran 라고불러야할필요가생겨났다. 그러나이명칭들에구애되어서는안된다. 혐오스러운왕들이있었던만큼, 참을만한참주들도있었던것이다. 왕정이유일하게가능한통치형태일때, 그것은좋은것일수도있다. 그러나그것은결코정당할수없다. 세습도선발도보통선거도종교나시대의축성祝聖도왕정을정당화하지는못한다. 군주제, 과두제, 민주제등어떤의피를걸치고있더라도왕권, 즉인간에의한인간의통치는불법이며불합리하다.

인간은자신의욕구를가장신속하고가장완벽하게만족시키기위해 〈규준規準〉을찾는다. 태초에이규준은인간에게살아움직이는것이며눈에보이는것이고손으로만져지는것이였다. 그것은곧그의아버지이자그의주인이며그의왕이였다. 인간이무지하면할수록지도자에대한그의복종과신뢰는절대적이된다. 그러나규준에따르는것, 즉성찰과추론에의해그규준을발견하는것을자신의법칙으로삼는인간은자기우두머리의명령에대해이성적으로추론한다. 그런데이러한추론은권위에대한저항이며불복종의시작이다. 인간이주권자의의지의근거를따지기시작할때, 바로이때부터인간은저항하기시작한다. 국왕이명령을했기

과학으로, 시를하나의예술로만든다. 인간은자발적인, 굳이말하자면본능적인어떤관념에의해신의존재를믿고내세를믿는다. 그리고인간은이관념을차례로기괴한것, 우스꽝스러운것, 우아한것, 위로를주는것, 끔찍스러운것등여러형태로표현해왔다. 19 세기의경박한무신앙 impiété 이조소를퍼붓곤했던이다양한숭배형태들은종교적감정이언명한언어들이다. 인간은언젠가자기의사념이갈구하는이신이과연무엇인가를, 자기의영혼이갈망하는내세에대해그가진정원하는것이무엇인가를스스로납득하게되리라.

인간은자신의본능에의해이룩한이모든것을소중히여기지않으며경멸한다. 혹시소중히여긴다면, 그것은자신이이룩한것으로서가아니라자연이이룩한것으로이다. 여기서태초의발견자들의이름을덧고있는망각이생겨난다. 여기서종교에대한우리들의무관심과종교적의례에대한경멸이생겨난다. 인간은성찰과추론의산물만을높이평가한다. 본능에의해만들어진더없이멋진작품들이인간의눈에는우연한 〈습득물〉로만보일뿐이다. 인간은지능에의해만들어진작품들에 〈발견물〉(아니창조물이라고표현해도되리라) 이라고이름붙인다. 본능은정열과열광을낳는다. 그러나지능은범죄와덕망을낳는다.

자신의지능을발달시키기위해, 인간은자기자신의관찰만이아니라다른사람들의관찰도이용한다. 인간은경험들을기록하고연대기를보존한다. 따라서개인에게나종족에게나지능이발전한다. 동물들사이에는어떤지식의전수도이루어지지않는다. 각개체의기억은그개체와더불어사라진다.

따라서만일성찰이라는말로 〈우리의본능을지능으로변화시키고자하는항구적인성향〉을뜻하지않는한, 우리를동물과굽려시켜주는것이바로성찰이라고말하는것은충분하지않다. 인간이본능에복종하는한, 인간은자기가한일을의식하지못한다. 만일동물과마찬가지로인간이본능만을추동력으로삼는다면, 인간에게는어떤오류도, 어떤악도, 어떤무질서도없을것이다. 그러나조물주는우리에게성찰의힘을부여했는데, 이는우리의본능이지능으로변하게하기위함이다. 그런데이성찰과그결과로생기는인식은몇가지단계가있기때문에, 애초에는우리의본능이성찰에의해인도되기보다는오히려방해받는일이생길수있다. 그결과, 우리의사고하는능력이우리를우리의천성이나우리의목적과는어긋나게행동하도록만든다. 즉, 우리는잘못생각하기도하고, 악을저지르기도하며또그것때문에괴로워하기도한다. 우리를선으로인도해주는본능과우리를악에빠뜨

게다가언어의메커니즘은거기서성찰이하는역할이적으면적수록더욱완벽하고정교하게보일것이다. 이것은문헌학에의해확립된가장진기하고가장확고부동한사실들중의하나이다. 특히베르그만 F. G. Bergmann 의라틴어논문 〈스트라스부르, 1839〉을보라. 여기서박식한저자는발음의맹아가어떻게감각에서발생하는가, 언어가어떻게연속적인세단계를거치며발전하는가, 자신의언어를창조할본능적인능력을가지고태어난인간이어떻게자신의이성이발달함에따라이능력을잃게되었는가, 언어에대한연구가어떻게발전박물학, 즉하나의과학이될수있는가를설명하고있다. 오늘날프랑스에는남다른재능과깊은철학을지닌일류문헌학자들이여럿있다. 이겸허한학자들은일반인에게는거의알려지지않은학문을만들어내고, 무시당하는연구에일생을헌신하며, 다른이들이찬사를원하는만큼이나주조심스럽게찬사를멀리하고있는듯이보인다.

리는성찰, 이두가지가선과악에관한지식으로대체되어, 그로인해우리가확신을 가지고이것은취하고저것은피할수있게되는그날까지말이다.

이렇게, 악즉오류와그결과들은본능과성찰이라는두적대적인능력이뒤섞여 태어난첫번째아이이다. 선즉진리는그두번째의불가피한결실임에틀림이없다. 비유를계속하자면, 악은두개의상반되는힘사이의근친상간의소산이다. 선은그 두힘의신성하고신비스러운결합에의해조만간태어날적자嫡子이리라.

추론능력의소산인소유는대조적인것들을통해더욱견고해진다. 그런데성찰 과추론이자발성보다나중에나타나고, 관찰이감각보다나중에나타나며, 경험이 본능보다나중에나타나듯이, 소유는공유제 communauté 보다나중에나타난 다. 공유제라는단순한형태의결사는사교성의필연적목적이나본원적악동이며, 사교성이모습을드러내고자리를잡는자발적인운동이다. 그것은인간문명의첫 번째단계이다. 법학자들이〈소극적공유제〉라부르는이러한사회상태안에서인 간은인간에게접근하고, 서로대지의결실과동물의젓과고기를나눈다. 인간이아 무것도생산하지않는한소극적으로머물수밖에없는이공유제는노동과산업의발 전에따라점점더적극적이고유기적인것으로되어간다. 그러나바로이때사상의 자율성에의해, 그리고최선과최악에대한가공할추론능력에의해, 인간은만일평 등이사회의필요조건이라면, 공유제는예종의첫번째유형이라는것을알게된다.

이모든것을헤겔의정식에의해설명하자면, 나는다음과같이말할것이다.

사교성의첫번째양태이자첫번째결정체인공유제는사회발전의첫번째항, 즉 테제 (Thesis, 正) 이다. 공동체의모순된표현인소유는두번째항, 즉안티테제 (Antithesis, 反) 를이룬다. 그러면세번째항, 즉신테제 (Synthesis, 合) 를찾 는일이남는바, 우리는이를해결할것이다. 그런데이신테제는테제와안티테제의 수정에따른필연적결과이다. 따라서테제와안티테제의특성들을최종적으로검 토해서사회성에적대적인요소들을거기서제거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남은 그두요소를결합하면인간적결합의참된형태를얻을수있으리라.

제 2 절공유제와소유의특징들

1. 그누구든소유나공유제없이사는사회가가능하지않다고생각했다는사실을 숨겨서는안될것이다. 한없이개탄할이오류로인해소유는생명력을얻어왔다. 공 유제의불합리한점들이너무나명백하기때문에그비판자들은사람들로하여금공 유제를멀리하도록하는데그리많은옹변을필요로하지않았다. 공유제가가져온 치유할수없는부당성들, 그동조자에게나반대자에게가한폭력, 인간의의지에부 과한철의명예, 인간의의식에가한도덕적고문, 사회에불어넣은무기력증, 한마 디로말하자면, 자유롭고활동적이며이성적이고속박에서벗어난인간의개성을

사회를이루고사는동물들의세계에서, 새끼들의유약성은이미힘을가진어미 들에게새끼들이복종해야할당연한이치가된다. 그리고동물특유의의식구조를 보여주는습성이라는것에의해권력은최고참에게돌아간다. 비록이최고참이점 점힘을잃고허약해진다고할지라도말이다. 사회가한우두머리의통솔아래있을 때는거의언제나이우두머리는사실상무리중의최고참이다. 나는거의언제나라 고말한다. 왜냐하면기존질서가거친열정들에의해교란될수도있기때문이다. 그 령게되면권위가다른이에게넘어간다. 그러면이권위는처음에는무력으로시작 된후에곧이어마찬가지로습성에의해유지되는것이다. 야생마는무리를지어다 닌다. 이들에게는선두에서달리는우두머리가있으며, 공격과도주의신호를해주 는그우두머리를믿고따른다.

〈우리가가르는양은우리를따른다. 그러나양은또한자신이태어난무리를따 른다. 양은인간에게서‘자기무리의우두머리’를볼뿐이다. …가축들에게인간은 그들사회의일원에지나지않는다. 인간에게요구되는기술은자신이가축들에게 무리의일원으로받아들여지게하는것뿐이다. 지능이가축보다우수한인간은얼 마안가서가축의우두머리가된다. 따라서인간은뷔퐁 (G. Buffon, 1707~1788, 프랑스의박물학자-오킨이) 이말했듯이, 이동물들의자연상태를바꾸어놓는것 이아니라사실이자연상태를이용하는것이다. 달리말하자면, ‘사회성을가지고 태어난’동물들을발견하고는, 그것들을‘길들이고’한동아리가되고그우두머리 가되는것이다. 이렇게, 동물들의가축화는하나의특별한경우요, 단순한변모에 지나지않으며, ‘사회성’에의해정해진결과일뿐이다. 모든가축은그본성에서‘사 회적인’동물이다. …〉(플루랑, 『프레데릭퀴비에의관찰에대한분석적요약』)

사회성을지닌동물은〈본능적으로〉우두머리를따른다. 그러나퀴비에가빠 뜨리고넘어간말, 즉이우두머리의역할은〈지능〉에의한것이라는사실을지적 해두자. 우두머리는무리에게한동아리를이루는법, 자기지휘아래단결하는법, 번식하는법, 도망치거나옹수하는법을가르치지않는다. 우두머리는자기를따 르는무리역시이모든점을자기와마찬가지로잘알고있다는사실을이해한다. 그 러나자신이쌓아온경험에의해돌발사태에대처하는것이바로우두머리이다. 어 려운처지에놓이면자신의지능으로무리의본능을보완하는것이바로우두머리이 다. 숙고하고판단하고이끄는것이바로우두머리이다. 한마디로말하자면우두머 리의현명한신중함이전체의최대이익을위해무리의관행을통제하는것이다.

천성적으로사회를이루고사는인간역시천성적으로우두머리를따른다. 애초 에이우두머리는아버지이고, 족장이며, 원로즉경험자이자현자이며, 그자질은 따라서성찰과지능의자질이다. 인류는다른사회적인동물들과마찬가지로본능, 타고난능력, 일반적관념, 감정과이성의범주따위를지니고있다. 우두머리, 입법 자, 왕들은결코무엇하나발명하지도구상하지도예견하지도않았다. 그들은단지 자신들이얻은경험에따라, 그러나늘의견과믿음에순응하면서사회를이끌뿐이 다.

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공의회와 교황들의 무지는 고대 법학자나 전당포업자의 무지와 맞먹었다. 권리, 정의, 사회에 대한 이심각한 무지는 교회들 속이고 그가 가르침을 영원히 더럽히는 것이었다. 로마 교회들과 여타 그리스도 교회들의 불충은 너무나 명백하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했다. 모두가 도덕과 교의의 문제에서 길을 잃었다. 모두가 거짓되고 모순되며 불의와 살기로 가득 찬 말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교회는 신과 인간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리라. 자신의 무오류를 선언하고 자신의 도덕성을 더럽힌 교회 말이다. 개신교자매님들도 몸을 낮추어야 하리라. ...그러면 미망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신앙이 깊고 너그러운 인민이 알아서 신중하게 행동하리니 말이다.⁴

권리의 발달은, 소유가 여러 가지 형태들을 통해 밟아온 것과 같은 단계를 거쳐 여러 가지 표현 양태들을 통해서 밟아왔다. 도처에서 정의가 도덕질을 쫓아내어 점점 더 좁은 한계 안에 그것을 가두어 넣는 것이 보인다. 지금까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정복, 불평등에 대한 평등의 정복은 본능에 의해 그리고 현실의 필요에 의해서만 달성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사교성의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성찰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봉건적인 혼동에 빠지고 말 것이다. 우리의 지성에 의해 영광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무능력에 의해 비참한 심연에 빠질 것인가.

소유의 두 번째 결과는 전제專制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전제는 합법적인 권위라는 관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전제의 자연적 원인들을 들추어냄으로써 합법적인 권위의 원리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통치 형태를 택할 것인가? 아! 그런 것을 묻다니! 당신은 공화주의자로 군요 라고 필경 나의 젊은 독자들 중 하나가 답할 것이다. 공화주의자, 그렇다. 그러나 이 말은 아무 것도 분명히 나타내지 않는다. 레스푸블리카 Res Publica란 공적인 사물을 말한다. 즉, 공적인 사물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자신이 공화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국왕들 역시 공화주의자이다. 그러면! 당신은 민주주의자입니까? 아니다. 뭐요! 당신은 왕정주의자입니까? 아니다. 입헌주의자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당신의 귀족주의자입니까? 천만에. 당신은 혼합정체를 원하십니까? 더욱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뭘입니까? 나는 아나키스트 anarchiste 요. 알았습니다. 당신은 빈정대고 있군요. 이것은 정부를 겨냥한 말이군요. 결코 아니요. 당신은 막나의 진술하고도 심사숙고한 신념과 백을 들었다. 나는 질서를 아주 사랑하지만 그 말이 뜻하는 바 그대로 아나키스트이다. 내 말을 들어보라.

⁴ 『사도행전』에는 <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써 산다> 라고 적혀 있다. 이 말은 그는 자신의 노동에 의해 산다는 뜻이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사제들은 소유에 의해 살기를 더 좋아했다. 대지주이자 영주였던 수도원장과 주교들에 맞선 중세 자치도시들의 투쟁은 잘 알려져 있다. 성직자의 불로소득을 옹호하려는 교황의 파문 사례도 마찬가지로 잘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도 프랑스 성직자들의 공식 기구는 여전히 성직자의 보수는 임금이나 아니라 원래 성직자의 소유였으나 1789 년에 제 3 신분인 그들에게서 빼앗아 간 재산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주장한다. 성직자는 자신의 생계를 노동의 권리에서 가 아니라 불로소득권에서 찾기를 원한다.

업어 맨 공유제의 그 맹목적이고 고리서는 확실성이 일반인의 양식을 일깨우고 마침내 공유제를 가차 없이 단죄하게 만든 것이다.

공유제를 옹호 할 양으로 흔히 거론되는 인물들과 실례들은 오히려 공유제와 어긋나 보인다. 예컨대 플라톤의 공산주의 공화국은 노예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루쿠르고스 (Lukourgos, 기원전 9 세기 스파르타의 전설적인 입법자-윙킨이) 의 공화국은, 주인을 위해서 모든 생산을 짊어지고 오로지 체력 단련과 전쟁에만 전념하는 노예들에 의해 움직였다. 장자크 루소 역시 공유제와 평등을 혼동하여 노예제가 없으면 조건들의 평등도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말했다. 원시 교회의 공유제들은 그 첫 세기의 끝까지도 버티지 못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원 안으로 숨어들었다. 파라과이에서 예수회 신부들이 시도한 공유제에서 흑인들의 처지는 방문객의 눈에 노예들만큼이나 비참해 보였다. 신참자들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량한 신부님들도 도랑을 파고 담장을 쌓아야만 했던 것이 사실이다. 명료하게 정식화되어 댤신 조에 의해 사라기 보다는 소유에 대한 불타는 혐오감에 의해 이끌린 바뵈프 주의 자들 (프랑스 대혁명 당시 <평등자의 음모> 를 꾸민 그라쿠스 바뵈프 G. Babeuf 의 추종자-윙킨이) 은 자신들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몰락했다. 공유제와 불평등을 하나로 합쳐 버린 생시몽 주의자들은 가장 행렬처럼 지나가 버렸다. 오늘날 사회가 봉착한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또 다시 암초에 부딪쳐 난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기한 노릇이다! 계획적인 공유제, 즉 소유에 대한 심사숙고한 부정否定이 소유라는 편견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서 구상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모든 이론들의 근저에서 다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소유이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물론 자기것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공동체 자체가 소유자, 그것도 재산만이 아니라 인격과 의지의 소유자인 것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부과한 하나의 조건에 지나지 않아야 할 노동이 공유제 아래서 인간에 대한 격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격률이 되는 것, 성찰에 따른 의지와는 양립할 수 없는 수동적 복종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 겉으로는 명철해 보이지만 결함투성이 일수 밖에 없는 규칙들을 지키는 데서 어떤 불평도 용납되지 않는 것, 인간의 생명, 재능, 모든 능력들이 다 국가의 소유물로 되고 국가가 그것을 일반 이익에 맞도록 원하는 대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 개별 단체들은 그 단체들의 능력이나 특성에 대한 호·불호에 관계 없이 철저히 강제되는 것 (개별 단체들을 허용한다는 것은 대공유제 안에 소공유제들을, 따라서 소유들을 도입하는 것이니 말이다), 의무에서 가 아니라 선의에서,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충고에 의해서 이기는 하지만, 강자가 약자의 일을 떠맡아야만 하고, 부당하게 여겨져 더라도 근면한 자가 게으른 자의 일을 떠맡아야만 하며,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민활한 자가 우직한 자의 일을 떠맡아야만 하는 것, 인간이 자신의 <자아>, 자발성, 천분, 애정 등을 집어 던지고 공동 생활의 위엄과 완고함 앞에서 미천하게 자신을 낮추어야만 하는 것 — 지금 열거한 모든 현상은 소유의 존엄성이라는 이원리에 의한 것이다.

공유제는 불평등이다. 그러나 그것은 소유가 불평등이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에서 그러하다. 소유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착취이다. 그러나 공유제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착취이다. 소유제의 경우, 조건들의 불평등은 물리적인 또는 지적인 힘, 사건들, 우연 또는 〈행운〉의 힘, 기존 소유의 힘 등 어떤 이름 을 지니고 있든 간에 힘의 결과이다. 공유제의 경우, 불평등은 재능과 노동의 범용성을 소유제에서의 힘만큼 널리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이유해한 등식은 양식 있는 자들을 분노케 하며 공적 있는 자들의 불평을 산다. 왜냐하면 약자를 돕는 것이 강자의 의무일 수는 있다 할지라도, 강자는 자신의 아량으로 그리 하려 할 뿐이며 자신과 필적되는 것조차 달가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노동과 임금의 조건에서 평등케 하라. 그러나 공동과업에서의 불성실에 대한 서로 간의 의심으로 그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공유제는 억압과 예종이다. 인간은 기꺼이 의무의 계율을 준수하고자 하며, 자기 조국에 봉사하고자 친구들을 따르고자 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만큼하고자 한다. 인간은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선용하고 필요한 것만 따르기를 원하며 우정, 여가, 학습 등을 스스로 선택하길 원한다. 인간은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봉사하길 원한다. 굴종적인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심에서 스스로를 희생하길 원한다. 공유제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능력의 자유로운 행사에, 우리의 가장 고결한 성향에, 우리의 가장 내밀한 감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공유제를 개별 이성 및 의지의 요구와 타협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내는 그 어떤 것도 그 저늘 같은 미명 아래 내용을 바꾸는 데 그칠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말장난을 피해야만 한다.

따라서 공유제는 의식의 자율성과 평등을 침해한다. 정신과 심정의 자발성 및 행동과 사상에서의 자유의지를 훼손함으로써 의식의 자율성이 침해당하는 것이며, 노동과 태만, 재능과 우둔, 심지어 악덕과 덕망을 대등하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이 침해당하는 것이다. 요컨대, 소유가 축적하고자 하는 경쟁심에 의해 불가능하듯이, 공유제는 게으르고자 하는 경쟁심에 의해 불가능한 것이다.

II. 한편, 소유는 배제권과 불로수득권에 의해 평등을 침해하며, 전제에 의해 자유의지를 침해한다. 소유가가 저오는 첫 번째 결과는 앞의 세장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여기서는 최종적인 비교대조를 통해 소유가 도둑질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도둑 voleur 은 라틴어로 fur 또는 latro 라고 한다. 앞의 말은 그리스어 phôn, pherô (〈나는 가져간다〉) 에서 나왔고 라틴어 fero 에 해당한다. 뒤의 말은 lathroô (〈나는 강탈한다〉) 에서 나온 말로 그 어원은 léthô, 즉 라틴어로는 lateo (〈나는 숨는다〉) 이다. 그리스어에는 또한 kleptô (〈나는 훔친다〉) 에서 온 kleptês 가 있으며, kaluptô (〈나는 숨긴다〉), (〈나는 감춘다〉) 와 어원을 같이 한다. 이러한 어원론에 따르면, 도둑의 개념은 자신의 것이 아닌 어떤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 숨기고 가져가고 빼앗는 사람을 가리킨다.

힘의 권리에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 달리 말하자면 노예제나 고리대금업이 나온다. 정복자가 피정복민에게 부과하는 공납 그리고 염세鹽稅, 국왕특전, 부역, 소작료, 집세 등 다양한 세금들, 한마디로 말해서 소유가 바로 힘의 권리에서 나온다.

힘의 권리에 뒤이어서, 정의의 두 번째 표현 형태라 할 수 있는 책략의 권리가 나타났다. 이것은 사실이 분야에서 그다지 숨쉴 발취하지 못하고 있기만 했던 고대의 영웅들이 아주 달가워하지 않던 권리이다. 이것도 여전히 힘에 바탕을 둔 권리였지만, 육체적 능력으로서의 힘에서 심리적 능력으로서의 힘으로 변용된 형태의 권리였다. 교활한 언술로 적을 속이는 기술은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물론 강자는 늘 자신이 신의 를 지킨다고 뽐내긴 했지만 말이다. 당시에 약속을 지키고 서약을 준수하는 것은 당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표현의 문제였다. 12 표법 (기원전 451 년에 공포된 로마 최초의 성문법-율건이) 에는 〈허가언명하는 대로 법이 있으라 (Uti lingua nuncupassit, ita jus esto)〉라고 적혀 있다. 책략, 좀 더 낮게 말하자면 배신이 고대로 마의 정치의 태반을 이루고 있었다. 비코 (Vico, 1668~1774, 이탈리아의 역사가, 철학자-율건이) 는 여러 예들 중에서 도 특히 나중 에 몽테스키외 역사가 거론했던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로마인들은 사회 또는 국가에 해당하는 키비타스 civitas 라는 말의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카르타고인들에게 그들의 재산과 〈도시〉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카르타고인들은 이것을 실제적인 도시 즉 우르브스 urbs 로 이해하고는 성벽을 쌓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약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로마인들의 침략을 받았다. 로마인들로서는 이 점에서 자신들이 영웅시대의 권리를 따르고 있을 뿐이지 애매한 문구로 적을 속여 정의를롭지 못한 전쟁을 벌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공업, 상업 및 은행의 이익은 책략의 권리에서 나온다. 거래에서의 사기행각, 〈재능〉 또는 〈천재성〉이라는 미명으로 장식되어 있으나 고도의 속임수나 기만으로 보아야 마땅할 온갖 장광설들, 마지막으로 모든 종류의 사회적 불평등들, 이 모든 것은 바로 책략의 권리에서 나온다.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도둑질에서는 힘과 책략이 다른 어떤 도움 없이도 골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허용된 도둑질에서는 힘과 책략이 어떤 유용한 생산물의 형태로 몸을 숨기고는 희생자들을 강탈하기 위한 병참 도구로서 그 생산물을 이용한다.

폭력과 책략의 직접적인 사용은 아주 일찍부터 만장일치로 비난받아왔다. 그러나 여태껏 어떤 국민도 재능, 노동 및 점유와 결합된 형태의 도둑질에서는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도덕에 관한 공론의 모든 모호성과 법률학의 수많은 모순들이 나온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서 음유시인들이 그토록 찬미해 마지 않던 힘의 권리와 책략의 권리는 그리스와 로마의 모든 입법들에 영감을 불어넣었으며, 오늘날 우리의 습속과 법령들에까지 전해져 있다. 그리스도교는 이 점에서 아무 것도 바꾸어 놓지 않았다. 그렇다고 복음서를 비난하지는 말자. 성직자들도 잘못인도 되기는 법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있었으며 설명할 줄도 이해할 줄도 몰랐으니 말이다. 도덕

히옴다는것도 인정하라. 그렇지 않으면당신은지대와소작료를동시에폐지해야 하리라.)

예수회신부의이무시무시한논박에대해몬탈트(Montalte, 『프로뱅시알』의저자인파스칼의별칭-웁긴이) 경은경중을울렸을것이며, 사회가위협에봉착해있고예수회신부들은사회의토대까지좀먹고있다고소리쳤을것이다.

사람들은흠친다. (14) 상인의이익이그의직능에따른정당한보수를초과할경우의상거래 commerce 에의해.

상거래의정의는아는바와같다. 그것은〈6 프랑의가치가나가는것을 3 프랑에사고, 3 프랑의가치가나가는것을 6 프랑에파는기술〉이다. 이렇게정의된거래와아메리카식도둑질사이의차이점은교환되는가치들의상대적비율에, 즉이익의규모에있을뿐이다.

사람들은흠친다. (15) 자기의생산물에대해이익을남김으로써, 한직을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지나친보수를받음으로써.

일정한양의일을소비자에게팔면서무게를질때부대자루에손을넣어곡물한줌을덜어내는농부는도둑질을하는것이다. 강의로는국가로부터받으면서출판업자를내세워그강의를다시일반인에게파는교수는도둑질을하는것이다. 별볼일없는일의대가로엄청난생산물을받는한직자는도둑질을하는것이다. 관리든노동자든, 1 만큼생산하고 4 만큼받는자, 100 만큼생산하고 1,000 만큼받는자는도둑질을하는것이다. 이책을출판하는편집자와이책의저자인나는책값어치의두배를받음으로써도둑질을하는것이다.

요약해보자.

정의는고대의시인들이〈황금시대〉라불렀던소극적공유제에서벗어나자마자힘의권리가되기시작했다. 사회가구성되면, 능력의불평등이공적功績의관념을일깨우게되고, 형평에의거해서비단평판뿐만아니라물질적재산까지도개인의공적에비례시키고자하는착상이생겨난다. 그리고세상에서인정받는최초이자거의유일한공적이바로물리적인힘이기때문에, 가장공적이큰최우선자 aristos 로서최대의몫을차지할권리를가진자는가장힘센자 aristos 이다. 그러므로만일이권리가거부된다면, 그는당연히그것을힘으로빼앗는다. 여기에서부터모든물건에대한소유권을장악하는데까지는단한걸음만더디면충분하다.

그리스인과로마인들이적어도전통에따라그들공화정최후의날까지보존했던것이바로이러한영웅시대의권리였다. 플라톤은자신의『고르기아스』에서칼리클레스라는인물을소개하고있는데, 여기서칼리클레스는갖은기지를동원하여힘의권리를지키고있는반면, 평등의옹호자 tou isou 인소크라테스는진지하게그를논박하고있다. 위대한폼페이우스(Pompeius, 기원전 1 세기경로마의장군-웁긴이) 는얼른얼굴을붉히기는했지만어느날다음과같은말을입밖으로흘렸다고전해진다. 〈내가무기를손에잡고있을때, 왜법을같은것을존중해야한다는말인가!〉 이것은자신의도덕감과야망사이에서갈등을하다가결국자기의폭력을영웅과도적의처세훈으로정당화하는인간의모습이다.

히브리인들은바로이관념을 gannab 이라는말로표현하는데, 이는동사 gannab(〈떼어두다〉, 〈전용하다〉) 에서나왔다. 십계명의여덟번째계율, lo thi-gnob(〈도둑질하지말라〉) 는〈아무것도너를위해서간직하지말라〉, 〈너를위해아무것도남기지말라〉는뜻이다. 이는말하자면유명한사도아나니아 Anania 가그랬던것처럼(신약, 『사도행전』 5 장 1~11 절에나오는이야기-웁긴이), 한사회에입화하면서자기가가진모든것을다가지고오겠다고약속해놓고는비밀리에일부를남겨두는인간의행위를가리키는것이다.

〈흠치다 voler〉라는프랑스동사의어원은더욱의미심장하다. voler 또는 faire la vole 은사람의손바닥을뜻하는라틴어 vola 에서온말로, 카드놀이에서모든패를다따내는것을뜻한다. 따라서도둑 voleur 은모든것을다차지고최대의몫을얻은수혜자와같은것이다. 아마도이 voler 라는동사는 voleurs 의은어에서생겨나서일상어로통용되다가마침내법률용어로까지쓰이게된듯하다.

도둑질은수많은방식으로행해진다. 입법자들은이방식들을그흠악성이나공현도의정도에따라주교묘하게구분하고분류했는데, 이는도둑질들중에서어떤것은치하하고어떤것은응징하기위함이었다.

사람들은흠친다. (1) 거리에서사람을죽임으로써, (2) 혼자서또는무리를지어, (3) 가택침입에의해, (4) 사취에의해, (5) 거짓파산에의해, (6) 공문서또는사문서변조에의해, (7) 화폐위조에의해.

위의부류는무력이나공개적인사기행위에의해자기직분을행사하는모든도둑들, 즉강도, 산적, 해적, 즉육상과해상의도둑등등을다포괄하고있다. 고대의영웅들은이칭호들을일종의영예로여겼으며, 자신의직업을돈벌이로서만이아니라고귀한것으로생각했다. 니므롯, 테세우스, 이아손과아르고호號의용사들, 입다, 다윗, 카쿠스, 로물루스, 클로비스와메로빙거왕조의왕들, 로베르기스키르, 탕크레드오트빌, 보에몽등대다수노르만족의영웅들, 이들모두는산적이요도둑이었다. 도둑이지닌영웅적특성은호라티우스(Horatius, 기원전 65~8, 로마의시인-웁긴이) 가아킬레우스에대해말한다음의시구에잘나타나있다.

그가타고난권리를부인하고, 무기에모든권리를부여하라.

(Jura neget sibi nata, nihil non arroget armis)²

그것은또한야곱의유언장(『창세기』, 제 48 장) 에도잘표현되어있는데, 이는유대인들이다윗에게, 그리스도교인들이그리스도에게적용했던바로그유언이다(모든것에맞서는그의손 〈Manus ejus contra omnes〉). 그의손이모든것을흠치고몽땅차지한다는것이다. 오늘날, 도둑죽고대의무장한강자는죽

² 나의권리, 그것은나의창이자나의방패이다. 브로사르 Brossard 장군은아킬레우스처럼말했다. 〈나는나의창과방패로포도주와황금과여자를얻었노라.〉(호라티우스의『시문집 Ars poetica』 의제 122 절에실린구절-웁긴이)

을때까지추적당한다. 그의직업은법령에따라금고형에서교수형에이르기까지체형이나명예형으로다스려진다.

사람들은흠친다. (8) 협잡에의해, (9) 사기에의해, (10) 배임에의해, (11) 도박이나복권에의해.

도둑질의이두번째부류는젊은이들의기백과창의력을예리하게다들기위해루쿠르고스의법령에서장려되었던것들이다. 이부류의도둑질은오디세우스, 솔론, 시논, 야곰에서도이츠 Deutz 에이르는고대및근대의유대인들, 보헤미아인들, 아랍인들에의해실행되던것들이다. 루이 13 세와루이 14 세의치세에서는도박에서숙임수를써도불명예스러운일이아니었다. 이것은어떤의미에서규칙의일부였으며, 많은정직한이들이운명의장난을교묘한사기로바로잡는일을조금도주저하지않았다. 심지어오늘날도어디서나 <장사를할줄안다> 는것, 즉상대를속인다는것이농민들에게서나크고작은장사에서아주중요한장점으로통한다. 이것은너무나당연한듯이받아들여져서, 피해를입은사람조차별로원망을늘어놓지않을정도이다. 우리정부가복권의폐지를얼마나내켜하지않으면서받아들였는지는잘알려져있다. 정부는그것이마치소유에어떤치명타인듯이받아들였던것이다. 소매치기, 사기꾼, 야바위꾼은특히교묘한술놀림, 교묘한재기, 뽐내는장광설, 기발한꾀를심분이용한다. 이들은이따금씩탐욕에미끼를던지는것이다. 그리하여물리적감압에대해서보다는지능에대해훨씬관대한우리의형법은위에서언급한네종류의도둑질을두번째범주로분류하여명예형이아니라그저경범죄정도로처리해야한다고고민었다. 지금이라면이법은유물론적이고무신론적이라고비난받을것이다.

사람들은흠친다. (12) 고리대에의해.

복음서가나온이래그토록혐오의대상이되고그토록엄하게단죄되어온이부류의도둑질은금지된도둑질과허용된도둑질사이의과도기적형태를이룬다. 따라서그것은그모호한성격으로인해법률이나도덕의문제에서많은모순들을, 궁정인, 재정가, 장사치등에의해야주교묘하게이용되는많은모순들을불러일으키고있다. 말하자면, 10, 12, 15% 로저당을잡고돈을빌려주는고리대업자는발각되면무거운벌금을물지만, 대부가아니라교환또는할인이라는명목으로같은이자를받는은행가는국왕의특권에의해보호받고있다. 그러나은행가와고리대업자사이의차이는실로명목적인것이다. 동산이나부동산을담보로돈을빌려주는고리대업자와마찬가지로, 은행가도지폐를담보로돈을빌려준다. 고리대업자와마찬가지로은행가는이자를먼저받는다. 고리대업자와마찬가지로은행가는담보가소멸될경우, 즉은행권이변제되지않는경우, 차용자에대해상환청구권을갖는다 (이경우은행가는정확히말하자면돈을판매하는자가아니라돈을빌려주는자이다). 물론고리대는대부기간이 1 년, 2 년, 3 년, 9 년또는그이상일수있지만, 은행가는단기대부만한다. 그러나대부기간의차이나증서형식의다양함이계약의성격을바꾸지는못한다. 국가나회사를상대로 3, 4, 5% 의이자로자금을투자하는자본가들에대해말하자면, 이들즉은행가나고리대업자들보다어느정도

적은고리대를받는자본가들은사회의꽃이요정직한사람들의화신이다. 도둑질도적게하면최선의미덕이되는가.³

사람들은흠친다. (13) 지대, 소작료, 집세, 임대등에의해.

『프로뱅시알 Provinciales』 의저자 (17 세기프랑스의사상가블레즈파스칼을가리킨다-옮긴이) 는예수회신부에스코바 Escobar 와모하트라 Mohatra 계약을거론하면서 17 세기의성실한기독교인들을즐겁게해주었다. 에스코바는말했다. <모하트라계약이란상품을비싸게외상으로사서즉시같은사람에게현찰로싸게되파는계약이다.> 에스코바는이런류의사치를정당화해주는이유를찾아냈다. 파스칼을비롯한모든안센파교도들은에스코바를조종했다. 그러나에스코바신부가다음과같은논지를그들에게들이댄다면, 독설가파스칼, 현학자니콜 (P. Nicole, 1625~1695, 프랑스의정치사상가, 신학자-옮긴이), 불굴의아르노 (A. Arnaud, 1560~1619, 프랑스의법률가, 신학자-옮긴이) 는과연무어라고말할까. <가옥임대차계약은건물을비싸게외상으로사서일정기간후에같은사람에게싼값으로다시파는계약이다. 거래를간단하게하기위해서구매자는첫번째판값과두번째판값사이의차액을지불하기만하면될것이다. 가옥임대차와모하트라계약이동일하다는것을부인하라. 그러면나는즉시당신의코트를꺾어놓으리라. 아니면, 두가지가동일한것이라고인정한다면, 나의논지가정확

³ 고리대또는혹자의완곡한표현에따르자면이자대부를논한저술가들을검토해보는것은아주흥미진진하고유익한일일것이다. 신학자들은항상고리대와싸워왔다. 그러나그들은항상토지와가옥의임대차는정당하다고인정해온바, 가옥의임대차와이자대부는명백히같은것이이기때문에, 그들은미묘한차이의미로에빠져서결국은고리대에대해어떻게생각해야좋을지갈피를못잡게되었다. 교회, 이도덕의아성은자기교회의순수성을그토록자랑삼기는했지만, 소유와고리대의진정한성격에대해서는영겁의무지에빠져버렸다. 교회는심지어높은신분들의입을빌어정말개탄할오류들을공표했다. 교황베네딕토 14 세는 <차용은결코임대계약과동등하지않다 (Non potest mutuum locationi ullo pacto comparari)> 라고말했다. 보쉬에 Bossuet 에의하면, <지대의설정은하늘과땅의차이만큼이나고리대에서멀리떨어져있다> . 이런식의생각들로어떻게이자대부를단죄할수있는가? 무엇보다도, 고리대를정식으로금하는복음서를어떻게정당화할수있는가? 여기서신학자들의곤란은극에달한다. 이자대부와집세를조리있게동일시하는경제학의논증들을확실한증거를가지고논박할수없었던이들신학자는더이상굳이이자대부를단죄하려하지않는다. 이들은, 복음서가고리대를금하고있는것을보면무엇인가고리대와같은것이있기는있는모양이라고말하는데그친다. 그러면정작 <고리대란무엇인가?> 이들, 국민의스승들이, 그들의표현을빌리자면 <헛말을했으리없는> 복음서와경제학적인증들의권위사이에서주춤거리는것을보는것만큼재미있는일도없다. 내가보기에, 이른바복음서박사님들의이낱은불충만큼복음서에더없는영광을가져다주는것도없으리라. 살마시우스 Cl. Salmasius 는대부이자와임차이윤을동일시했으나, 곧크로티우스, 푸펜도르프, 부를라마키 Burlamaqui, 볼프 Wolf, 하이네치우스 Heineccius 에의해 <논박당했다> . 더재미있는사실은살마시우스스스로 <자신의오류를인정했다> 는점이다. 살마시우스의이러한동일시에근거해서일체의불로수득은부당하다고결론짓는다거나이에바탕을두고복음서의평등을입증하려나서기는커녕, 이들은정반대되는결론을끌어냈다. 그것은, 누구나인정하듯이소작료와집세가허용되는만큼금전의이자도그와다르지않다고인정한다면, 더이상고리대라불릴수있는것은없으며, 따라서우리는조금도불경함이없이예수그리스도의계율은 <환영幻影> 이요 <무無> 라고말할수있다는사실이다.